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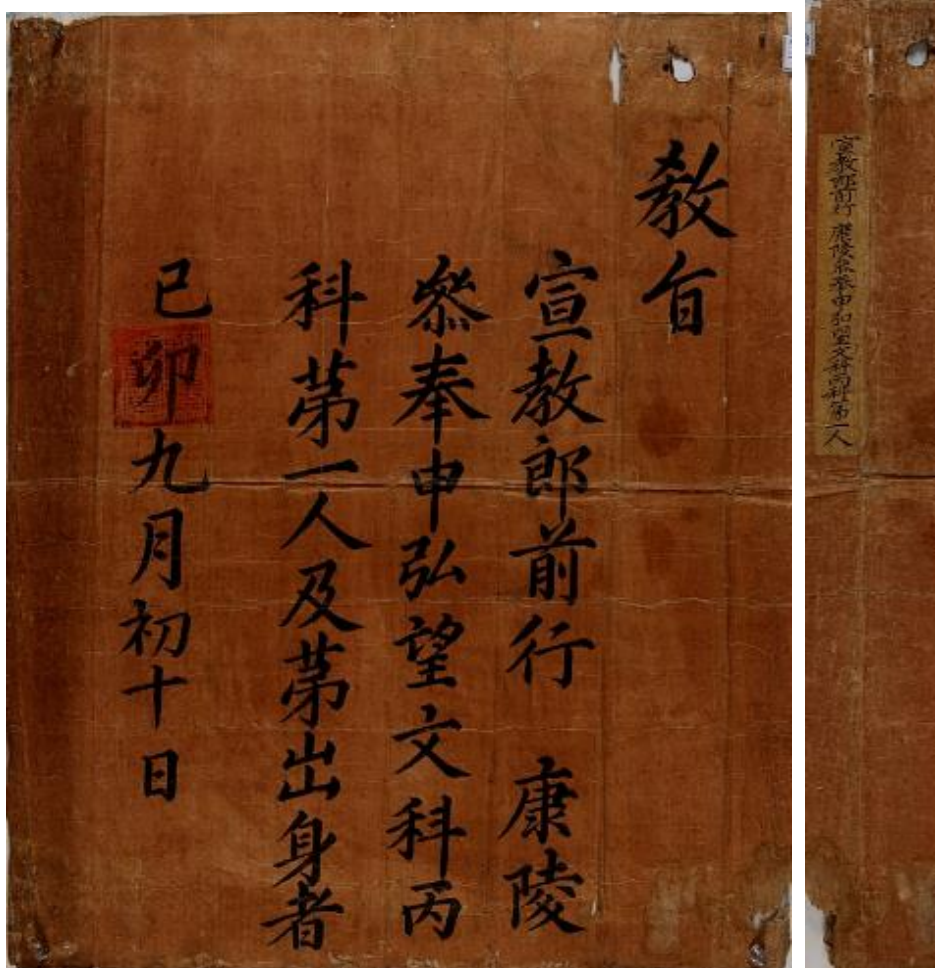
아주신씨(鵝洲申氏) 오봉(梧峰) 가문(家門) 고문서(古文書) 전(全)

교령류 (57)

홍패(紅牌) (1)

1639년 신흥망(申弘望) 홍패(紅牌)

· 분류	고문서-교령류-홍패 / 정치.행정-과거-홍패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흥망(申弘望)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39년 
· 형태사항	크기: 92x75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홍패(紅牌)

붉은색을 띤 용지로 만들었으므로 홍패라고 한다. 이 종이를 속칭 홍당지라고 불렀는데 한지를 염색하여 만들었다.

서식은 왕이 내리는 교지의 형식을 사용하여, 성명, 과거 종류, 갑·을·병 과의 등급 구분, 성적 순위, 연월일을 적고 '과거지보'라는 도장을 찍었다. 또한 고려시대 과거제도에서는 좌주와 문생의 관계가 중시되었으므로, 급제 패지에 좌주(시험관)의 이름을 적었다. 그러나 좌주문생제도를 폐지한 조선에서는 시험관의 이름이 삭제되었다.

조선 후기에 과거제도가 문란해지면서 홍패를 매매하는 일도 발생했는데, 이를 홍패매매라고 한다. <속대전> 병전 무과조에 의하면, 홍패매매를 하다가 발각될 경우 양자 모두 절도에 보내 노예로 삼는 적과율로 처벌하게 했다. 현존하는 최고의 홍패는 1205년(희종 1)에 진사시에 급제한 장양수의 것으로 국보 181 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밖에 고려시대 홍패로 1355년(공민왕 4) 양이시의 것과 1376년(우왕 2) 양수생의 것이 알려져 있는데, 모두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다.

백패(白牌) (2)

1627년 신흥망(申弘望) 백패(白牌)

· 분류	고문서-교령류-백패 / 정치·행정-과거-백패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흥망(申弘望)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27 년 
· 형태사항	크기: 83x36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백패(白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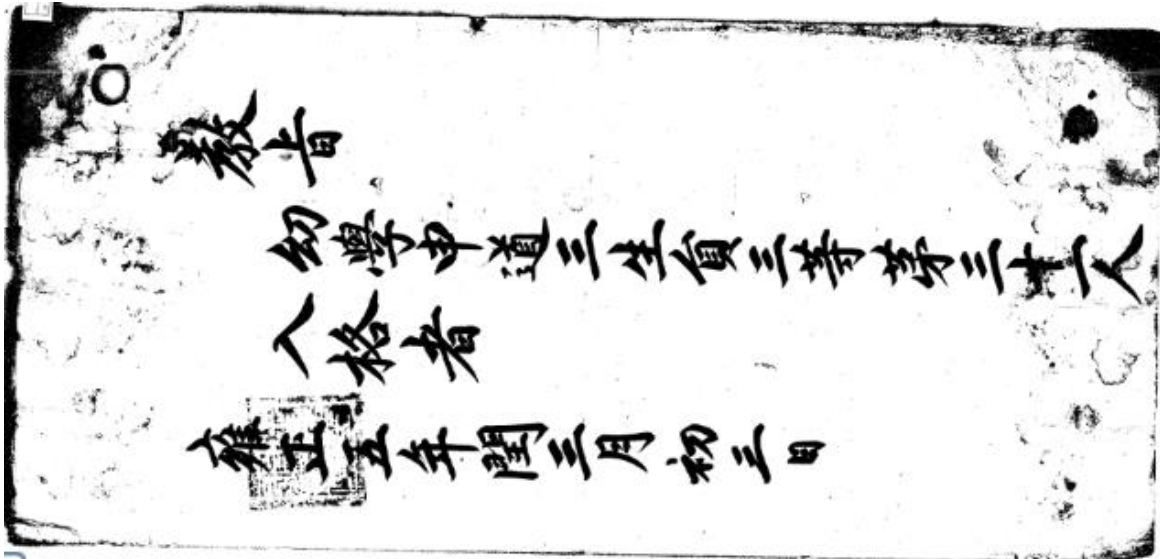
생원·진사과는 그 복시에서 각각 1 등 5 인, 2 등 25 인, 3 등 70 인으로 각 100 인을 합격시켰는데, 시험결과에 대한 전형(銓衡)이 끝나면 합격자를 성적순으로 써서 국왕에게 올린 뒤 이를 발표, 즉 궤방(掛榜)하였다.

합격자들은 길일을 택하여 전정(殿庭)에서 방방의(放榜儀)라는 의식을 하였는데, 생원은 동쪽에 진사는 서쪽에 줄지어 서서 국왕에게 사배(四拜)를 올린 뒤에 합격증서로서 백패와 주과(酒果)를 받았다.

백패는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합격한 사람의 직위·성명·합격등급·성적순위를 기입하고 연월일을 쓴 다음에 그 사이에 어보(御寶)를 찍었다. →홍패

1727년 신도삼(申道三) 백패(白牌)

· 분류	고문서-교령류-백패 / 정치·행정-과거-백패
· 작성주체	발급: 영조(英祖) / 수취: 신도삼(申道三)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727년 
· 형태사항	크기: 95x45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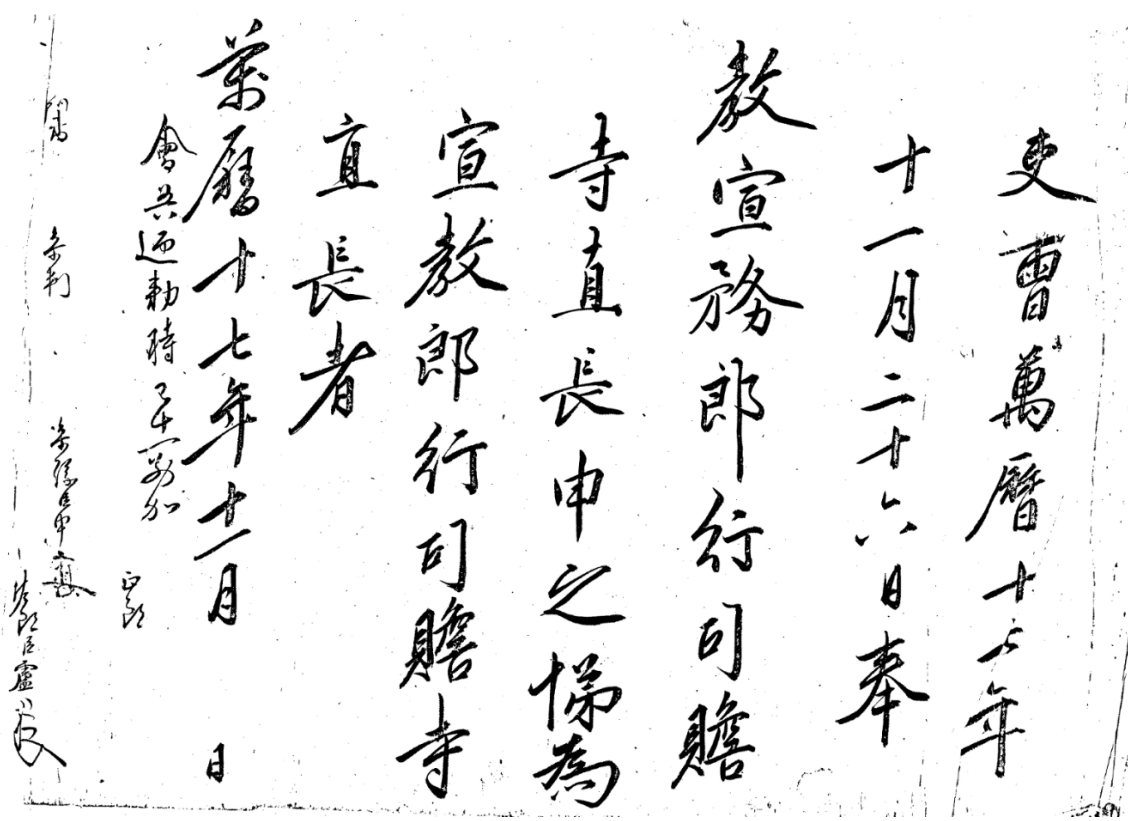
고신(告身) (41)

1589년 신지제(申之憐)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지제(申之憐)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589년 / 만력 17년 11월 일 
· 형태사항	크기: 49x65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개(정방형)
· 서명(개)	착명:2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34 ~쪽



안내정보

1589 년신지제를 선교랑으로 승진시킨 문서.

1589 년(선조 22) 이조(吏曹)에서 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 임명장이다. 왕명을 받들어 선무랑(宣務郎)행(行) 사삼시(司贍寺) 직장(直長)신지제를 선교랑(宣教郎)으로 승진시켰다. 선무랑은 종(從) 6 품 하계(下階)이고, 선교랑은 상계(上階)이니 한 등급 올려준 것이다. 이러한 승진은 지난 달 명나라로 갔던 사신이 돌아와 새로 개정된 명의 법전 『대명회전(大明會典)』전질과 황제의 칙서(勅書)를 바쳤기 때문이다. 이 법전에 태조(太祖)이성계(李成桂)의 선대가 잘못 기록되어 두 나라 사이에 오랜 외교적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판을 내면서 조선 측의 요구가 수용되었다. 그 결과인 새 법전 전질을 가져와 바치니 왕은 크게 기뻐하며 공이 있는 자들을 승진시키라는 명을 내렸다.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전 관료를 한 등급 승진시키라는 어명은 사신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내려졌다. 직장으로 근무하던 신지제도 이 법전과 칙서를 맞이하는 행사에 참여한 모양이다. 그 공으로 연이어 승진하는 은택을 입게 되었다.

상세정보

1589 년(선조 22)신지제를 선교랑으로 승진시킨 문서.

萬曆 17 年(1589) 11 월 모일에 吏曹에서 申之悌(1562~1624)에게 내린 告身이다. 같은 달 26 일에 내려진 宣祖(재위 1568~1608)의 명을 받들어 선무랑행사삼시직장(宣務郎行司贍寺直長) 신지제를 선교랑행사삼시직장(宣教郎行司贍寺直長)에 임명하였다. 즉, 從 6 品 下階인 선무랑(宣務郎)에서 상계(上階)인 선교랑(宣教郎)으로 한 등급 陞資시킨 것이다.

“회전영칙시(會典迎勅時) 己丑年(1589)인 당해 11 월에 내려진 별가(別加)로 인한 것이라고 연호(年號) 좌방(左傍)에 부기(附記)되어 있다. 이 달에 명으로 갔던 사신이 돌아와 『대명회전(大明會典)』전질과 칙서(勅書)를 바치자 선조가 백관(百官)의 하례(賀禮)를 받고는 공이 있는

자들에게 가자(加資)의 은전(恩典)을 내렸다. 조선 건국 후 200 여년을 끌었던 명과의 외교문재인 종계변무(宗系辨誣) 건이 완전히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백관을 가자시키는 은전은 초 2 일에 내려졌고, 이때에는 유공자에 대한 은전이였다. 사삼시 직장으로 근무하던 신지제도 사신이 가지고 온 명 법전과 칙서를 맞이하는 행사에 참여하였던 모양이다. 지난 백관가자에 이어 이번 별가까지 더하여 그는 이번 11 월에만 두 자급(資級)을 승자하였다.

참고문헌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 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집필자 : 권오정

원문텍스트원문범례

吏曹 萬曆十七年

十一月二十六日奉

教 宣務郎行司贍

寺直長申之悌爲

宣教郎行司贍寺

直長者

萬曆十七年十一月日

會典迎勅時 己十一別加

正郎

判書參判參議臣申[着名]

佐郎臣盧[着名]

고신(告身) : 교지(教旨), 교첩(教牒), 관교(官敎), 사첩(謝牒)

고신(告身)은 조선시대에 1~9 품 관원에게 품계와 관직을 수여할 때 발급하던 임명장이다.

고신에 대해서는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남아 있는 조선시대 임명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신제도는 1392년(태조 1)에 조선식으로 변경된 이후 정종~세조조의 조사첩(朝謝牒, 또는 謝牒) 작성 시기[정비기]를 거쳐 1466년(세조 12) 이래 조선식 임명법인 관교(官敎)와 교첩(教牒)의 수여 방식으로 정립되었다.

고신에는 두 종류가 있었다. 4 품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에게는 교지(教旨) 형식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왕의 어보인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어 관교를 발급하였다. 5 품에서 9 품 관원에게는 왕의 명을 받아 이조와 병조에서 임명하는 형식으로 임명장을 작성하고 관인은 이조지인(吏曹之印)과 병조지인(兵曹之印)을 찍어 교첩을 발급하였다. 모두 왕명에 의거한 임명이었지만 4 품 이상은 왕의 직접 임명이고, 그 이하는 왕의 결재를 통한 임명 관사의 임명이었다. 문관 및 내외 명부, 왕실·종친의 임명은 이조에서 담당하였고, 무관의 임명은 병조에서 담당하였다.

고신은 1554년(명종 9)에 편찬된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에 실려 있듯, 당나라에서 지수관(志授官)을 선출하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준 문서에서 기원하였다. 중국에서 고려에 유입된 고신은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와 4품을 기준으로 두 종류의 형식(4품 이상, 5품 이하)으로 분화하였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1392년 10월 25일에 4품 이상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왕지(王旨)로, 그 이하는 문하부에서 봉교(奉敎)하여 첩(牒)을 주는 방식으로 고신식을 바꾸었다. 이후 1400년(정종 2) 1월 24일부터 1품 이하의 모든 관원에게 서경(署經)을 실시하면서 왕지 발급이 중단되었고 같은 해 7월에 다시 3품 이상에게 관교를 내리도록 조치하면서 관교 발급이 재개되었다. 이어 태종은 1413년(태종 13)에 1품 이하의 전체 관원에게 서경을 실시하도록 하였다가 다시 같은 해 10월 4일에 4품 이상에게는 관교를 내리도록 명하였다. 뒤이어 세종은 1426년(세종 8) 1월에 4품 이상에게도 서경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그 해 9월 4일에는 4품 이상의 서경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임명장으로 볼 때 정종 대 이후로 세조 대까지는 관교와 사첩(謝牒: 서경 완료를 명시한 문서)만이 남아 있고 교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1466년(세조 12) 국왕이 관직에 대해 재가를 한 이후 5일 안에 문서를 발급하고 그 후에 사간원에서 상고·인준하고 논핵하도록 한 조치 이후부터는 교첩이 다시 등장한다. 현재 남아 있는 문서 중 정종조 이후로 작성된 최초의 교첩은 1468년(예종 즉위년)의 정옥견(鄭玉堅) 종 7품 고신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정종의 서경 이후 세조조까지 교첩이 남아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두 가지 이견이 있다. 한 쪽에서는 1400~1466년 당시에는 사첩이 임명장을 대신하였다고 주장하며, 또 한 쪽에서는 그 기간에도 4품을 기준으로 관교와 교첩의 발급은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사첩은 서경에 대한 증명서로서 별도로 발급되었다고 주장한다.

고신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吏典)의 고신조(告身條), 예전(禮典)의 '문무관 4품 이상 고신식(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 '문무관 5품 이하 고신식(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다. 『경국대전』에 등장하는 고신은 그 제도 및 문서의 의미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한데 합하여진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고신은 두 종류로, 문·무관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하는 임명장과 5~9품을 임명하는 임명장이 있다.

4품 이상의 고신은 관교, 교지 등으로도 부르며 서두를 '교지'로 시작하여 왕이 직접 임명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4품 이상 고신의 대상자는 4품 이상의 문·무관, 4품 이상 문·무관의 처, 내명부(1~9품), 왕실·종친과 그 처 및 부마이다. 5품 이하 고신의 대상자는 5~9품까지의 문·무관인데, 5품 이하의 고신은 교첩, 직첩(職牒, 職帖) 등으로도 부르며 '왕명을 받들어[奉敎]' 임명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이조와 병조에서 발급하는 형식으로 문서를 작성한다. 인장도 달라 4품 이상 고신에는 시명지보를 찍었고, 5품 이하 고신에는 이조지인, 병조지인 등 담당 관사의 관인을 찍었다.

두 고신의 형식은 관인의 배우자[妻]에게도 해당하였는데 관인이 4품을 기준으로 형식을 달리한 것과 다르게 배우자의 경우에는 정 3품 당상관을 기준으로 그 형식을 달리한다고 법전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정 3 품 당상관 이상의 고신은 남아 있는 데 반하여 당하관 이하의 고신은 현재 전하는 것이 거의 없다. 『둔계선생유편(澗溪先生遺編)』에 실린 사료를 근거로 살펴보면, 당시 당하관 처 고신을 발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4 품의 외명부에게 내렸던 영인(令人)의 임명장이 현재 약 3~4 건 존재하는데 이 형식은 4 품 이상 고신의 형식으로 발급되어 있다. 또한 내명부 임명의 경우에는 1~9 품까지 모두 왕의 내실에 해당하였으므로 왕의 직접 임명장인 4 품 이상 고신의 형식으로 발급하였다.

두 종류의 고신은 모두 이조와 병조에서 발급하였는데 문관과 내외 명부, 종친·왕실의 임명장은 이조에서, 무관의 임명장은 병조에서 발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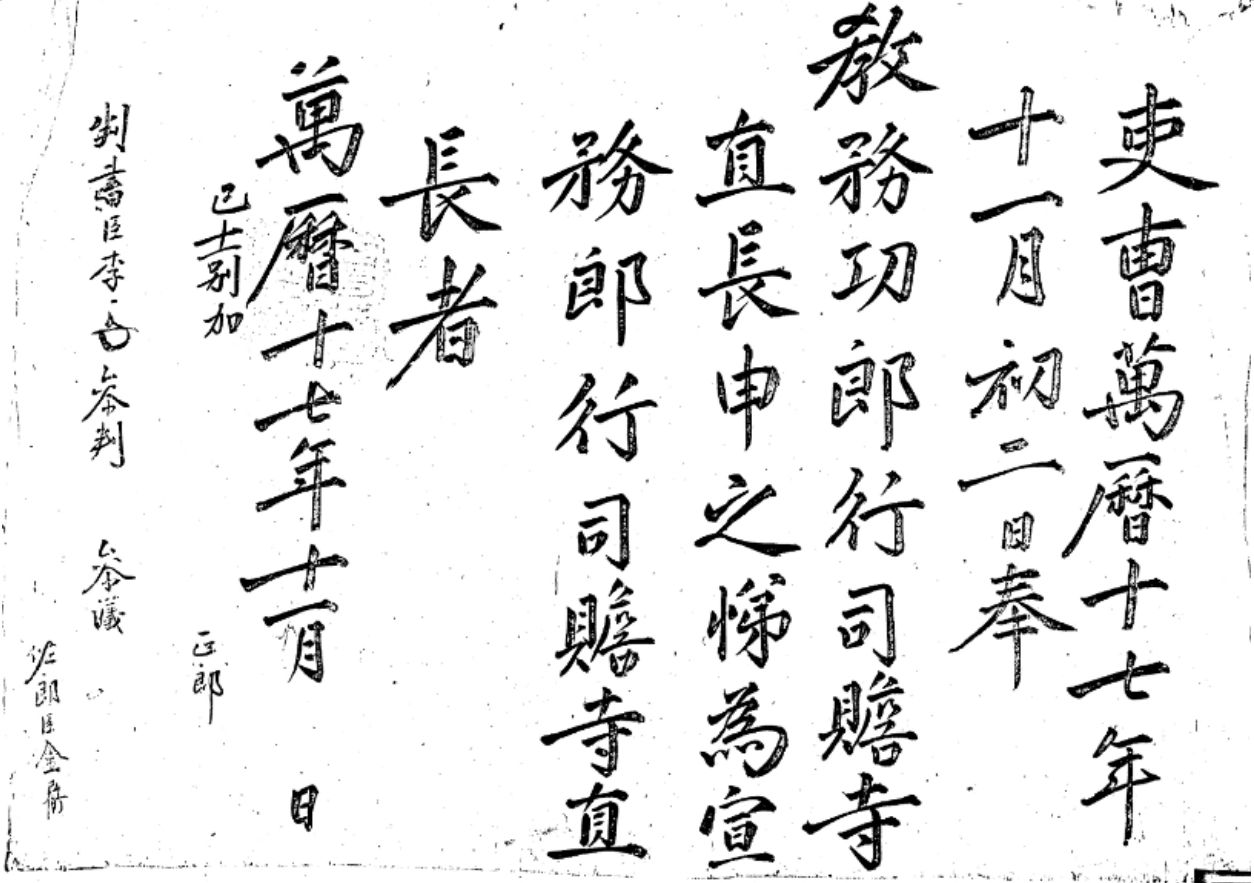
현재 남아 전하는 최초의 고신은 1392 년 10 월에 도응(都膺)에게 발급한 왕지이며, 1894 년 갑오개혁으로 문서의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 발급되었다.

고신은 족보와 함께 개인과 가문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국왕 혹은 관서에서 인증한 문서로서 인증력이 확실하였기 때문에 후손들은 선조의 고신을 소중히 보관하였다. 그리고 현재 까지 전하는 고문서 중 일부는 관찬 사서 등의 문헌에 존재하지 않는 개인의 관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교첩은 중국의 고신제도에 없었던 인사 행정의 담긴 봉교 문서로서, 예종조 이후의 것은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조선 고유의 문서 형식이었다. 5품 이하 관원의 임명에서조차 서경을 문서 발급 이후로 미루도록 조치한 점으로 미루어 조선시대 왕의 임명권 행사가 좀더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신에 나타나는 문구는 직제의 변천 및 각종 인사 행정의 면모를 확인시켜 주며, 직제 및 개인의 관력은 조선시대 관료 정치 및 양반 사회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1589년 신지제(申之悌)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589 년 / 만력 17 년 11 월 일 
· 형태사항	크기: 49x69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개(정방형)
· 서명(개)	착명:2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안내정보

1589 년신지제를 선무랑으로 승진시킨 문서.

1589 년(선조 22) 이조(吏曹)에서 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 임명장이다. 왕명을 받들어 무공랑(務功郎)행(行) 사섬시(司贍寺) 직장(直長)신지제를 선무랑(宣務郎)으로 승진시켰다. 무공랑은 정(正) 7 품(品) 이고, 선무랑은 종(從) 6 품 하계(下階)니 한 등급 올려준 것이다. 이러한 승진은 명나라에서 사신 편에 새로 개정된 법전 전질을 보낸다는 소식이 지난달에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 법전에 태조(太祖)이성계(李成桂)의 선대가 잘못 기록되어 두 나라 사이의 오랜 외교적 갈등이 되었는데, 이번에 개정판을 내면서 조선측의 요구가 수용되었다. 그 결과인 새 법전 전질을 보낸다고 하니 왕이 크게 기뻐하며 전 관료를 한 등급 승진시키는 특전을 내렸다.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하는 함이었다. 이에 신지제도 그 은택을 입게 되었다.

상세정보

1589 년(선조 22)신지제를 선무랑으로 승자시킨 문서.

萬曆 17 年(1589)11 월 모일에 吏曹에서 申之悌(1562~1624)에게 내린 告身이다. 같은 달 초 2 일에 내려진 宣祖(재위 1568~1608)의 명을 받들어 무공랑행사삼사직장(務功郎行司贍寺直長) 신지제를 선무랑행 사삼사직장(宣務郎行司贍寺直長)에 임명하였다. 즉, 正 7 品 무공랑(務功郎)에서 從 6 品 下階인 宣務郎으로 한 등급 陞資시켰다. 年號 左傍에 己丑年(1589)인 당해 11 월에 내려진 別加로 인한 것이라고 附記되어 있다. 이것은 명으로부터 『大明會典』전질을 받아오게 되어, 조선 건국 후 200 여년을 끌었던 명과의 외교문제인 宗系辨誣가 완전히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宣祖는 크게 기뻐하며 百官을 加資시키는 恩典을 베풀었고, 신지제도 그 恩澤을 입게 되었다.

참고문헌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 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집필자: 권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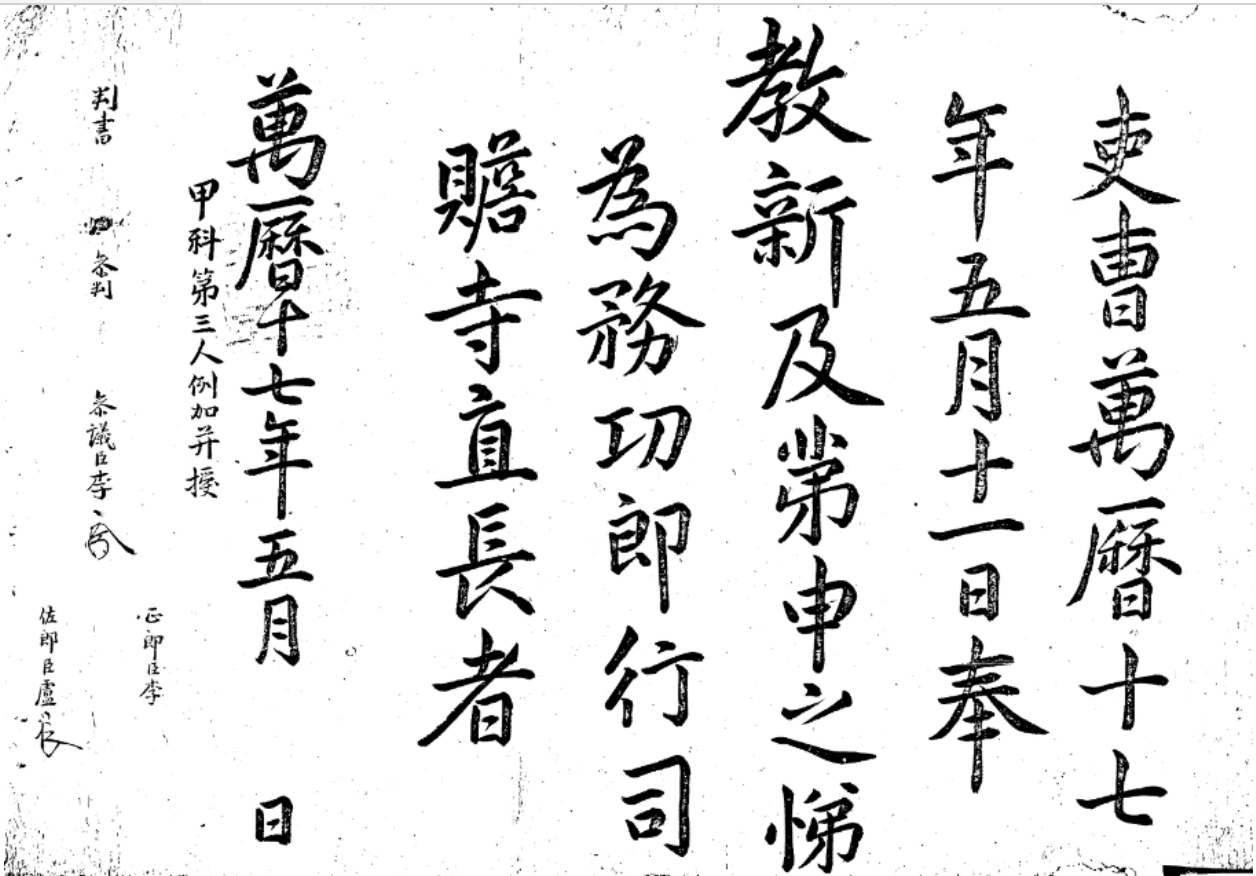
원문텍스트원문범례

吏曹 萬曆十七年
十一月初二日奉
教 務功郎行司贍寺
直長 申之悌 爲 宣
務郎行司贍寺直
長者
萬曆十七年十一月日
己十一別加
正郎
判書臣李[着名] 參判參議
佐郎臣金[着名]

1589년 신지제(申之悌)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589 년 / 만력 17 년 5 월 일 
· 형태사항	크기: 50x74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개(정방형)

· 서명(개)	착명:2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안내정보

1589 년신지제를 무공랑행 사섬시 직장에 임명한 문서.

1589 년(선조 22) 이조(吏曹)에서 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 임명장이다. 왕명을 받들어 새로 문과에 급제한 그를 무공랑(務功郎)행(行) 사섬시(司贍寺) 직장(直長)에 임명하였다. 문서가 작성된 연월일 왼쪽에 작은 글씨로 본 인사가 이루어진 이유가 기록되어 있다. 갑과(甲科) 제 3 인으로 급제하였으므로 전례에 따라 품계를 더 높여서 관직을 제수한다고 하였다. 문과에 합격한 이들은 그 성적에 따라 갑과, 을과(乙科), 병과(丙科)로 나뉘어진다. 정기시험의 경우 갑과에 3 인, 을과에 7 인, 병과에 23 인으로 서열이 매겨진다. 따라서 신지제는 당해 문과에 3등으로 합격한 것이다. 이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그는 가장 말단인 종(從) 9 품이 아니라 정(正) 7 품인 무공랑에 봉해졌다. 무려 한 번에 4 등급을 뛰어 오른 것이다. 또 견습 관원이 아니라 종 7 품의 실직인 직장(直長)에 임명되었다. 이는 모두 갑과 급제자에게 내려지는 특혜로 이전의 사례를 따른 것이다.

상세정보

1589 년(선조 22)신지제를 무공랑행사섬시직장에 임명한 문서.

萬曆 17 年(1589)5 월 모일에 吏曹에서 申之悌(1562~1624)에게 내린 告身이다. 같은 달 11 일에 내려진 宣祖(재위 1568~1608)의 명을 받들어 新及第한

그를 無功郎行司贍寺直長에 임명하였다. 年號 左傍에 “갑과제삼인예가병수(甲科第三人例加并授)”한다고 附記되어 있다. 신지제는 이해 文科에 及第하였는데 甲科 第3 人의 성적을 거두었다. 선발자 가운데 3 등을 한 것이다. 문무과에서는 성적에 따라 갑과, 乙科, 丙科로 나누는데, 式年 문과의 경우 갑과는 3 인, 을과는 7 인, 병과는 23 인으로 순위를 매긴다. 따라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갑과 급제자에게는 몇 가지 특혜가 내려졌다. 다른 신급제자들이 몇몇 관서에 分官되어 權知로 대기하는 것과 달리 갑과 급제자는 바로 實職을 임명받을 수 있었다. 務功郎은 正7 品 文官의 品階이다. 한 번에 무려 4 등급을 뛰어 오른 것이다. 直長은 각 관서의 錢穀, 비품 등의 출납 실무를 주관하던 中 7 품 관직이다. 司贍寺는 楮貨의 주조와 外居奴婢의 貢布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관서이다. 급제와 더불어 正 7 품에 오르고 中 7 품의 실직에 임명되었으니 대단한 특혜라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 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집필자: 권오정

원문텍스트원문범례

吏曹 萬曆十七

年五月十一日奉

教新及第申之悌

爲務功郎行司

贍寺直長者

萬曆十七年五月日




甲科第三人例加并授

正郎臣李

判書參判參議臣李[着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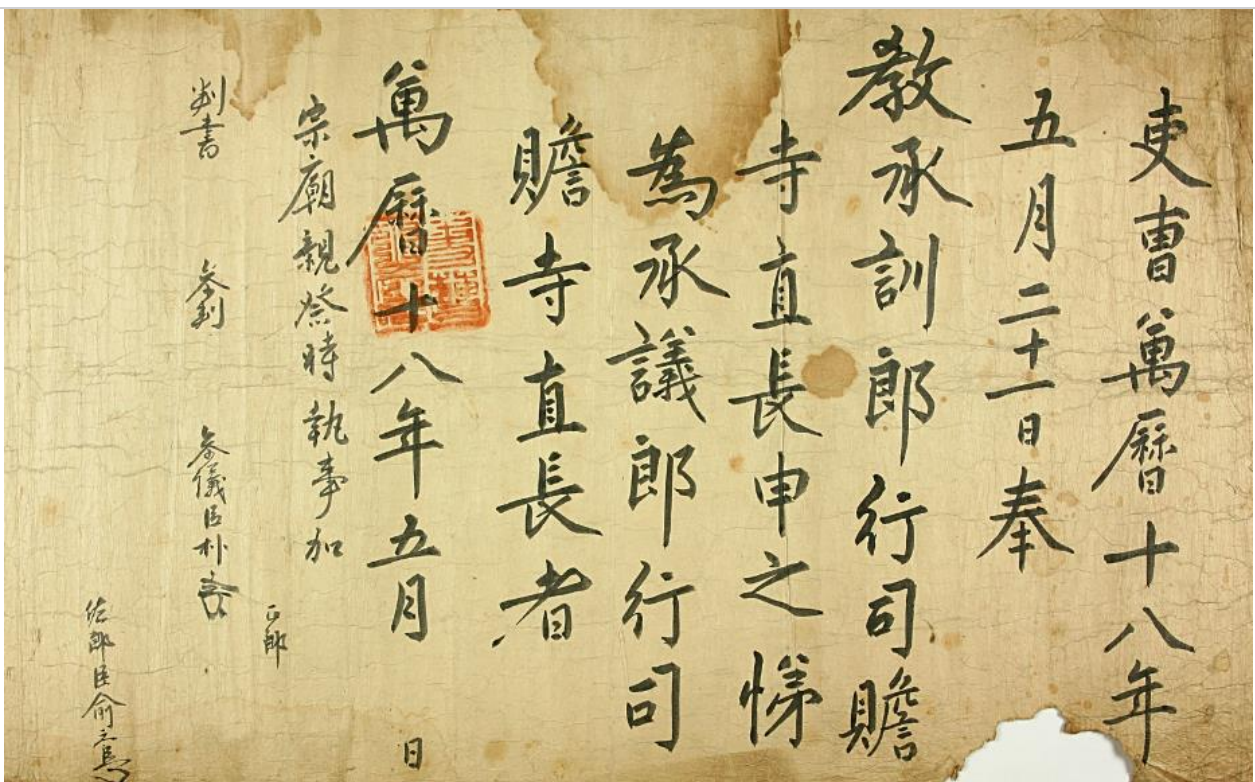
佐郎臣盧[着名]

1590년 신지제(申之憐)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지제(申之憐)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590 년 / 만력 18 년 5 월 일 
· 형태사항	크기: 53x86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개(정방형)
· 서명(개)	착명:2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36 ~쪽



안내정보

1590 년신지제를 승의랑으로 승진시킨 문서.

1590 년(선조 23) 이조(吏曹)에서 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 임명장이다. 왕명을 받들어 승훈랑(承訓郎)행(行) 사삼시(司贍寺) 직장(直長)신지제를 승의랑(承議郎)으로 승진시켰다. 승훈랑은 정(正) 6 품 하계(下階)이고, 승의랑은 한 등급 위인 상계(上階)이다. 왕이 종묘에 친히 제사를 올릴 때 집사(執事)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상으로 승진시켜 주었다.

상세정보

1590 년(선조 23)신지제를 승의랑으로 승자시킨 문서.

萬曆 18 年(1590)5 월 모일에 吏曹에서 申之悌(1562~1624)에게 내린 告身이다. 같은 달 21 일에 내려진 宣祖(재위 1568~1608)의 명을 받들어 承訓郎行司贍寺直長신지제를 承議郎으로 陞資하였다. 즉, 正 6 品 下階인 승훈랑에서 上階인 승의랑에서 한 資級 올려주었다. 이에 대해 年號 左傍에 “宗廟親祭時執事加”라고 附記되어 있다. 선조가 宗廟에 친히 제사를 지낼 때 執事를 담당한 공으로 加資된 것이다.

참고문헌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 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집필자 : 권오정

원문텍스트원문범례

吏曹 萬曆十八年

五月二十一日奉

教承訓郎行司贍

寺直長申之悌

爲承議郎行司

贍寺直長者

萬曆十八年五月日

宗廟親祭時執事加

正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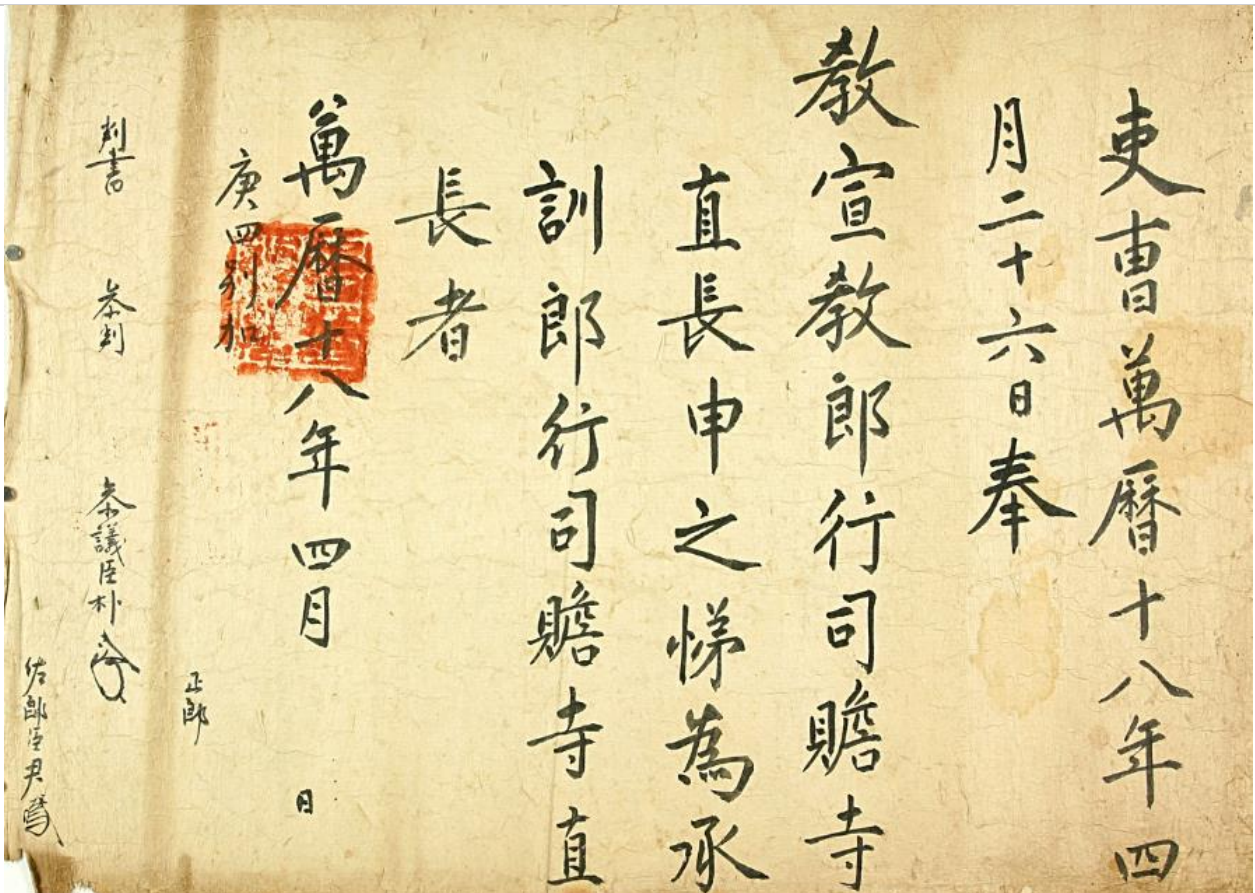
判書參判參議臣朴[着名]

佐郎臣兪[着名]

1590년 신지제(申之悌)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590년 / 만력 18년 4월 일 
· 형태사항	크기: 49x65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개(정방형) 착명:2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35 ~쪽



안내정보

1590 년신지제를 승훈랑으로 승진시킨 문서.

1590 년(선조 23) 이조(吏曹)에서 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 임명장이다. 왕명을 받들어 선교랑(宣敎郎)행(行) 사삼시(司贍寺) 직장(直長)신지제를 승훈랑(承訓郎)으로 승진시켰다. 선교랑은 종(從) 6 품 상계(上階)이고, 승훈랑은 정(正) 6 품 하계(下階)이니 한 등급 올려준 것이다. 이러한 승진은 같은 달에 내려진 전 관료를 특별히 승진시키라는 왕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하들이 왕과 왕비의 덕을 기리기 위해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 올렸기에 내려진 것이다.

상세정보

1590 년(선조 23)신지제를 승훈랑으로 승자시킨 문서.

萬曆 18 年(1590)4 월 모일에 吏曹에서 申之悌(1562~1624)에게 내린 告身이다. 같은 달 26 일에 내려진 宣祖(재위 1568~1608)의 명을 받들어 宣敎郎行司贍寺直長신지제를 承訓郎으로 陞資하였다. 즉, 從6 品 上階인 宣敎郎에서 正6 品 下階인 承訓郎에서 한 資級 올려주었다. 이에 대해 年號 左傍에 “경사별가(庚四別加)” 라고 附記되어 있다. 庚寅年인 당해 4 월에 내려진 別加로 승자하였다는 말이다. 이달에는 신하들이 왕에게 존호를 올렸기에 백관가자(百官加資)가 내려졌다.

참고문헌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 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집필자 : 권오정

원문텍스트원문범례

吏曹 萬曆十八年四
月二十六日奉
敎 宣敎郎行司贍寺
直長申之悌爲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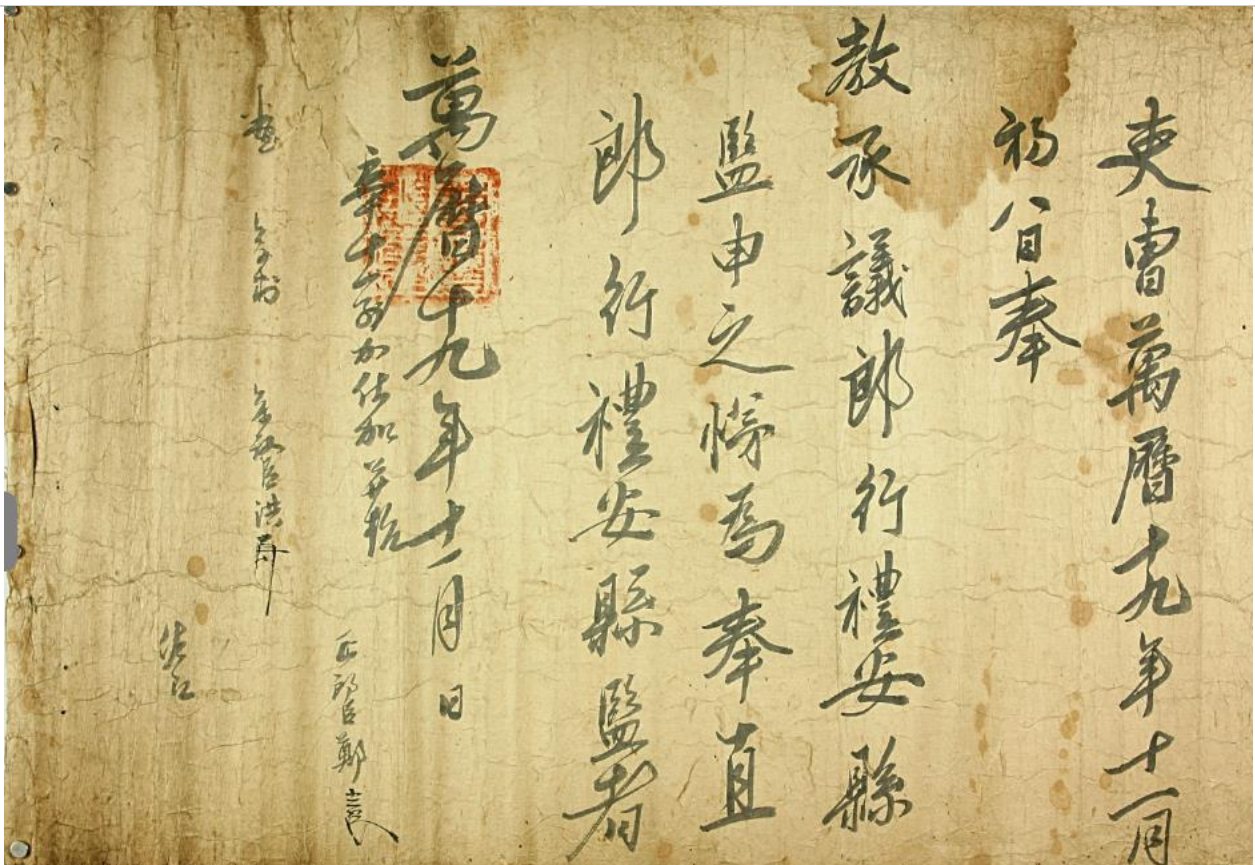
訓郎行司贍寺直
長者
萬曆十八年四月日
庚四別加
正郎
判書參判參議臣朴[着名]
佐郎臣尹[着名]

1591년 신지제(申之悌)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591 년 / 만력 19 년 11 월 일 
· 형태사항	크기: 52x78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개(정방형) 착명:2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39 ~쪽



안내정보

1591 년신지제를 봉직랑으로 승진시킨 문서.

1591 년(선조 24) 이조(吏曹)에서 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 임명장이다. 왕명을 받들어 승의랑(承議郎)행(行) 예안(禮安) 현감(縣監)신지제를 봉직랑(奉直郎)으로 승진시켰다. 이달에는 명에서 돌아온 사신이 황제의 칙서(勅書)를 받아 가지고 왔으므로 임금이 이를 경축하고자 전 관료들을 승진시키라는 명을 내렸다. 게다가 신지제는 근무일수가 900 일이 넘어 이에 따른 승진까지 더해져 한꺼번에 두 등급이나 승진하게 되었다.

상세정보

1591 년(선조 24)신지제를 봉직랑으로 승진시킨 문서.

萬曆 19 年(1591) 11 월 모일에 吏曹에서 申之悌(1562~1624)에게 내린 告身이다. 같은 달 초 8 일에 내려진 宣祖(재위 1568~1608)의 명을 받들어 승의랑행예안현감(承議郎行禮安縣監) 신지제를 봉직랑 행예안현감(奉直郎行禮安縣監)에 제수하였다. 正 6 品 上階 承議郎에서 從 5 品 상계 奉直郎으로 두 資級을 올려주었다. 이에 대해 年號 左傍에 “신십일별가사가병초(辛十一別加仕加并超)”라고 附記되어 있다. 당해 년인 辛卯年 11 월에 내려진 別加와 仕滿에 따른 加資로 한 번에 超資시킨다는 말이다. 이달에는 사신이 明황제의 勅書를 받아 가지고 돌아온 까닭에 백관가자(百官加資)가 내려졌다. 조선시대에는 근무일수가 차면 차차로 품계를 높여주는 循資法이 시행되었다. 正 7 품 이하인 參下官은 450 일을, 從 6 품 이상인 參上官은 900 일을 근무하면 한 자급을 올려주었다. 반면 正 3 품 당상관 이상은 이러한 순자법에 구애받지 않았다. 신지제도 근무일수를 채운데다가 백관가자의 은전까지 입어 승진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 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집필자: 권오정

원문텍스트원문범례

吏曹 萬曆十九年十一月

初八日奉

教承議郎行禮安縣

監申之悌爲奉直

郎行禮安縣監者

萬曆十九年十一月日

辛十一別加仕加并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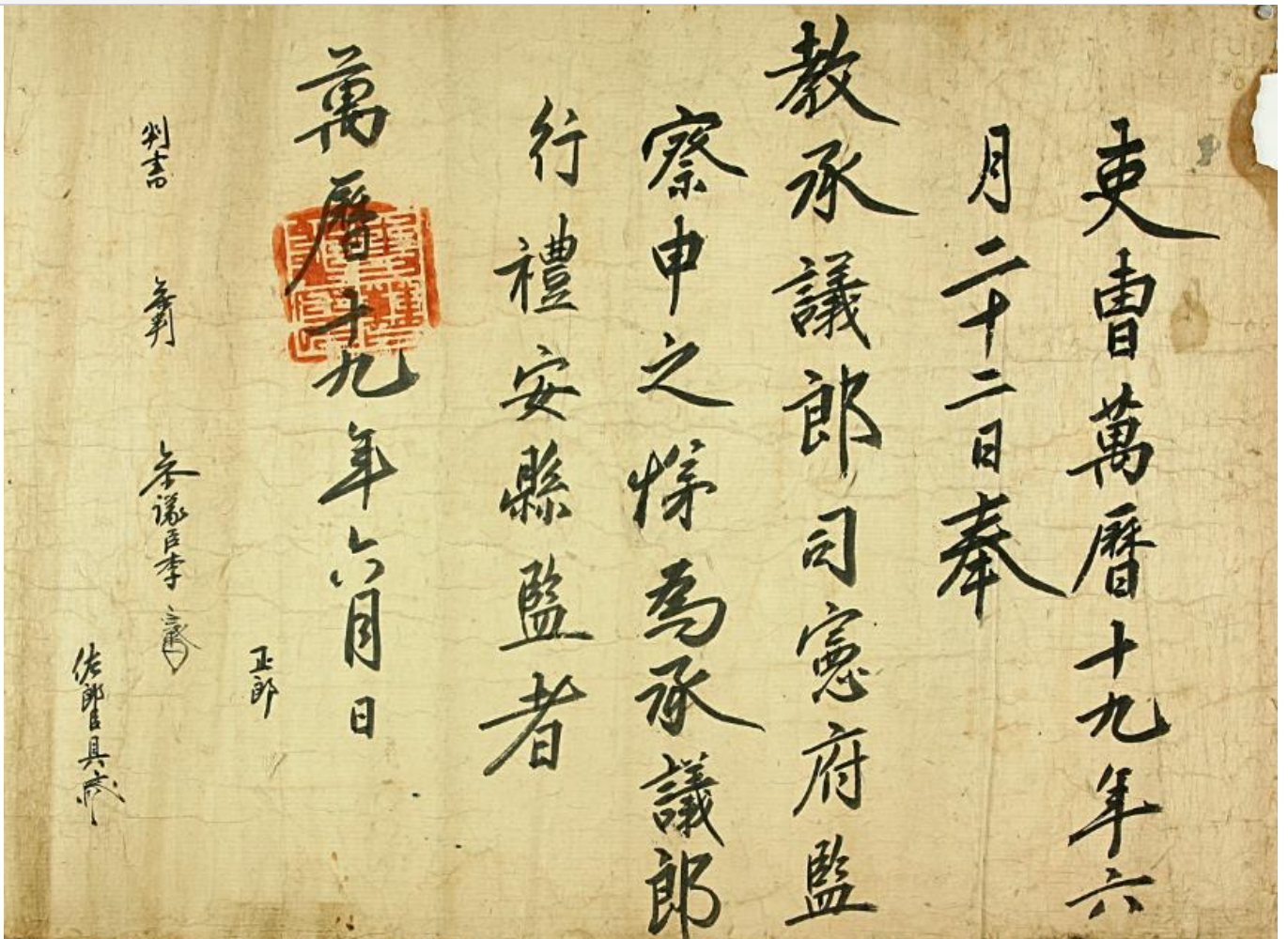
正郎臣鄭[着名]

判書參判參議臣洪[着名]

佐郎

1591년 신지제(申之憐)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지제(申之憐)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591 년 / 만력 19 년 6 월 일 
· 형태사항	크기: 49x68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개(정방형) 착명:2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안내정보

1591년신지제를 예안 현감에 임명한 문서.

1591년(선조 24) 이조(吏曹)에서 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 임명장이다. 왕명을 받들어 승의랑(承議郎)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 신지제를 예안(禮安)의 현감(縣監)으로 임명하였다. 현감은 조선시대 가장 말단 행정 구역인 현(縣)의 수령이다. 곧 사또, 원님이다. 고향이 의성(義城)이니 그리 멀지 않은 곳의 사또로 나가게 된 것이다.

상세정보

1591년(선조 24)신지제를 예안현감에 임명한 문서.

萬曆 19年(1591)6월 모일에 吏曹에서 申之悌(1562~1624)에게 내린 告身이다. 같은 달 22일에 내려진 宣祖(재위 1568~1608)의 명을 받들어 승의랑사헌부감찰(承議郎司憲府監察) 신지제를 승의랑행예안현감(承議郎行禮安縣監)에 제수하였다. 6월에 내려진 고신이므로 정기인사인 都目政事의 결과로 보인다. 縣監은 조선시대 최하위 지방행정구역 단위인 縣의 수령직이다. 從 6品이다. 신지제의 고향이 義城이니 그리 멀지 않은 고을의 수령으로 나가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 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집필자 : 권오정

원문텍스트원문범례

吏曹 萬曆十九年六

月二十二日奉

教承議郎司憲府監

察申之悌爲承議郎

行禮安縣監者

萬曆十九年六月日

正郎

判書參判參議臣李[着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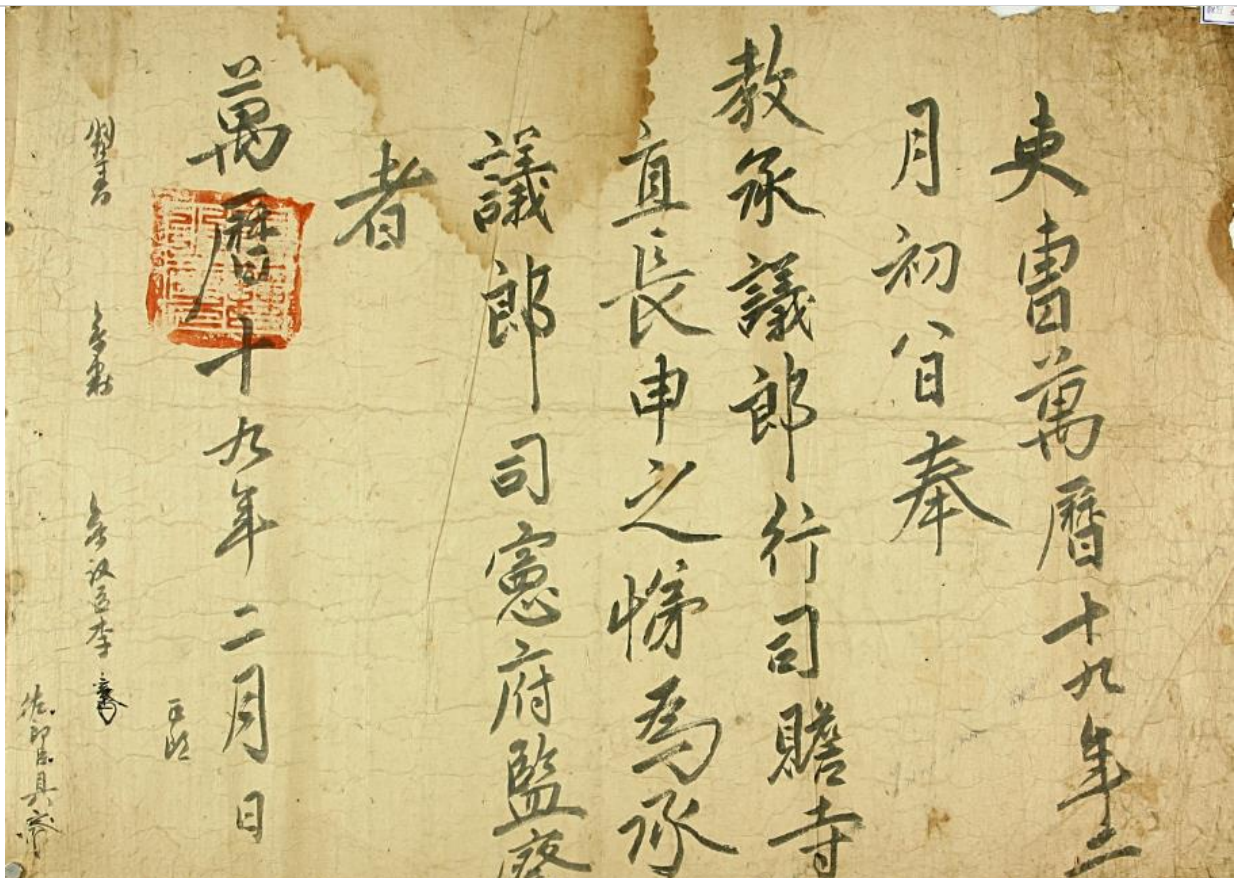
佐郎臣具[着名]

1591년 신지제(申之悌)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591년 / 만력 19년 2월 일 
· 형태사항	크기: 49x68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개(정방형) 착명:2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37 ~쪽



안내정보

1591년신지제를 승의랑 사헌부 감찰에 임명한 문서.

1591년(선조 24) 이조(吏曹)에서 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 임명장이다. 왕명을 받들어 승의랑(承議郎)행(行) 사섬시(司贍寺) 직장(直長)신지제를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에 임명하였다. 종(從) 6 품 직으로 관리들의 비리를 규찰하고 회계 감사와 의전을 감독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상세정보

1591년(선조 24)신지제를 사헌부감찰에 임명한 문서.

萬曆 19年(1591)2월 모일에 吏曹에서 申之悌(1562~1624)에게 내린 告身이다. 같은 달 초 8일에 내려진 宣祖(재위 1568~1608)의 명을

받들어 승의랑행사섬사직장(承議郎行司贍寺直長)신지제를 승의랑사헌부감찰(承議郎司憲府監察)에 제수하였다. 監察은 司憲府의 從6품직으로 관리들의 비위 규찰, 재정 부문의 회계 감사, 의례 행사 때의 의전 감독 등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참고문헌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 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집필자 : 권오정

원문텍스트원문범례

吏曹 萬曆十九年二

月初八日奉

教承議郎行司贍寺

直長申之悌爲承

議郎司憲府監察

者

萬曆十九年二月日

正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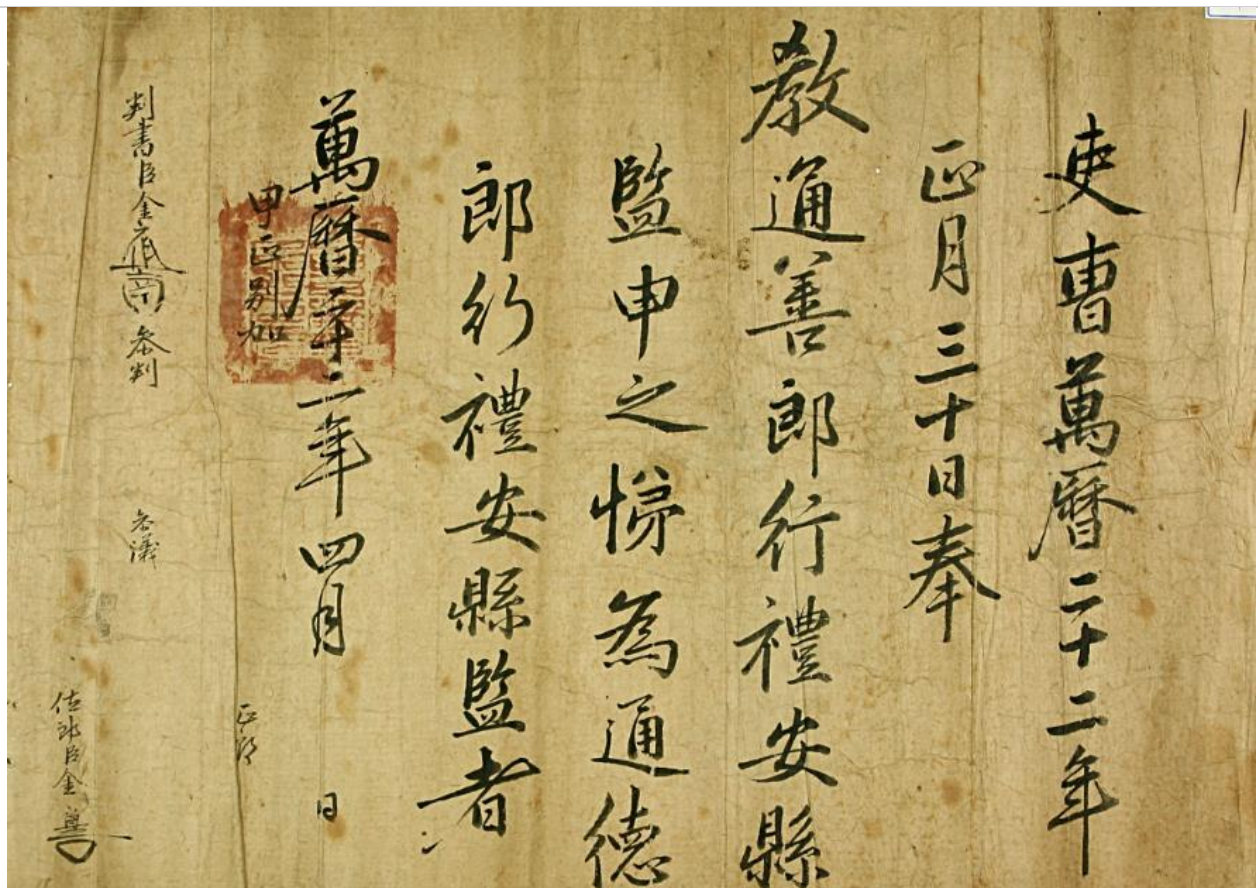
判書參判參議臣李[着名]

佐郎臣具[着名]

1594년 신지제(申之悌)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594년 / 만력 22년 4월 일 
· 형태사항	크기: 43x60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개(정방형) 착명:2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41 ~쪽



안내정보

1594년 통선랑행 예안현감신지제를 통덕랑으로 승진시킨 문서.

1594년(선조 27) 이조(吏曹)에서 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 임명장이다. 통선랑(通善郎) 행(行) 예안(禮安) 현감(縣監) 신지제를 통덕랑(通德郎)으로 승진시켰다. 정(正) 5 품 하계(下階)에서 상계(上階)로 한 등급 상승하였다. 이는 당해 정월에 내려진 “별가(別加)”로 말미암은 것이다. 특별한 이유로 관등을 올려준다는 말이다. 임진왜란으로 뒤숭숭하던 시절 크고 작은 민란이 일어났다. 이해 정월에 그 수괴를 잡아 처형한 후 중죄를 제외한 죄인들을 사면해주라는 왕명이 내려졌다. 민심을 다독이기 위함이었다. 사면령과 항상 함께 내려지는 것이 ‘백관가자(百官加資)’이다. 전 관료를 한 등급 특진시키는 시혜성 조치이다. 따라서 신지제도 이 은택으로 승진한 것이라 짐작된다.

상세정보

1594년(선조 27) 통선랑행예안현감신지제를 통덕랑으로 승자시킨 문서.

萬曆 22年(1594) 4월 모일에 吏曹에서 申之悌(1562~1624)에게 내린 告身이다. 같은 해 정월 30일에 내려진 宣祖(재위 1568~1608)의 명을 받들어 통선랑행예안현감(通善郎行禮安縣監) 신지제를 통덕랑으로 陞資하였다. 通善郎은 正 5 品 下階이고, 通德郎은 같은 품내 上階이니, 한 資級을 올려준 것이다. 이에 대해 연호 左傍에 “甲正別加”라고 작은 글씨로 附記되어 있다. 당해가 甲午年이니 이해 정월에 내려진 별가의 명으로 승진시켰다는 말이다. 이달에는 宋儒眞(?~1594)의 난을 진압하고 赦免令을 내렸으므로 百官加資도 함께 베풀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별가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 짐작된다.

참고문헌 『宣祖實錄』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 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집필자: 권오정

원문텍스트원문범례

吏曹 萬曆二十二年

正月三十日奉

教 通善郎行禮安縣

監 申之悌爲通德

郎行禮安縣監者

萬曆二十二年 四月日

甲正別加

正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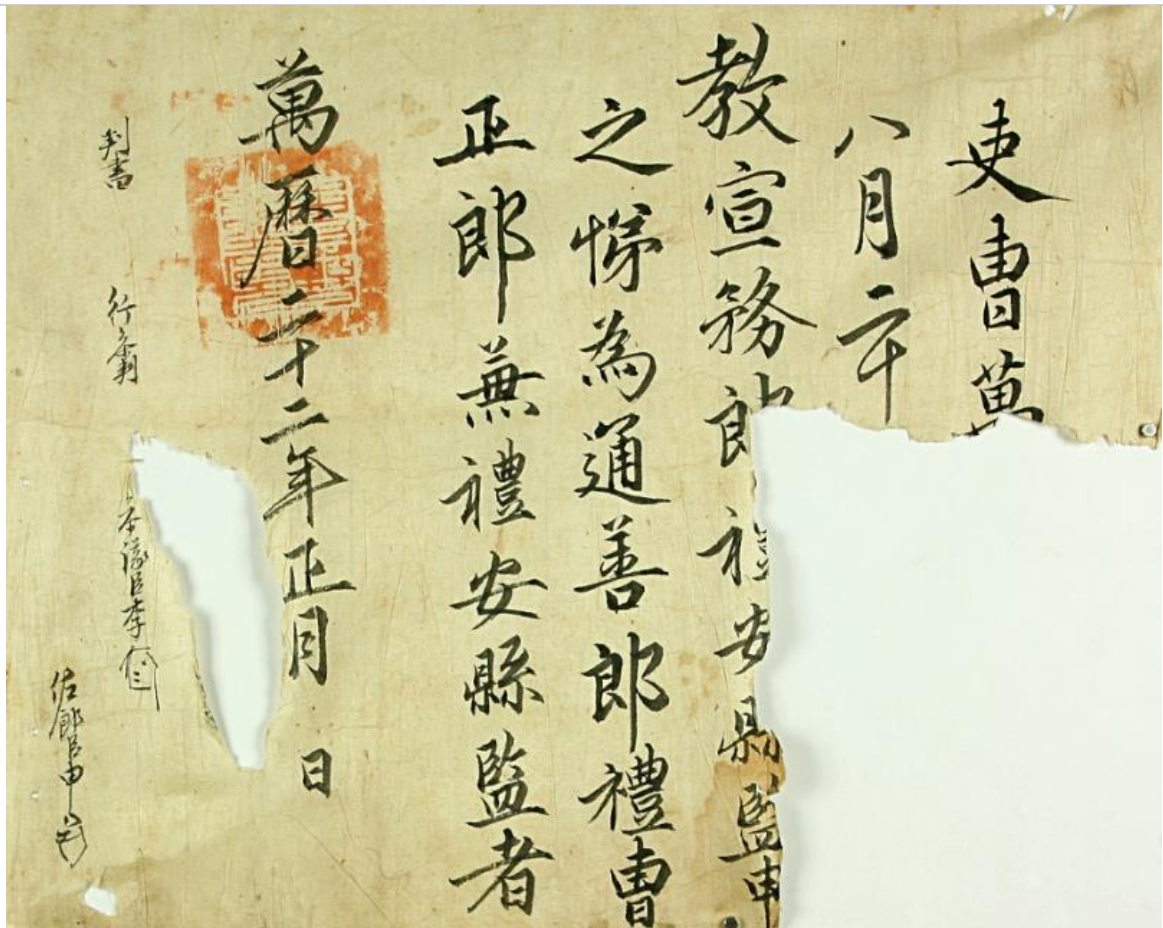
判書 臣 金[着名] 參判 參議

佐郎 臣 金[着名]

1594년 신지제(申之悌)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594 년 / 만력 22 년 정월 일 
· 형태사항	크기: 40x43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서명	1 개(정방형) 착명:2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40 ~쪽



안내정보

1594년 선무랑 예안현감신지제를 통선랑 예조정랑겸 예안현감에 임명한 문서.

1594년(선조 27) 이조(吏曹)에서 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

임명장이다. 선무랑(宣務郎) 예안(禮安)

현감(縣監)신지제를 통선랑(通善郎) 예조(禮曹) 정랑(正郎)겸(兼) 예안 현감에 임명하였다. 신지제와

같이 5 품 이하의 관료들은 이조나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임명장은 '언제 내려진 왕명을 받들어 누구를 무슨 관직에 임명한다'라는 서술 형식을 갖는다. 현대 본 문서는 첫 머리가 떨어져 나가 왕명이 내려진 해는 알 수 없고 다만 8월

20 일에서 29 일 사이에 내려진 것만 파악할 수 있다. 본 문서가 발급된 때가 선조

27년(1594)정월이니 왕명은 그 전해나 더 이전에 내려진 것이다. 『선조실록』에 따르면 선조(宣祖: 재위 1568~1608)가 신지제를 예조정랑에 제수한 것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 8월 22일의 일이다. 1592년 의주로 피난가 있던 때에 내린 것이다. 난중이다 보니 발급되지 못했던 임명장이 이때에야 내려진 것이다.

상세정보

1594년(선조 27) 선무랑예안현감신지제를 통선랑예조정랑겸예안현감에 임명한 문서.

萬曆 22年(1594)정월 모일에 吏曹에서 申之悌(1562~1624)에게 내린 告身이다. 선무랑예안현감(宣務郎禮安縣監)신지제를 통선랑예조정랑겸예안현감(通善郎禮曹正郎兼禮安縣監)에 임명하였다.

왕명이 내려진 시기는 문서 첫머리가 떨어져 나가서 온전히 파악할 수가 없다. 다만 8월 20일 이후인 것만 알 수 있다. 『宣祖實錄』에 따르면 신지제를 예조정랑에 제수한 것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壬辰年(1592) 8월 22일의 일이다. 월일 기록이 거의 일치하니 본 고신은 이때의 명을 받은 것이다. 宣祖(재위 1568~1608)가 蒙塵 중에 내린 명이다 보니 문서의 발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전쟁이 평화교섭 단계로 접어든 이때에야 내려진 것으로 짐작된다. 京職과 外職을 兼職시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이 인사조처 또한 전쟁 상황의 소산이었다.

참고문헌 『宣祖實錄』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 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집필자: 권오정

원문텍스트원문범례

吏曹 萬 曆 (曆) ...

八月二十 ...

教 宣務郎 禮安縣監 申

之悌 爲 通善郎 禮曹

正郎 兼 禮安縣監 者

萬曆 二十二年 正月 日

... (正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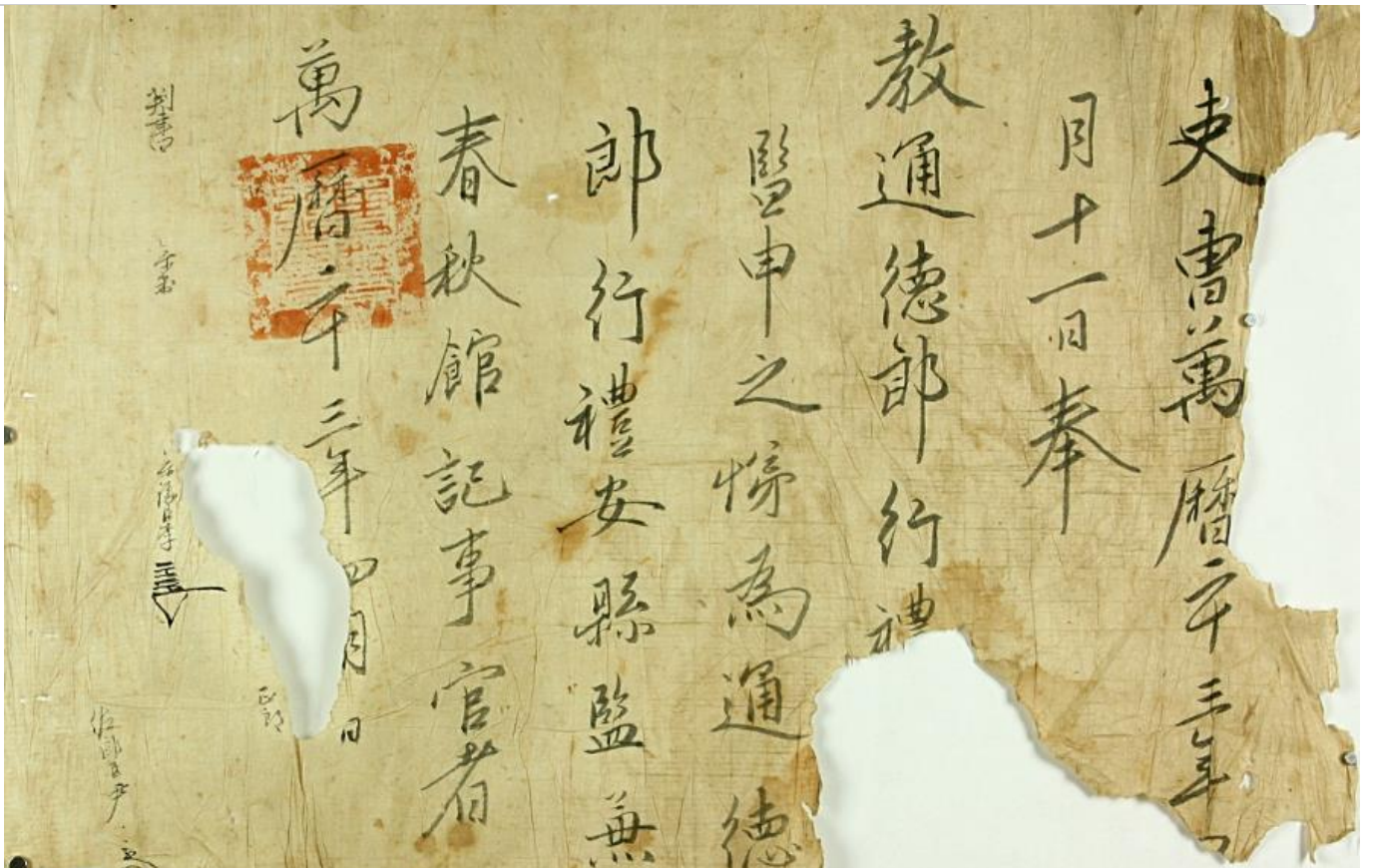
判書行參判參議臣李 [着名]

佐郎臣申 [着名]

1595년 신지제(申之悌)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595 년 / 만력 23 년 4 월 일 
· 형태사항	크기: 41x47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서명	1 개(정방형) 착명:2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42 ~쪽



안내정보

1595년 통덕랑행 예안현감신지제를 춘추관 기사관에 검임시킨 문서.

1595년(선조 28) 이조(吏曹)에서 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 임명장이다. 통덕랑(通德郎) 행(行) 예안(禮安) 현감(縣監) 신지제를 춘추관(春秋館) 기사관(記事官)에 검직 임명하였다. 춘추관의 기사관은 역사를 기록하고 공식 역사서를 편찬하는 사관이다. 중앙 관서의 정 6 품에서 정 9 품 관원들이 다수 검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현대 조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방 수령으로 하여금 이를 검직 시켰으므로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인사조치이다. 임진왜란으로 전주(全州)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사고(史庫)가 모두 불타버렸기 때문에 후에 새로 사고를 설치하였다. 이때 예안에서 가까운 봉화 태백산에도 사고가 만들어졌다. 1606년(선조 39)의 일이다. 본 검직 인사는 사고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닐까 짐작된다.

상세정보

1595년(선조 28) 통덕랑행예안현감신지제를 춘추관기사관에 검직 임명한 문서.

萬曆 23 年(1595) 4 월 모일에 吏曹에서 申之悌(1562~1624)에게 내린 告身이다. 같은 달 11 일에 내려진 宣祖(재위 1568~1608)의 명을 받들어 통덕랑행예안현감(通德郎行禮安縣監) 신지제를 춘추관기사관(春秋館 記事官)에 검직 임명하였다. 記事官은 春秋館의 正 6 품에서 정 9 품까지의 관직으로 역사 기록과 편찬을 담당하는 史官 가운데 하나이다. 승정원. 홍문관. 예문관. 사간원. 세자시강원. 승문원. 중부사(承政院 弘文館. 藝文館. 司諫院. 世子侍講院. 承文院. 宗簿寺) 등의 해당 품계의 관원이 당연직으로 검임하였다. 현대 외직인 禮安縣監으로 하여금 기사관을 검직하게 하니 이해하기 힘들다. 왜란으로 춘추관, 星州, 忠州의 史庫가 불타 소실되자 실록을 재인출한 1606년(선조 39)에 봉화 태백산에도 사고가 설치되었다. 예안현감 신지제를 기사관에 검임시킨 것은 새 사고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닐까 추측된다.

참고문헌 『宣祖實錄』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 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집필자 : 권오정

원문텍스트원문범례

吏曹 萬曆二十三年 卍(四)

月十一日奉

教 通德郎行禮 卍(安縣)

監 申之悌 爲 通德

郎行禮安縣監兼春

秋館記事官者

萬曆二十三年 四月 日

正郎

判書參判參議臣李[着名]

佐郎臣尹[着名]

기사관(記事官)

사관의 하나로서 역사의 기록과 편찬을 담당하였다.

승정원·홍문관·예문관·사간원·시강원·승문원·종부시(宗簿寺) 등의 해당 품계의 관원이 으레 겸임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예문관의 봉교(奉敎) 2 인, 대교(待敎) 2 인, 검열(檢閱) 4 인이 춘추관의 기사관을 겸하여 날마다 일어나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였으므로, 주로 이들 8 인의 기사관을 가리켜 사관(史官)이라 하였다.

연산군 때 녹고관(錄考官)이라 개칭하였으나, 종종 즉위초에 기사관으로 환원되었다. 정조 때 규장각이 설치되면서부터는 규장각의 6 품 이하의 관원도 으레 겸임하였다. 고종 즉위 초에 사간원의 관원이 기사관을 겸임하는 예는 폐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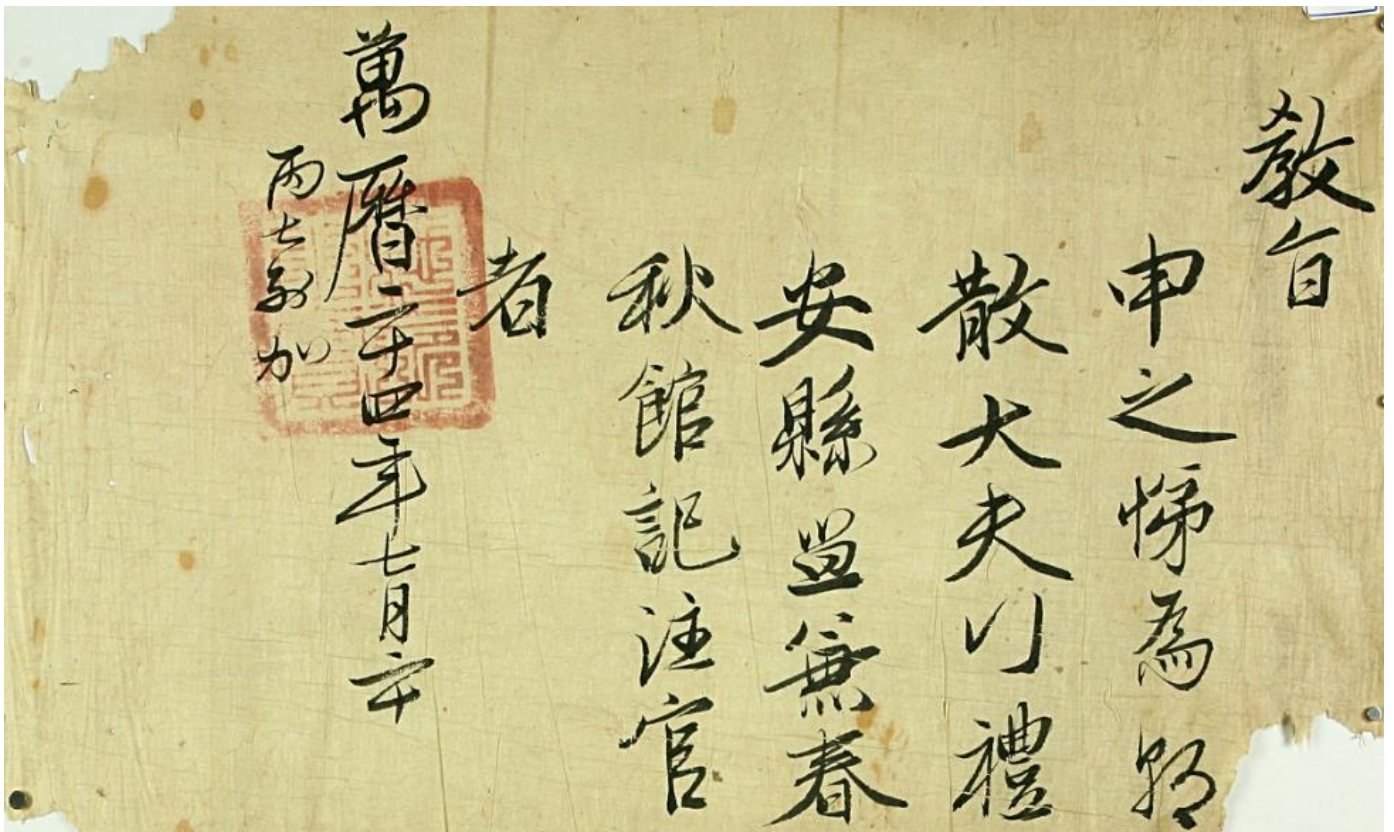
역사의 기록과 편찬을 담당한 사관의 하나이다. 사관이 처음으로 설치된 것은 고려시대로 예문·춘추의 2 관으로 나누어 시정의 기주(記注)를 담당하게 했다.

조선 태조 때 2 개의 관을 합쳐 예문춘추관을 설치했다가 뒤에 나누어 [춘추관](#)을 두었다. 춘추관에는 영사 1 명, 겸지사(兼知事)·동지사(同知事) 각 2 명, 수찬관 7 명, 편수관·기주관·기사관 등을 두었다. 이 가운데 홍문관의 직제학에서 정자(正字)까지, 예문관의 봉교에서 검열까지, 승정원의 주서(注書), 승문원의 판교, 종부시정(宗簿寺正) 등은 모두 본품계를 갖고 편수·기주·기사관을 겸했다.

사헌부의 집의에서 지평까지와 사간원의 당하관 1 명이 기사관을 겸하였다. 조선초에는 기사관이 기록하는 일기가 대단히 소략하여 관원들의 성명과 출근·결근 여부만을 기록했다. 그러나 뒤에 시정기와 함께 참판 이상의 신하가 죽으면 행장과 그에 대한 평가를 서술하기도 해서 사관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해졌다. 이로 인해 이수광(李睟光) 같은 이는 사관의 역할을 재상의 그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고, 실제 광해군 때 이이첨(李爾瞻) 일파는 비판적인 사관들을 강제로 교체시키기도 하였다.→ 사관, [사초](#), 시정기, [춘추관](#)

1596년 신지제(申之悌)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596 년 / 만력 24 년 7 월 20 일 
· 형태사항	크기: 41x5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개(정방형)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안내정보

1596 년신지제를 조산대부행 예안 현감겸 춘추관 기주관으로 승진시킨 문서.

1596 년(선조 29)신지제(申之悌: 1562~1624)를 조산대부(朝散大夫)행(行) 예안(禮安) 현감(縣監)겸(兼) 춘추관(春秋館) 기주관(記注官)에 임명한 문서이다. 이미 지난 2 월 초 5 일에 이어 다시 한 등급 승진하였다. 이는 당월인 7 월에 이몽학(李夢鶴? ~1596)의 난이 태풍처럼 일어났다가 불과 며칠 만에 진압되었는데, 이를 경축하기 위해 모든 관료를 한 등급 올려주라는 왕명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겸직도 기사관(記事官)에서 그 위 관직인 기주관(記注官)으로 상승하였다.

상세정보

1596 년(선조 29)신지제를 조산대부행예안현감겸춘추관기주관에 임명한 문서.

萬曆 24 年(1596)7 월 20 일 宣祖(재위 1568~1608)가 申之悌(1562~1624)를 조산대부행 예안현감겸 춘추관 기주관(朝散大夫行 禮安縣監兼 春秋館 記注官)에 임명한 告身이다. 당해 2 월 초 5 일에 仕滿에 따른 가자(加資)로 朝奉大夫로 陞資한 후 반년 만에 다시 바로 위 품계인 從 4 品 上階 朝散大夫에 봉해졌다. 이에 대해 본 문서는 年號 左傍에 “丙七別加”라고 밝혀 두었다. 丙申年인 당해 7 월에 내려진 別加로 인한 가자란 말이다. 이달에는 李夢鶴(?~1596)의 난이 일어났다가 불과 며칠 만에 진압되었다. 이에 따른 百官加資로 추측된다. 승자함에 따라 겸직도 올라갔다. 記事官에서 正 從 5 품직인 記注官으로 승진하였다.

참고문헌 『선조실록』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 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집필자 : 권오정

원문텍스트원문범례

教旨

申之悌爲朝

散大夫行禮

安縣監兼春

秋館記注官

者

萬曆二十四年七月二十日

丙七別加

기주관(記注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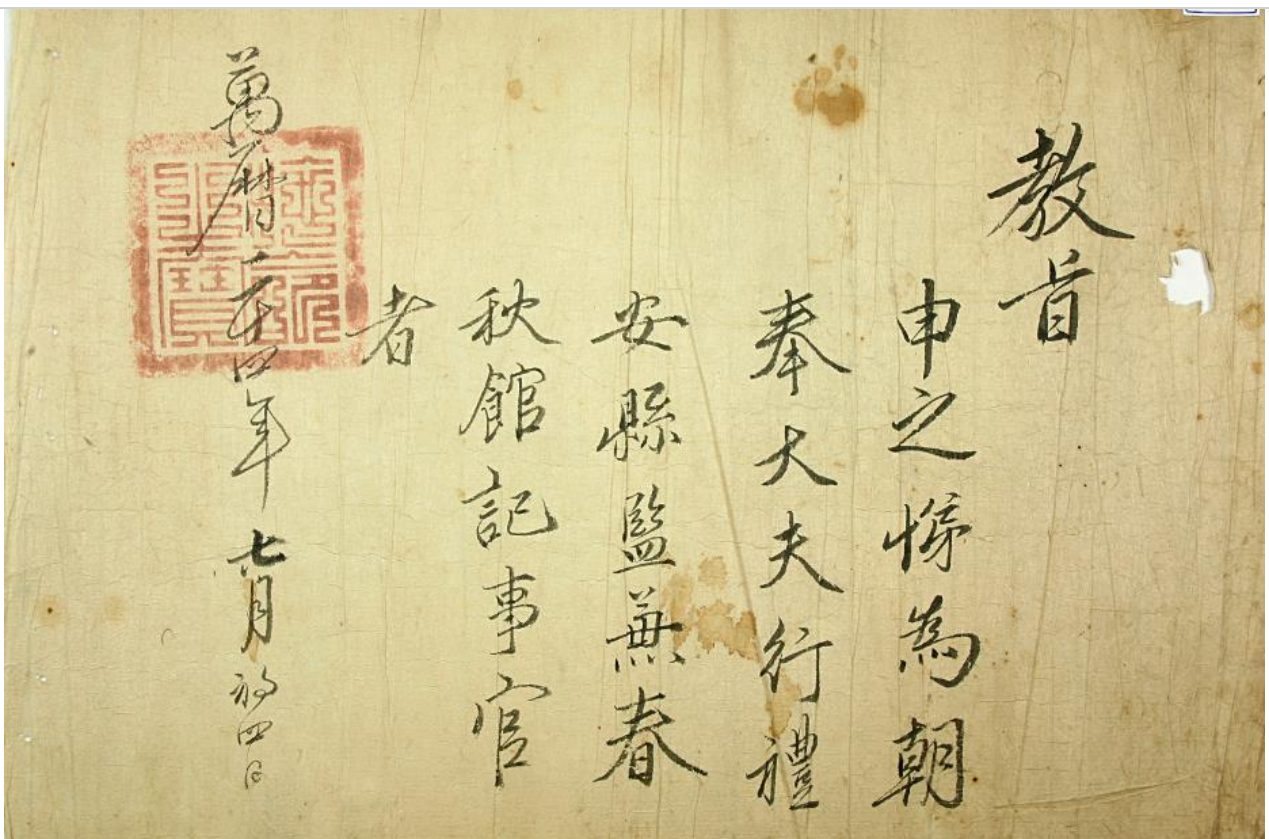
역사의 기록과 편찬을 담당한 사관의 하나였다. 조선 정부는 1392년(태조 1)에 고려의 제도를 본받아 예문춘추관을 설치하고, 1401년(태종 1)에는 그것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했다. 이때 처음으로 기주관의 명칭이 보인다. 기주관의 품계는 정5품·종5품인데 의정부·육조·홍문관·사헌부·사간원·승문원 등의 관서에서 같은 품계를 가진 관원이 당연직으로 겸임했다. 또한 1776년(정조 즉위) 궁궐 안에 규장각이 새로이 설치되면서 규장각의 관원 가운데서도 같은 품계를 가진 자는 기주관을 겸직했다. 그뒤 고종(1863~1907 재위) 즉위초에 사헌부·사간원의 관원 가운데서 기주

관을 겸직하던 예를 폐지했다.

1596년 신지제(申之悌)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596년 / 만력 24년 7월 초 4일 
· 형태사항	크기: 39x48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개(정방형)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44 ~쪽



안내정보

1596년신지제를 조봉대부행 예안 현감겸 춘추관 기사관에 재차 임명한 문서.

1596년(선조 29)신지제(申之悌: 1562~1624)를 조봉대부(朝奉大夫)행(行) 예안(禮安) 현감(縣監)겸(兼) 춘추관(春秋館) 기사관(記事官)에 임명한 문서이다. 이미 지난 2월 초 5일에 같은 임명장이 발급되었음에도 7월 초 4일 재차 본 임명장이 내려졌다. 이유는 알 수 없다.

상세정보

1596년(선조 29)신지제를 조봉대부행예안현감겸춘추관기사관에 재차 임명한 문서.

萬曆 24年(1596) 7월 초 4일에 宣祖(재위

1568~1608)가 申之悌(1562~1624) 조봉대부행예안현감겸춘추관기사관(朝奉大夫行禮安縣監兼春秋館記事官)에 임명한 告身이다. 이미 2월 초 5일에 仕滿에 따른 加資로서 朝奉大夫로 陞資한 고신이 발급되었음에도 같은 임명 문서가 한 장 더 내려졌다. 이유는 알 수 없다.

참고문헌 『宣祖實錄』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 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원문텍스트원문범례

教旨

申之悌爲朝

奉大夫行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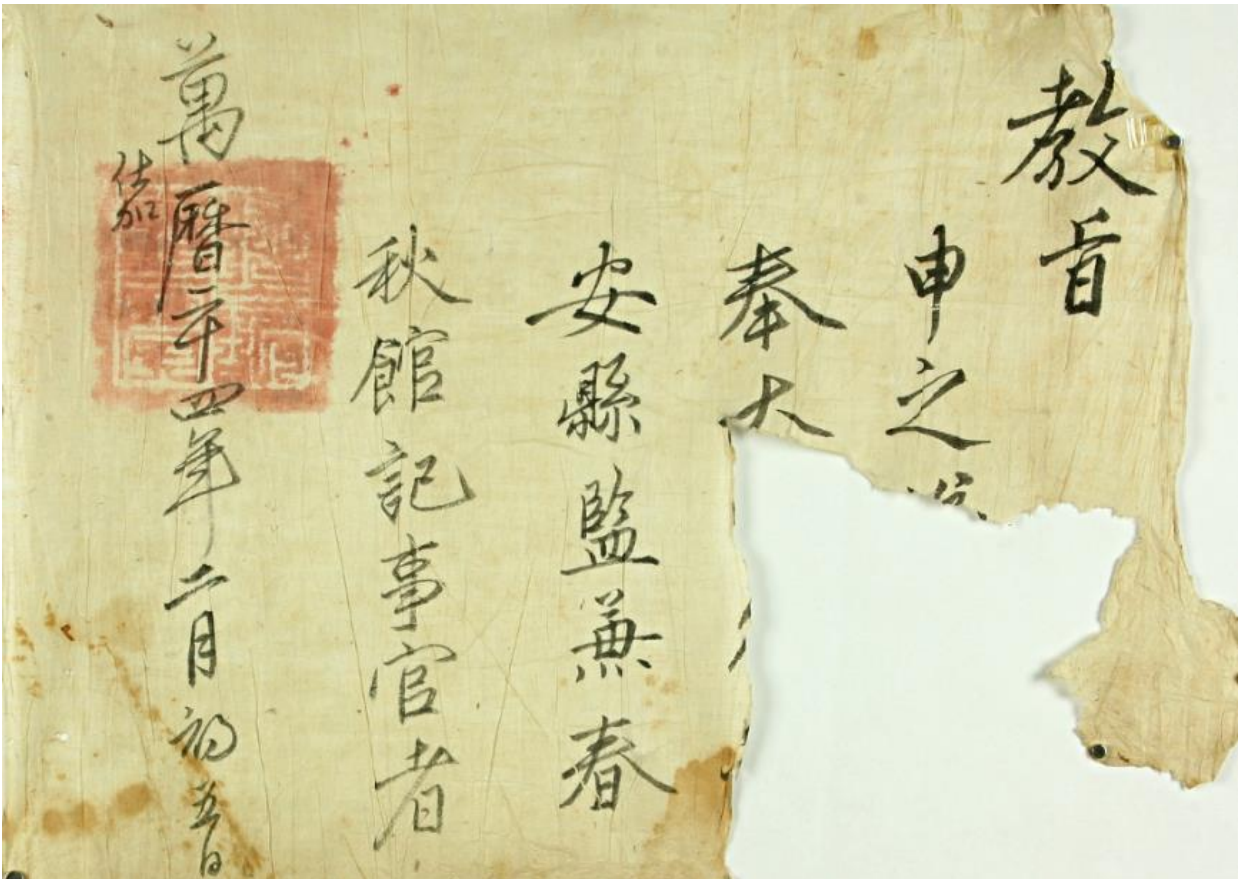
安縣監兼春

秋館記事官

者

萬曆二十四年七月初四日

1596년 신지제(申之悌) 고신(告身)



안내정보

1596년신지제를 조봉대부로 승진시킨 문서.

1596년(선조 29)신지제(申之悌: 1562~1624)를 조봉대부(朝奉大夫)행(行) 예안(禮安) 현감(縣監) 겸(兼) 춘추관(春秋館) 기사관(記事官)에 임명한 문서이다. 그가 예안 현감에 제수된 것은 5년 전인 1591년의 일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관리들의 품계(品階)를 올려주는 일종의 연공서열 시스템이 있었다. 가장 말단인 종 9 품부터 정 7 품까지는 450 일, 종 6 품부터 정 3 품 당하(堂下)는 900 일을 근무하면 한 등급 승진시켜 주었다. 다만 정 3 품 당상(堂上) 이상은 이러한 근속연수에 구애받지 않고 성과에 따라 승진여부가 결정되었다. 30 개월을 훨씬 초과하여 근속한 신지제는 이번에 이에 따른 승진 혜택을 입게 되었다.

상세정보

1596년(선조 29)신지제를 조봉대부로 승진시킨 문서.

萬曆 24 年(1596) 2 月 초 5 일에 宣祖(재위 1568~1608)가 申之悌(1562~1624)

조봉대부행예안현감겸춘추관 기사관(朝奉大夫行禮安縣監兼春秋館記事官)에 임명한 告身이다. 하였다. 두 해 전 정월 30 일에 正 5 品 上階 通德郎에 오른 후 2년 만에 從 4 品 下階 朝奉大夫에 올랐다. 4 품 이상인 大夫의 반열에 올라 吏曹나 兵曹가 아니라 왕으로부터 직접 제수되는 고신을 받게 되었다. 그가 禮安縣監에 임명된 것은 만력 19년(1591) 6월 22일의 일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근무일수를 채우면 차차 품계를 올려주는 循資法이 시행되었다. 종 6 품 이상인 參上官은 900 일을 일해야 했다. 필요한 30 개월을 훨씬 넘겨 근무한 신지제는 이에 따라 加資되었다. 이를 仕加라 한다.

참고문헌 『宣祖實錄』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 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원문텍스트원문범례

教旨

申之悌 爲(爲) 朝(朝)

奉大夫 行(行) 禮(禮)

安縣監兼春

秋館記事官者

萬曆二十四年二月初五日

仕加

조봉대부(朝奉大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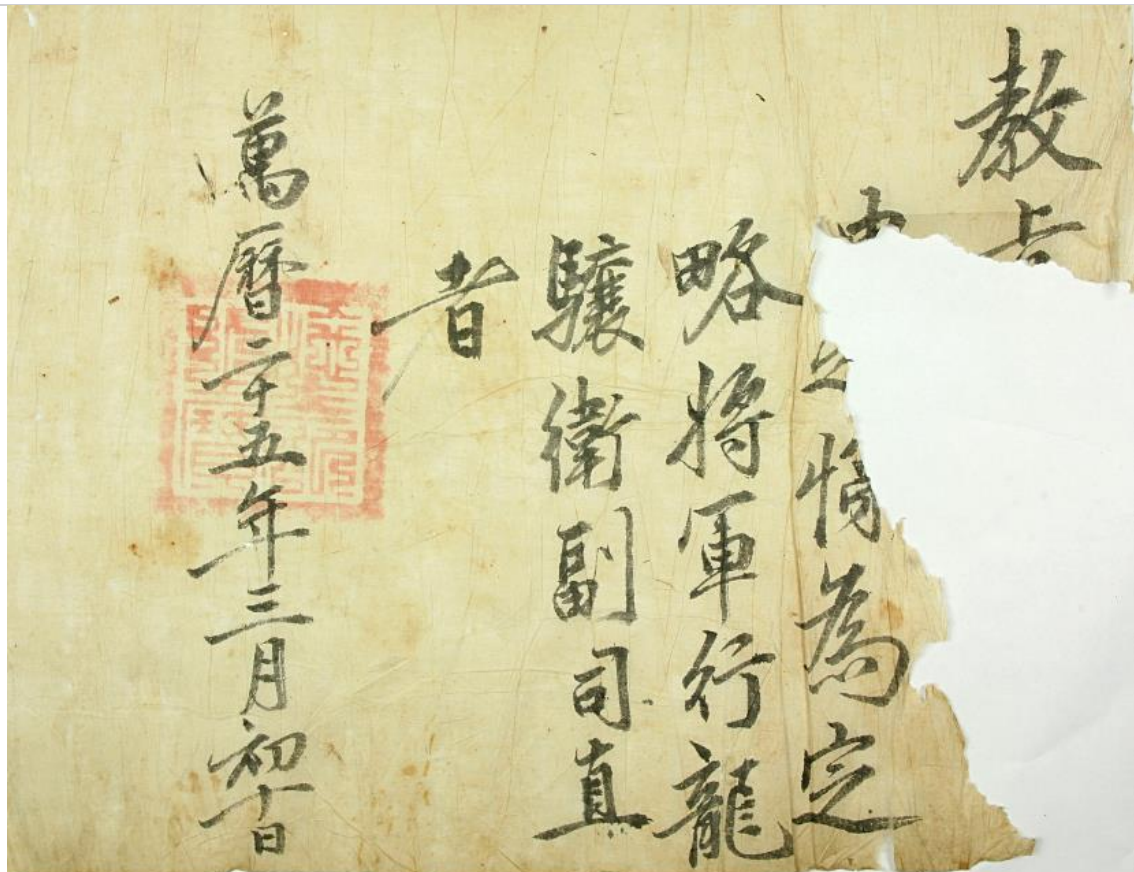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종 4 품 상계는 조산대부(朝散大夫), 하계는 조봉대부(朝奉大夫)로 정하여져 그대로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종 4 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경력·첨정·서윤·부응교·교감·제검·편수관·좌익선·우익선 부호군·군문파총(軍門把摠)·군수·동첨절제사·병마만호·수군만호 등이 있다. →문산계

1597년 신지제(申之悌)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597년 / 만력 25년 3월 초 10일 
· 형태사항	크기: 39x44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개(정방형)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47 ~쪽



안내정보

1597년신지제를 정략장군행 용양위 부사직에 임명한 문서.

1597년(선조 30)신지제(申之悌: 1562~1624)를 정략장군(定略將軍)행(行) 용양위(龍驤衛) 부사직(副司直)에 임명한 문서이다. 용양위는 조선 초. 중기 군사조직의 근간을 이루었던 오위(五衛) 가운데 하나로 좌위(左衛)에 해당한다. 부사직은 오위의 종(從) 5 품 관직이다. 정유재란이 일어난 해이므로 이에 따라 무관직에 제수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상세정보

1597년(선조 30)신지제를 정략장군행용양위부사직에 임명한 문서.

萬曆 25年(1597)3월 초 10일 宣祖(재위

1568~1608)가 申之悌(1562~1624)를 정략장군행용양위부사직(定略將軍行龍驤衛副司直)에 임명한 告身이다. 龍驤衛는 조선 초. 중기 군사조직의 근간을 이루었던 五衛 가운데 하나로 左衛를 이룬다. 副司直은 오위의 從5 품 관직이다. 정유재란이 일어난 해이므로 이에 따라 무관직에 제수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이에 따라 품계도 武臣 從4品 上階인 定略將軍으로 바뀌었다.

참고문헌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 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집필자 : 권오정

원문텍스트원문범례

教旨

申之悌爲定

略將軍行龍

驤衛副司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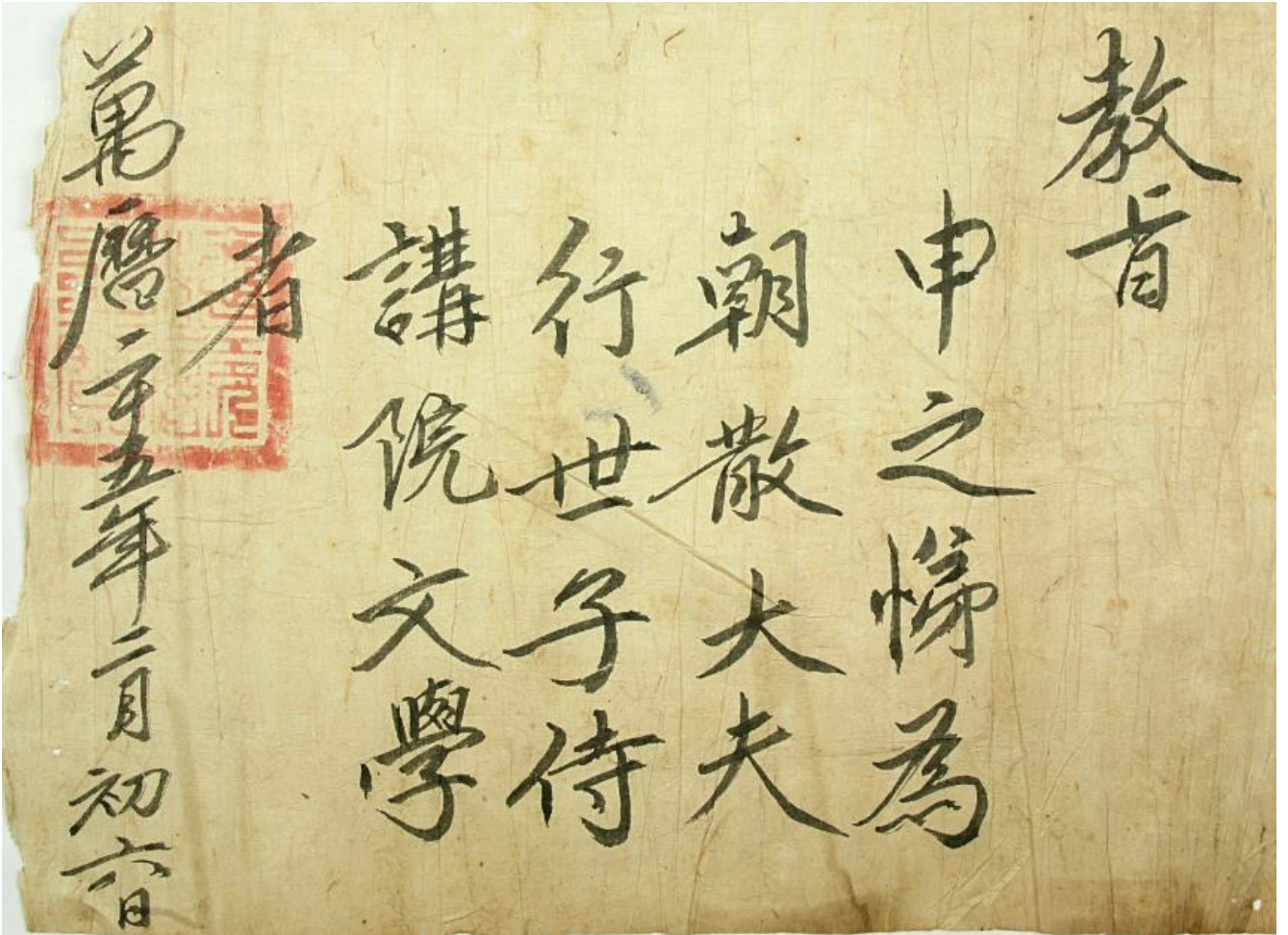
者

萬曆二十五年三月初十日

정략장군(定略將軍)

조선시대 무신 종4품 상계(上階)의 품계명.

1392년(태조 1) 7월 조선 건국 직후 처음 관제를 정할 때 선절장군(宣節將軍)이라고 하였다가, 1466년(세조 12)에 정략장군이라 개칭하여 『경국대전』에 성문화되었다. →무산계



안내정보

1597년 신지제를 조산대부행 세자시강원 문학에 임명한 문서.

1597년(선조 30) 신지제(申之悌: 1562~1624)를 조산대부(朝散大夫) 행(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문학(文學)에 임명한 문서이다. 근 6년간 예안(禮安) 현감(縣監)직을 수행한 그는 세자의 교육기관인 세자시강원 의 정(正) 5 품직인 문학(文學)에 제수되어 드디어 중앙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현감 재직 중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지역 의병장들과 함께 의병을 모아 왜적을 토벌하기도 하였던 그는 전쟁이 종식된 후에도 어수선한 지역 상황을 다스리느라 오랫동안 이곳의 수령 생활을 계속하였다.

상세정보

1597년(선조 30) 신지제를 조산대부행 세자시강원 문학에 임명한 문서.

萬曆 25年(1597) 2월 초 6일 宣祖(재위 1568~1608)가 申之悌(1562~1624)를 조산대부행 세자시강원문학(朝散大夫行世子侍講院文學)에 임명한 告身이다. 오랫동안 禮安의 縣監으로 봉직 하였던 신지제는 이해 드디어 중앙으로 복귀하였다. 세자의 교육기관인 世子侍講院의 正 5品職 문학에 제수되어서 이다. 본디 文科에 甲科로 급제한 그의 학문에 대한 인정으로 이해된다. 그런 그가 오랫동안 외직에 머무른 것은 왜란 때문이었다. 예안현감 재직 중 왜란이 발발하자 그는 지역 의병장들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여 왜적을 토벌하였다. 전쟁이 종식된 후에도 어수선한 지역 상황을 다스리느라 오랫동안 수령생활을 하던 그는 정유재란이 발발한 이때 중앙 정계로 복귀하고 있다.

참고문헌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 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집필자 : 권오정

원문텍스트원문범례

教旨

申之悌爲

朝散大夫

行世子侍

講院文學

者

萬曆二十五年二月初六日

조산대부(朝散大夫)

조선시대 문신 종4품 상계(上階)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 년(태조 1) 7 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종 4 품 상계는 조산대부(朝散大夫), 하계는 조봉대부(朝奉大夫)로정하여져 그대로『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종 4 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경력·첨정·서윤·부응교·교감·제검·편수관·좌익선·우익선·부호군·군문파총(軍門把總)·군수·동첨절제사·병마만호·수군만호 등이 있다. →문산계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조선시대에 왕세자의 보도와 교육을 담당한 관청.

춘방, 첨사부, 징원당, 뇌사라고도 한다. 고려말에 확립된 세자관속을 개칭하면서 성립되었으나 성립된 연대는 명확하지 않다.


1418 년(태종 18) 고려 이래 세자관속이 관장한 강학·시위 기능을 독립·전문화하고, 그를 위하여 세자관속을 세자시강원과 세자익위사로 독립시켜 강학과 시위를 전담하게 하면서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로 비로소 고려 이래 세자의 보도·시강·시위, 세자부의 행정사무 등과 이를 담당하던 여러 기능과 관원이 정리되면서 세자의 보도·교육을 전담하는 순수한 세자교육기관으로 정립되었다. 성립시 세자시강원의 법제적인 기능은 세자를 모시고 강학을 행하는 것이었고, <경국대전>에는 세자를 모시고 경서와 사서를 강론하고 도의를 올바르게 계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이후 변동 없이 계승되었다. 그러나 실제기능은 왕세자의 책봉여부 및 연령, 교육에 대한 관심도 등과 관련되어 일정하지 않았다.

세자시강원의 직제를 보면, 성립 때에는 관아명의 개칭과 함께 세자관속의 사(師) 등이 세자시강원 사 등으로 개칭되면서 좌·우 시직(각 1 명, 정 8 품)을 제외한 모두가 계승되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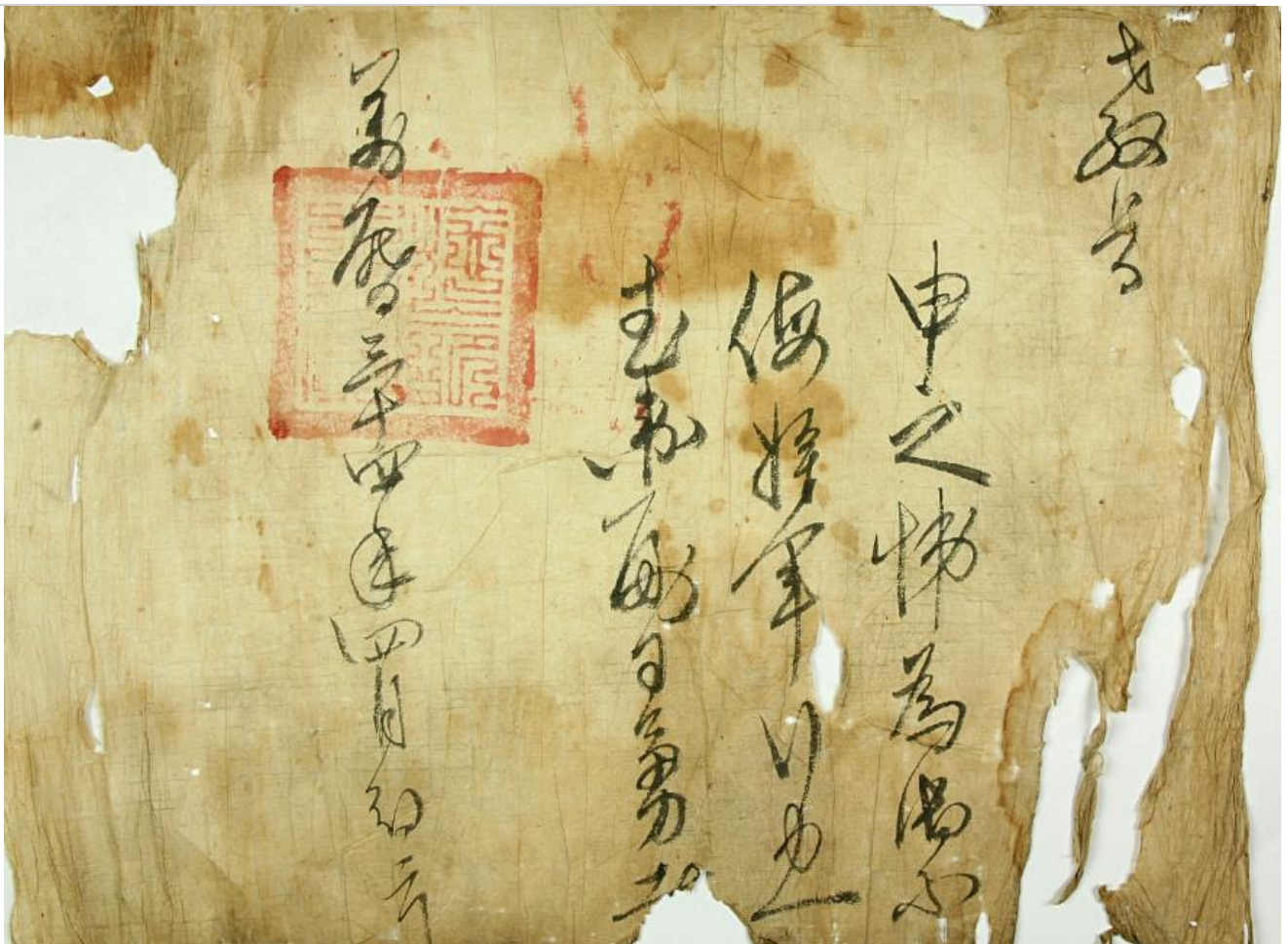
관원에는 사(師 : 1 명, 좌의정겸), 부(傅 : 1 명, 우의정겸), 이사(1 명, 찬성겸), 좌·우 빈객(각 1 명, 정 2 품겸), 좌·우 부빈객(각 1 명, 종 2 품겸), 좌·우 보덕(각 1 명, 종 3 품), 좌·우 필선(각 1 명, 정 4 품), 좌·우 문학(각 1 명, 정 5 품), 좌·우 사경(각 1 명, 정 6 품), 좌·우 정자(각 1 명, 정 7 품) 등이 있었다.

세자시강원의 관아명칭과 이때의 직관은 그후 1431 년(세종 13), 1456 년(세조 2), 1466 년, 1469 년(예종 1), 1646 년(인조 24), 1746 년(영조 22) 이전, 1784 년(정조 8), 1894 년(고종 31), 1895 년, 1896 년에 걸쳐 변천되면서 운영되다가 1910 년(순조 4) 조선의 멸망과 함께 소멸되었다. 세자시강원의 격은 1784 년까지 최고 녹관인 보덕의 품계와 관련되어 종 3 품아문이었으나, 1784 년 이후 보덕이 정 3 품 당상관으로 승질됨에 따라 정 3 품 당상아문으로 승격되었다. 또 찬선·진선(익선이 1748 년에 개칭됨)·자의는 법전상 으로는 녹관으로 규정되었지만 때때로 겸관으로 운영되었다. 1525 년(중종 20)에는 나이 어린 세자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덕 이하의 빈번한 교체를 금지했다.


1606년 신지제(申之悌)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국왕:선조(國王:宣祖)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06 년 
· 형태사항	크기: 40x43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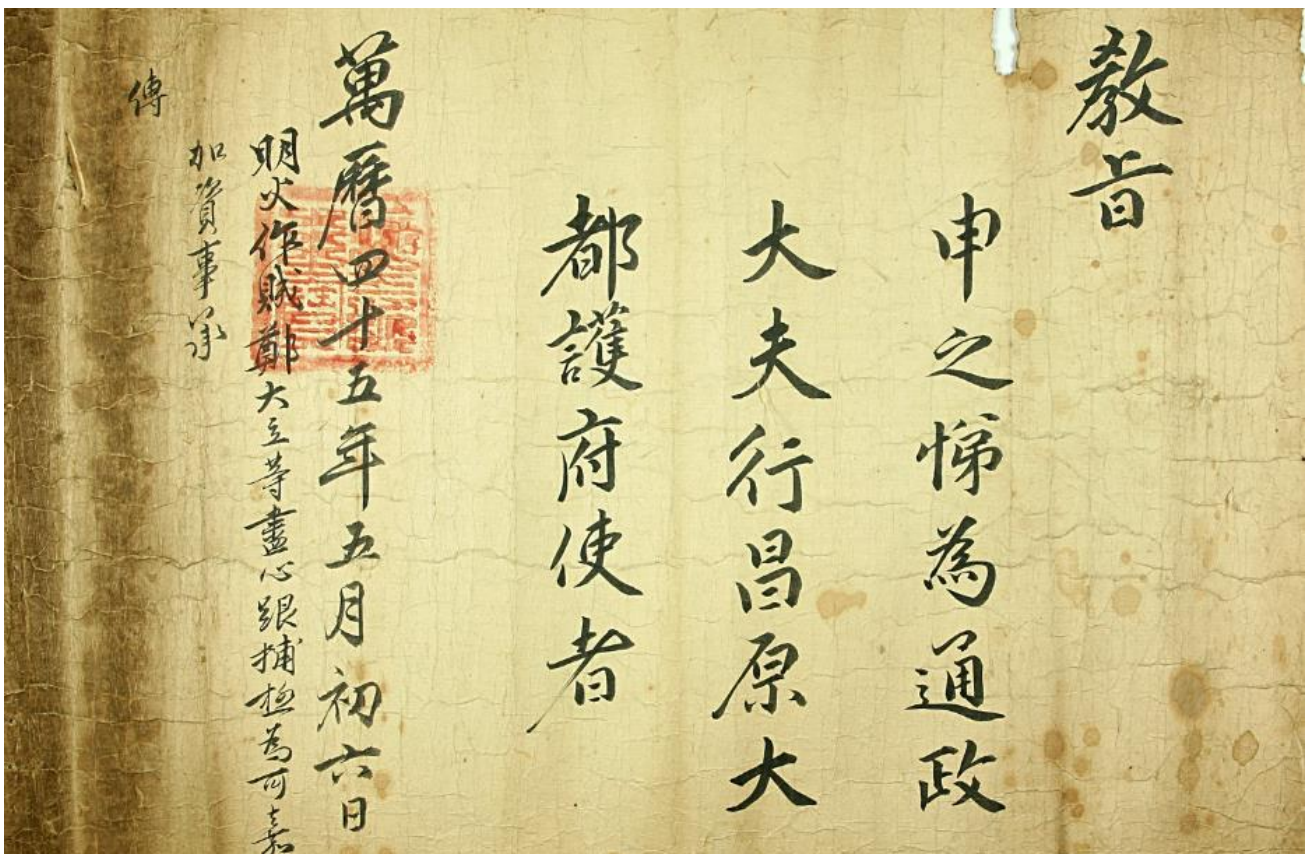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48 ~쪽






1617년 신지제(申之悌)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국왕:광해군(國王:光海君)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17년 
· 형태사항	크기: 54x76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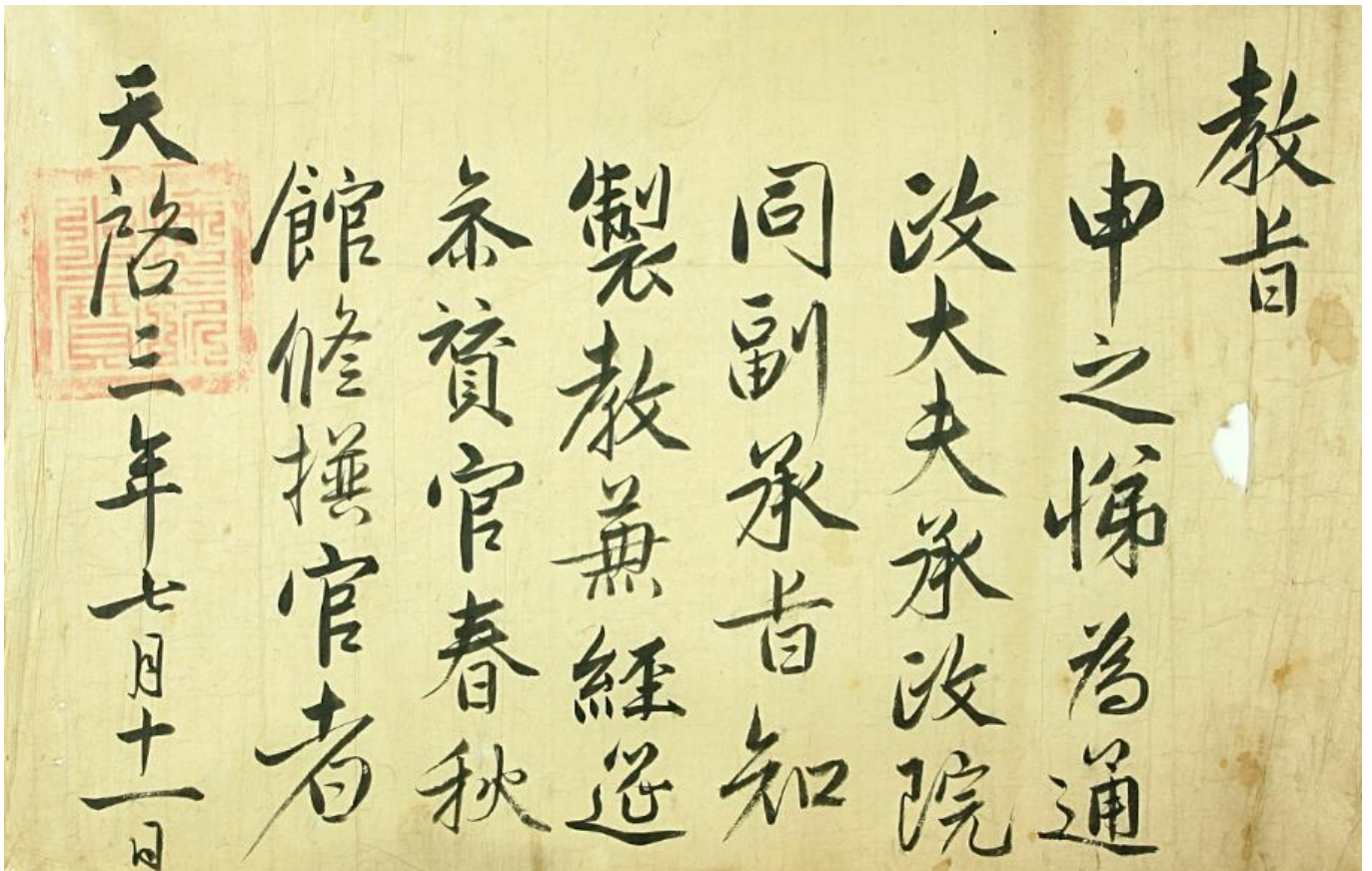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49 ~쪽






1623년 신지제(申之悌)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국왕:인조(國王:仁祖)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23 년 
· 형태사항	크기: 44x6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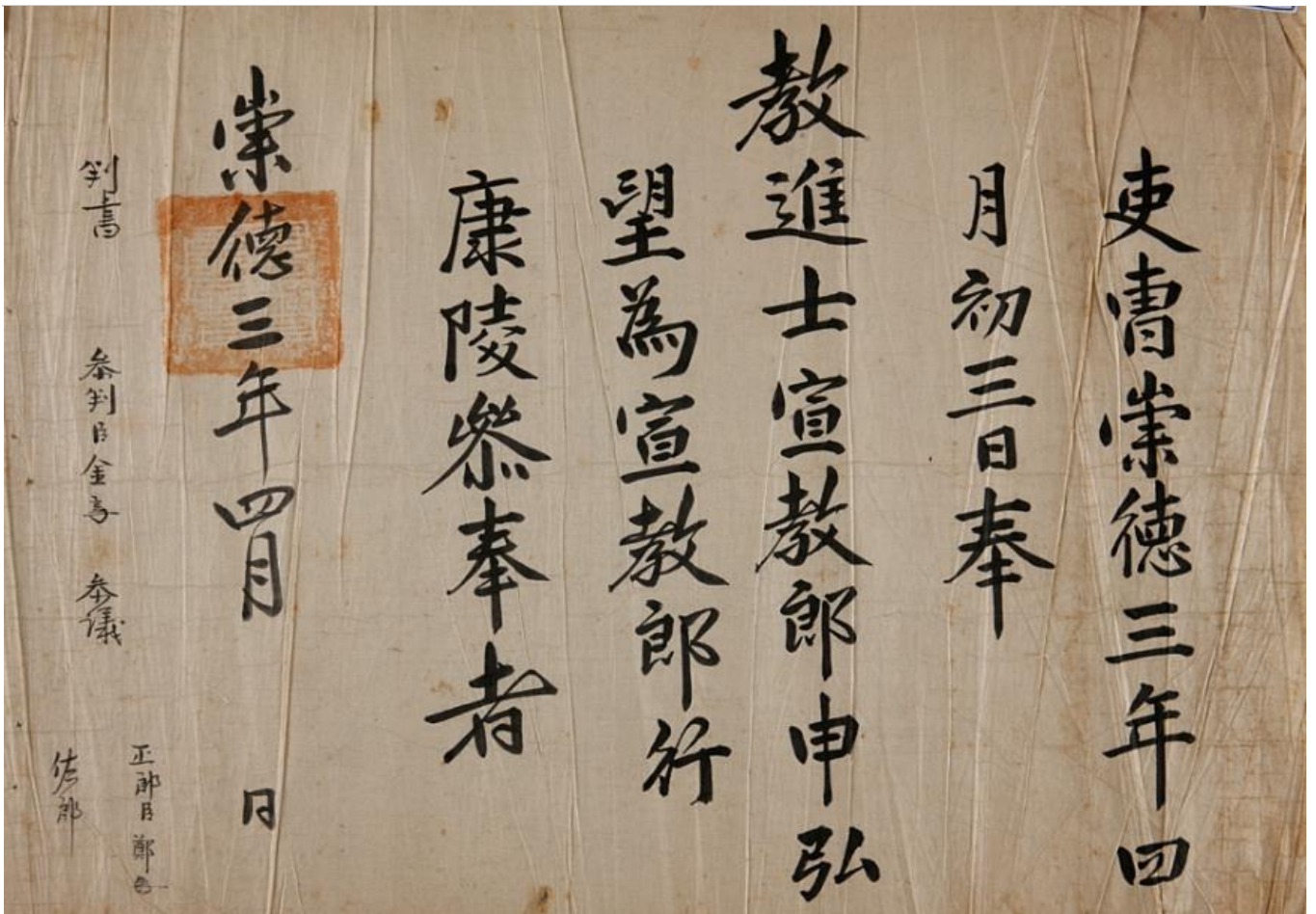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50 ~쪽



1630년 신흥망(申弘望)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흥망(申弘望)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30 년 
· 형태사항	크기: 45x58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고문서/오봉 가문/1. 교령류/(3) 고신/고신 / 351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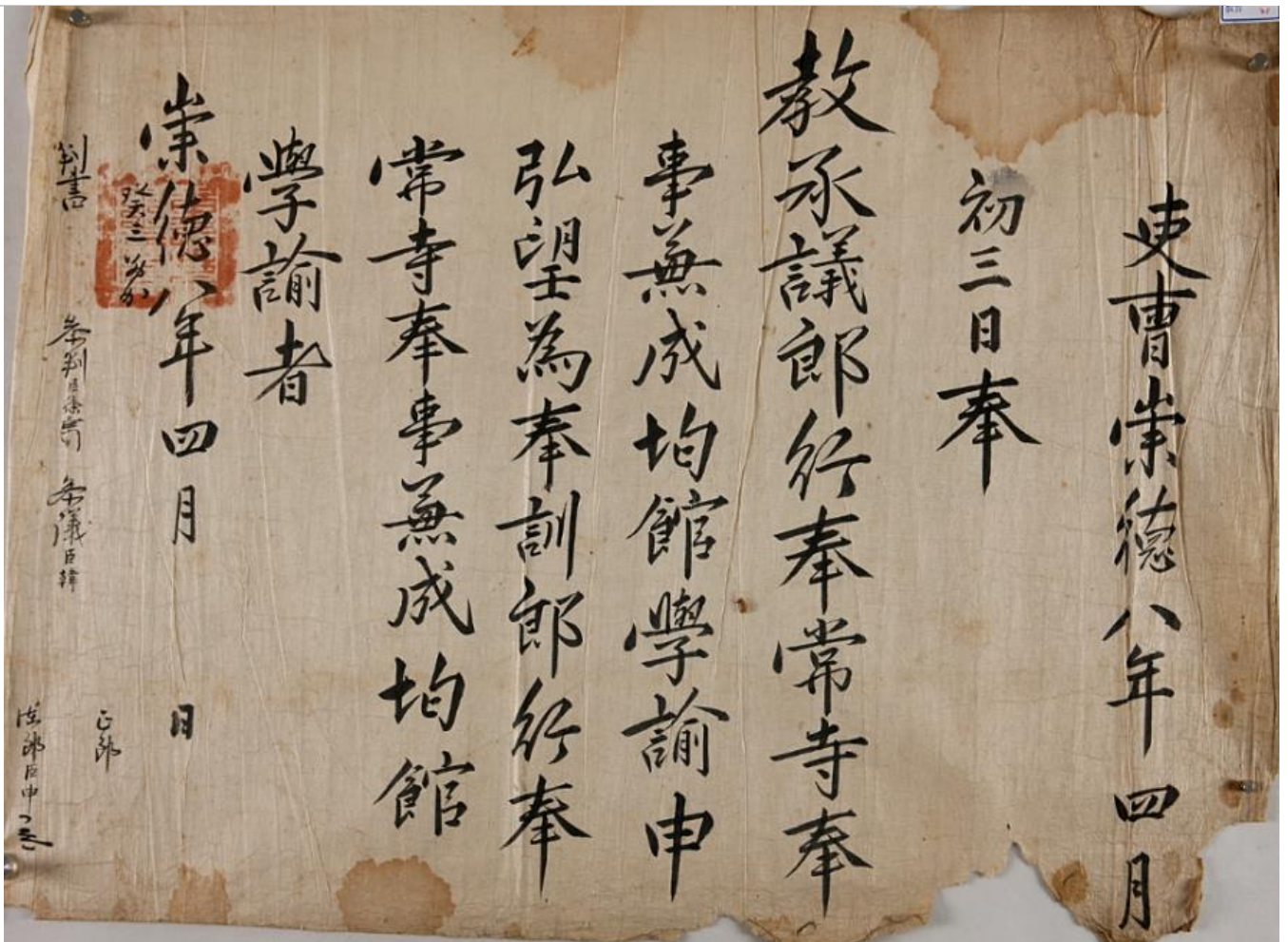


1635년 신흥망(申弘望)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흥망(申弘望)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35년 
· 형태사항	크기: 52x69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55 ~쪽



1635년 신흥망(申弘望) 고신(告身)

吏曹崇德八年三月
 初十日奉
 教承議郎行奉常寺副奉
 事兼成均館學諭申弘
 望為承議郎行奉常寺
 奉事兼成均館學諭者
 崇德八年三月 日
 判書 各判 參議臣韓 六
 正外 正外
 他外 他外
 他外 他外 他外 他外 他外 他外

1635년 신흥망(申弘望) 고신(告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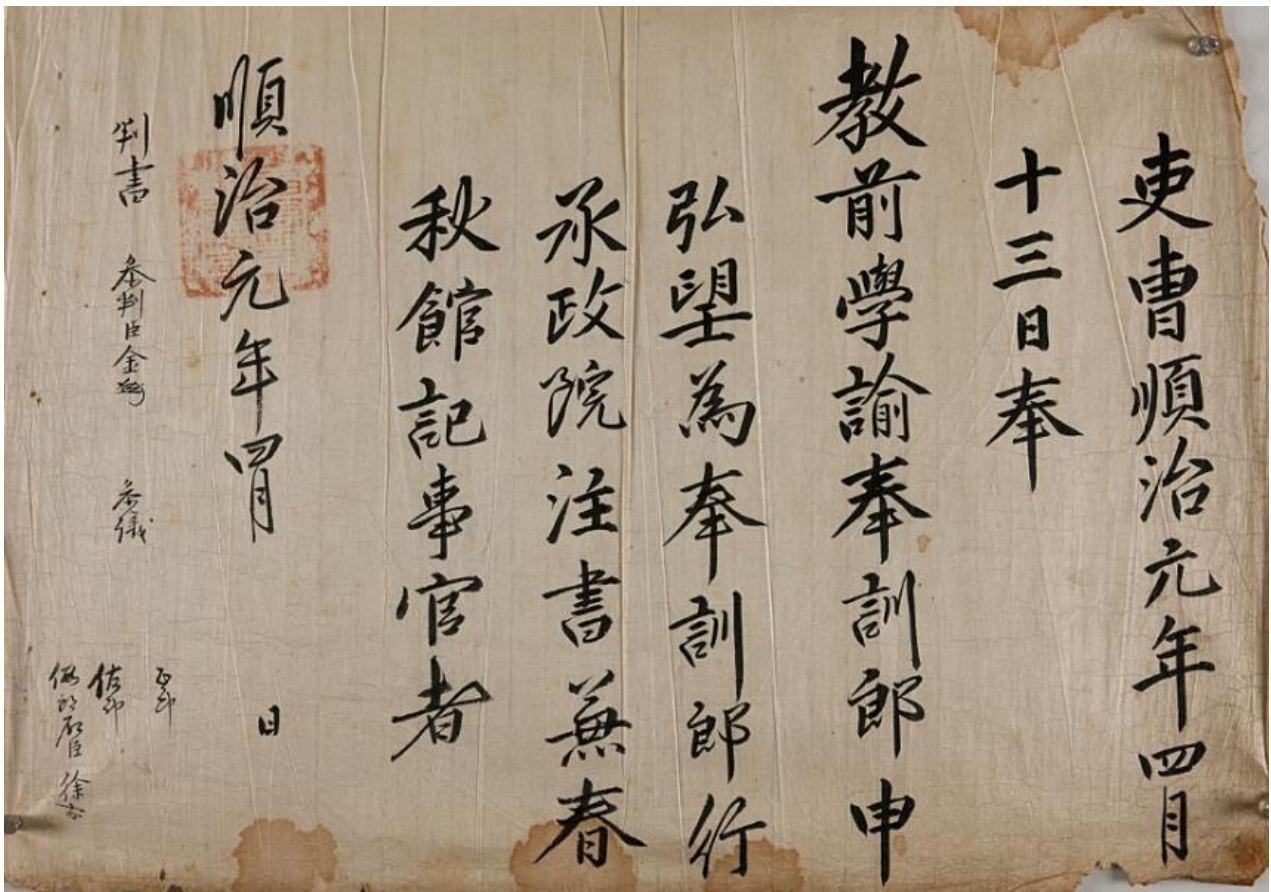
吏曹崇德八年二月
 二十日奉
 教承議郎行成均館學
 諭申弘望為承議郎
 行奉常寺副奉事兼
 成均館學諭者
 崇德八年二月 日
 判書 各判 參議臣韓 六
 正外 正外
 他外 他外
 他外 他外 他外 他外 他外 他外

更曹崇德八年二月
 初十日奉
 教權知成均館學諭承
 訓郎申弘望為承訓
 郎於成均館學諭者
 崇德八年二月 日
 訓書 奉訓 參議 臣 韓 一
 臣 申 弘 望

1644년 신흥망(申弘望)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흥망(申弘望)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44 년 
· 형태사항	크기: 52x69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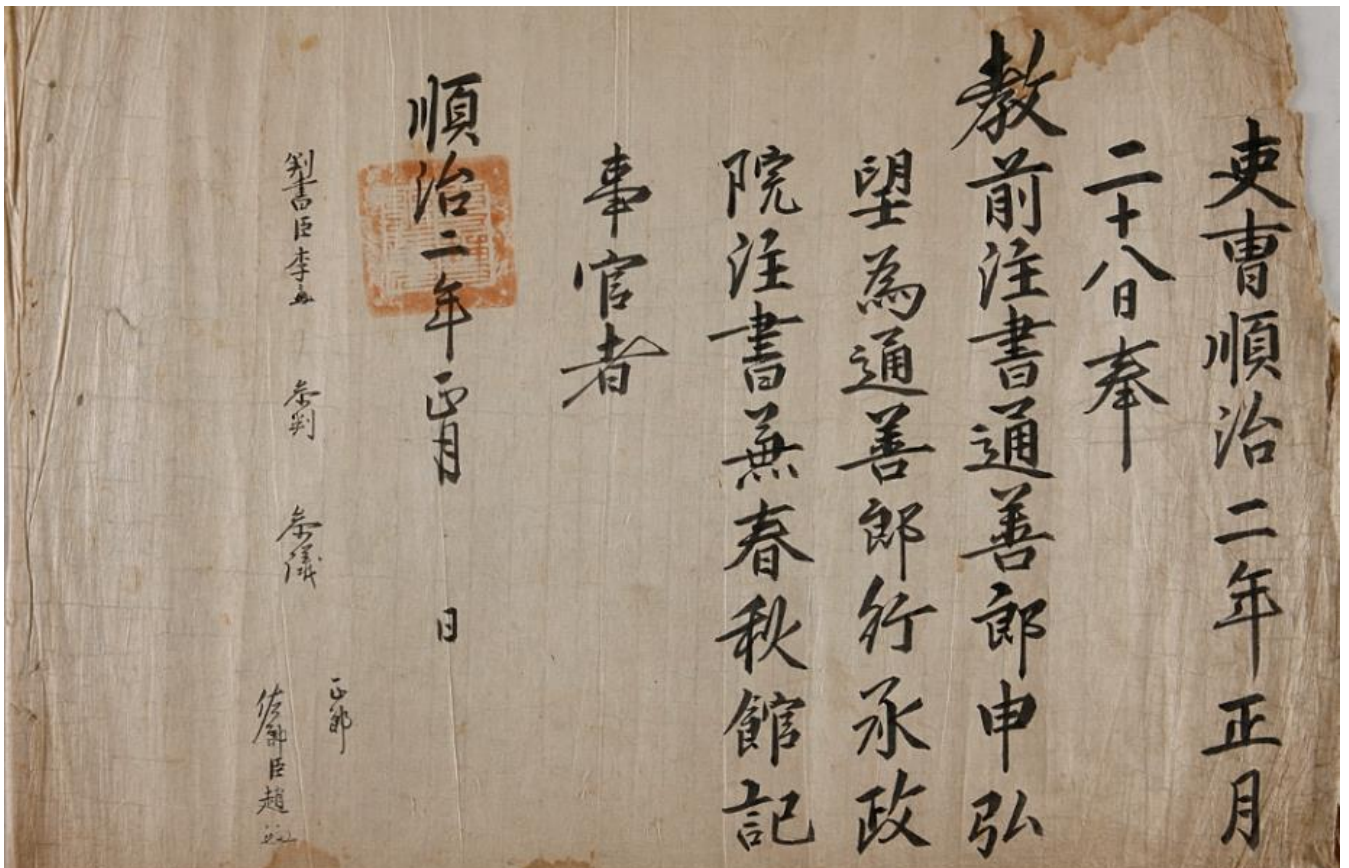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56 ~쪽



1645년 신흥망(申弘望)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흥망(申弘望)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45년 
· 형태사항	크기: 49x70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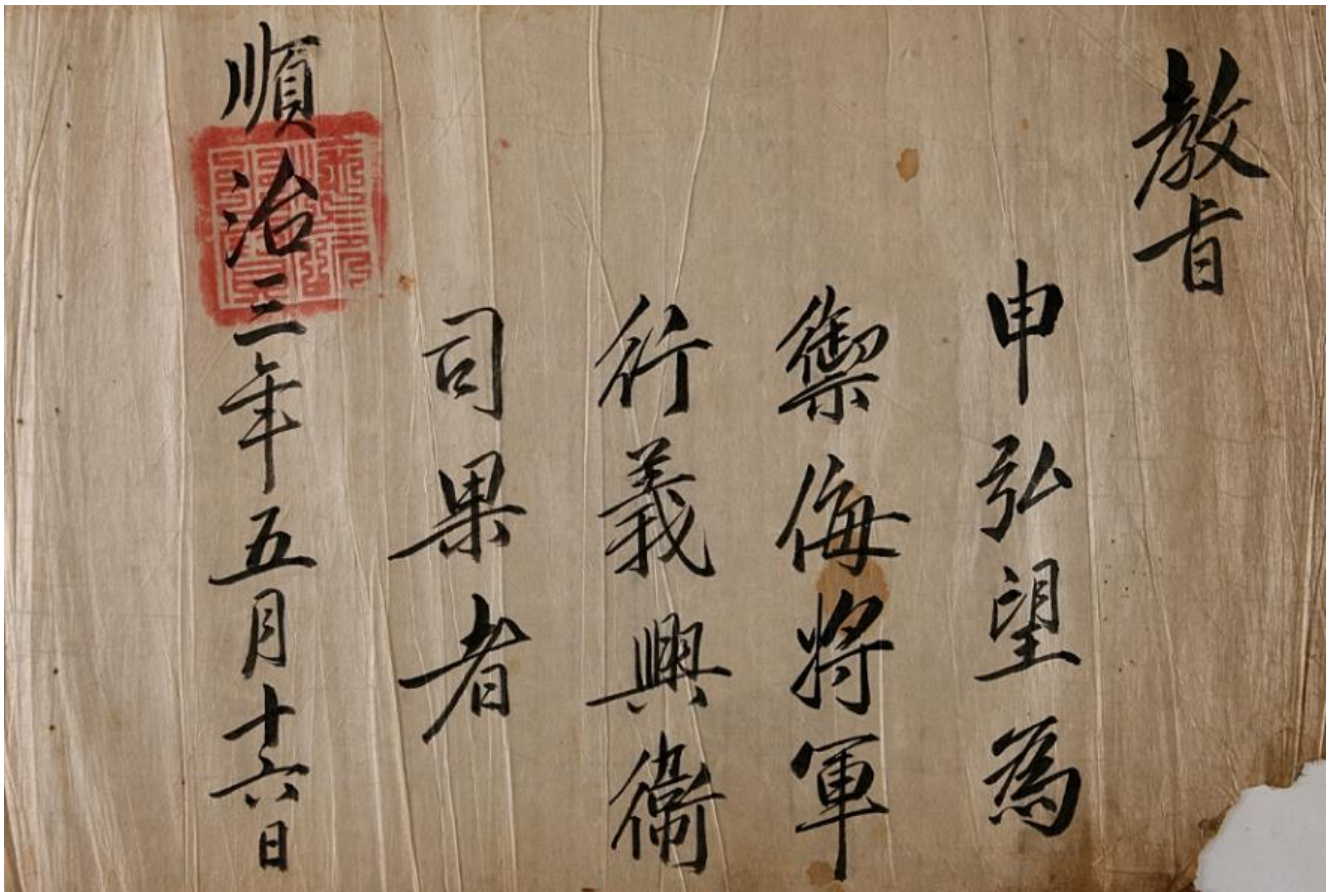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57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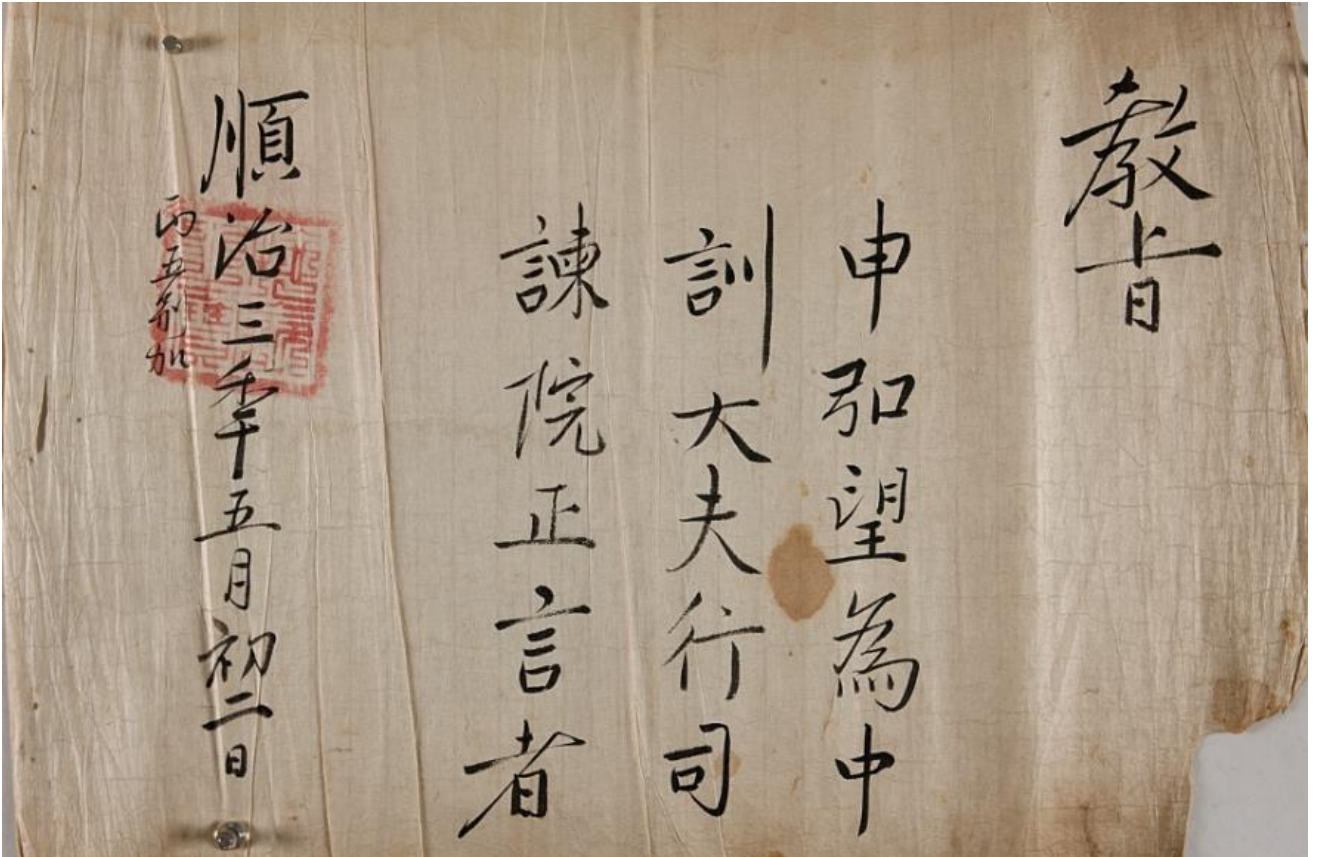
1646년 신흥망(申弘望)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흥망(申弘望)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46 년 
· 형태사항	크기: 52x68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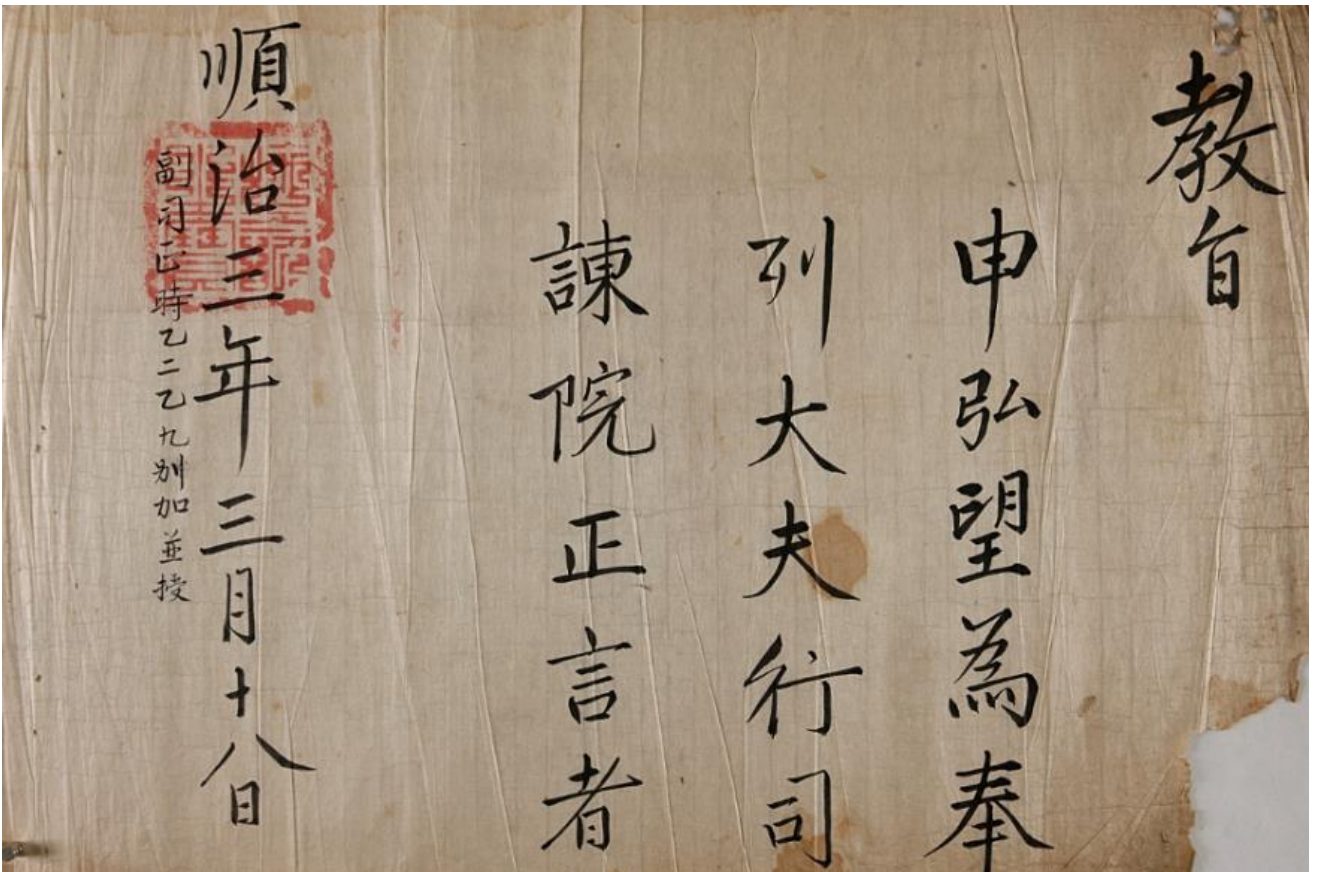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62 ~쪽



1646년 신흥망(申弘望) 고신(告身)



1646년 신흥망(申弘望) 고신(告身)



1646년 신흥망(申弘望) 고신(告身)

教首
申弘望為朝
奉大夫行兵
曹佐郎者
順治三年三月十三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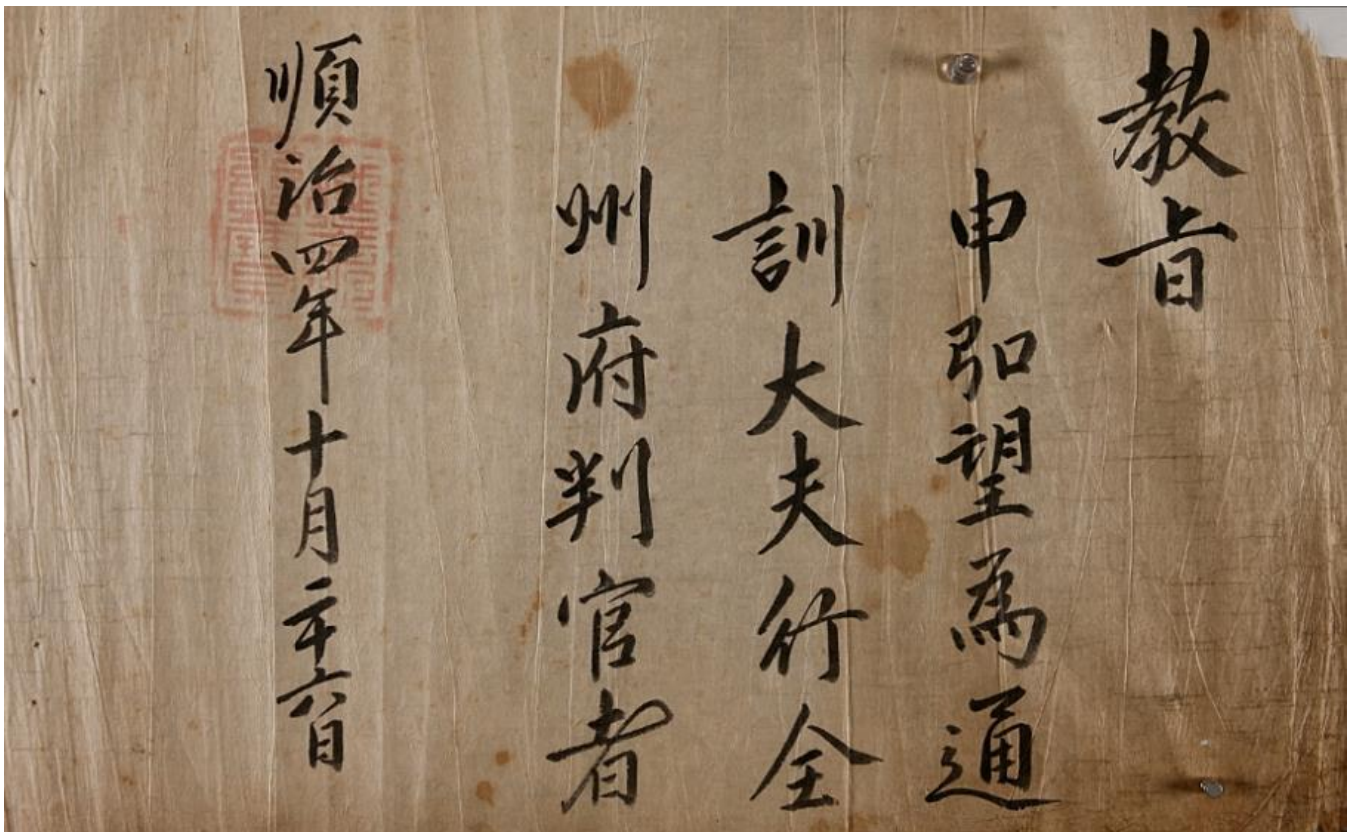
1646년 신흥망(申弘望) 고신(告身)

教首
申弘望為朝
奉大夫行成
均館典籍者
順治三年正月初三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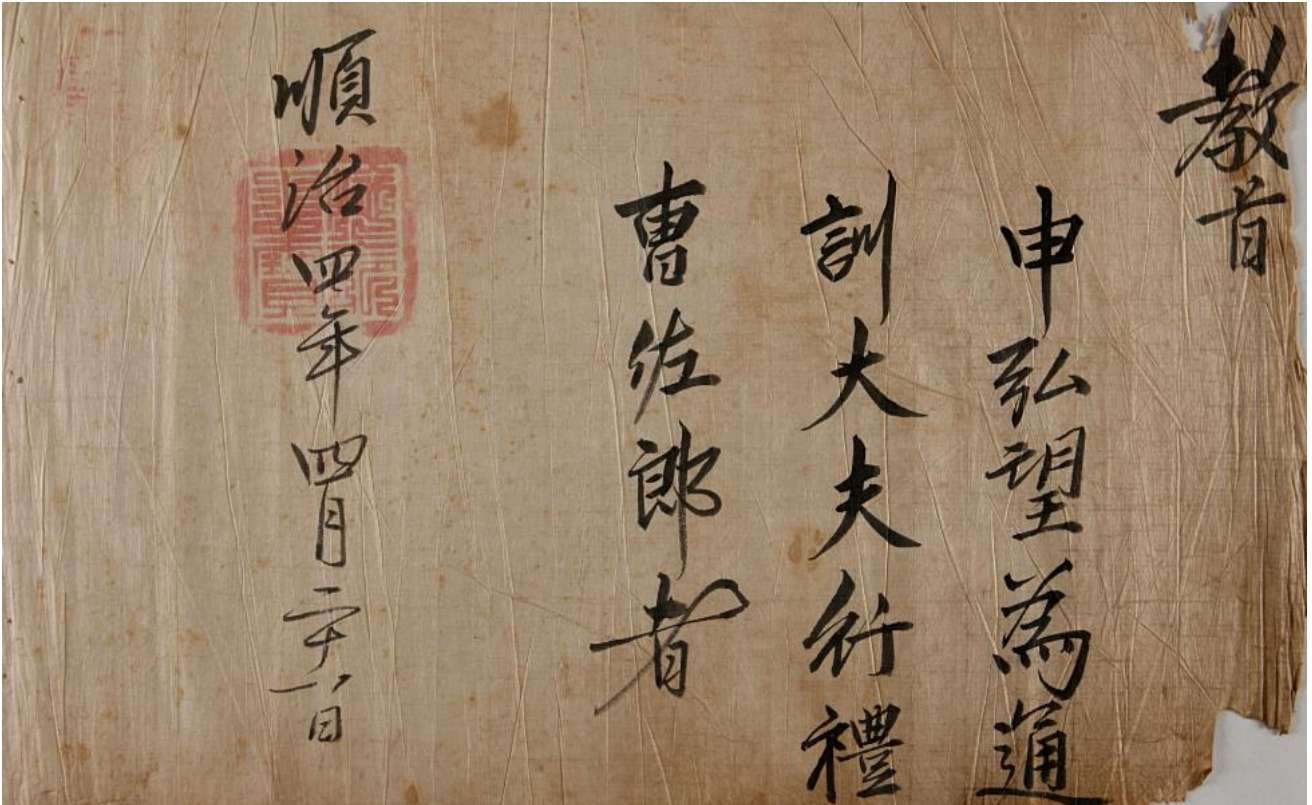
1647년 신흥망(申弘望)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흥망(申弘望)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47년 
· 형태사항	크기: 51x70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64 ~쪽



1647년 신흥망(申弘望) 고신(告身)



1652년 신흥망(申弘望)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흥망(申弘望)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52년 
· 형태사항	크기: 53x70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66 ~쪽

教旨
申弘望為通訓大夫行司憲府持平者
順治九年七月十一日

1652년 신흥망(申弘望) 고신(告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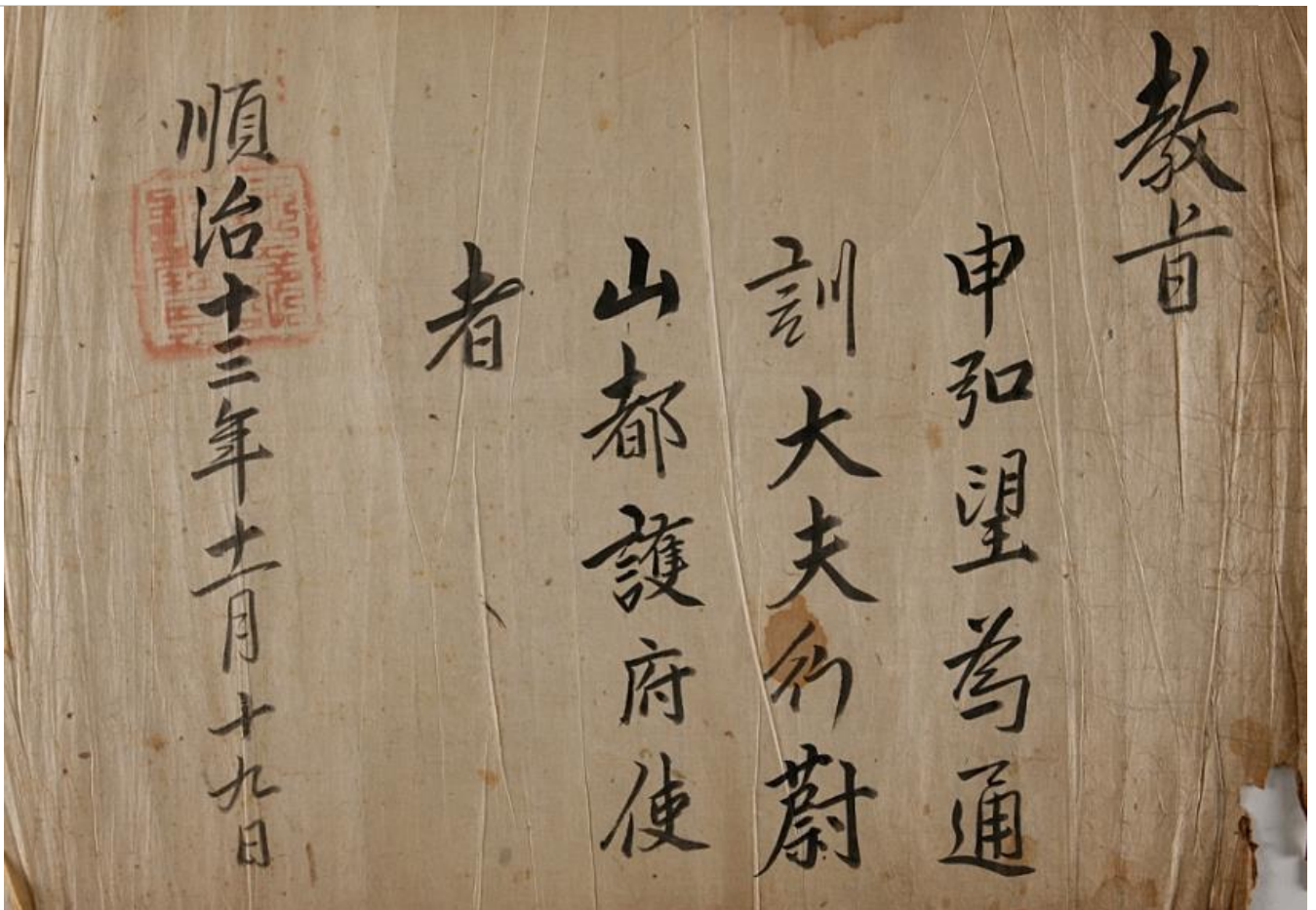
教旨
申弘望為通訓大夫行司憲府持平者
順治九年七月十日

1656년 신흥망(申弘望)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흥망(申弘望)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56 년 
· 형태사항	크기: 50x66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67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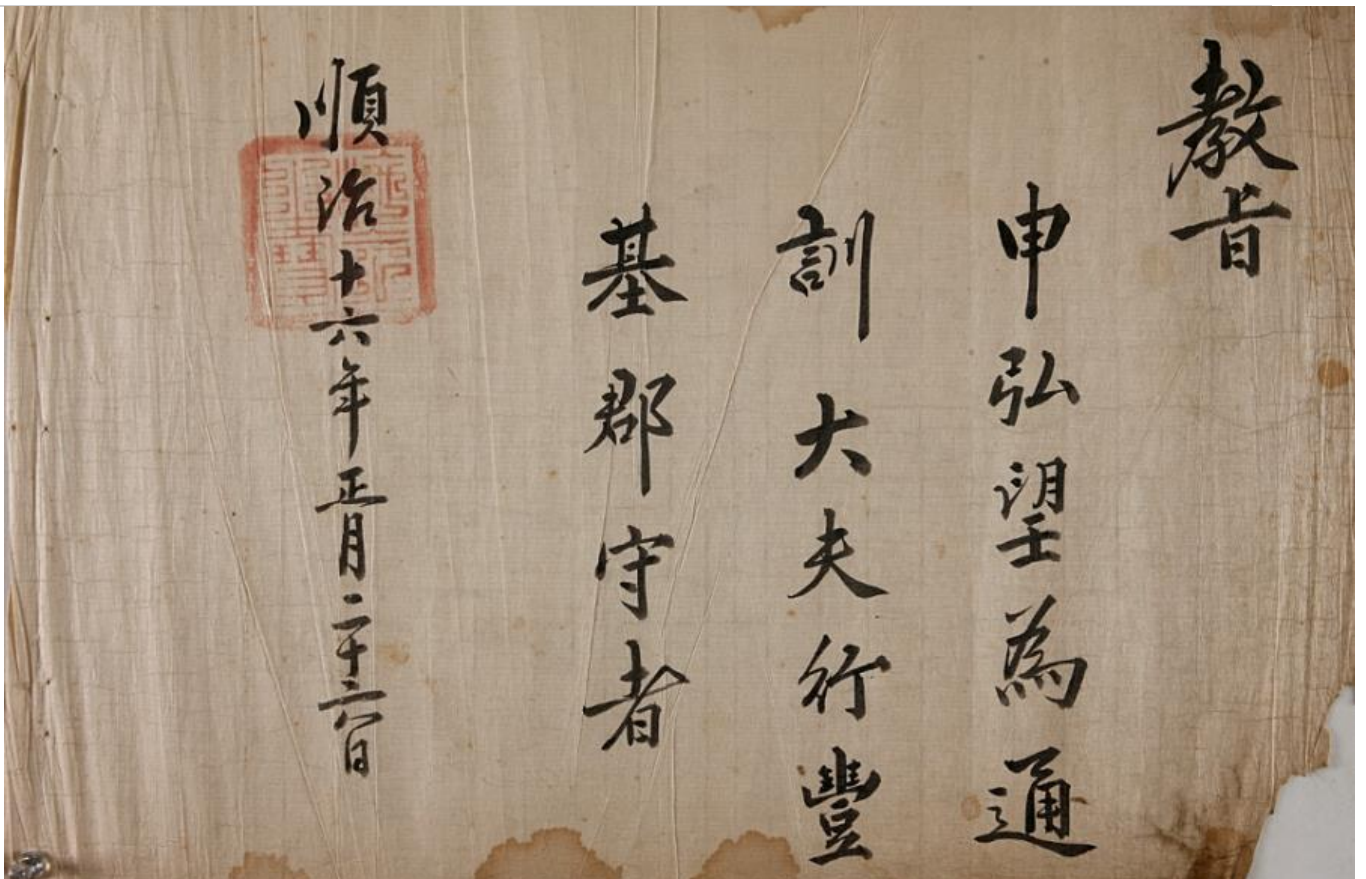


1659년 신흥망(申弘望)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흥망(申弘望)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59년 
· 형태사항	크기: 54x7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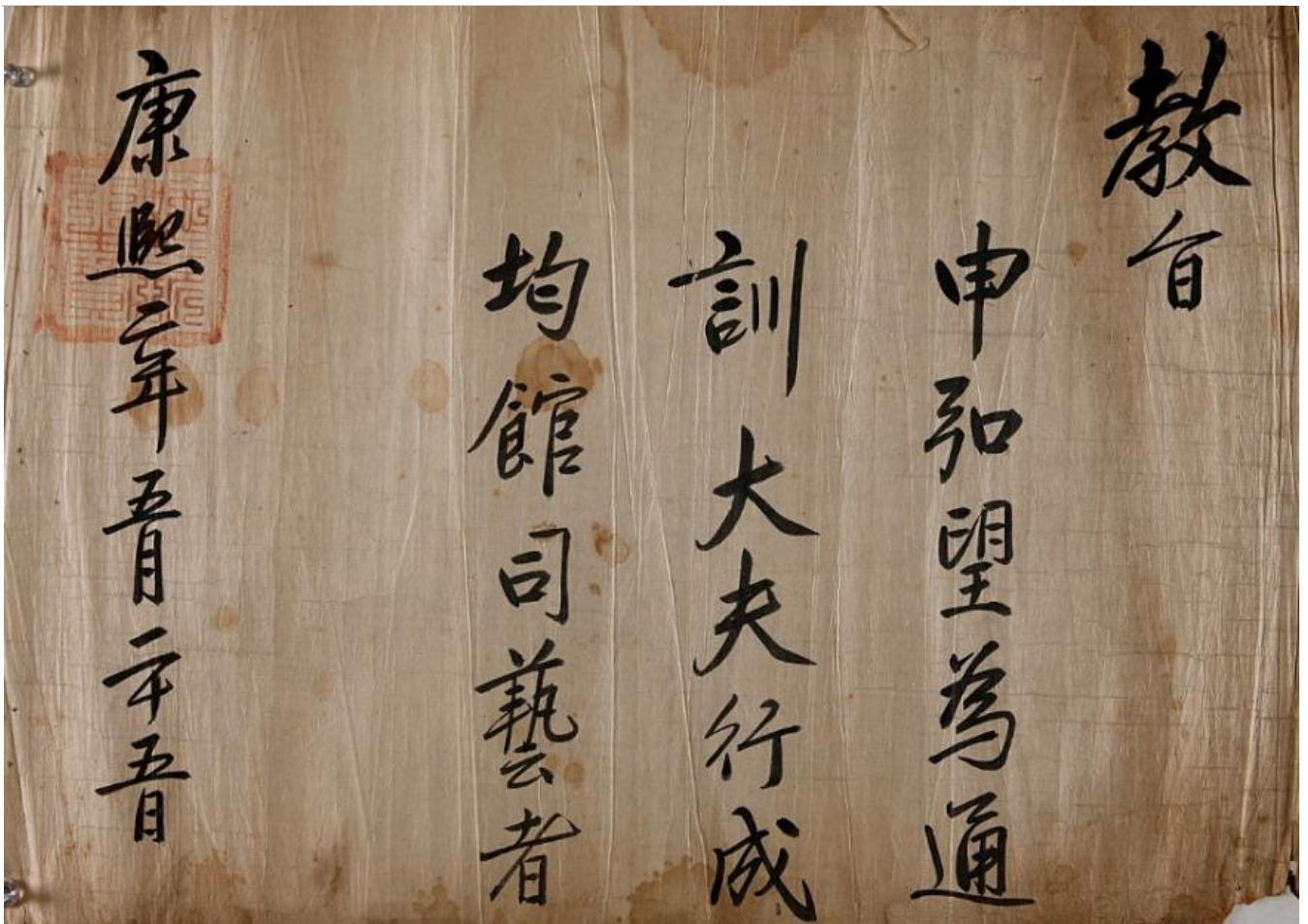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68 ~쪽



1663년 신흥망(申弘望)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흥망(申弘望)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63년 
· 형태사항	크기: 53x70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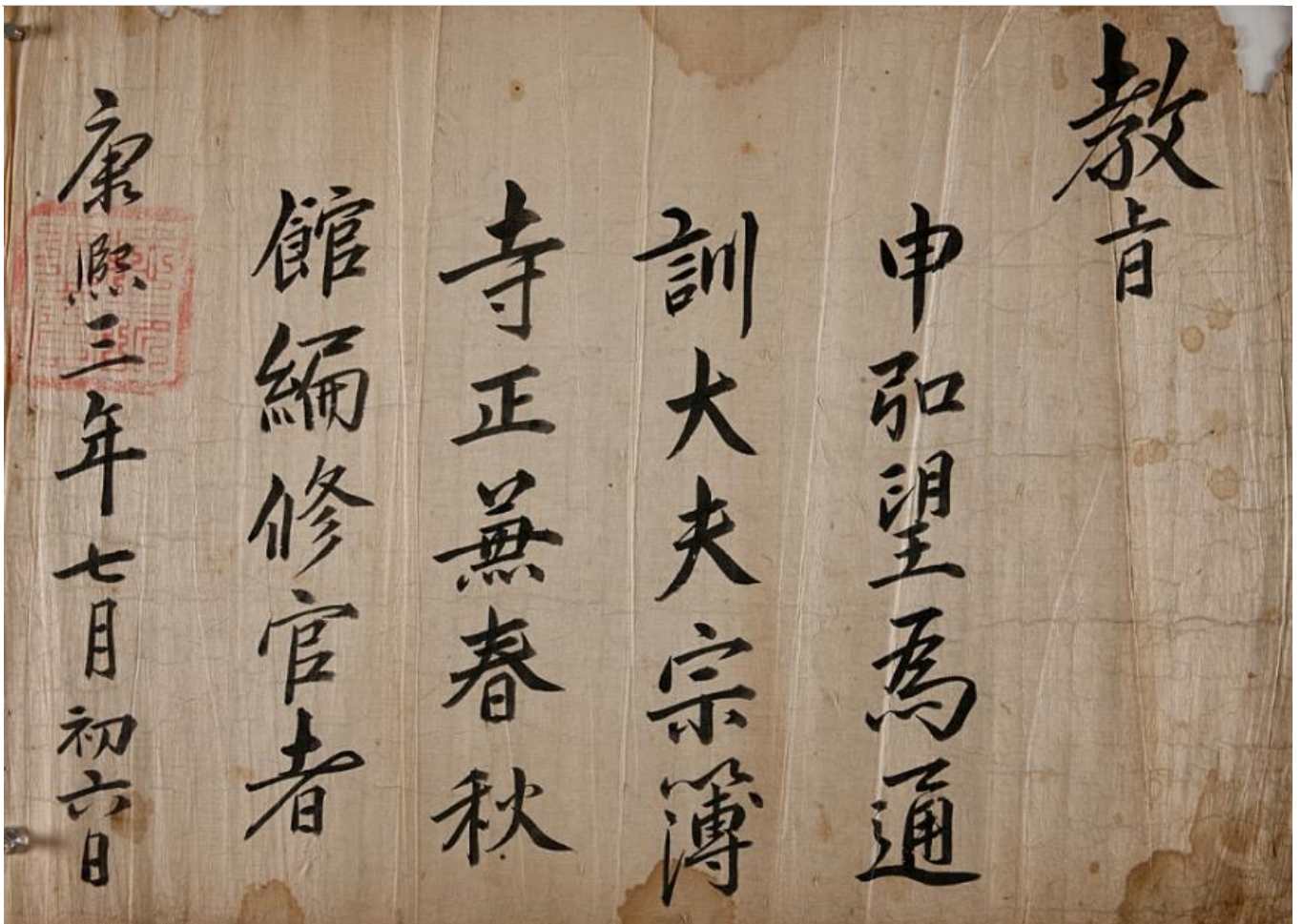
고문서집성 수록정보『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70 ~쪽



1664년 신흥망(申弘望)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흥망(申弘望)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64 년 
· 형태사항	크기: 52x69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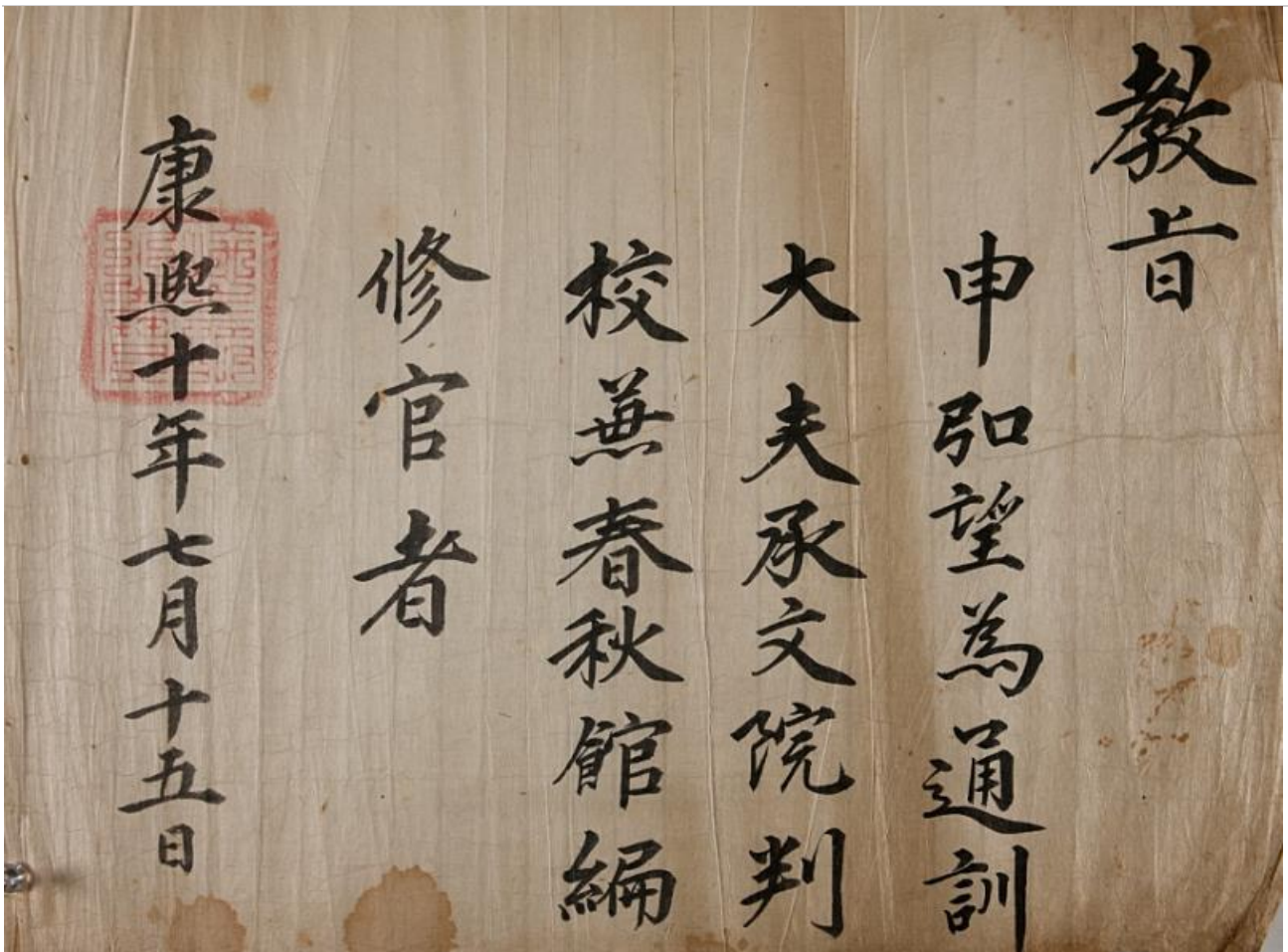
고문서집성 수록정보『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71
~쪽



1671년 신흥망(申弘望)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흥망(申弘望)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71년 
· 형태사항	크기: 53x65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72 ~쪽



녹패(祿牌) (4)

조선시대 이조와 병조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문무관원에게 녹과를 정해 내려주는 증서.

녹패에 기재된 녹과에 의해 호조에서는 녹봉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하였다.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인수하였다. 조선시대의 녹과는 제 1 과부터 제 18 과까지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과에 따라 녹봉에 차이가 있었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따라 정월과 7 월 연 2 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1439 년(세종 21) 연 4 회, 즉 춘○하○추○동 4 차례 반록(頒祿)하는 것으로 바뀌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이후 1671 년(현종 12)부터는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속대전』에 반영되었다.

녹봉의 내용은 『경국대전』, 『대전회통』 등에 밝혀져 있다. 녹봉은 관료제 정치 체제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이며, 조선시대 녹제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그 시대의 정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녹패는 『경국대전』 등 법전에 실린 녹과의 규정과 실제가 일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史料)이다.

녹패의 발급은 태조대에는 삼사(三司)에서 담당하다가 뒤에 이조·병조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녹패에는 녹패를 지급할 때의 날짜·내역, 그리고 입회한 감찰(監察)과 지급기관인 광흥창의 서압(署押 : 手決)이 있는 지급증(小片紙)이 붙어 있다.

녹패의 서식은 『경국대전』, 『전율통보(典律通補)』 등에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의 녹패를 보면 『전율통보』의 서식과 일치하고 있으며, 연호 위에 녹패의 발급 관부인 이조 또는 병조의 도장이 찍혀 있다.

녹패로서 현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적다. 1606년(선조 39)에 유성룡(柳成龍)에게 내린 제1과 녹패 및 1658 년(효종 9)에 숙경공주(淑敬公主)에게 내린 제1과 녹패, 1713년(숙종 39)에 김주신(金柱臣)에게 내린 제1과 녹패, 1788년(정조 12)에 강명달(姜命達)에게 내린 제5과 녹패, 1834년(순조 34)에 남연군(南延君)에게 내린 제1과 녹패 등이 있다.

신지제의 녹패는 1589 년(선조 22) 6 월과 이듬해 정월에 이조에서 당시 사삼시(司贍寺) 직장(直長)이었던 지제에게 제 14 과 녹을 내리는 녹패이다. 녹패는 이조와 병조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이나 문무 관원에게 녹과(祿科)를 정하여 내려주는 증서로서, 녹패에 기재된 녹과에 의하여 호조에서 녹봉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하였다.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인수하였다. 조선시대의 녹과는 제 1 과부터 제 18 과까지로 과에 따라 녹봉에 차이가 있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정월, 4 월, 7 월, 10 월 초에 4 차례 반록(頒祿)하도록 되어 있다.

녹패에는 녹패를 지급할 때의 날짜·내역, 그리고 입회한 감찰과 지급기관인 광흥창의 서압(署押)이 있는 소편지(小片紙, 지급증)가 붙어 있다. 그리고 연호 위에 녹패의 발급 관부인 이조 또는 병조인이 찍혀 있다.

신지제가 받은 제 14 과 녹은 종 7 품직 관원이 받는 등급으로, 당시 지제의 녹패에 기록된 지급증의 수급 내용은 『경국대전』 등 법전에 명시된 녹과와 차이가 없었다. 법전에 명시된 제 14 과 녹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제 14 과(종 7 품) 녹봉액

春期에는 中米 1 石、糙米 3 石、田米 1 石、黃豆 2 石、正布 2 匹、楮貨 2 張을 지급한다.

夏期에는 中米 1 石、糙米 4 石、小麥 1 石、正布 1 필을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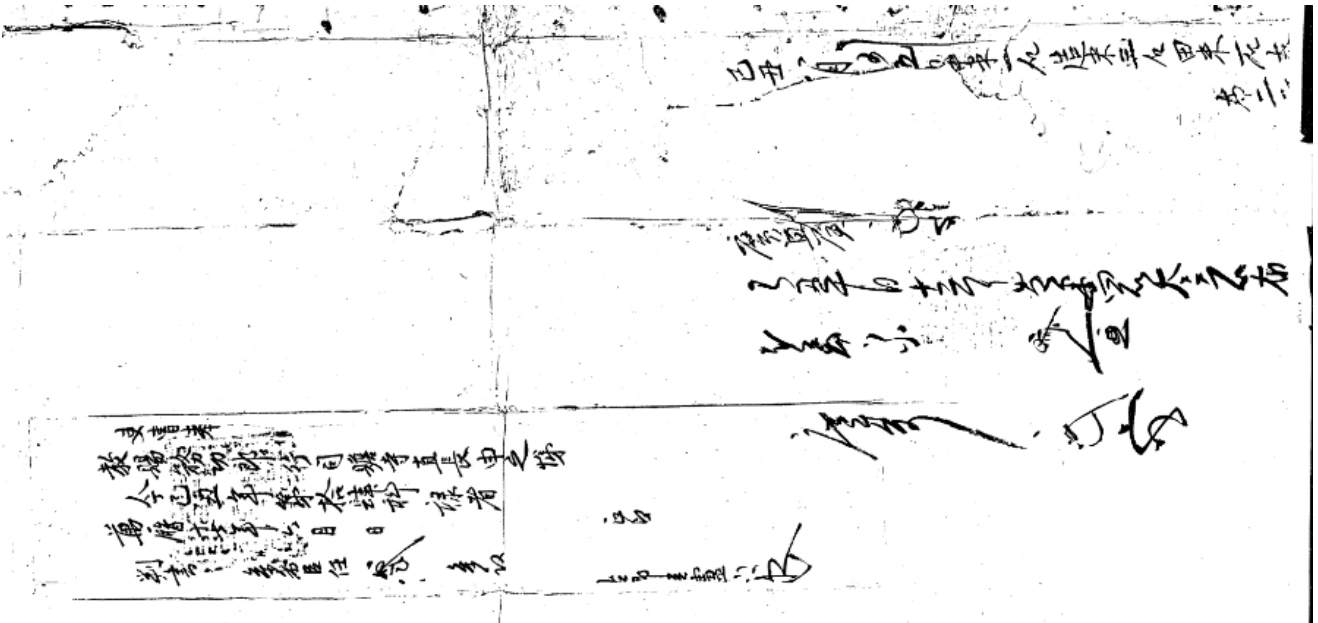
秋期에는 中米 1 石、糙米 3 石、田米 1 石、小麥 2 石、正布 2 필을 지급한다.

冬期에는 糙米 4 石、黃豆 2 石、正布 1 필을 지급한다. 이상은 12 일이 지급일이다.

1589년 신지제(申之悌) 녹패(祿牌)

· 분류	고문서-교령류-녹패 / 정치·행정-임면-녹패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589년 / 만력 17년 6월 일 
· 형태사항	크기: 87x53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서명	1 개(정방형) 2 개(정방형) 서압:3 착명:5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7) 녹패 / 녹패 / 378 ~쪽



안내정보

1589년 무공랑행 사십시 직장신지제의 봉급 문서.

1589년(선조 22) 이조(吏曹)에서 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 봉급 문서이다. 왕명을 받들어 무공랑(務功郎)행(行) 사첨시(司贍寺) 직장(直長)신지제에게 금년 제 14과의 녹봉을 내려준다는 내용이다. 5월 11일에 종(從) 7품직에 임명되어 6월 모일에 이 문서를 받았다. 이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제출하면 실제 녹봉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기록은 본 문서 하단에 남아있다. 신지제는 8월 모일과 10월 13일에 녹봉을 받았다. 법전에는 1. 4. 7. 10월 네 차례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는 가을 녹봉을 한 달이나 늦게 받았다. 10월에는 조미(造米) 4섬, 콩 2섬, 베 2필을 받았다. 이를 기록한 후에는 광흥창관원과 입회하는 감찰이 공동으로 서명을 하였다. 비리를 막고자 함이다.

상세정보

1589년(선조 22) 무공랑행사첨시직장신지제의 녹봉 증서.

萬曆 17年(1589)6월 모일에 吏曹에서 申之悌(1562~1624)에게 내린 祿牌이다. 왕명을 받들어 務功郎行司贍寺直長신지제에게 금년 己丑年에 第 14 科의 祿을 내린다는 내용이다. 녹봉은 實職에 따라 각 4 孟朔에 賜給하였다. 따라서 당해 5월 11일로 從 7 品 直長에 임명된 신지제는 그에 해당하는 제 14과의 녹봉을 받게 되었다.

그 아래에는 그가 실제로 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두 차례 수령한 기록이 남아 있다. 8월과 10월 13일이다. 8월에는 中米 1 石, 造米 3 石, 田米 1 石과 布 2 匹을 받았다. 이는 법전의 제 14과 秋期의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하단이 결락되어 보이지 않는 곡물 한 종과 그 양은 小麥 2 섬일 것으로 추정된다. 10월 13일에 받은 造米 4 石, 太 2 石, 布 얼마도 법전의 冬期와 완전히 일치한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베의 양은 1 필이다. 이렇게 수령한 날짜와 물목을 기록한 다음 입회한 監察과 광흥창관원이 着名과 署押을 모두 하였다. 8월분 기록은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감찰의 서명을 볼 수 없다.

참고문헌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 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집필자: 권오정

원문텍스트원문범례

吏曹 奉

敎賜 務功郎行司贍寺直長 申之悌

今 己丑年 第拾肆科 祿者

萬曆十七年 六月 日

正郎

判書參判 臣任 [着名] 參議

佐郎 臣盧 [着名]

己丑 八月 五 (日) (中) 米一石 造米三石 田米一石 ...

... 布二 ...

...

廣興倉 [着名] [署押]

己丑十月十三日造米四石太二石布■...

監察[着名][署押]

廣倉[着名][署押]

무공랑(務功郎)

조선시대 문산계 가운데 정7품 상계.→ 문산계.

사섬시(司贍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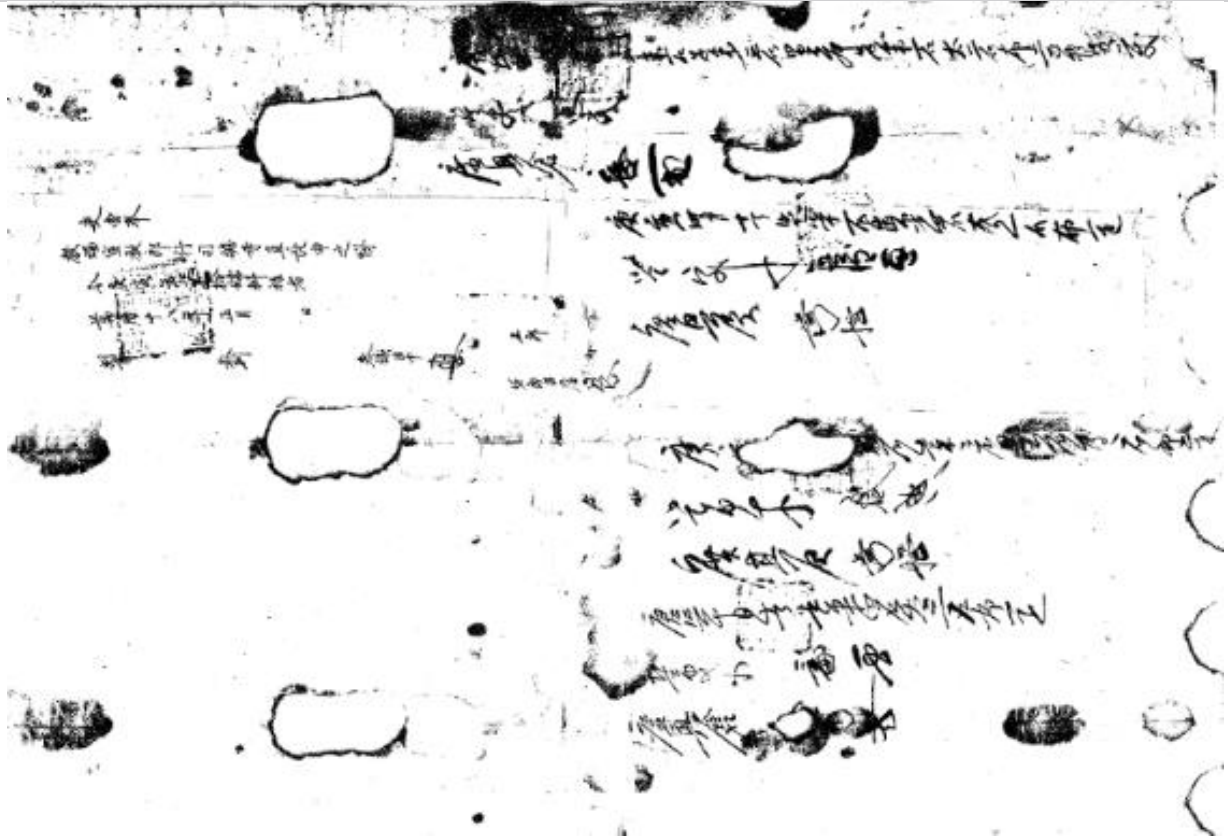
조선시대 저화(楮貨)의 주조 및 외거노비(外居奴婢)의 공포(貢布)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관서. 1401년(태종 1)에 설치한 사섬서(司贍署)를 1460년(세조 6)에 개칭한 것이다. 사섬서는 저화의 사용 여부에 따라 몇차례 치폐(置廢)를 반복하다가 1460년에 전농시(典農寺)에 합속되었다. 하지만 이름과 실체가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사섬시로 개칭된 것이다.

그 뒤 1637년(인조 15)에 폐지되어 제용감(濟用監)에 합병되었다가 1645년에 호조판서 정태화(鄭太和)의 건의에 따라 다시 설치되었다.

소속 관리로는 정(正) 1인, 부정(副正) 1인, 첨정(僉正) 1인, 주부(主簿, 종 6품) 2인, 직장(直長, 종 7품) 1인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 기관도 역할이 점점 유명무실해지면서 1705년(숙종 31)에는 호조의 사섬색(司贍色)에 합쳐지고 말았다.

1590년 신지제(申之悌) 녹패(祿牌)

· 분류	고문서-교령류-녹패 / 정치·행정-임면-녹패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590년 / 만력 18년 정월 일 
· 형태사항	크기: 103x79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개(정방형) 4개(정방형) 착관:8 서압:8 착명:10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안내정보

1590년 선교랑행 사섬시 직장신지제의 봉급 문서.

1590년(선조 23) 이조(吏曹)에서 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 봉급 문서이다. 왕명을 받들어 선교랑(宣敎郎)행(行) 사섬시(司贍寺) 직장(直長)신지제에게 금년 제 14과의 녹봉을 내려준다는 내용이다. 그 아래에는 실제로 녹봉을 수령한 기록이 남아있다. 춘하추동 네 차례 1. 4. 7. 10 월에 지급되었으므로, 네 번의 기록이 남아있다. 받은 물건은 쌀, 콩, 배 등으로 모두 법정량과 동일하다. 녹봉을 관리하는 광흥창(廣興倉)관원과 함께 관리를 규찰하는 감찰(監察)도 입회하여 공동으로 서명을 하고 있다.

상세정보

1590년(선조 23) 선교랑행사섬시직장신지제의 녹봉 문서.

萬曆 18年(1590)정월 모일에 吏曹에서 申之悌(1562~1624)에게 내린 祿牌이다. 왕명을 받들어 선교랑행사섬시직장(宣敎郎行司贍寺直長)신지제에게 금년 庚寅年에 第 14 科의 祿을 내린다는 내용이다. 녹봉은 實職을 기준으로 하므로 從 7 品 直長으로 근무하고 있던 신지제는 제 14과의 녹봉을 받게 되었다.

그 아래는 실제로 수령한 기록이다. 春夏秋冬 4 차례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결락으로 월일기록이 유실되었다. 나머지 두 차례는 4월 11일과 10월 11일이다. 四孟朔에 사급하되 제 14과 종 7품은 12일에 지급한다는 법전 규정이 거의 잘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때마다 받은 곡식, 포, 저화 등도 법전과 다를 바 없다.

참고문헌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 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집필자 : 권오정

원문텍스트원문범례

吏曹奉

敎賜宣敎郎行司贍寺直長申之悌

今庚寅年第拾肆科祿者

萬曆十八年正月日

正郎

判書參判參議臣申[着名]

佐郎臣盧[着名]

庚寅 中米一石造米三石田米一石造米 1 石太二石布二匹楮貨二丈

監察[着名][署押]

廣興倉[着名][署押]

庚寅 四月十一日中米一石造米四石太一石布一疋

監察[着名][署押]

廣興倉[着名][署押]

庚(寅) 中米一石造米三石田米一石麥二石布二疋

監察[着名][署押]



廣興倉[着名][署押]

庚寅 十月十一日造米四石太二石布一疋

監察[着名][署押]

廣興倉[着名][署押]

1591년 신지제(申之悌) 녹패(祿牌)

· 분류	고문서-교령류-녹패 / 정치·행정-임면-녹패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591 년 

· 형태사항	크기: 92x77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서명(개)	착관:1 서압:1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7) 녹패 / 녹패 / 380 ~381 쪽



안내정보

1591 년 승의랑행 사섬시 직장신지제의 봉급 문서.

1591 년(선조 24) 이조(吏曹)에서 신지제(申之梯: 1562~1624)에게 발급한 봉급 문서이다. 오랜 세월 전해지다 보니 본문은 떨어져 나가고 전하지 않는다. 뒷면에 표지로 사용한 쪽에 승의랑(承議郎)행(行) 사섬시(司贍寺) 직장(直長)신지제의 금년 녹봉이라고 다소 장식적인 스타일로 기록되어 있어 그의 것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안쪽 면 아래에 한 차례 봉급을 받아간 기록이 남아있다. 신묘년(辛卯: 1591)정월 11 일이므로, 본 문서 또한 이해 정월에 발급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직장은 종(從) 7 품이므로 제 14 과(科)의 녹봉을 받는다. 그가 받아간 곡식과 물건도 이 규정과 거의 일치한다. 그는 이해 2 월에 사헌부(司憲府)의 감찰(監察)로 자리를 옮겼다. 종 6 품 직이므로 새로 봉급 문서를 받았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본 봉급 문서에는 정월에 수령한 기록만 남아있는 것이다.

상세정보

1591 년(선조 24) 승의랑행사섬시직장신지제의 녹봉 문서.

1591 년(선조 24)에 吏曹에서 申之梯(1562~1624)에게 내린 祿牌이다. 결락이 심하여 녹패 본문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背面에 承議郎行司贍寺直長신지제의 금년 祿이라는 기록을 통해 그의 녹패임을 알 수 있다. 안쪽 하단에는 녹봉을 수령한 기록이 남아있다. 辛卯年 (1591)正月 11 일에 수령한 것으로 보아 본 녹패 또한 이해 정월에 발급되었을 것이다. 수령한 물목으로 보아 第 14 科의 春期 祿俸이다. 廣興倉관원의 서명도 결락되어 전하지 않는다. 그는 당해 2 월 초 8 일에 司憲府監察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 까닭에 정월에 수령한 기록만 남아 있다. 녹봉은 실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 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집필자 : 권오정

원문텍스트원문범례

[背面]

承議郎行司贍寺直長申之悌 今年回祿

辛卯正月十一日中米一石造米三石田米

牟造米一石太二石布二疋楮貨二丈

監察 [着名][署押]

승의랑(承議郎) : 정6품 상계이다. → 문산계

신묘년 녹패(祿牌)

· 분류	고문서-교령류-녹패 / 정치·행정-임면-녹패
· 작성주체	발급: 이조(吏曹)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신묘
· 형태사항	크기: 90x44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7) 녹패 / 녹패 / 382 ~쪽



유지(有旨) (5)

1602년 신지제(申之梯) 유지(有旨)

· 분류	고문서-교령류-유지 / 국왕-왕실-교령-유지
· 작성주체	발급: 국왕:선조(國王:宣祖) / 수취: 신지제(申之梯)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02년 
· 형태사항	크기: 38x44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2) 유지 / 유지 / 327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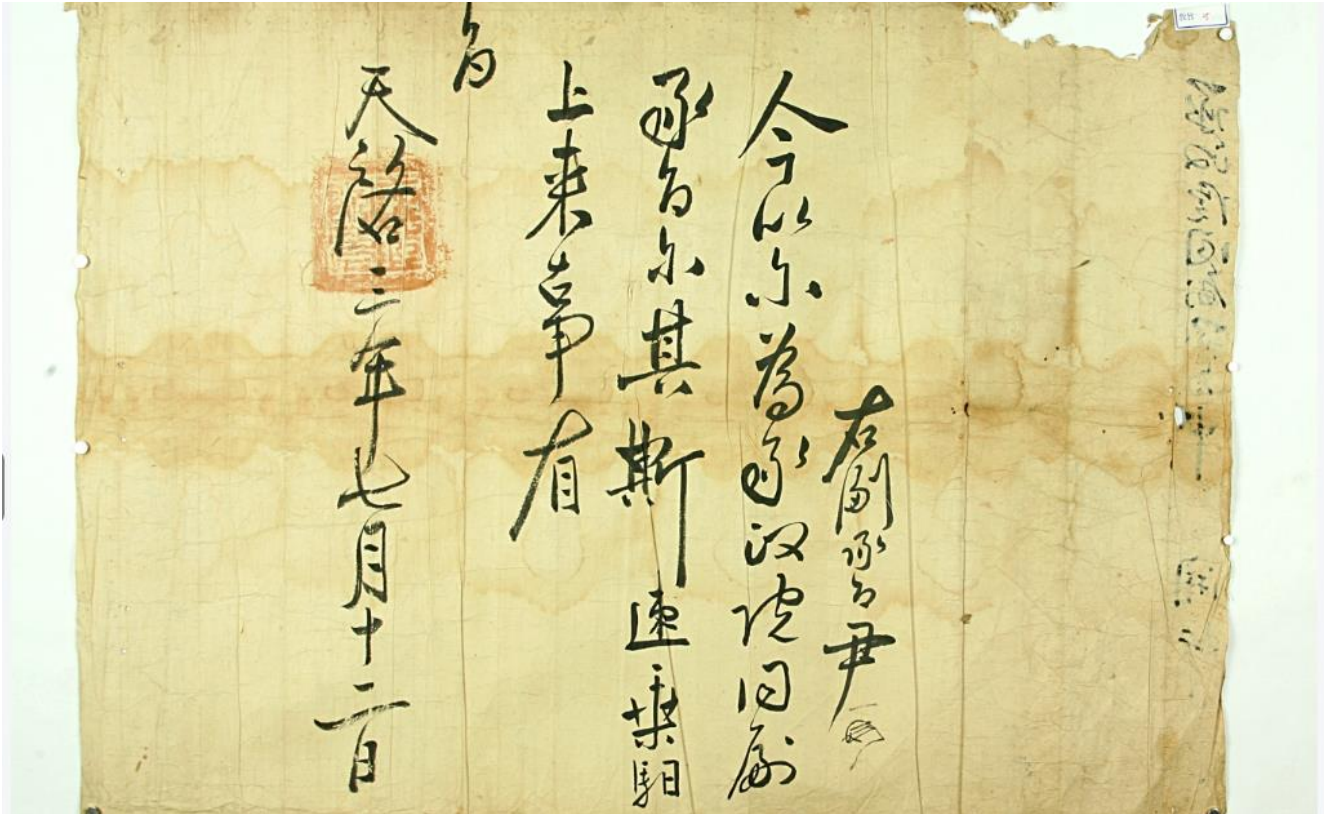
旨
 今爾校正廳郎廳更為被抄
 爾其乘駟斯速上來事有
 萬曆三十年七月初七日
 同副承旨 權

1605년 신지제(申之憐) 유지(有旨)

旨
 今以爾為司憲府持平爾其
 斯速上來事有
 萬曆三十三年五月十五日
 右副承旨 鄭

司憲府持平申之憐開狀

1623년 신지제(申之悌) 유지(有旨)



1645년 신흥망(申弘望) 유지(有旨)

· 분류	고문서-교령류-유지 / 국왕·왕실-교령-유지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흥망(申弘望)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45 년 
· 형태사항	크기: 50x59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右承旨李_子
 今以甫為承政院注
 書甫其斯速上來事
 有
 旨
 順治二年正月二十八日

1652년 신흥망(申弘望) 유지(有旨)

左副承旨李_子
 今以甫為司憲府持平甫其斯
 速乘駟上來事有
 旨
 順治九年七月十三日

유지(有旨)

조선시대 승정원의 담당 승지를 통하여 명령을 받는 이에게 전달된 왕명서(王命書).

교서는 대개 문신이 제진(製進)하여 왕의 열람 또는 청문을 거쳐 하자가 없으면 이를 서사(書寫)하고 보인(寶印)을 찍은 다음 송부(送付)한다. 하지만 유지는 담당 승지가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 내용을 직접 써서 자신의 직함과 성(姓)을 쓰고 수결(手決)한 다음 명령을 받는 이에게 송부하여 주는 중요한 왕명서이다.

유지는 그 자체가 곧 왕명이고, 그 내용은 국가 기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지의 전달과정에서의 실착(失錯)은 무거운 죄로 다스렸다. 유지는 왕조실록 등 관찬사서에도 전제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과 관계 있는 것이 적지 않으므로 사료로서의 가치가 크게 평가된다.

현전하는 유지로는 규장각 도서 중에 임진왜란 당시에 발한 것이 25 장 정도 보존되어 있으며, 조선 후기의 것도 약간 전하여지고 있다. 지방에도 임진왜란 전후에 유성룡(柳成龍)·권응수(權應銖) 등에게 내린 것을 비롯하여 약간의 유지가 전래되고 있다.

교서(敎書) (1)

1617년 광해군(光海君) 교서(敎書)

· 분류	고문서-교령류-교서 / 국왕·왕실-교령-교서
· 작성주체	발급: 국왕:광해군(國王:光海君)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17 년 
· 형태사항	크기: 35x176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1) 교서 / 교서 / 325 ~326 쪽

教昌原



申之悌明火作賊鄭大立
等盡心跟捕賞加書

王若曰凡民罔不懟既姦究之就誅懟
賞待有功宜勉勵而增秩茲循舊
典用需殊恩惟爾剛以濟柔學而為
政昔乘駘於憲府凜凜生風逮割雞
於名城恢恢游刃尤善鈞鉅寔稱神
明從容若治繩元惡斯得談笑一投
足餘黨自平閭里獲安桴鼓不警言
禁暴除害雖職分之當為紀績酬
勞豈嘖笑之久愛用加爾通政大夫職

口文八...

賞待有功宜勉勵而增秩茲循舊
典用需殊恩惟爾剛以濟柔學而為
政昔乘駘於憲府凜凜生風逮割雞
於名城恢恢游刃尤善鈞鉅寔稱神
明從容若治繩元惡斯得談笑一投
足餘黨自平閭里獲安桴鼓不警言
禁暴除害雖職分之當為紀績酬
勞豈嘖笑之久愛用加爾通政大夫職
如故於戲念此遐遠軫德化之未霑
褒汝賢良冀安集之是務故茲
教示想宜知悉

萬曆五年五月十二日



교서(教書)

국왕이 내리는 명령서. 훈유서(訓諭書). 선포문(宣布文)의 성격을 가진 문서.

임금이 내리는 일반적인 명령인 교를 성문화한 것을 말한다. 황제가 내릴 경우에는 조서 또는 칙서 라고 한다. 중국 진 때부터 황제의 명령을 조, 왕후와 제후의 명령을 교라고 하였으므로, 중국의 제후국인 조선에서도 임금의 명령서를 교서라고 했다.

그러나 원의 지배를 받기 전의 고려와 대한제국기에는 조서라고 했다.

교서는 대개 문신이 작성하여 왕이 열람하거나 청문을 거친 후 반포되었다.

즉위교서·구언교서·공신녹훈교서·배향교서·문묘종사교서·반사교서 등이 있고, 그밖에 사여·권농·사명훈유·봉작·책봉·가례·납징·포장 등의 경우에도 교서를 내렸다.

황제가 내릴 경우에는 조서(詔書) 또는 칙서(勅書)라고 한다. 원나라의 지배하에 들어가기 전의 고려와 대한제국시대에는 조서라 하였다. 한편, 왕세자가 왕을 대신해서 대리청정할 때 왕세자가 내리는 유훈을 영서(令書)라고 하는데 이것은 왕의 교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교서의 종류는 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즉위교서(卽位敎書) 구언교서(求言敎書) 공신녹훈교서(功臣錄勳敎書)·배향교서(配享敎書)·문묘종사교서(文廟從祀敎書)·반사교서(頒赦敎書)가 있다.

그 밖에 사여(賜與)·권농(勸農)·사명훈유(使命訓諭)·봉작(封爵)·책봉(冊封)·가례(嘉禮)·납징(納徵) : 혼인 때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예물)·포장(褒獎) 등의 교서가 있다. 교서 또는 조서는 대개 문신이 제진(製進)하여 왕의 열람(閱覽) 또는 청문(聽聞)을 거치게 된다.

교서는 원문서(原文書) 그대로 전래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는 발급된 교서의 수에 비하면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원문서 상태의 교서는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관찬사서(官撰史書)와 <<동문선 東文選>> 등에 전재되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전재 또는 전사(傳寫)된 것은 고문서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것이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교서 가운데에는 관찬사서나 문집류에 전재되지 않은 것이 상당수 있으며, 그 중에는 그 시대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긴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 많이 있다.

특히 현재 전해지고 있는 교서 중에는 개인에게 내려진 공신교서(功臣敎書) 사명훈유교서(使命訓諭 敎書)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그 가문의 영예를 상징하는 유산이기 때문이다.

공신교서로서는 1401년(태종 1)에 마천목(馬天牧)에게 내린 좌명공신교서(佐命功臣敎書), 1468년(세조 13)에 허종(許琮)에게 내린 적개공신교서(敵愾功臣敎書)가 있다.

또한 보물 제 651 호로 지정된 익산연안이씨종중문적(益山延安李氏宗中文籍) 중 1472년(성종 3)에 이승원(李崇元)에게 내린 좌리공신교서(佐理功臣敎書), 1507년(중종 2)에 신은윤(辛殷尹)에게

내린 정국공신교서(靖國功臣敎書), 1604 년(선조 37)유성룡(柳成龍)에게 내린 호성공신교서(扈聖功臣敎書) 등이 있다.

사명훈유교서로서는 1592 년에 도체찰사 유성룡에게 내린 교서, 1638 년(인조 16)에 충청도관찰사 김육(金堉)에게 내린 교서 등이 있다.

교서의 문서식은 '교구함성명(敎具銜姓名)(또는 모모인등(某某人等)서(書) 왕약왈운운 (王若曰云云) (사실(事實))고자교시상의지실(故茲敎示想宜知悉) 년호기년모월모일(年號幾年某月某日)' 이다. 구언교서일 경우에는 결사(結辭)를 '고자교시상의지실(故茲敎示想宜知悉)' 대신에 '자이정부체 여지의포교중외함사문지(咨爾政府體予至意布敎中外咸使聞知)' 또는 '자이신료체여지회 (咨爾臣僚 體予至懷)'라고 쓴다. 연호 위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는다.

교서는 국왕이 내리는 명령서·훈유서(訓諭書)·선포문의 성격을 가진 문서이다. 이를 황제가 내릴 때에는 조서(詔書) 또는 칙서(勅書)라고 하고, 왕세자가 대리청정시 내릴 때는 영서(令書)라고 하였다.

교서도 그 내리는 성격에 따라

즉위교서(卽位敎書)·구언교서(求言敎書)·공신녹훈교서(功臣錄勳敎書)·배향교서 (配享敎書)·문묘종사교서(文廟從祀敎書)·반사교서(頒赦敎書) 등 매우 다양하다. 이 외에도 사여(賜與)·권농(勸農) 사명훈유(使命訓諭)·봉작(封爵)·책봉(冊封)·가례(嘉禮)·납징(納徵)·포장(褒獎) 등의 교서가 있다. 교서는 대개 문신이 제진(製進)하여 왕의 열람 또는 청문을 거친 뒤 반포하였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교서는 개인에게 내려진 공신교서나 사명훈유교서 등이 일반적이다 .


선지제(申之悌)의 교서는 1617 년(광해군 9) 5 월 12 일에 창원부사였던 신지제에게 명화적 정대립 등을 체포한 공로를 기린다는 뜻으로 내려진 공신교서이다.

이 교서의 형식은 일반 교서와 다를 바 없이 「교구함성명서 왕약왈운운...고자교시상의지실 년호모년 모월모일」敎具銜姓名書 王若曰云云.....故茲敎示想宜知悉 年號某年某月某日 이라고 하는 형식을 그대로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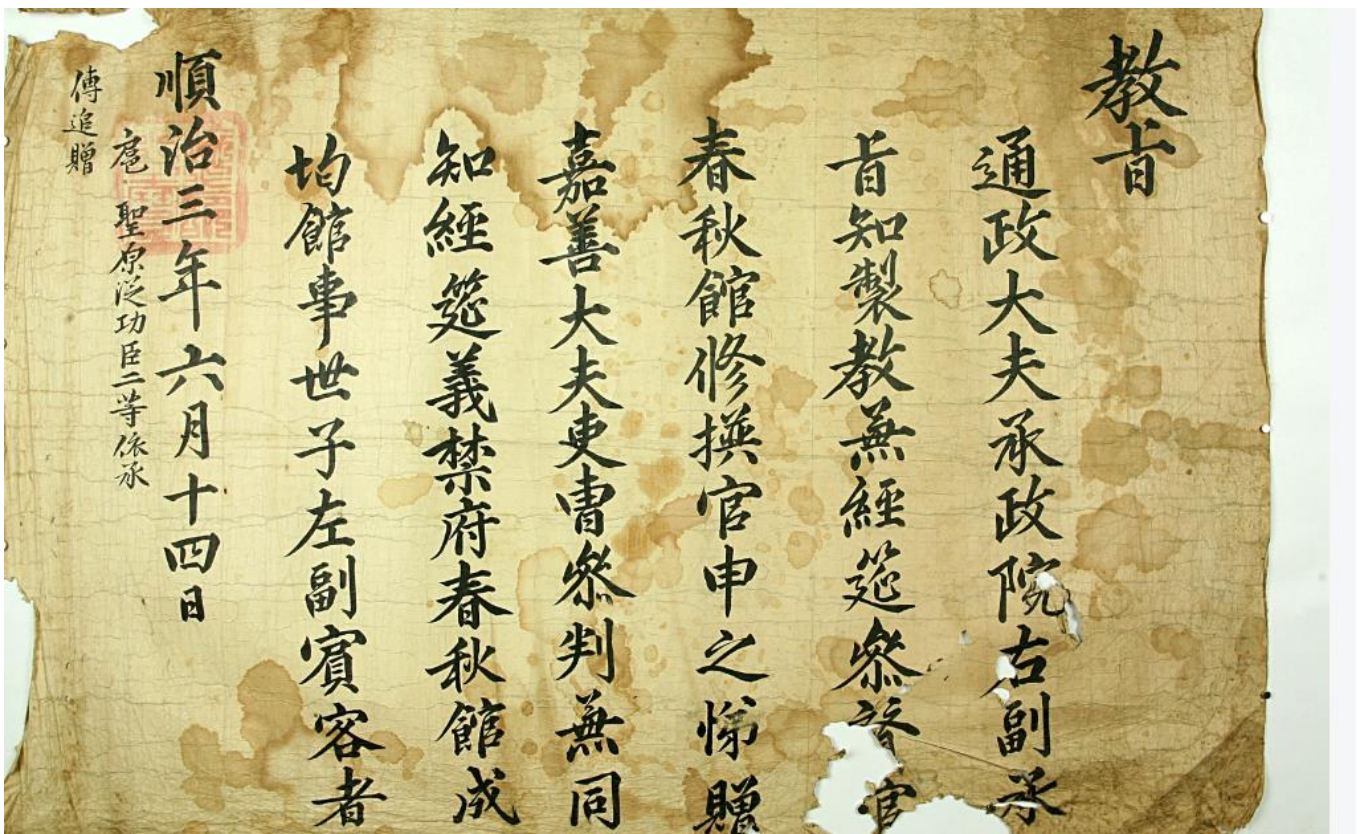
즉「교창원부사신지제명화작적정대립등진심근포상가서(教昌原府使申之悌明火作賊鄭大立等盡心跟捕賞加書)」라 하고, 왕약왈 운운이라고 하여 명화적 정대립 등을 잡은 공로로 통정대부직(通政大夫職)을 내린다는 내용을 적고, 교서의 마지막에 연호와 연월일을 적은 다음 연호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이 같은 절차는 조정의 논상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교서를 내리기에 앞서서 5 월 초 6 일에 통정대부를 더하는 교지가 내려졌었다.

추증교지(追贈教旨) (2)




1646년 신지제(申之悌) 추증교지(追贈教旨)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국왕:인조(國王:仁祖)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46년 
· 형태사항	크기: 65x86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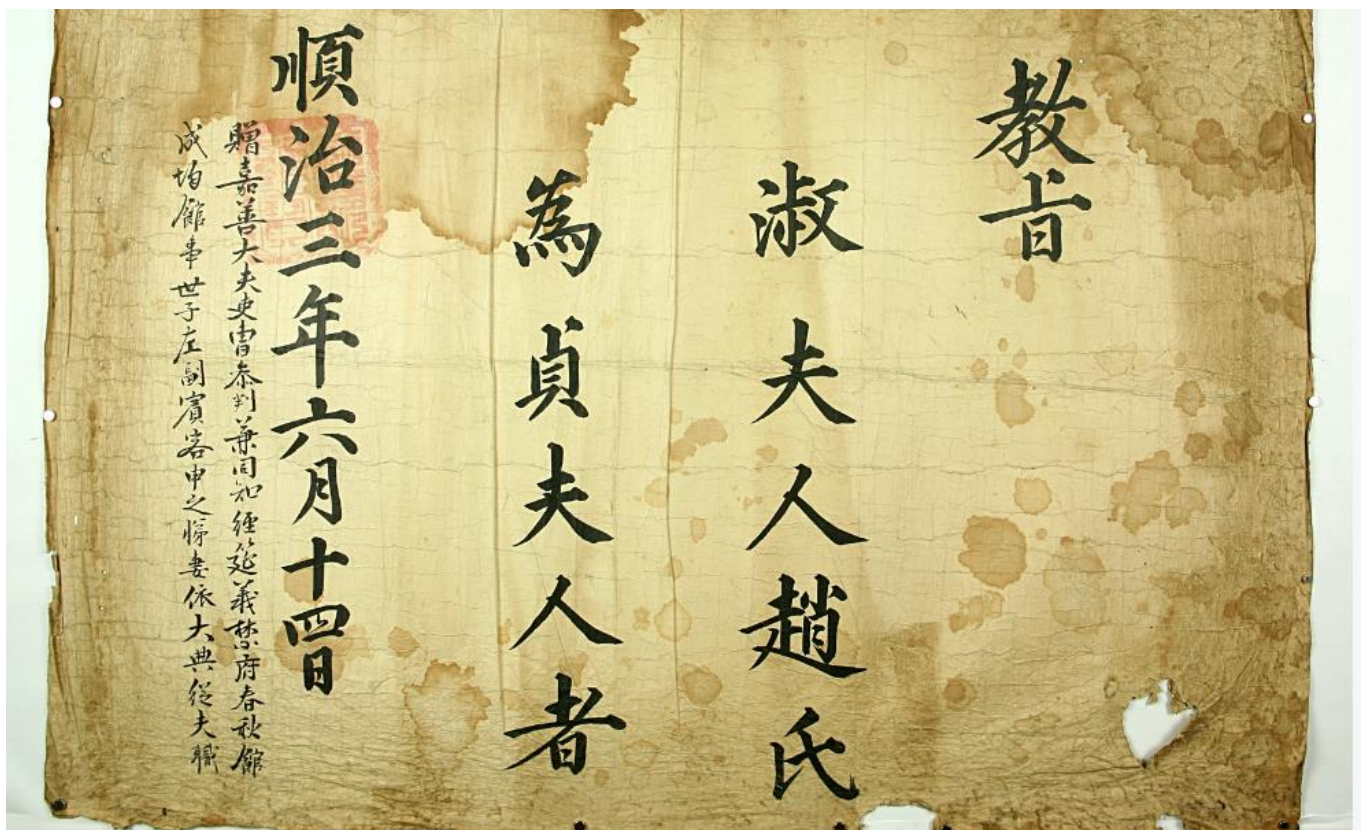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6) 추증교지 / 추증교지 / 376 ~쪽



1646년 조씨(趙氏) 추증교지(追贈教旨)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국왕:인조(國王:仁祖) / 수취: 조씨(趙氏)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46년 
· 형태사항	크기: 65x82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6) 추증교지 / 추증교지 / 377 ~쪽



교지(教旨)

조선시대 국왕의 명령 및 의중을 담은 언사, 또는 국왕이 관직 등을 내리는 문서 가운데 첫 행에 '교지(教旨)'라고 표기하는 문서군을 지칭하는 용어.

조선시대 국왕의 말씀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동시에 국왕이 관직 및 과거 합격 증서, 토지나 노비, 기타 특권을 내리는 문서 가운데 첫 행에 '교지'라고 적는 문서군을 통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라는 용어가 사용되다가 1435년(세종 17)에 교지를 사용하도록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들 교지라고 지칭된 문서는 관직 임명 문서인 고신(告身), 과거 합격 증서인 홍패(紅牌)·백패(白牌), 추증 교지(追贈教旨), 시호 교지(諡號教旨), 면역 교지(免役教旨), 사패 교지(賜牌教旨) 등이 있다.

교지라고 부르는 문서는 조선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아 '왕지'라고 표기되었다. 『세종실록』 17년 9월 3일 기사에 "속전(續典)에는 판(判)을 고쳐 교(教)라 하고, 왕지를 고쳐 교지라 하였는데도, 관교 작첩(官敎爵牒)과 외리(外吏)의 정조(正朝)·안일 차첩(安逸差貼)에는 그대로 왕지라 일컫게 되니, 실로 불편합니다. 청컨대, 모두 교지로서 고치소서."라는 이조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내용이 있다. 이 기사는 우선 당시까지 국왕의 명령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던 왕지는 1435년 9월 시점에 법전에 반영하여 교지로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아울러 문서 형식상 첫 행에 교지라고 적는 문서가 이 시점까지는 왕지라고 적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실제로 현재까지 남아 있는 문서를 보면, 1435년 6월 29일 정자신(鄭自新)에게 발급된 고신이 왕지라고 표기한 문서의 하한선이고, 교지라고 표기한 문서는 1436년(세종 18) 6월 3일 이정(李禎)에게 발급된 고신이 상한선이다.

조선은 국초부터 국왕의 명령이 담긴 말을 '교(教)'라고 칭하였다. '지(旨)'는 여기에 담긴 국왕의 의중을 가리킨다. 따라서 교지란 국왕의 명령이 담긴 말씀으로 풀이할 수 있다. '교'를 발할 수 있는 자는 형식상 국왕 한 사람뿐이었지만, 실제로는 세자·중전·대비 등의 말씀을 교지로 명명한 기록도 종종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지위에 따라 사용하는 글자에는 엄밀한 구분이 있었다. 즉 중전이나 대비의 말씀은 '내지(內旨)', 세자의 말씀은 '영지(令旨)'로 구분하였던 것이다. 1443년(세종 25)에 국왕이 "지금부터 모든 전교(傳敎)하는 일은 모두 교지로 칭하라."라고 명령한 바가 있다(『세종실록』 25년 8월 29일). 이 기사를 통해 교지가 국왕의 명령인 '교'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지는 국왕의 명령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였지만, 특정 종류의 문서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왕이 관직 및 과거 합격 증서, 토지나 노비, 기타 특권 등을 수여하는 문서는 첫 행에 교지 두 글자를 적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러한 기능을 하는 같은 양식의 문서를 교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흔히 교지라고 칭하였던 문서에 대해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았다. 먼저 관직 임명 문서인 4품 이상 고신(告身)이 있었고, 과거 합격 증서는 홍패와 백패가 있었다. 또한 죽은 관원이나 그

자격에 준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내리는 추증 교지, 시호를 내리는 시호 교지, 조선 초기 향리에게 면역을 해주며 작성한 면역 교지, 공신 등에게 노비와 토지 등을 사여하면서 내린 사패 교지 등이 있다. 이상의 문서들은 조선시대로부터 현재까지 교지로 명명되고 있다.

문서의 형식은 첫 행에 '교지'라고 적고, 본서 본문은 수취자의 이름과 국왕이 사여하는 관직, 물품, 특권의 내역을 적은 후 '~자(者)'로 마감하였다. 그리고 발급 연월일을 적었다. 이는 교지라고 불리는 문서군의 공통된 형식이다. 그러나 발급 연대 위에 찍은 어보(御寶)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었다. 즉 관직을 임명하는 고신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고, 문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흥패와 생원·진사시 합격 증서인 백패에는 과거지보(科擧之寶)를 찍었다. 그 외 추증 시호·면역·사패 등의 교지에는 임명장과 같은 시명지보를 찍었다.

교지의 수혜 범위, 교지의 작성 및 전달 방식은 조선시대 왕권의 범위와 영향력,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발현 양상이 어떠하였는가를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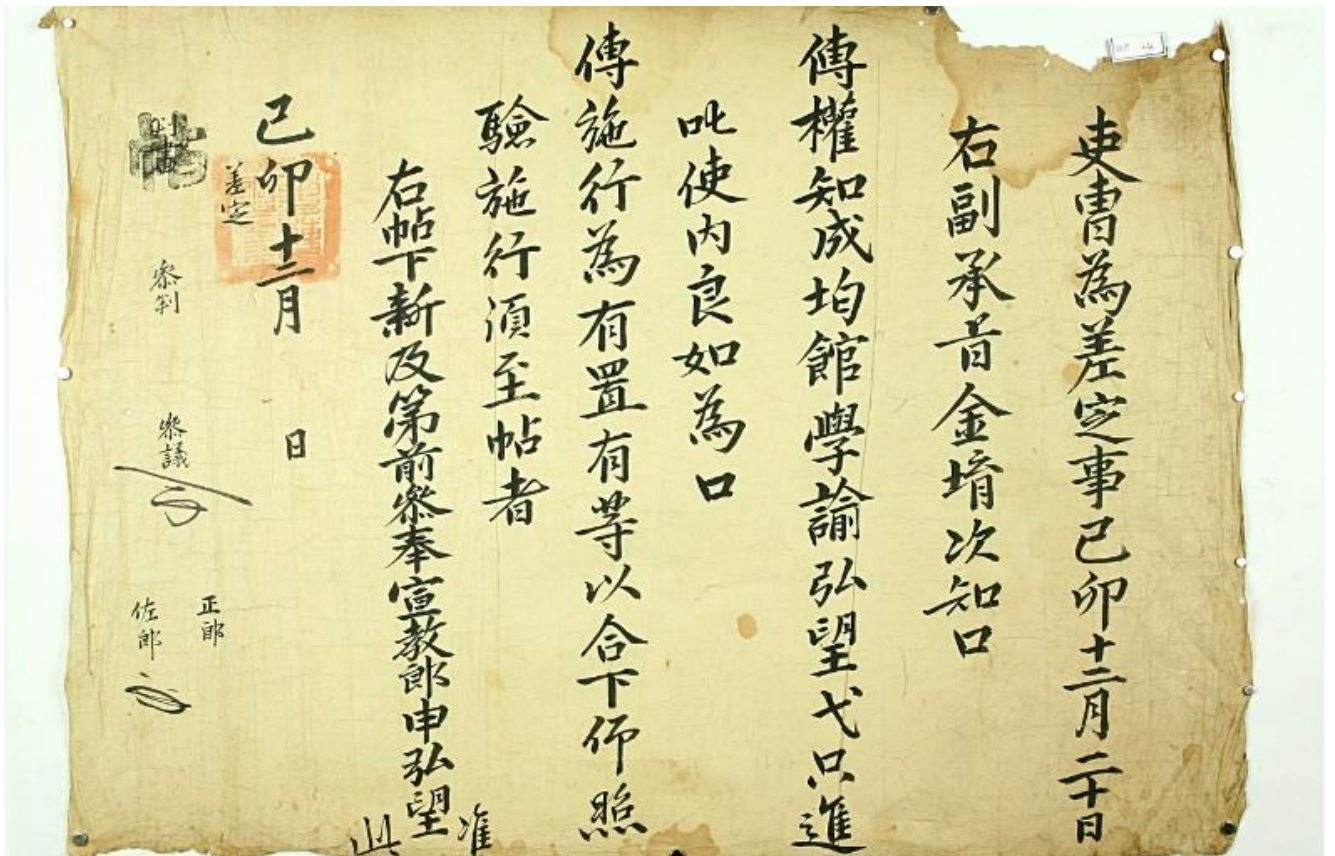
차첩(差帖) (1)

1639년 신흥망(申弘望) 차첩(差帖)

· 분류	고문서-교령류-차첩 / 정치·행정-임면-차첩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흥망(申弘望) 
· 작성지역	이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39 년 
· 형태사항	크기: 52x69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이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8) 차정첩 / 차정첩 / 383 ~쪽



차첩(差帖)

조선시대 관아의 장이 무록직(無祿職) 속관을 임명하면서 발급한 문서.

조선시대에 직사(職事)가 있더라도 녹봉이 정해지지 않은 관직자를 임명하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국왕의 결재를 받아서 임명하는 구전 차첩(口傳差帖)과 봉교 차첩(奉敎差帖) 및 국왕의 결재 없이 관아의 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관장 차첩(官長差帖)이 있었다.

조선시대 정직 관원 임명장이던 고신(告身)이 직사가 있는 경우 국가의 녹(祿)이 주어진 반면, 직사가 있더라도 녹봉이 정해지지 않은 관직자가 있었다. 그들을 임명하는 문서가 차첩이었다. 차첩에는 국왕의 결재를 받아 임명하는 구전 차첩과 국왕의 결재 없이 관아(官衙: 조선시대에는 현재의 관서를 관아라고 하였다) 장(長)의 직권으로 임명한 관장 차첩이 있었다.

구전 차첩은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첩식(帖式)」에 따라 작성하되 기록 방식에 일정한 투식이 있었다. 형식은 첫 부분이 “모조위차정사(某曹爲差定事)”로 시작하고 이어서 “연호기년모월모일 도승지신성명차지구전(年號幾年某月某日 承旨臣姓名次知 傳)”이라 하여 승지가 담당하여 국왕의 구전 결재를 받은 일자를 기록하였다. 임명 내용은 “모관 성명 천전본모 익지 진질사내량여위 구전시행위유치유등이(某官姓名遷轉本某弋只進叱使內良如爲口傳施行爲有置有等以)”와 같이 기록한 후 첩의 결사 투식인 “합하양조함시행수지첩자(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를 썼다. 본문 다음에는 수취자, 발급 일자를 적고 관사의 인장을 찍었다. 고신에 사용하지 않는 이두를 구전 차첩

에 쓴 것은 문서의 격이 고신보다 낮았음을 의미한다. 구전 차첩의 임명 내용은 산관(散官)의 언급이 없이 직사만을 규정하고 있다.

구전 차첩의 발급처는 이조·병조·충훈부·충익부 등이며, 임명 대상은 7~9 품의 무록관 및 무품 군관(無品軍官), 문음(門蔭) 및 공신 자손의 체아직이었다. 이들에 대하여는 녹봉이 주어지지 않는 대신 직역을 마친 후 나름의 특전이 주어졌기 때문에 출사를 원하는 문음 자손의 경쟁이 치열한 관직이 되기도 하였다.

기타 봉교 차첩은 문서의 첫 부분이 구전 차첩과 동일하게 “모조위차정사”로 시작하지만, 그 다음은 구전 차첩과는 달리 “왕명 일자+임명 내용+위유치유등이(爲有置有等以)”를 기록한 뒤 첩의 결사 투식인 “합하양조험시행수지첩자”를 기록하였다. 왕명 일자 부분에 왕의 구전 정사(口傳政事)를 언급하는 대신 계(啓)·계하(啓下) 등으로 결재받았음을 표시하였다. 봉교 차첩 역시 문서 내에 이두가 사용되며, 본문 내용에 산관에 대한 언급이 없이 직사에 대해서만 규정하였다. 기타 봉교 차첩의 발급자는 병조·선원록청·장용영 세 곳으로 나타나며, 임명 관직은 모두 품계가 정해져 있는 관직이었지만 녹을 받지 못하는 군직이나 외직이었다.

관장 차첩은 국왕의 결재 없이 관아의 장이 자신의 직권으로 소속 하리 등을 임명하는 임명장이었다. 문서식은 『경국대전』의 「첩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다. 첫 부분은 “모관위차정사(某官爲差定事)”로 시작하여 임명되는 사람의 이름과 임명 직책을 기록한 뒤 첩식의 결사인 “합하양조험시행수지첩자”를 적고 문서의 수취자를 기록한 뒤 발급 일자를 쓰고 관인을 찍었다. 문서의 형식은 구전 차첩보다 훨씬 자유로워 첫 부분 이후의 임명 내용 부분에 정해진 투식이 없었으며, 때로는 「첩식」의 결사까지도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현전하는 관장 차첩의 발급자는 이조·장례원·춘추관·사포서·선원록청의 경야문과 관찰사 통제사 절제사·진영장·수군우후·만호·수령 등의 외아문의 장이다. 이들이 임명한 직책은 모두 자신이 속한 관사나 군대, 행정 단위의 직임이었다. 경야문의 경우 이조에서는 섭호장과 종묘 제례의 제관, 장례원에서는 각종 의례의 집행관, 춘추관에서는 사고 참봉, 사포서는 강주인(江主人), 선원록청은 참군과 서사 낭청을 임명하였다. 지방의 경우에는 관찰사 통제사 진영장 절제사 수군우후 만호·수령 등이 발급자이며, 이들이 관사 내의 군임, 향임 등을 임명하였다. 그 중 가장 많은 수가 남아 있는 것은 수령이 발급한 차첩이다. 수령이 임명한 직임은 향소의 임원, 향약소의 임원, 면임·이임, 향교·원우의 임원, 제관, 향리, 군교 등으로 다양하며, 이들 문서를 통해 수령의 지방 통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시대 9품 이상의 임명장으로 정직 관원을 임명할 때 발급한 고신과 달리 무록직 속관을 임명하는 별도의 임명장 차첩이 있었다는 것은 임명상의 위계가 존재하였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고신에 왕의 직접 임명과 왕의 결재를 통한 관사의 임명이 존재하듯이 차첩에도 왕의 결재를 받은 임명과 왕의 결재 없이 관아의 장이 직권으로 속관을 임명하는 두가지 위계의 임명이 있었다. 차첩 임명에서는 무품 관원 혹은 임명받은 자가 품계를 지닌 사람일지라도 품계와 상관없이 직사만을 언급하며 직사의 수행을 잘할 것을 지시·당부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국가의 녹이 정

해지지 않았으므로 관아에서 내려주는 요(料)를 받거나 혹은 역적(役的)인 성격을 띤 업무 수행으로 취급되어 요조차 받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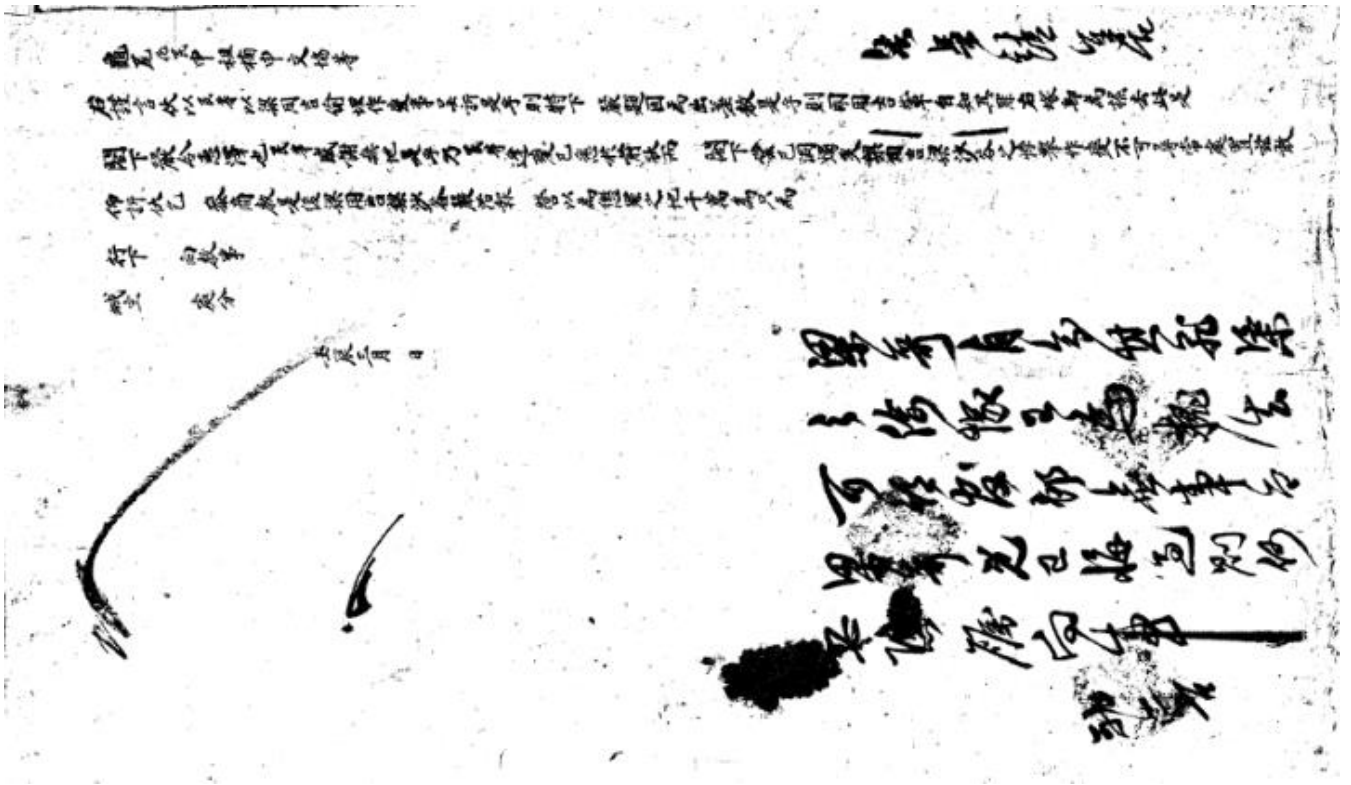
소차계장류 (3)

소지(所志) (3)

1832년 신조남(申祖楠)·신문협(申文協) 등 소지(所志)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신조남(申祖楠), 신문협(申文協) / 수취: 의성현(義城縣)
· 작성지역	구미  / 경상북도 구미시 
· 작성시기	1832 년 
· 형태사항	크기: 98x6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이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2. 소차계장류 / (1) 소지류 / 소지류 / 387 ~쪽



소지(所志)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 청원서, 진정서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

발괄[白活]이라고도 한다. 소지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일어난 일 중에서 관부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민원에 관한 문서이므로 그 내용은 아주 다양하다.

또한 소지는 소지를 올린 사람들의 이해 관계와 직결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소중히 보관해, 현존하는 고문서 가운데 토지문기(土地文記)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소지를 수령이나 관계 관부에 올리면 해당 관원은 소지의 내용을 살펴본 뒤 그 소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데김[題音]' 또는 '제사(題辭)'라고 한다.

데김은 소지의 왼쪽 아래 여백에 쓰며, 그 여백이 모자라면 뒷면에 계속해서 쓰기도 하고 별지를 붙여 쓰기도 하였다. 데김을 적은 소지는 그 소지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주어 그 판결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소중히 보관하도록 하였다.

『유서필지(儒胥必知)』에는 이노명위산송사소지(以奴名爲山訟事所志), 상인여제류산송소지(常人與儕類山訟所志), 채송소지(債訟所志), 사부가단묘직탈역소지(士夫家單墓直頃役所志), 탈면환호소지(頃免還戶所志), 목부사도리배수유소지(牧府使都吏輩受由所志), 이방성명소지(吏房姓名所志), 절각소지(折脚所志), 위친환용전우고소지(爲親患用全牛膏所志), 원역연로자대소지(員役年老子代所志), 가권봉적후입지소지(家券逢賊後立旨所志), 전답문권실화후입지소지(田畝文券失火後立旨所志), 권매전답불환퇴소지(權賣田畝不還退所志), 구타소지(歐打所志) 등 소지의 구체적인 서식이 실려 있다.

민원에 관한 일은 고대 사회부터 있어왔으나 '소지'라는 용어와 문서 형식은 현재 전해지는 자료 중 고려시대의 지정 14년 노비문서(至正十四年奴婢文書, 보물 제 483 호)에서 처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 형식이 거의 그대로 조선시대에 계속 쓰였음을 볼 수 있다.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의 소지에는 연호를 써서 소지를 올린 연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조선 중기 이후의 소지에는 간지(干支)로 표시되어 있어서 소지를 올린 사람이 유명인이거나 어떤 가문의 일괄 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소지를 제외하고는 연대를 추정하기가 어렵다.

소지 문서에는 등장(等狀), 단자(單子), 원정(原情), 상서(上書), 의송(議送) 등이 있으며, 그 서식에는 각각 차이가 있다. 등장은 여러 사람이 연명해 관부에 올리는 소장, 청원서, 진정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이고, 단자는 대개 사대부가 직접 관부(관찰사 또는 수령)에 올리는 소장이나 진정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이다.

『유서필지』에 사부이산송사정단자(士夫以山訟事呈單子), 대본관체귀친정영문단자 (待本官遞歸親呈營門單子)의 구체적인 서식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단자는 대부분 산송 관계이다.

또한 원정도 대부분 소장의 성격을 띠며, 산송 관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상서도 소장이나 진정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이다. 그 내용으로는 산송과 효행, 탁행(卓行) 등을 표창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며, 등장의 경우와 같이 연명(連名)해 관부에 올린다. 관찰사(또는 순찰사), 수령, 암행어사 등 누구든지 올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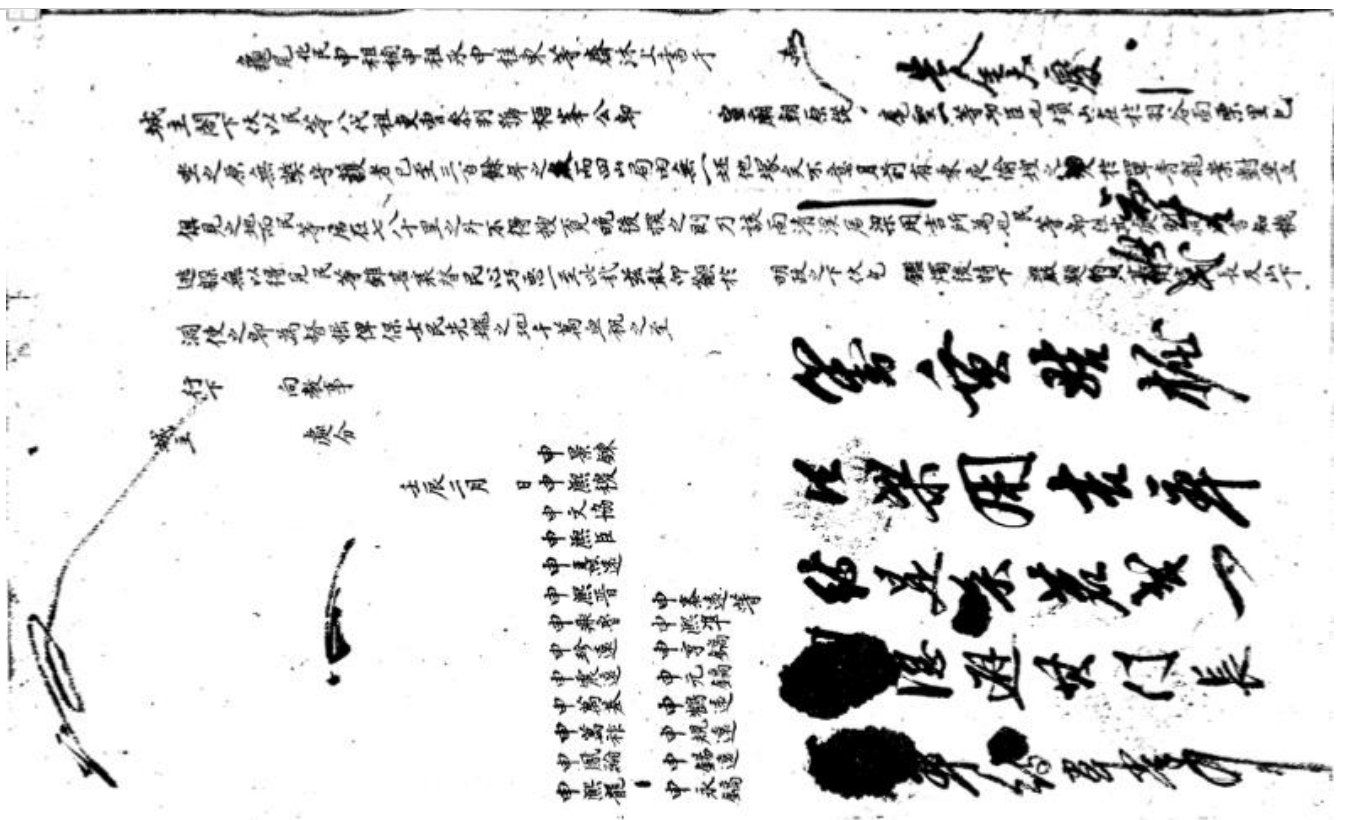
의송은 관찰사에게 올리는 문서로서, 양반(관원)이 자기 집 종의 이름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의송에 내리는 처분을 제사라고 하는데, 이 문서는 그 당시의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자료이며 사회사 연구에 일차적인 자료가 된다.

1832년 신조남(申祖楠)·신조승(申祖承) 등 상서(上書)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신조남(申祖楠), 신조승(申祖承) / 수취: 의성현(義城縣)
· 작성지역	구미  / 경상북도 구미시 
· 작성시기	1832년 
· 형태사항	크기: 91x57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2. 소차계장류 / (1) 소지류 / 소지류 / 384 ~쪽



상서(上書)

조선시대 민원서(民願書)인 소지류(所志類).

그 서식은 다른 소지류와 약간 다르다. 이 문서는 관찰사·수령·암행어사 등에게 올리며, 그 내용은 산송(山訟)과 효행(孝行)·탁행(卓行)의 정려(旌閭)를 위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원이 많은 경우는 연명하여 올리기도 한다. 이 상서는 전래되고 있는 것이 많으며, 시대는 대개 조선 중기 이후에서 말기까지의 것이 대부분이다.

상서를 접수한 관찰사나 수령은 이를 검토하고 그 처분을 문서의 좌편 하단의 여백에 써놓는다. 이것을 제음(題音) 또는 제사(題辭)라 한다. 이와 같이, 처분한 내용을 써서 상서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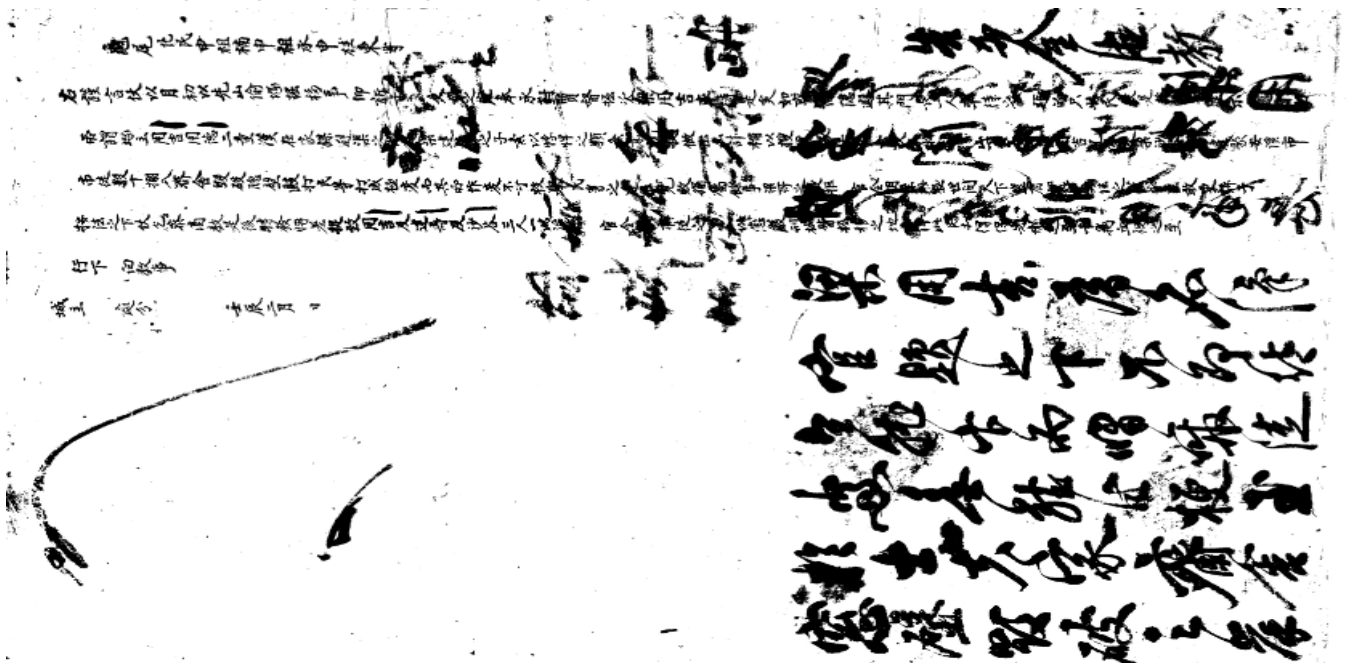
그러나 수령에게 1차 올려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 3차 계속 올리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찰사에게 올리게 된다. 이러한 상서는 당시의 사회사정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조선시대 관원이 세자에게 올리던 글.

세자가 대리청정(代理聽政)할 때 올리는 것으로서, 왕에게 올리는 소에 해당한다. 조선시대는 대리청정한 세자가 몇 명 되지 않았고, 그 기간도 길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서 원본이 전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

상서의 사료적 가치는 상소와 비슷하며, 조선왕조실록 및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 등 관찬서(官撰書)와 문집류에 전재(轉載)된 것도 참고자료가 된다. 그 서식(書式)은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상서의 피봉을 쓰는 법은 상소와 같으나, 상소에서 '상전(上典)'이라 쓰는 곳에 '세자궁(世子宮)'이라 쓰면 된다.

1832년 신조남(申祖楠)·신조승(申祖承) 등 상서(上書)



증빙류 (34)

시권(試券)- (9)

1627년 신흥망(申弘望) 시권(試券)-부(賦)

· 분류	고문서-증빙류-시권 / 정치.행정-과거-시권
· 작성주체	발급: 신흥망(申弘望)  / 수취: 예조(禮曹)
· 작성시기	1627년 
· 형태사항	크기: 80x206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5. 시문류 / (1) 시권 / 시권 / 423 ~425 쪽



奏之則哇咬嘲詔流蕩煩淫志荒心逸不能自禁是
和者平者邪者辟者何莫不由于吾心也
以動其本必以正乎豈可以聲音外務為哉嗚呼
章美哉風六室五英至矣融靈禽儀虞而
舞九觀周而歎德非擊拊之是事本心和之彼
降而趨邪樂忽變於古昔豈未改於絲竹流已
條條破天真而忘內耽耳目於噪梨園曲
帝昏愚玉樹歌成陳王荒樂阮心地之淫放
養之莫察吁嗟乎樂云樂云豈鏗鏘之徒求
心之動也阮和則其樂盡矣心之動也去和則其

章噫大雅之不作久正聲之微茫今樂亦猶古
而後可行何幸 聖人有作后變在下導揚罷武
唱改章夏衛無所措其邪鄭無所容其淫余二
鼓舞盛化何聆音於明辰撫古規而激昂
箴於楓宸箴曰人心之動因樂以宣禁止邪辟內
靜專大哉和德乃樂之用於樂鼓鍾盍慎其
歎王舍國詩
貞德天子抱多為沈風一為真帝王除荒
台在天我振文道林阮氣神營快之德
太平休之強者才者王正月可元中吉
音形美非徒來進東之精獨有後
州強烟離初楓信信趨陰台年
心何出富之毛世沈社神款
約款西厚浮因中洞奕動玉
因重派勇力第學我法法原國

시권(試券)-

과거응시자들이 제출한 답안지 혹은 채점지를 지칭하는 용어.

시지(試紙) 또는 명지(名紙)라고도 한다. 시권의 종류는 시험의 종류에 따라 제술(製述) 시권, 강서(講書) 시권, 사자(寫字)·역어(譯語) 시권으로 나누어진다.

제술은 문장 구사능력과 대체의 요점을 파악할 수 있는 인물을 선발하는 시험으로서 시(詩) 부(賦)·송(頌)·책(策) 등을 시험하였다. 따라서 제술 시권은 시험 과목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응시자 자신이 스스로 창안해서 작성하는 논술시험 답안지이다.

글을 시권에 쓴다는 의미에서는 잡과(雜科)의 사자(寫字) 시권과 같은 성격을 지니지만, 사자가 단순히 출제부분의 내용을 베껴쓰는 데 비하여 제술은 응시한 당사자가 새로운 글을 창안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제술 시권에 기재되는 내용은 크게 응시자 본인이 기록한 것과 시관(試官) 내지 사관(四館)에서 기록한 것 등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응시자가 녹명(錄名)하기 전에 시권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① 시험 답안, ② 응시자 본인의 직역(職役)·성명·나이·본관·거주지, ③ 부·조·증조의 직역과 성명, 외조의 직역·성명·본관(생부가 있으면 외조 옆에 기록)이 있다.

시관이나 사관(四館)에서 기록·확인하는 사항은 ④ 자호(字號), ⑤ 과차(科次)와 점수, ⑥ 등수, ⑦ 근봉(謹封) 여부, ⑧ 착인(着印 : 科擧之寶)이다. 이 가운데 자호는 천자문(千字文) 순으로 연번호(連番號)를 매기되, 천자문 위에 일(一)·이(二)·삼(三)·사(四)까지의 숫자를 써 넣어 관리하는 데 편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십황(十皇)'이라 했을 때는 '황(皇)'자 축(軸)의 열번째 시권이란 표시가 된다.

자호의 기재방법은 시대에 따라 약간씩 달랐지만 대개의 경우 봉미(封彌)한 시권을 뜯기 전에 답안부분과 봉미부분의 오른쪽 중간에 큰 글씨로 자호를 매기고 아울러 답안부분과 봉미부분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같은 자호를 매겼다. 그런 다음 오른쪽 중간의 자호부분을 오려내어 합격자가 결정될 때까지 따로 보관했다가 당락이 결정되면 그 합격 시권의 봉미부분을 붙였다.

시험 점수는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으며 대개 붉은 글씨로 기록하였다. 등급은 9등 내지 12등급이 있으며, 일지상(一之上)·중(中)·하(下), 이지상(二之上)·중·하, 삼지상(三之上)·중·하, 차상(次上)·차중(次中)·차하(次下), 갱(更)·불(不) 등으로 표시하였다. 과차(科次)는 과거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등급을 일지일(一之一)·이(二)·삼(三), 이지일(二之一)·이·삼, 삼지일(三之一)·이·삼 등으로 기재하였다.

근봉(謹封)은 본인이 직접 써 넣었으나 그 글씨를 보고 부정이 생겨 근봉이란 도장을 만들어 찍었다. 시권에 찍은 도장은 과거지보(科擧之寶)였다. 이 외에도 틀린 부분을 고쳐 적은 부분과 시권의 연결부분에도 이 도장을 찍었다.

과거응시자가 답안을 작성할 때는 정해진 격식에 따라야 했으며, 그 양식은 시(詩)·부(賦)·송(頌)·책(策)·경의(經義)·서의(書義) 등 제술과목에 따라 달랐다. 우선 공통으로 기재하는 사항으로 시제(試題)를 들 수 있다. 시·부 등 비교적 짧은 것의 시제는 그대로 베껴 썼지만, 시제가 긴 대책·경의 등의 경우에는 '문운운(問云云)' 등으로 문제를 생략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한편 시제의 상하에 시·부·대책 등의 시험명을 써 넣었다. 시·부는 아래쪽, 대책과 경의는 대(對)·서의(書義)·예의(禮義)·역의(易義)·시의(詩義)라고 명기하여 위쪽에 기록하였다. 또한 경의나 대책 답안에는 첫부분과 끝 그리고 서술 중에 우(于)·근대(謹對)·신복유(臣伏惟)·신복독(臣伏讀) 공유(恭惟) 등의 글을 써야 했다 그리고 시·부에서는 운자(韻字)를 반드시 맞춰야 했다.

이와 같은 격식에 어긋나거나 운이 맞지 않으면 합격하기 어려웠고, 합격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곤 하였다. 이 밖에도 제술 답안에는 각 과목마다 답안의 분량을 정해, 경의·대책 등은 글자의 수, 시·부는 구수(句數)로써 하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을 작성해야만 입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까다로운 격식에 맞지 않아 합격자가 시취액수를 못 채우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한편으로는 문장이 극단적인 형식 위주로 변해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유교가 아닌 이단(異端)의 글을 쓰거나 인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 밖에도 답안에 써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이나 피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다. ① 기불양화(祈佛禳禍) 등 이단의 풍속과 글, ② 노자·장자·순자의 글, ③ 왕의 이름(御諱), ④ 색목(色目) 발언, ⑤ 패유(悖謬)한 글, ⑥ 초서(草書) 사용, 낙서·오서(誤書) 등이 그것이다.

과거의 종류와 과목이 다양했듯이 시권도 시험 과목과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제술시험의 시권 이외에 문·무과와 역과의 강서 시권과 사자 시권이 바로 이것들이다.

강서는 사서삼경 등 경전의 임문(臨文 : 책을 눈앞에 펴 놓고 읽는 일) 또는 배강(背講)·배송(背誦)을 통해 시취(試取)하는 방법이므로 답안 작성을 위해 시권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절차상 시험문제를 내고, 채점내용을 기록해야 했기 때문에 시권이 필요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작성된 시권이 바로 강서 시권이다. 즉 강서 시권이란 창작한 글을 쓴 답안지가 아니라 시험출제 과목(주로 사서삼경)과 그 점수를 기록한 일종의 구두(口頭)시험의 채점표인 셈이다. 따라서 시권의 양식도 제술 시험과는 다르다. 강서 시권은 안동의 의성김씨 김성일(金誠一) 가문, 해남의 해남윤씨 윤선도(尹善道) 가문 등에 전하고 있다.

해남윤씨 윤이석(尹爾錫, 1626~1694)의 시권의 경우 시험과목으로는 <<주역 周易>><<시전 詩傳>><<서전 書傳>>·<<논어 論語>>·<<맹자 孟子>>·<<중용 中庸>>·<<대학 大學>> 등 삼경사서가 치러졌다. 그리고 과목 아래로 그 과목의 시험문제, 점수(순통·통·략·조(純通·通·略·粗)), 시관의 서명(署名)이 있다. 시험문제 오른쪽에는 채점된 점수를 합한 종합점수(十一分半), 그리고 천자문의 자호가 있다.

잡과의 사자(寫字) 시권도 시험명을 명시한 점, 문제와 답안을 함께 기록한 점, 사조(四祖)를 모두 기록한 점 등은 제술 시권과 같다. 다만 시험문제에서 사자할 부분을 자(自)~지(止)로 표시해 주었고, 답안 내용이 제술 답안처럼 창안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한 책의 일부를 베꼈다는 점에서 제술 시권과 다르다.

시권의 구입은 중국과 달리 원칙적으로 응시자 본인이 부담하였다. 그리고 구입한 시권은 크기와 품질이 일정한 규격에 맞아야 했다. 또한 격식에 맞추어 봉미(封彌)한 뒤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다. 제출된 시권은 검사관(檢査官: 주로 搜挾官)들이 일일이 규격에 맞는지를 조사한 뒤 답인(踏印)하여 응시자에게 되돌려 주었다.

응시자가 시권을 구입하고 제출했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시권의 품질이 다를 수 있었다. 경제력이 풍부한 양반가의 자제들은 두껍고 질이 좋은 시권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빈한한 선비들은 시권을 마련하지 못해 거리를 분주히 뛰어다니는 형편이었다.

«경국대전»이나 기타 법전에는 시권의 품질을 따로 규정해 두지는 않았으나 하품(下品)의 도련지(濤鍊紙)를 사용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아주 사치스러운 시권은 시관이 불살라 버리거나 당사자를 적발해 치죄하는 등 빈부에 따라 시권의 품질이 달라지는 경우가 되도록 억제하였다.

봉미법은 호명법(糊名法)이라고도 하여 통용해서 쓰고 있으나, 봉미와 역서는 응시자의 신분과 성명 등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게 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호명은 말 그대로 호명지(糊名紙)를 풀로 붙여 이름을 가린다는 뜻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아 과거 실시 초기에 행해졌다. 호명법은 전대에 비해서는 큰 발전이었지만 이 방법도 호명지를 들추어 이름을 엿보는 등 부정의 소지가 짙었다.

이를 개선한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봉미법이었다. 봉미란 응시자의 사조·나이·성명·거주지 등 신원이 기재된 부분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말아올려, 말아올린 부분의 상단·중단·하단 세 곳에 구멍을 내고 끈으로 묶은 다음 '근봉(謹封)'이라는 글을 써 넣거나 도장을 찍어 두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시험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한 방법이었다.

이러한 방법의 봉미가 처음으로 행해진 것은 고려시대였다. 조선시대에는 이 방법에서 더 발전하여 봉미한 부분과 답안부분에 '감합(勘合)'을 쓰고, 그 중간을 칼로 오려내어 따로 보관하는 방법이 동원되었다.

이는 사사로운 행위를 막기 위한 더욱 철저한 방법이었으나 그 일이 번거롭고 잘라낸 부분을 서로 맞추는 과정에서 부정이 생기는 등 폐단이 있었으므로, 비교적 인원수가 적은 회시·전시 등의 시험에서만 시행되었다. 응시자가 많은 지방의 향시에서는 신분기재란을 시권의 오른쪽 상단에 작게 만들어 오른쪽 아래 또는 오른쪽으로 말아올려, 이것을 다시 끈으로 묶는 방법을 흔히 썼다.

역서법은 응시자가 작성한 문장의 필체를 시관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즉, 서리를 시켜 시험내용을 다른 지면에 옮겨쓰게 한 뒤, 이를 보고 채점하도록 한 제도였다. 중국에서는 봉미법과 거의 동시에 시행되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야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과거제 자체도 그렇지만 봉미·역서법도 중국에서 먼저 시행된 제도였다.

과거응시자들이 시험을 치르기 전에 응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공원(貢院) 내지는 녹명소(錄名所)에 제출하고, 여기서 미제출된 것이 없고 제출된 서류에 아무 이상이 없어야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고려시대에 공원에 제출된 서류는 행권(行券)·가장(家狀), 그리고 답안 작성에 필요한 시권이였다. 고려시대의 녹명은 예부(禮部) 공원에서 담당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알성시(謁聖試) 정시(庭試)·춘당대시(春塘臺試) 등을 제외한 대·소과에서는 대개 녹명소를 설치하고 녹명관(錄名官)이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

녹명은 시험 전이나 당일예 경시(京試)는 사관(四館) 관원이, 향시(鄉試)는 감사가 인원을 차정(差定)하여 담당케 했다. 복시(覆試)에서는 예비시험인 조홀강(照訖講: 學禮講, 典禮講)에 합격한 첩문(帖文)이 있어야 녹명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응시자들은 녹명소에 나가 사조단자(四祖單子)와 보단자(保單子)를 제출해야 했다. 사조단자는 응시자의 직역·성명·나이·본관·거주지와 부·조·증조·외조의 직역·성명·본관 등을 적은 것이다. 그리고 보단자는 보결(保結)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육품 이상의 관원이 서명한 신원보증서였다.

서열의 경우에는 내외 및 처번 원근족친으로서 문·무과 출신인이 착명(着名)한 보단자를 제출해야 했다. 사조단자와 보단자를 제출하게 한 것은 응시자의 사조 가운데 서열(庶孽)이나 공·사천(公私賤)이 있는지의 여부, 정거(停擧) 또는 죄적(罪籍)에 올랐는지의 여부, 본도(本道) 거주 여부, 조정 관원이 향시에 응시하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본도 출신 여부를 심사하는 이유는 응시자가 원거주지가 아닌 곳, 즉 자기 소유의 노비나 농토가 있는 지역에서 관의 진성(陳省: 지방 관서에서 중앙 관서로 보내는 각종 보고서)을 받아 응시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중기에 오면 응시자가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서열 허통 후에는 허통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회 변화에 따라 녹명 시에 확인하는 내용과 절차도 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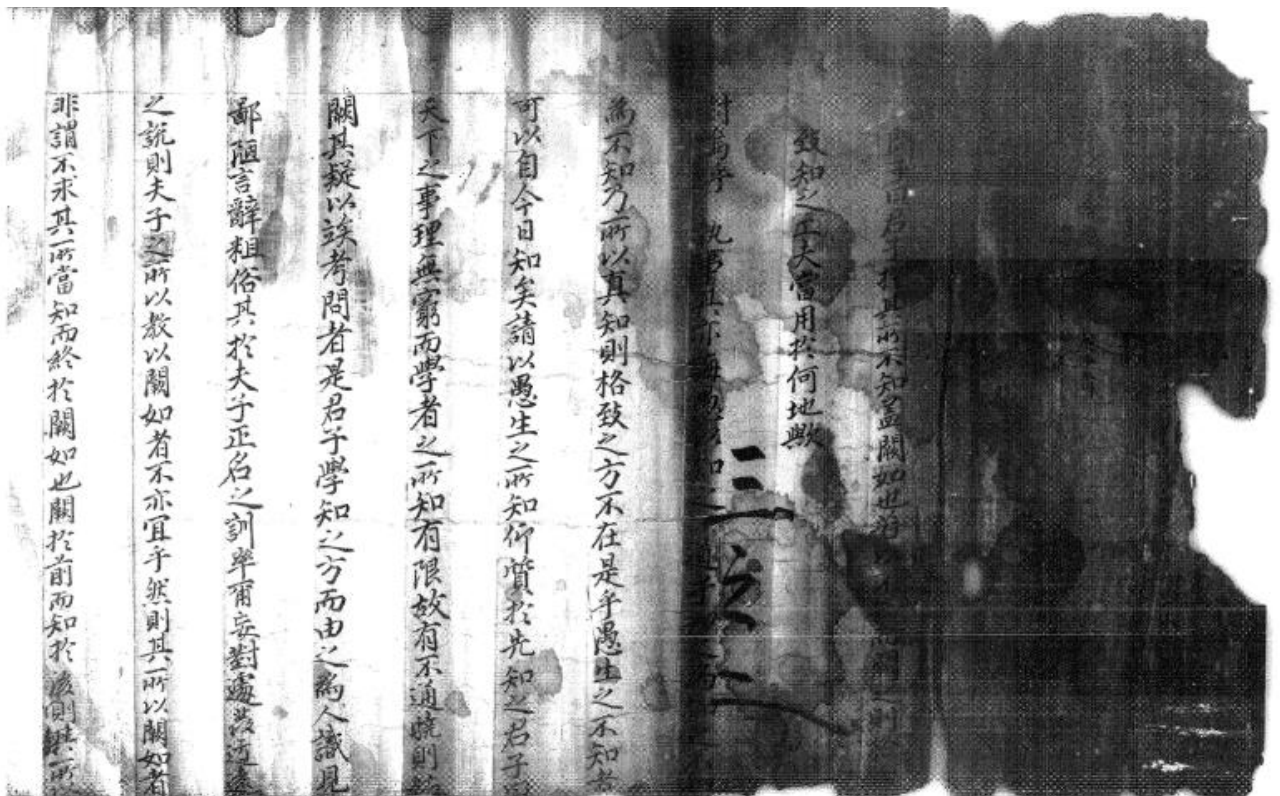
시험이 끝나고 그 결과가 발표되면 시권은 합격 시권과 낙방 시권 [落幅] 으로 분류된다. 합격 시권은 뒤에 합격증서인 홍패(紅牌)·백패(白牌)와 함께 영광의 상징으로서 본인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나 합격하지 못한 시권, 즉 낙방 시권은 일괄적으로 호조에 옮겨져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다. 한 예로 <<중종실록>>에는 함경도절도사가 빈한한 군사들에게 낙폭(落幅) 시권으로 옷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는 기사도 있다.

1760년 신한로(申漢老) 시권(試券)-대책(對策)

· 분류	고문서-증빙류-시권 / 정치.행정-과거-시권
· 작성주체	발급: 신한로(申漢老)
· 작성시기	1760 년 
· 형태사항	크기: 73x203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5. 시문류 / (1) 시권 / 시권 / 426 ~429 쪽





대책(對策)

과거시험의 한 과목 또는 그때 작성하는 문장.

과거 응시자가 왕이나 황제의 물음에 대답한 치국(治國)에 관한 책략을 대책이라고 한다.

옛날에 종이가 없었을 때는 글씨를 비단이나 대나무쪽에 썼다. 그러나 비단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서민들은 주로 대나무를 쪼개어 썼다. 책(冊)이라는 글자도 글씨를 쓴 대나무쪽을 모아 대나무 위쪽에 구멍을 뚫고 끈으로 묶은 것을 형상화한 글자이다. 이처럼 대나무를 가느다랗게 쪼개어 사용한 것을 책(策)이라고 했다. 중국 한나라 때의 시험 방식이 매우 특이했는데, 수험생들이 같은 문제를 놓고 푸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앞에 문제가 적힌 책(策)을 놓고 답을 써야만 했다. 즉, 책을 마주 대하고 정답을 궁리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험을 대책(對策)이라고 했다.

중국 한나라의 관리등용시험에서 그 시초를 찾을 수 있다. 정사(政事)나 경의(經義)상의 문제를 내면 수험자는 거기에 답하였는데, 책(策)은 이때 문제를 써놓은 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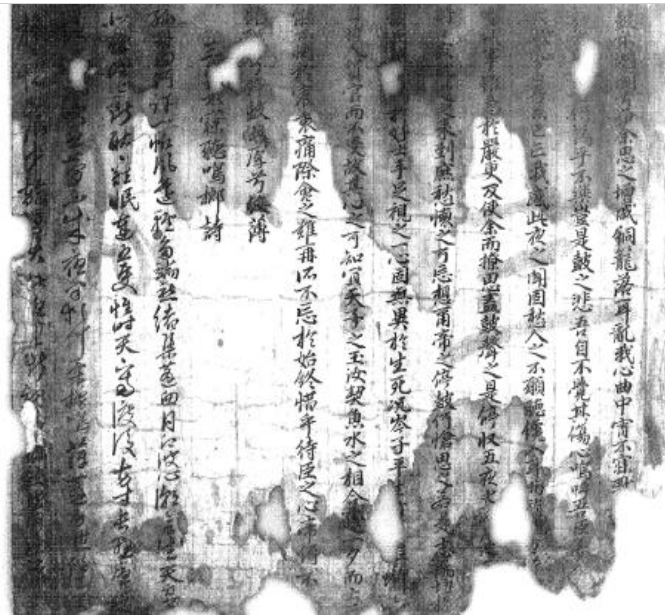
우리 나라는 958년(광종 9) 과거를 처음 실시하면서 시무책(時務策)도 함께 물었다. 조선시대도 고려의 과거제를 계승하여 문과시의 종장(終場)에 대책을 시험하여 『경국대전』 이후의 법전에도 거의 변동없이 준수되었다.

역대의 사기(史記)나 시무에 관한 것이 주로 출제되었다. 그러나 과거 이외 때로는 일반관리에게 책문을 내어 그 성적에 따라 자품(資品)을 올려 포상을 하기도 하고, 관리나 관직에 있지 않은 지식인들도 정치적 의견을 시무책의 형식으로 밝히는 경우가 있었다.

시권(試券) 미상

· 분류	고문서-증빙류-시권 / 정치.행정-과거-시권
· 형태사항	크기: 81x84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5. 시문류 / (1) 시권 / 시권 / 442 ~443 쪽



後之所從前之所從也新之所治舊之所治也
 也後因於前新探於舊而相受之矣相承之
 義何同於惟况惟前而前革之者以此為務
 者良有以也則文承之道其不輕而重也較然
 惟其如是故代其職承其事而不務毀其前不
 疵其舊則文承之道得而政無不治代其職承其
 事而必效其舊則政其舊則文承之道失
 而政隨以亂然則恩元為之義高而備
 相續也相承也而維其遠代之間或有指蓋之
 亦不明言其過顯其非者蓋豈非盡文承之
 而自夫世降俗人心一夫和承之結之而
 害之念先起後之人未必不於前而務摘前人
 新之政未必勝於舊而務斤舊政之非終必陷人
 之禍而庶政之壞亂恆由於斯則上之人可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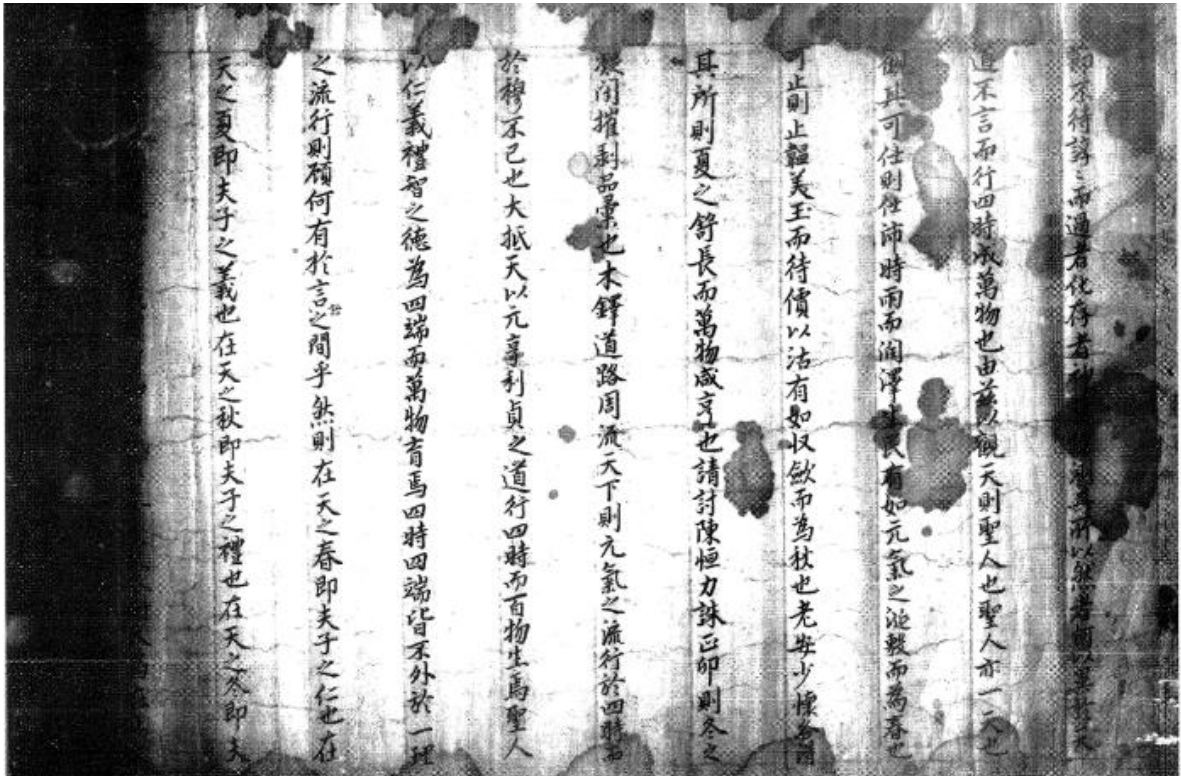
夫予之許其忠存好之敬其德存愛其子庶
 將死屬政太叔而猛以搜焉班超之微選
 尚而寬以勉焉噫猛以濟寬以濟猛各因其人
 有所合則於文承相勗之道果無所媿矣聞角企
 望謂其諸已而累年予不顧淮南末代宿昔而日
 向前事之猶記噫義之扶怨之心堅老致憾之言
 固非仁人君子之量而忠信之士亦自有以自取之則
 愚亦知所求之誰也至若漢陽合符交代者門生
 而去來之情可想矣金罪調元踐更者同尋白
 請之意蕭然矣嗚呼文承之際忠厚之所存而歷
 觀前古之人或能盡忠厚之道或不盡忠厚之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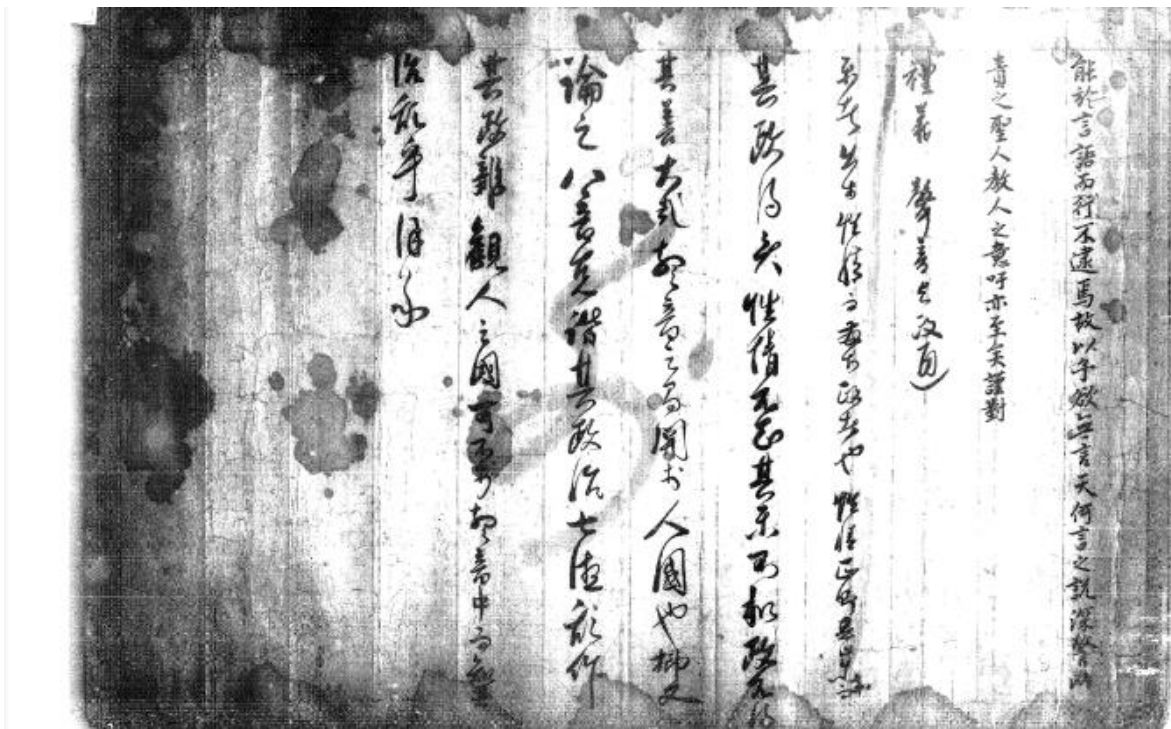
詩之意猶然矣嗚呼文承之際忠厚之所存而歷
 觀前古之人或能盡忠厚之道或不盡忠厚之道
 其其為大彰明較者也恭惟今日 聖上臨御
 天地之大昭乎日月之明也溫恭允塞之德新而
 新以政百廢師之群賢禮之則宜其人過之則言國事
 不務濟萬民之途可欽於西漢雍熙之風庶追於後
 而觀奈何近年以來播紳之同志學之掃地禮讓之
 廢如甚至播方外州郡補職之冗雜而備入之多在
 於文承予愚嘗試見之矣前若罷後若繼而作
 于上或或暴如屠伯昏如上偶而兀坐危堂橫
 大言曰我是良宰我是循吏而公財之耗政之
 則是前宰之過也巧行膏聽諂頌作氣勢焚
 越于肝膽山海於方寸惟恐搢裡之不暇簡易
 循理各任其長永叔之和平未開懷嫌報怨
 信忠良延壽之被錢相望是何 聖明之世
 心之不敏一至於此予愚也端居而念昔今
 人之禍之所起則曰文承焉則非文承之過
 則曰非守序之道也然則禍之

시권(試券)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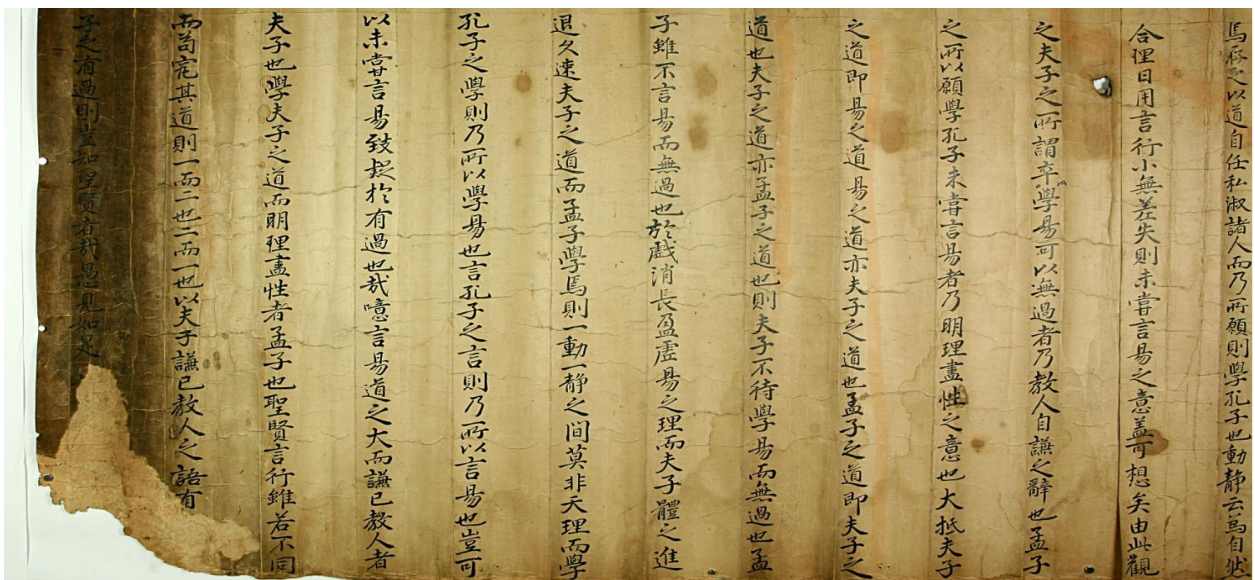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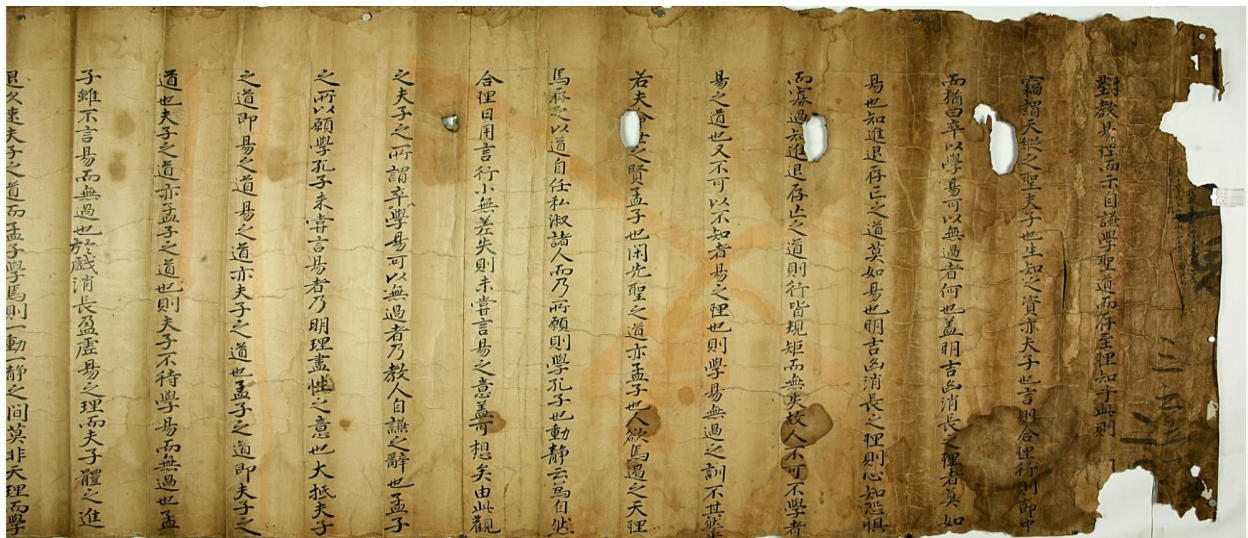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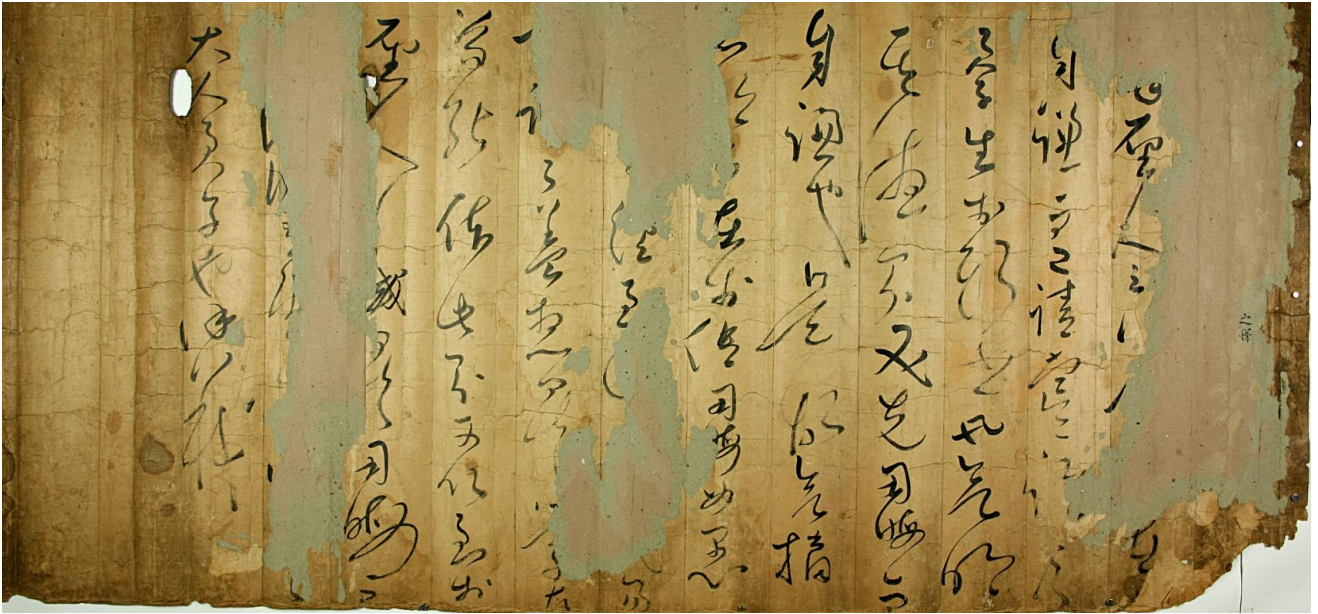
시권(試券) 미상





시권(試券) 미상





준호구(準戶口) (24)

호구장적에 의거하여 관에서 등급하는 문서.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호적제도가 성립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신라통일기의 소위 '민정문서(民政文書)' 또는 '장적(帳籍)'은 호적대장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호적제도가 확립되었고, 그 원칙은 3년에 한차례 호적을 개수(改修)하는 것이었으며, 그 제도는 조선시대에 계속되었다.

호적자료는 호구단자(戶口單子), 준호구(準戶口), 호적대장(戶籍大帳)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준호구는 호주(戶主)의 신청에 의해서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준호구는 소송시나

성적시(成籍時)의 첨부 자료로서, 또는 노비 소유[추쇄]의 자료로서, 또는 신분의 증명 및 가문 과시의 자료로서 필요했기 때문에 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대다수의 준호구는 호적 작성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왕조는 호구 파악을 목적으로 매 3년마다, 자(子)·묘(卯)·오(午)·유(酉)로 끝나는 식년에 호적을 작성하였다. 매 식년 초 호적 업무를 총괄하는 한성부에서 호적 작성에 관한 관문(關文)과 사목(事目)을 마련하여 도를 거쳐 각 읍에 전달하였다. 그러면 각 읍에서는 임시 기구인 호적소(戶籍所)를 설치하여 해당 직임을 선출하고, 면리에 전령을 보내 민간에 호적 작성을 알렸다. 민간에서는 이에 따라 호별로 호구단자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호구단자는 일반적으로 2통을 제출하였는데, 관에서는 지난 식년의 호적과 대조하여 1통은 돌려보내고, 1통은 해당 식년 호적 작성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식년의 전년(前年) 후반기에 호구단자가 수합되면 호적소에서는 앞 식년의 호적대장이나 호적중초(戶籍中草)와 비교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은 각 면리별로 선출된 풍헌(風憲)과 이정(里正)이 맡았고, 검토한 단자를 다시 돌려줄 때 이들도 수령과 함께 수결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 때 사실을 확인해 잘못된 곳을 바로잡고 통호(統戶)를 정하여 돌려주는 단자를 정단(正單), 앞서 주호(主戶)가 제출한 단자를 초단(草單)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오늘날 준호구로 알려진 것의 상당수는 호적 작성 과정에서 지급된 정단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같이 준호구는 가족 관계나 노비 소유권의 확인 등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관에 요청하면 발급 받는 것이기 하였지만 대개는 호적 작성과 관련하여 만들어졌다. 현존하는 준호구 가운데 354건을 검토한 결과 324건이 식년에 발급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즉, 준호구의 상당수는 호구 단자 제출 이후의 어떤 시기, 또는 호적 작성이 완료된 상황에서 호구 신고를 인증하는 문서로 관에서 발급한 것이었다.

준호구의 규식은 1428년(세종 10)에 정해졌는데, 그 뒤 성종대에 반포된 『경국대전』에 이 규식이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준호구의 기재 내용은 등급하는 연·월·일과 등급하는 관부, 의거한 장적, 주소, 호주의 직역, 성명·나이·본관, 호주의 4조(祖), 호주 처의 성씨·나이·본관, 호주 처의 4조, 술거자녀의 나이, 노비의 나이, 발급자의 수결(手決), 정정(訂正)의 유무 표시와 답인(踏印: 관인을 찍음) 등이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준호구는 1490년(성종 21) 단천군(端川郡)에서 심양(沈洋)에게 발급한 것이고, 이 외 1523년(중종 18) 한성부에서 심수평(沈守平)에게 발급한 것이 있다.

준호구는 호구단자·호적대장 등과 더불어 신분제도·가족제도·노비제도 등 조선시대의 사회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봉주공파의 전래 호적류는 24점으로 15세 흥망에서부터 24세 상기에 이르기까지 9대에 걸쳐 이어진 대부분의 준호구이다. 준호구에 기재된 이 가계의 전래 노비를 보면 제일 많은 시기가 도망노비를

포함하여 125 구 정도이고 상기대에 가서는 겨우 10 구 정도 유지하는 추세였다. 이러한 양상은 또한 조선후기의 사회변화와 더불어 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결과였다.

홍망은 울산부사, 강원도 도사, 승문원 판교 등을 역임하였는데, 그의 나이 67 세가 되던 1666 년(강희 5)의 준호구에 의하면 기재된 노비수가 45 구였다. 이는 도망노비와 가현노비(加現奴婢)를 포함한 숫자이다. 1675 년(강희 14)에 그의 손자 숙범(叔範)이 홍망에게서 전래 받게 되었고, 뒤에 많이 늘게 되어 강희 38 년 숙범의 준호구에 의하면 총 107 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것이 도망노비의 추심이나 매득에 의한 결과인지는 알 수 없다. 이때 노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분포를 보면 하천(下川) 이해(泥兮) 소문(召文), 선산(善山), 우곡(羽谷), 의흥(義興), 안동, 성주(星州), 금산(金山) 칠곡(漆谷), 안평(安平), 강릉(江陵) 등으로 의성을 비롯한 경북일대이다.

대체로 이러한 수준에서 숙범→분구(賁龜)→정오(鼎五)→면목에게까지 이어지는 것 같다. 특히 정오대에는 최대 125 구가 준호구상에 기재되어 있는데, 그 분포 지역을 보면 앞의 숙범대에서 보여 준 경북 일대를 포함하여 인동(仁洞), 상주(尙州), 청송(靑松), 영덕(盈德), 연일(延日), 진보(眞寶) 등의 지역들이 새롭게 보이고 있으며, 거창(居昌), 김해(金海), 양산(梁山) 등 경남 지역의 일부분과 경기 수원(水原)도 보이고 있다. 그 만큼 노비거주의 지역 분포가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이들 대부분이 도망노비였다. 따라서 어느 정도 도망노비의 거주지파악은 되고 있었지만, 추쇄는 어려웠던 현실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한 것이 면목을 이어 상기대에 오면 결국 도망노비의 가재조차 준호구에서 빠져버리는 실상이었다.

1666년 신한로(申漢老)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한로(申漢老)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666 년 
· 형태사항	크기: 34x4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康熙五年五月 日義城官

考丙午成籍戶口帳內全扁面龜尾里住查教郎申漢老

以通判大夫前宗簿寺正兼春秋館編修官

祖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 紐憲義禁府

左副賓客行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知製 教兼

撰官 之傍

曾祖 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 紐廷參贊官 夢得

外祖嘉善大夫慶州府尹慶州 鎮兵馬節制使李氏寅本

妻柳氏故

後妻都氏 籍參谷

父學生 甫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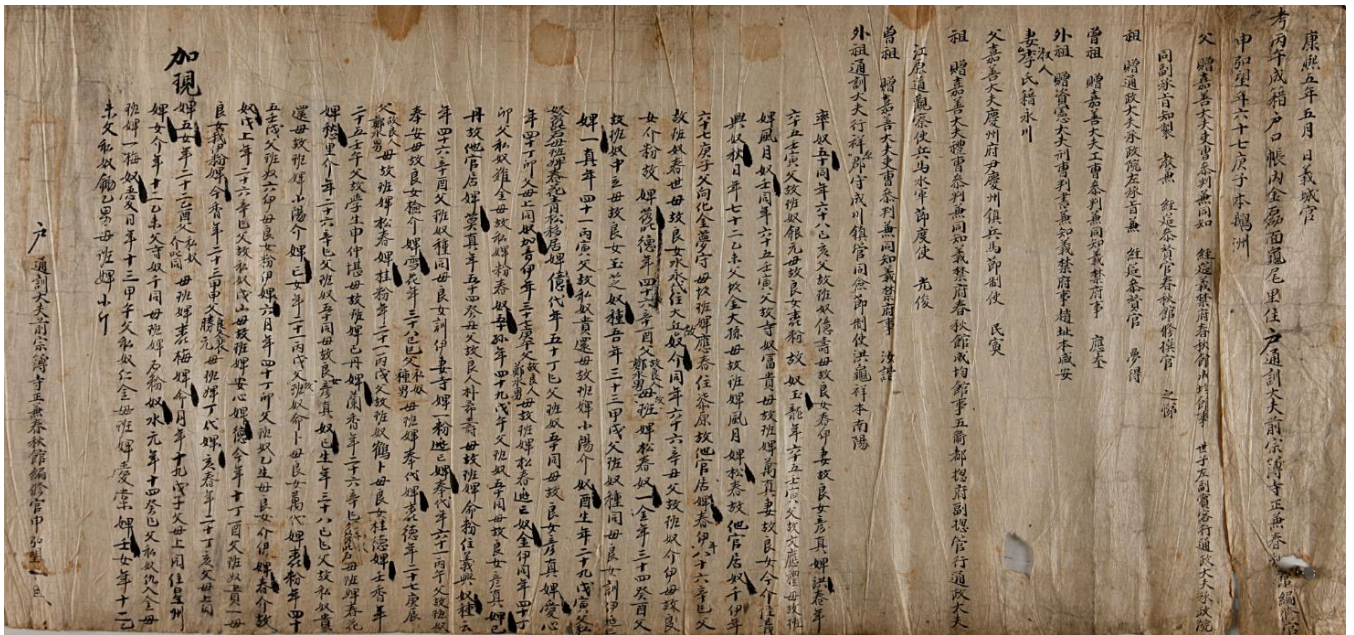
祖學生 慎徽

曾祖成均生員 應俞

外祖學生朴希章本密陽

加現率子叔範年十九戊子

1666년 신흥망(申弘望) 준호구(準戶口)



康熙五年五月 日義城官

考丙午成籍戶口帳內全扁面龜尾里住查教郎申漢老

以通判大夫前宗簿寺正兼春秋館編修官

祖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 紐憲義禁府

左副賓客行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知製 教兼

撰官 之傍

曾祖 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 紐廷參贊官 夢得

外祖嘉善大夫慶州府尹慶州 鎮兵馬節制使李氏寅本

妻柳氏故

父學生 甫尹

祖學生 慎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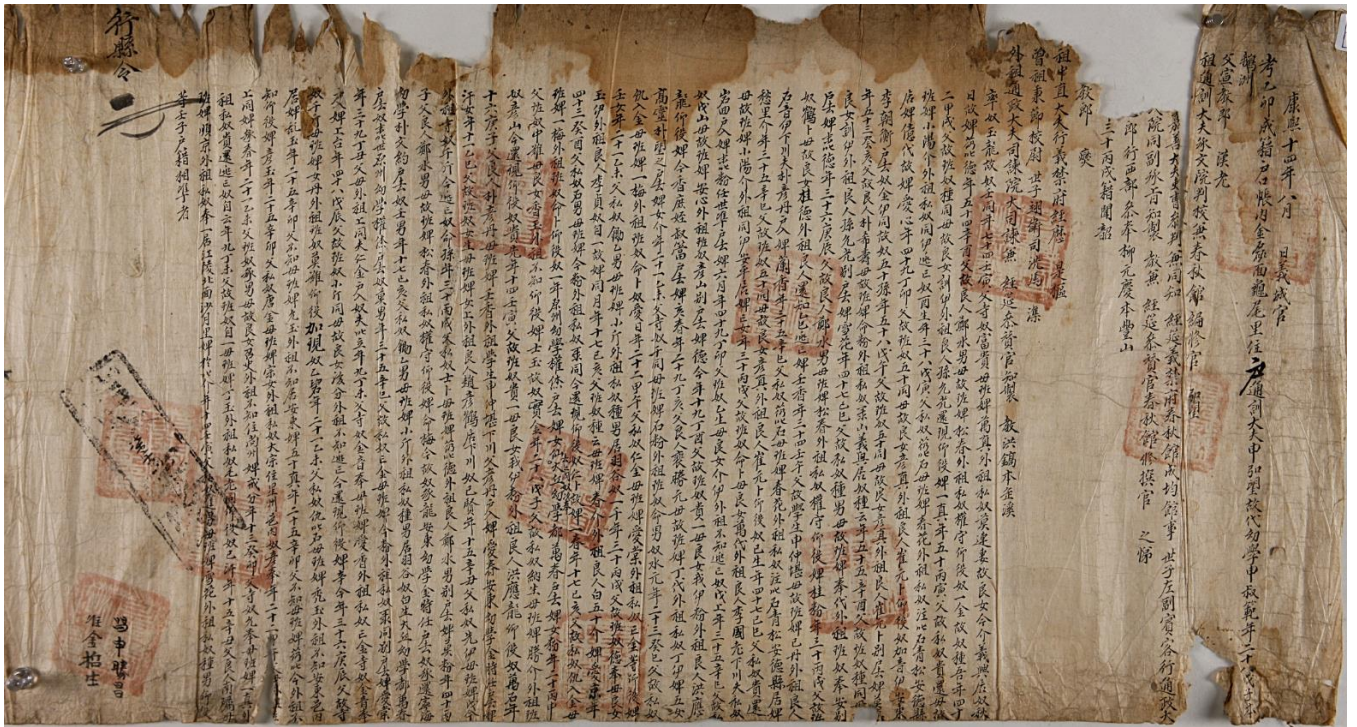
曾祖成均生員 應俞

外祖學生朴希章本密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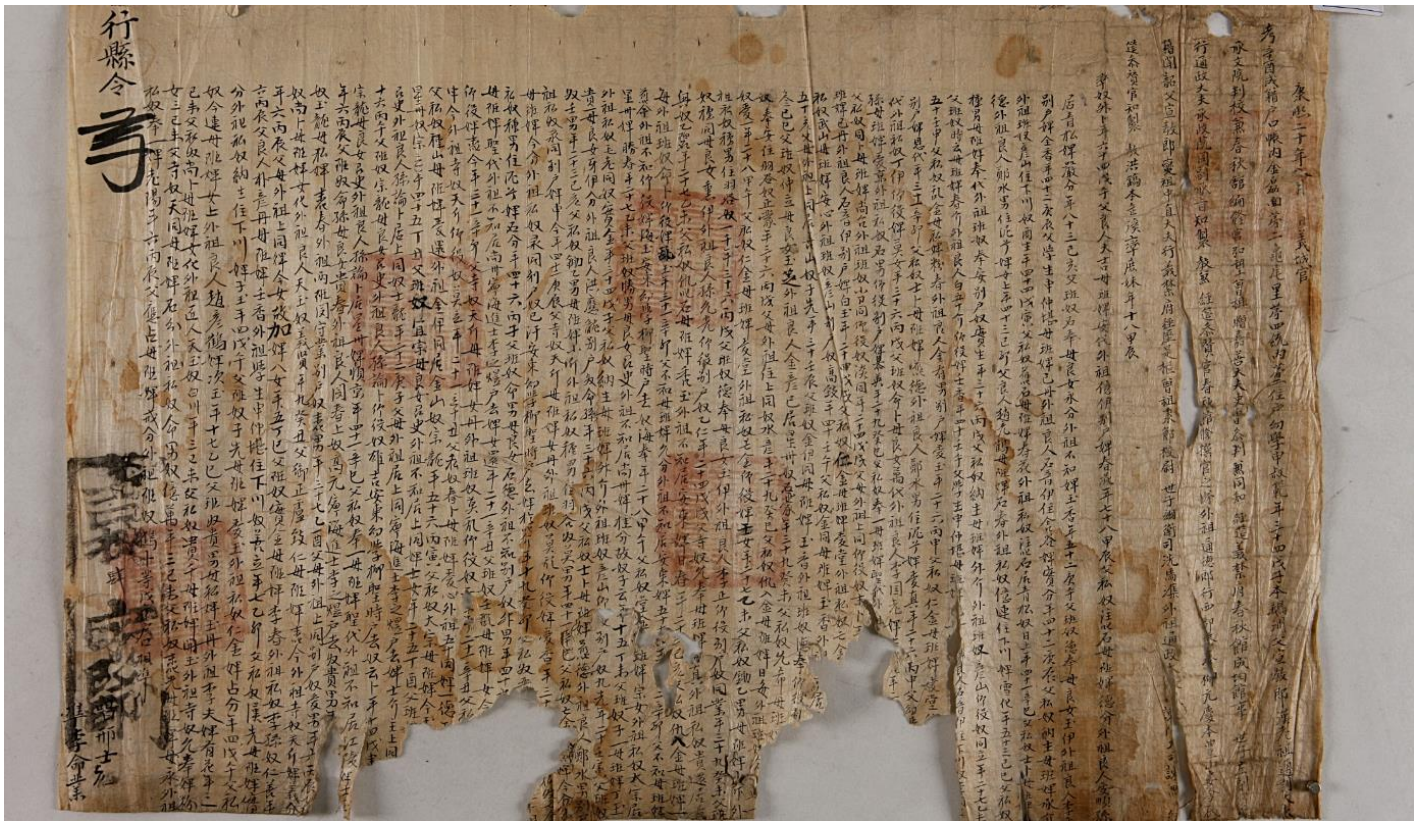
加現率子叔範年十九戊子

戶通判大夫前宗簿寺正兼春秋館編修官申漢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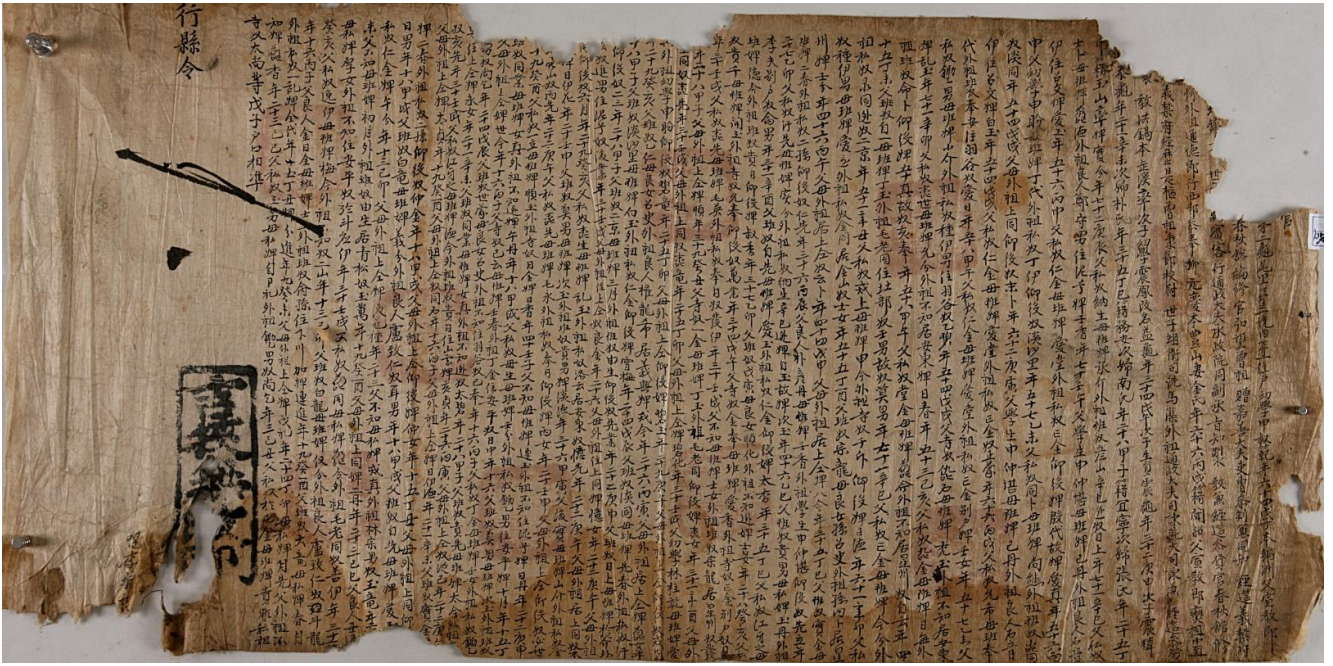
1675년 신숙범(申叔範) 준호구(準戶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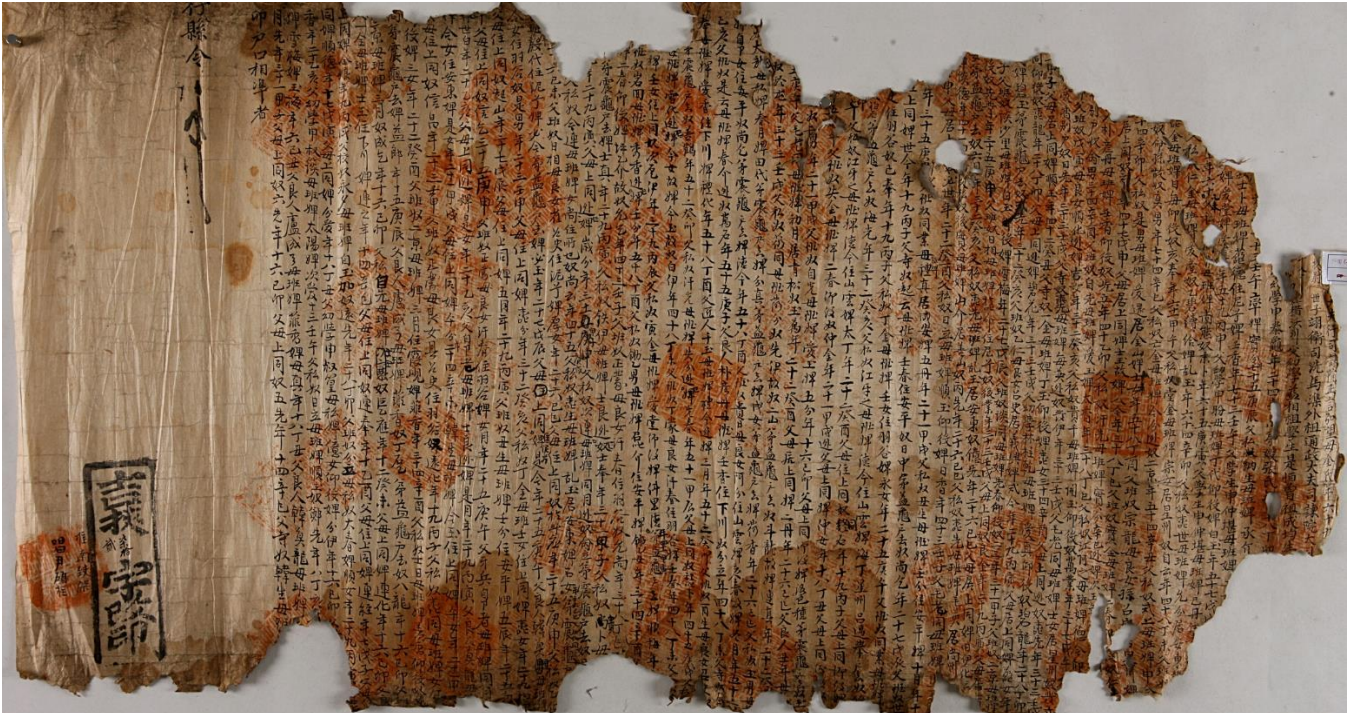
1681년 신숙범(申叔範) 준호구(準戶口)



1711년 신숙범(申叔範) 준호구(準戶口)



1714년 신분구(申賁龜) 준호구(準戶口)



1717년 신분구(申賁龜) 준호구(準戶口)

行縣令 庚子年十一月廿三日 欽此 考丁而後結口內金面而二龜凡里三區內內戶五戶初學年六歲年內四丁已...

1744년 신분구(申賁龜) 준호구(準戶口)

行縣令 乾隆九年十月 日欽此 考甲子年內金面而二龜凡里三區內內戶五戶初學年六歲年內四丁已...

1789년 신정오(申鼎五) 준호구(準戶口)

行縣令 乾隆五十四年 日欽此 考甲子年內金面而二龜凡里三區內內戶五戶初學年六歲年內四丁已...

嘉慶八年 月 日 義城官

考甲子成籍戶口帳內西面金屈茅三龜尾里茅六統茅三戶

幼學申祖應改廟年二十九丙申本鵝洲

父學生 鼎沃

祖學生 重仁

曾祖成均生貢 道三

外祖通德郎李敬和本韓山

妻姜氏年三十五庚寅籍晉山

父學生 明欽

祖通德郎 世玉

曾祖通訓大夫昌平縣監南原鎮官兵馬同僉節制使 必龜

外祖通德郎柳聖時本豐山

奉叔父 鼎二年五十六己巳

Handwritten seal or stamp, partially obscured by a diagonal line.

1822년 신휴릉(申休龍) 준호구(準戶口)

道光二年 月 日 義城官
 考壬午成籍戶口帳內西面金及第三龜尾里第 統第 戶
 幼學申昌虎改休龍年二十七丙辰本籍洲
 父學生 祖應
 生父學生 祖枯
 祖學生 鼎沃
 曾祖學生 重仁
 外祖學生 姜明欽本豐山
 妻柳氏年二十七丙辰籍豐山
 父幼學 宰祥
 祖學生 達春
 曾祖學生 澄
 外祖學生 金璋本光州

叔孫石年去雷父良人後孫班婢正淑名孫年丙午父母上同居雷威婢與每
 故一所生占金年甲寅居安東二所生婢心伊年辛酉仰後三所生孫孫年甲
 子仰後四所生孫又孫年丁卯慶黃與正年丙戌父校奴龍方也班婢仲即
 婢孫年甲辰父母上同居孫一所以生婢甲申年甲子二所生以八十子已已婢
 其部一所生婢龍即故龍即一所生婢孫伊年甲寅二所生婢麻乃年丁巳
 居送豐婢存節年丁卯父良人班婢王伊婢存心年已巳父母上同居奴穿又
 居名又面年壬午婢八今年丁巳父景今母二春送婢老女每發及父後
 天母關玉送婢董女年辛酉迎非我今年丙寅水博梅年丙辰迎非張
 德年甲寅居美山亦不正年癸酉迎非日二德年庚午庚安東那伊女
 居安東那李男那慶主居三品那五今年已巳迎非同月年乙亥迎非女
 和子丁卯迎非先春年甲辰迎非懷那年丁巳庚仁同那當女年甲寅
 居安東那四辰年丙辰金山亦世分年庚申迎非高那食飲年庚午
 迎非五大年甲辰迎非連高年庚辰迎非慶分年丁巳迎非河瑞那伊
 年丁卯居那宗那次慶年壬午庚金池那惠分年辛酉那自今年辛巳
 居州那安分年辛巳居州那那那今年高子迎非已喜年已亥迎非那
 如那高年甲辰居美山亦走女年庚辰迎非居那已那那已亥居安東
 水王母年辛巳居星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
 如那七年居申居河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
 收那三年居庚居那山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
 金山那居史年壬午故那命白夫已內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
 年辛未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

1846년 신상원(申相源) 준호구(準戶口)

道光二十六年 月 日 義城官
 考丙午成籍戶口帳內西面金及第三龜尾里第 統第 戶
 幼學申濟遠改相遠年二十六辛巳本籍洲
 父學生 休龍
 祖學生 祖應
 曾祖學生 鼎沃
 外祖學生 柳峯祚本豐山
 奉繼母李氏年四十二乙丑籍完山
 妻柳氏年三十三甲戌籍豐山
 父幼學 碩祚
 祖學生 行春
 曾祖學生 灑
 外祖學生 李宗憲本固城
 率子孝祥年九戌戌
 率弟達遠年十八巳丑
 貴宜年十二乙未

考右知年丙午父良人後孫班婢正淑名孫年丙午父母上同居雷威婢與每
 故一所生占金年甲寅居安東二所生婢心伊年辛酉仰後三所生孫孫年甲
 子仰後四所生孫又孫年丁卯慶黃與正年丙戌父校奴龍方也班婢仲即
 婢孫年甲辰父母上同居孫一所以生婢甲申年甲子二所生以八十子已已婢
 其部一所生婢龍即故龍即一所生婢孫伊年甲寅二所生婢麻乃年丁巳
 居送豐婢存節年丁卯父良人班婢王伊婢存心年已巳父母上同居奴穿又
 居名又面年壬午婢八今年丁巳父景今母二春送婢老女每發及父後
 天母關玉送婢董女年辛酉迎非我今年丙寅水博梅年丙辰迎非張
 德年甲寅居美山亦不正年癸酉迎非日二德年庚午庚安東那伊女
 居安東那李男那慶主居三品那五今年已巳迎非同月年乙亥迎非女
 和子丁卯迎非先春年甲辰迎非懷那年丁巳庚仁同那當女年甲寅
 居安東那四辰年丙辰金山亦世分年庚申迎非高那食飲年庚午
 迎非五大年甲辰迎非連高年庚辰迎非慶分年丁巳迎非河瑞那伊
 年丁卯居那宗那次慶年壬午庚金池那惠分年辛酉那自今年辛巳
 居州那安分年辛巳居州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
 如那高年甲辰居美山亦走女年庚辰迎非居那已那那已亥居安東
 水王母年辛巳居星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
 如那七年居申居河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
 收那三年居庚居那山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
 金山那居史年壬午故那命白夫已內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
 年辛未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

1849년 신상원(申相源) 준호구(準戶口)

道光二十九年 月 日 義城 官
 考 己酉成籍戶口帳內西面金磊第三龜尾里第 統第 戶
 幼學申相遠年二十九辛巳本鵝洲
 父學生 休龍
 祖學生 祖應
 曾祖學生 鼎沃
 外祖學生 柳華祚 本豐山
 奉繼母李氏年四十五乙丑籍全州
 妻柳氏年三十六甲戌籍豐山
 父學生 碩祚
 祖學生 行春
 曾祖學生 灝
 外祖學生 李宗愚 本固城
 率子 孝祥 改寬翼年十二戊戌
 率弟 達遠年二十一己丑
 貴宜年十五乙未

行縣令

女名孫年丙午父良人李相源母非姓也子世善山收生
 身甲寅父私收私身之妻柳氏年四十五乙丑籍全州
 乙丑父母上同收生年戊辰父母上同收生年庚午
 乙丑母上同收生年庚午一收生年花切身生年二
 生花母非孝心身庚午父良人國慶母非姓也
 庚伊身甲寅父母上同收生年丙戌父母上同
 乙丑收生年辛卯父母上同收生年壬辰父母上同
 身甲寅父母上同收生年乙未父母上同收生年
 此非身甲寅父母上同收生年乙未父母上同收生年
 身甲寅父母上同收生年乙未父母上同收生年

1852년 신상원(申相源) 준호구(準戶口)

咸豐二年 月 日 義城 官
 考 壬子成籍戶口帳內西面金磊第三龜尾里第 統第 戶
 幼學申相遠年三十二辛巳本鵝洲
 父學生 休龍
 祖學生 祖應
 曾祖學生 鼎沃
 外祖學生 柳華祚 本豐山
 奉繼母李氏年四十八乙丑籍完山
 妻柳氏年三十九甲戌籍豐山
 父學生 碩祚
 祖學生 行春
 曾祖學生 灝
 外祖學生 李宗愚 本固城
 率子 觀蓋年十五戊戌
 率弟 達遠年二十四己丑
 貴宜年十八乙未

行縣令

女名孫年丙午父良人李相源母非姓也子世善山收生
 身甲寅父私收私身之妻柳氏年四十五乙丑籍全州
 乙丑父母上同收生年戊辰父母上同收生年庚午
 乙丑母上同收生年庚午一收生年花切身生年二
 生花母非孝心身庚午父良人國慶母非姓也
 庚伊身甲寅父母上同收生年丙戌父母上同
 乙丑收生年辛卯父母上同收生年壬辰父母上同
 身甲寅父母上同收生年乙未父母上同收生年
 此非身甲寅父母上同收生年乙未父母上同收生年
 身甲寅父母上同收生年乙未父母上同收生年

1849년 신상원(申相源) 준호구(準戶口)

道光二十九年 月 日義城 官
 考己酉成籍居帳內西面金磊第三龜尾里第 統第 戶
 幼學申相遠年二十九辛巳本鵜洲

父學生 休龍
 祖學生 祖應
 曾祖學生 鼎沃
 外祖學生 柳萃祚本豐山
 奉繼母李氏年四十五乙丑籍全州
 妻柳氏年三十六甲戌籍豐山
 父學生 碩祚
 祖學生 行春
 曾祖學生 瀨
 外祖學生 李宗愚本固城
 孽子 孝祥改寬翼年十二戊戌
 孽弟 達遠年二十一乙丑
 貴宜年十五乙未

行縣令

收石和年兩年及及人官有世惟那无子逃善山收石金
 身中安父收石身之收那那身每身收石收石知身
 乙身及母上內收石身年戊辰父母上內收石伊年身
 壬身及母上內收石身年戊辰一收石水花切身年及二
 身及母身及身年及身年及及人國慶母那那那那那
 伊年身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
 身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
 身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
 此身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
 身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

1855년 신상원(申相源) 준호구(準戶口)

咸豐五年 月 日義城 官
 考乙卯成籍居帳內西面金磊第三龜尾里第 統第 戶
 幼學申相遠年三十五辛巳本鵜洲

父學生 休龍
 祖學生 祖應
 曾祖學生 鼎沃
 外祖學生 柳萃祚本豐山
 奉繼母李氏年五十一乙丑籍宛山
 妻柳氏年四十二甲戌籍豐山
 父學生 碩祚
 祖學生 行春
 曾祖學生 瀨
 外祖學生 李宗愚本固城
 孽子 觀益年十八戊戌
 孽弟 達遠年二十七乙丑
 貴宜年二十一乙未

行縣令

收石和身兩年逃收石金收石身乙身及身及身及身及身及
 水兵每收石和身年戊辰父母上內所收那心伊年身年及身年及
 身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
 身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
 身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
 此身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
 身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身年及

1858년 신상원(申相源) 준호구(準戶口)

咸豐八年 月 日 義城官
 考戊午成籍戶口帳內西面金磊龜尾里第 統第 戶
 幼學申相遠年三十八辛巳本鵝洲

父學生 休龍
 祖學生 祖應
 曾祖學生 鼎沃
 外祖學生 柳攀祚本豐山
 奉繼母李氏年五十四乙丑籍完山
 妻柳氏年四十五甲戌籍豐山

父學生 碩祚
 祖學生 行春
 曾祖學生 灑
 外祖學生 李宗愚本固城

孽子 觀蓋年三十一歲戊
 孽弟 達遠年三十一己丑 嫂李氏年三十九庚辰
 聲遠年二十四乙未 嫂南氏年二十八甲卯

行縣令

此名和年丙午逃水金占改表孫年乙丑父社火松
 年之父母社火身處水又孫年戊辰之母上同何後水
 心伊年辛巳益上同族者松一乙丑年伊年發
 何何後水社心身處年逃水年伊年甲寅父家人
 國母社外龍順一乙丑年伊年何何後水伊
 年丁亥父社心身處年逃水年伊年甲寅父家人
 口相源者

1861년 신상원(申相源) 준호구(準戶口)

咸豐十一年 月 日 義城官
 考辛酉成籍戶口帳內西面金磊龜尾里第 統第 戶
 幼學申相遠年四十一辛巳本鵝洲

父學生 休龍
 祖學生 祖應
 曾祖學生 鼎沃
 外祖學生 柳攀祚本豐山
 奉繼母李氏年五十七乙丑籍完山
 妻柳氏年四十八甲戌籍豐山

父學生 碩祚
 祖學生 行春
 曾祖學生 灑
 外祖學生 李宗愚本固城

孽子 觀蓋年二十四戊戌
 孽弟 達遠年三十三己丑 嫂李氏年四十二庚辰
 聲遠年二十七乙未 嫂南氏年三十一甲卯

行縣令

此名和年丙午逃水金占改表孫年乙丑父社火松
 年之父母社火身處水又孫年戊辰之母上同何後水
 心伊年辛巳益上同族者松一乙丑年伊年發
 何何後水社心身處年逃水年伊年甲寅父家人
 國母社外龍順一乙丑年伊年何何後水伊
 年丁亥父社心身處年逃水年伊年甲寅父家人
 口相源者

行縣令

百石相洋者

率婢日德年辛卯父私奴是男母班婢愛遷居金山婢女年丁酉父私宗龍母班婢孫居星州婢去分年
 丙申父母上同奴雲卜年戊申父母上同居星州婢八今年丁巳父班奴實金母班婢二春逃奴實伊年庚申父母上
 同逃婢吉女年癸亥父私奴後千母班婢介玉逃奴月先年壬戌父母上同逃奴實伊年壬戌母班婢士女居星州奴散立
 年甲子父母居上同婢菟女年辛酉父私奴日金母班婢丁玉逃奴桂先年癸亥父班奴乙仁母班婢召史居義興婢桂今
 年丙寅父母居上同婢雪每年戊辰父班奴淡同母班婢先春逃婢淡德年甲寅父私奴後實母班婢小个逃婢太
 丁年癸酉父母上同逃婢日二德年庚午父班奴先令母班婢二春逃婢仲女年丁丑父母上同奴二男年甲戌父班奴自
 先母班婢愛玉逃婢分年己巳父母上同逃婢東月年乙亥父班奴時雲母班婢同个逃婢女化年丁酉父班奴夫
 王母班婢女今逃婢先春年甲辰父私奴汗先母班婢汗分逃婢順每年丁巳父班奴岩面母班婢水鄉逃婢雲女
 年辛酉母班婢二春父班奴先金逃婢去辰年丙寅父私奴徹伊母班婢士郎逃婢世分年庚申父父雲母班
 婢東月逃婢是今年庚午父私奴莫龍母班婢今女佳羽谷婢美天年甲戌父汗先母班婢今玉逃婢連支年庚
 辰父良日金母班婢士玉逃奴遠先年丁卯父母上同逃婢愛分年丁丑父幼學申叔篋母班婢億女逃婢分
 伊年己卯父母上同逃婢愛年壬午逃父私奴日立母班婢順玉婢飽分年辛巳婢自今年辛卯父私奴身男
 母班婢千分逃婢貴分年癸巳父母上同居高州婢身年乙未父母上同逃婢碧今年丙子父毛露同母班
 婢連支逃婢已辰年乙亥父班奴乞人母班婢召史逃婢白辰年壬寅父班奴萬葉母班婢召史逃婢菟
 女年庚辰父私奴勝碧母班婢順德逃婢已卯年丁亥父班奴桂先母班婢召史逃婢玉丹年丁未父私奴
 四先母班婢順香居星州婢菟德年己未父私奴二男母班婢日二德逃婢次心年癸卯父私奴黃先母班婢次愛奴
 德術年成寅父班奴加去里母班婢火心奴仲必年庚申父母上同居河陽奴億必年丁巳父私奴億危母班婢女丹逃奴
 億男年辛酉父母上同逃奴石萬年己卯父母居上同婢今年乙亥父私奴先起母班婢召史逃婢命心年戊午奴
 命三年辛巳奴命危年癸未奴已里金年庚寅父良八張身男母班婢晚泰逃婢允心年壬午父私奴是長母
 班婢菟召史逃婢命泰父張身男母班婢晚泰逃婢仲丹年己未父班奴高昌母班婢美女婢仲占年庚申父
 母上同婢仲愛年癸亥父母上同婢召史年戊午父私奴交中母班婢茶郎居召文婢必郎年丁卯父具
 哥母班婢泰心居召文奴於等介年己巳父母居上同婢必正故婢龍辰年甲寅奴已伯奴命伯父班奴
 雀乙母班婢龍辰逃婢終郎父班奴宗后母班婢次愛逃婢終心年庚申父母上同逃奴孫三父母上同
 逃婢晚今父私奴四龍母班婢三月逃奴淡伊父母上同居金海婢孫郎年辛酉居羽谷婢孫愛婢
 孫分逃奴奉天居羽谷婢兩郎父私奴兩男母班婢占郎逃奴日危逃奴興孫興丁婢興每祿每
 父板奴龍方母班婢正郎奴孫后石孫父良八張身男班婢必正奴占危占金父班奴松牙之母班婢
 興每婢龍郎奴九百一父萬順才母班婢孫郎居羽谷婢金伊岳伊卓伊父金國慶母班婢龍郎
 奴守父父毛露同母班婢召史居召文奴卜太卜順逃奴漢逃婢日母逃婢汗丹汗郎逃婢居丹等辛
 酉石相洋者

입후성문(立後成文) (1)

조선시대 사대부가에서 입후(立後)할 때 작성하는 문서. 관문서.

조상의 제사를 중시하는 유교적 규범 아래에서 종가(宗家)나 가계의 계승은 중요한 일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이성(異姓)으로 양자를 삼거나 외손으로 계후(繼後)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행하여 졌으나, 유교적인 의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힘쓰던 조선 세종대에 이르러 사대부의 양자입사(養子立嗣)에 관한 대강(大綱)이 제정되었고, <<경국대전>>에 이르러 입후에 관한 법제가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사대부가의 입후는 예조의 입안(立案)을 받았다. 예조에서는 입후에 관한 입안을 일일이 등록하였는데, 현재 <<계후등록 繼後謄錄>>이 규장각도서로서 전하여지고 있다.

조선시대에 입후입안을 받는 절차는 ① 양가(兩家 : 與者·受者)에서 계후하는 일을 동의한 뒤, ② 양가에서 계후를 청원하는 소지(所志)를 작성하여 예조에 올린다. ③ 예조에서는 양가와 관계자로부터 계후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서(緘辭, 條目)를 받고, ④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뒤, ⑤ 입안을 발급하였다.


이와 같은 입후입안은 조선 후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모든 입후에 예조 입안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조선 후기에는 예조의 입안 없이 양가와 관계자의 입회 하에 간단한 성문으로 입후가 성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양가와 관계자의 입회 하에 작성된 입후에 관한 문서가 입후성문이다. 입후성문은 일정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는 ① 문서작성 연월일, ② 입후 사유 ③ 입후를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 ④ 주는 자, 문장(門長), 증인, 필집(筆執 : 증서를 쓴 사람)의 착함(着銜 : 글의 끝에 이름을 씌), 수결(手決) 등이 기재되며, 입후성문은 입후자를 받아들이는 집안에서 받아 간직하게 된다.

입후하는 일에 신중하였던 것은 봉사하는 일은 물론이고, 뒤에 재산상속상의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입후성문은 지방의 전통가문에 전하는 것들이 있고, 서울대학교 도서관에도 몇 장이 있다. 조선시대의 가족제도·양자제도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1805년 신조호(申祖祐) 등 일문제족(一門諸族) 입후성문(立後成文)

· 분류	고문서-증빙류-입후성문 / 사회-가족친족-양자문서
· 작성주체	발급: 신씨일문제족(申氏一門諸族)
· 작성시기	1805년 
· 형태사항	크기: 114x69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3. 증빙류 / (1) 입후성문 / 입후성문 / 388 ~쪽

嘉慶十年乙丑正月八日宗家立后標文

右標文為家禍同極宗君夭折百年香火一朝無托孀婦叫冤門族相吊既畢殯殮幾日而會議同聲特定大策起送宗君之從叔鼎率于丹城三百餘里訪宗君之族兄祖祐寓居以其第三子年十歲幼名金文者定為宗嗣鼎率仍與祖祐之兄祖榮扶護并來卜日入哭發喪承重化者無子而有子宗祀幾絕而復續孀婦有依諸族相賀與受相對老少合席一紙署名為成標文以藏之此當為傳家百世鐵券事

與本生父幼學申祖祐

受所後母孀婦晉陽姜氏

都門長僉知申道一

申祖祐兄幼學 祖榮

一門諸族幼學申道貫

申鼎凝

申昌道

申鼎周

申體仁

幼學申鼎文

申佑仁

生員申俊虎

申木仁

申孝仁

입후(立後)란 자식이 없는 사람이 동종(同宗)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뒤를 잇게 하는 것으로, 두 집안이 합의문서를 만들어 관에 고하고, 예조의 확인절차인 입안(立案)을 받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공식적인 효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후 과정에도 파양(罷養)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도 있었다. 이를테면 동종의 맏아들로서 남의 뒤를 잇게 하는 경우나 한쪽 부모가 모두 죽은 경우에는 입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든가, 남의 양자가 된 자의 생가 부모가 무후(無後)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파양하여 생가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등이다.★^{註24)}

봉주공파의 이 입후문서는 22 세 종손인 조응(祖應)이 1804 년(순조 4) 11 월 30 일에 후사가 없이 죽자, 이에 이듬해 정월 8 일에 단성에 있는 종족(宗族) 조호(祖祐)의 셋째 아들인 희목^{註25)}을 종손으로 입후하는 과정을 기록한 표문이다.



조응이 28 세로 요절하자 문중에서 부랴부랴 대책을 세워 조응의 종숙인 정년(鼎年)을 단성의 조호에게 보내어 조호의 제 3 자인 희목을 종손으로 삼아 종사(宗嗣)를 잇게 하였다. 이에 조호의 형 조영(祖榮)과 함께 데려와서 비로소 입곡(入哭)하고 발상(發喪)하여 승중자(承重子)가 되었다.

종손 희목의 생부인 조호와 양모 진양강씨(晉陽姜氏)를 비롯한 신씨일가들이 연명하고 수결하였다. 대개 입후는 친진(親盡)의 범위 내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 가계에서는 11 촌 사이에서 출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간통고류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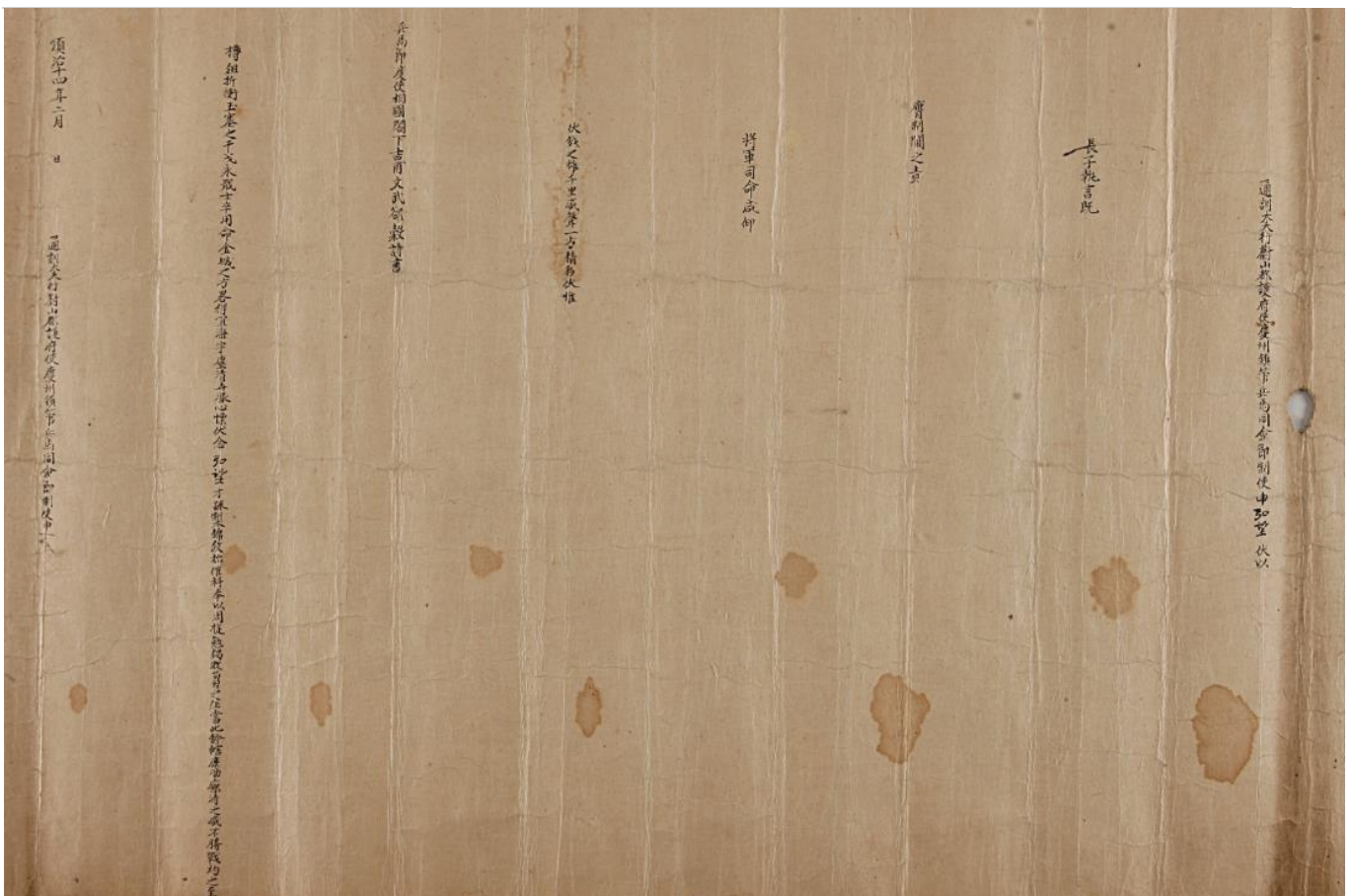
문안단자 (1)

1657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신흥망(申弘望)  / 수취: 경주진관병마절도사(慶州鎭管兵馬節度使)
· 작성시기	1657년 
· 형태사항	크기: 47x97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4. 서간통고류 / (1) 문안단자 / 문안단자 / 420 ~쪽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조선시대 각 도(道)의 군사적인 지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설치한 종2품 서반(西班) 관직.

일반적으로 병사(兵使)로 약칭되었다. 도의 국방 책임을 맡아 유사시 군사적 전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까닭에 주장(主將)·주수(主帥) 또는 곤수(鬪帥)·수신(帥臣) 등으로 불렸다.

전신(前身)은 병마도절제사로서, 태종 때 제도의 뼈대가 갖추어졌다. 주로 연변에 설치된 병영과 진의 영진군(營鎭軍)을 지휘, 국방에 임하는 한편, 지방군의 습진(習陣)·무예 훈련 등을 담당하였다.

전임(專任) 병마도절제사는 함경도·평안도·충청도·전라도·경상좌도·경상우도에 1 인씩 두어졌고, 황해도·강원도에는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 겸임 병마도절제가 각 1 인씩 두어졌다.

연변 중심의 방위체제는 1455년(세조 1) 전국에 군익도체제(軍翼道體制)를 편성했다가 1457년 진관체제로 개편하여 내륙에도 국방 거점이 마련된 체제로 변화하였다.

이에 모든 수령이 직급에 상응하는 병마직함(兵馬職銜)을 띠고 관할 지역의 하번(下番) 경군사(京軍士)·정병(正兵)·수군(水軍) 등을 파악하고 번상(番上)·훈련·군장 점검 등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진군이 없던 경기도(京畿道)에도 1458년 도관찰출척사 겸임의 병마도절제사를 두게 되었다. 이 병마도절제사를 1466년 병마절도사로 개칭한 것인데, 1467년에 내륙의 주요 방어 거점에 병마절도부사를 두었으나, 곧 혁파되었다.

1466년에 도관찰출척사 또한 관찰사로 개칭되면서 그 동안 겸대(兼帶)해 온 '제조병마(提調兵馬)'의 직함이 삭제되었다.

이로 인해 병사에 대한 감독권을 상실한 까닭에 문신 중심의 통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1472년(성종 3) 각도관찰사가 모두 병사를 예겸(例兼)하게 했고, 이에 이르러 병마절도사의 제도적 정비가 완료되었다.

관찰사 겸임의 병사는 겸병사(兼兵使), 전임 병사는 단병사(單兵使)로 구분하였다.

《경국대전》에는 겸병사 8인 외에 충청도·전라도·평안도와 경상좌도·경상우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에 단병사를 각 1 인씩 두도록 함으로써 경기도·강원도·황해도에는 겸병사만이 두어져 병사는 총 15 인이었다.

1593년(선조 26)부터 황해도에도 단병사가 두어져 조선 후기에는 16인의 병사가 파견되었다. 병사의 임기는 720 일이며, 병마절도사영 즉 병영에는 우후(虞候)와 구전군관(口傳軍官) 등의 품관(品官)과 진무(鎭撫)·병영리(兵營吏)·공장(工匠)·노비 등이 배속되었고, 특히 함경북도 병사 밑에는 평사(評事)가 계속 두어졌다.

병사는 평시에 본인이 직접 또는 우후나 평사 등을 통해 도내를 순회하면서 지방군의 훈련, 무기 제작과 정비, 군사들의 군장, 군사 시설 수축 등을 살펴 방어 태세를 갖추고, 외적 침입이나 내란·도적·호환(虎患) 등이 발생한 유사시에는 유방(留防)하는 정병 등의 지방 군사력을 동원, 지휘하여 대처해야 하였다.

또한 임기응변하여 군사 조치를 취하고 나서 중앙에 보고할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를 위해 병사가 도내의 정병은 물론 하번인 수군·경군사까지 파악하고, 진장(鎭將)·수령 등의 군사업무 포폄(褒貶) 및 군사적 범법 행위에 대한 형(刑)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16세기 초엽 이후 정병이 군포 대납 대상으로 변하여 도역(逃役)이 급증하는 등 폐단이 심화되어 진관체제가 무너졌다.

그리고 1555년(명종 10) 무렵부터 제승방략(制勝方略)이라는 분군법(分軍法)이 시행되어 지방군의 지휘권이 병마절도사로부터 벗어나 비변사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정부에 직접 속하게 되었다.

임진왜란 때 큰 실패를 맞은 뒤 진관체제 복구를 전제로 속오군(束伍軍)을 편성하고 영장(營將)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이 기울여졌으나, 군포 대납의 폐단은 더욱 심화되었다.

또 문신 병사가 자주 임명되고, 검병사와 단병사 사이에서 지휘 계통마저 분명하지 못하게 되어 병마절도사가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었다.

이미 유명무실하게 된 상황에서 1895년(고종 32) 도제(道制)가 폐지되어 병마절도사 또한 폐지되고, 1896년 지방에도 신식 군제의 군대로서 진위대(鎭衛隊)가 편성되었다.

혼서(婚書) (2)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납채할 때 보내는 문서.

예서(禮書)·예장(禮狀)이라고도 하며, 장지(壯紙)를 간지(簡紙) 모양으로 접어서 썼다. 넓은 의미의 혼서에는 사주단자(四柱單子)와 혼인택일에 관한 서장(書狀)까지 포함된다. 현전하는 고문서 중 납채하는 혼서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成均進士曹致唐(手決)(성균진사조치당(수결))

外孫金富弼 年已長成 未有伉儷謹行納采之儀 伏惟尊鑑謹上

외손김부필 년이장성 미유항려근행납채지의 복유존감근상
狀(상)

嘉靖十五年七月日(가정십오년칠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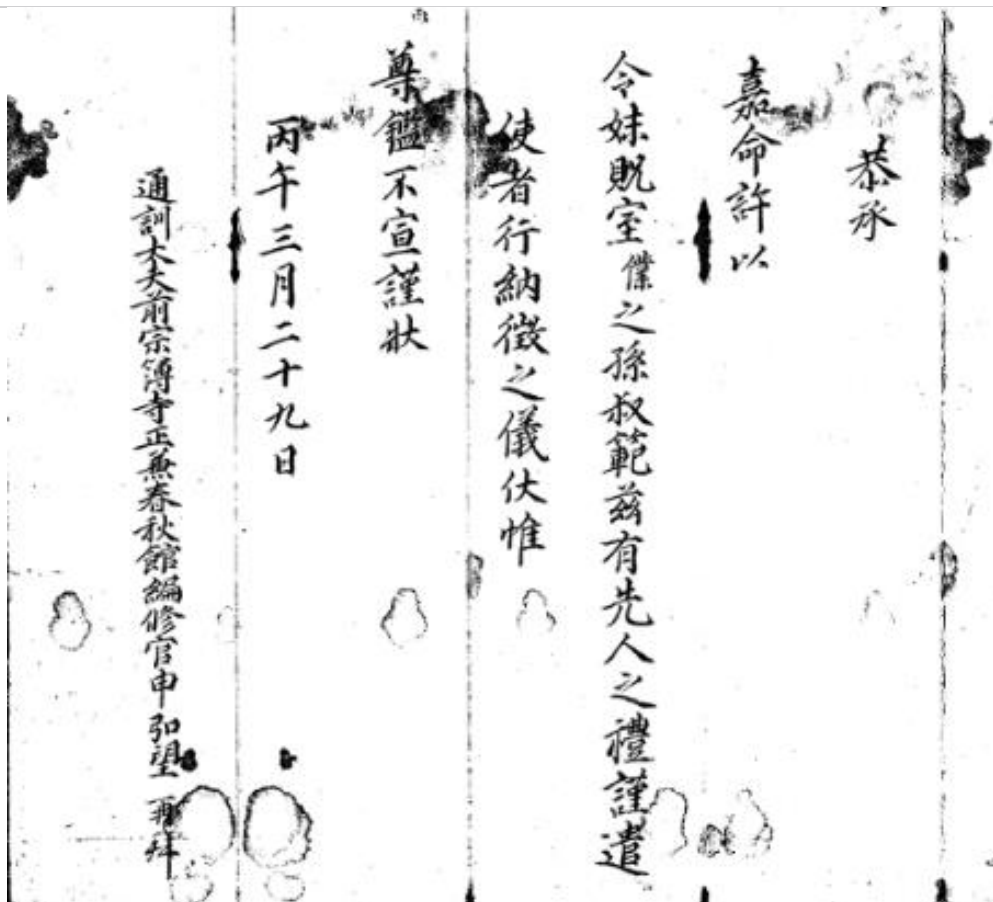
이 혼서는 1536년(중종 31) 7월 성균진사 조치당(曹致唐)이 외손자 김부필(金富弼)을 장가 보내기 위하여 신부집에 납채할 때 보낸 것이다. 혼서는 시대·지역에 따라 서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혼서는 현전하고 있는 것이 많으나 오래된 것은 드물다. 조선시대 혼인풍습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1666년 신흥망(申弘望) 납폐서간(納幣書簡)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 종교-풍속-관혼상제-혼서
· 작성주체	발급: 신흥망(申弘望)  / 수취: 의성김씨가(義城金氏家)
· 작성시기	1666년 
· 형태사항	크기: 62x82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4. 서간통고류 / (2) 혼서 / 혼서 / 421 ~쪽



납폐서간(納幣書簡)

납채 뒤 정혼의 성립을 나타내기 위해 신부집으로 서신과 폐물을 보내는 혼례의식. 육례.

납폐서(納幣書)와 폐백(幣帛)을 신부집에 보내는 의식으로, 폐백으로는 청단(靑緞)과 홍단(紅緞)의 채단(綵緞)을 보낸다. 함에 넣는 물건은 지방과 사회 계층, 빈부에 따라 다르지만, 반드시 신부의 상·하의 두 벌과 패물·혼서지(婚書紙)를 넣는다.

여섯 가지 의식절차인 육례(六禮) 중의 하나이다. 납채 뒤 정혼(定婚)의 성립을 나타내기 위하여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서신과 폐물을 보내는 의식을 말한다.

서신을 써서 사자(使者)를 신부집에 보내면 신부집에서 이것을 받아 회답을 써주고 음식을 대접하며, 사자는 돌아와 복명하는 등 납채 때와 그 형식이 같다. 그리고 청단(靑緞)과 홍단(紅緞) 두 곳을 보내며, 그 품질은 빈부에 따라 적당히 정한다.

혼서는 비단 겹보에 싸서 함 속에 넣는데, 신부아버지가 그것을 받아 사당에 고하는 것은 납채 때와 같다. 일부종사(一夫從事)의 뜻으로 신부가 죽을 때 혼서를 관에 넣기도 한다고 한다. 함에 혼서와 채단을 넣은 뒤 무명 여덟 자로 된 함질끈을 구하여 석자는 땅에 끌리게 하고 나머지로 고리를 만들어 함을 지도록 한다. 이것을 봉채(封采)라고 하며, 흔히 '봉치'라고도 한다.

아들을 낳고 내외를 갖춘 사람을 '함부'로 정하고 서너 사람은 햇불을 드는데, 이는 주로 어두울 때 함을 운반하기 때문이다. 함이 오기 전에 신부집에서는 화문석을 대청에 깔고 소반에 봉치떡을 해놓는다. 함이 오면 떡시루 위에 함을 내려놓고 함부 일행을 후하게 대접하기도 한다.

대개 납폐는 전안(奠雁) 전날에 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날의 길흉과 시세에 따라서 며칠 전에 하는 수도 있고 전안 당일에도 하는 수도 있다.

치부기록류 (11)

재사완의(齋舍完議) (1)

오봉(梧峰) 신지제(申之悌, 1562~1624)의 관련 전적들이다. 그는 김성일(金誠一, 1538~1593)의 문인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선조 23년(1590)에 예안현감(禮安縣監)으로 선정을 베풀었으며 임진왜란 때는 의병모집과 식량조달을 하여 왜군과 싸웠다.

의성(義城)에 근무할 때는 「장대서원(藏待書院)」을 세워 지방의 교육에 힘썼다. 《갑진 걸물절왜사소(甲辰 乞勿絶倭使疏)》이 자료는 선조 37년(1604)에 약 40여개의 자료들을 필사하여 정리한 것으로 사직소와 책의 서문을 쓴 것, 주변 인물과 주고받은 편지, 여행기 등 여러 장르의 글들이 정리되어 있다. 특히 소수서원에 관련된 기록과 금강산과 소백산을 여행한 글이 참고할 만하다.

책의 처음에 갑진 걸물절왜사소(甲辰 乞勿絶倭使疏)가 수록되어 있다. 《구미 구보 신장도목완의

《龜尾舊狀新粧都目完議》 이 자료는 경북 구미의 길부촌(吉夫村)에 있던 옛날의 저수지를 오봉(梧峯) 신공(申公)이 쌓고 인근의 동네 주민 천 여 호(戶)에게 사용료를 받아왔으나 기유년(己酉年) 봄에 신씨종가(申氏宗家)에서 마지기당 다섯 냥을 기준으로 거두게 되므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옛날의 도목(都目)을 고치고 그 규모와 규정 일체를 새롭게 정비한 후 경술년(庚戌年)에 기록한 것이다. 명단에는 지역, 인명, 논밭의 크기를 표시하고 권말에는 조약절목(條約節目)을 두어 보의 운영에 대한 수칙을 제시하였다. 권말의 첨지(籤紙)에는 후대인 1862년에 전주(田主)인 천동재사(泉洞齋舍)에서 작성한 '보중명문(泐中明文)'이 붙어 있다.

《제영남동도회제명권(題嶺南同道會題命卷)》 이 자료는 1601년 영남 출신으로 관직에 있는 26명이 장악원(掌樂院)에 모여 시를 지은 것을 다시 정리하여 엮은 책이다. 이호민(李好閔)이 권수에 시를 짓고 이어 그 명단으로 서천군(西川君) 정곤수(鄭崐壽), 이호민(李好閔), 강신(姜紳), 강사연(姜系延), 윤화(尹曄), 박응립(朴應立), 신지제(申之悌), 강심(姜沈), 김택룡(金澤龍), 권경호(權景虎), 류중룡(柳仲龍), 전우(全雨), 오극성(吳克成), 이홍발(李弘發), 박광선(朴光先), 권세인(權世仁), 권순(權淳), 권두(權澍), 김헌(金憲), 노도형(盧道亨), 이민성(李民成), 권제(權濟), 신경익(申景翼), 이민환(李民奩), 조정(趙靖), 조우인(曹友仁), 남복규(南復圭) 등의 관직과 자(字), 출신지역을 기록하였다. 《장사일록장지(長沙日錄壯紙)》 이 자료의 표지에는 '고송부군행장(孤松府君行狀)'이란 제목이 있으며 서문은 기미년(己未年) 7월 후손인 생원 진귀(震龜)가 썼다.

고송부원군은 인조 때의 문신인 신흥망(申弘望, 1600~?)으로 그는 1627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참봉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1639년 별시문과 급제하여 풍기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효종 3년(1652) 임진년 9월에 패만(悖慢)한 이시모(李時樑)의 처벌을 청한 이온발(李溫發)의 상소에 대하여 이시모가 선현의 일을 독단, 훼손하여 자신을 변명하므로 이에 사헌부 지평으로 있던 신흥망이 왕에게 단독으로 사실을 고하자 당파를 조장한다는 탄핵을 받고 유배된 사실에 대하여 그 경과와 사건에 관련된 여러 사람의 상소와 사건을 10월 9일, 11일~30일, 11월 1일~30일, 12월 1일~21일에 걸쳐 날짜별로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첨부자료로 신진귀(申震龜)가 찬(撰)한 <통훈대부 승문원판교 겸춘추館編修官 孤松府君 行狀草記>가 권말에 있으며 이는 그의 조부인 신흥망(申弘望)의 행장을 정리한 것이다. 《재사완의(齋舍完議)》 이 자료는 필사본 1책의 분량이며 면지에는 갑자년 10월에 동중(洞中)의 여러 사람에게 이 완의(完議)를 나누어 주고 자손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한다는 신중인(申重仁)의 글이 있다.

서문은 정유년 신분귀(申賁龜)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완의절목에서는 묘제(墓祭), 삼대제문(三代祭祀) 등을 네 집에서 돌아가며 지내도록 하며 그에 소용되는 쌀, 곡식, 제기, 기물 등의 확보와 점검에 관련된 사항, 초상 때의 부조 범위 등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주요한 제사에 불참한 사람에 대하여 태형(笞刑)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규칙도 보인다. 합철된 내용으로는 신성귀(申聖龜)가 종계(宗契)의 규칙에 추가사항을 무인년(戊寅年) 12월 에 작성한 <추정약조(追定約條)> 있다.

완의(完議)는 종중이나 가문 또는 계(契) 등에서 제사나 묘위(墓位)·계사(契事) 등에 대하여 논의한 사항을 기록하여 그것을 서로 지키도록 약속하는 문서이다.

아주신씨 봉주공파의 이 완의는 신숙범·숙보·숙연·숙호의 4 형제에 대한 제사를 후손들이 잘 지켜 나가자고 약속하면서 기록한 것이다. 전체 1 책 16 장으로, 서문은 봉사손(奉祀孫)인 분구가 썼으며 종형제들과 더불어 선고형제(先考兄弟)의 봉사를 위하여 쓴다고 하였다. 작성시기는 1717 년(숙종 43, 정유) 10 월 그믐날이다. 그 다음에 「영원(鵠原)」이라 하고 봉사 대상자인 숙범 등 4 형제를 기록하였다. 영원이란 『시경(詩經)』에 나오는 말로서 형제가 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여 서로 돕는다는 뜻으로 형제를 향연하는 시에 쓰였다)

이어 실질적인 제사를 위한 약속을 절목으로 기록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기제(忌祭)와 묘제(墓祭)를 네 집이 돌아가며 행하며, 제답(祭畓) 소출이 많게는 40 석에 이르니 뒤에 그 윤차(輪次)를 따라서 제수로 쓰고 1 위(位)에 2 석에 한하여 출급하는 일, 유(油)·청(淸)·면(麪)·미(米)·과물(果物) 준비, 정월 8 일의 제사는 고비(考妣)의 제사와 겹치므로 기본 2 석에다 1 석을 더하는 일, 제사에 맞춰 출급하지 않으면 궁한 집은 미리 끌어다 쓰는 근심이 있으므로 유사(有司)가 헤아려 지급할 일, 유사(有司)는 매년 개체(改遞)하며 네 집이 돌아가며 맡을 일, 기본 2 석을 출급하고 남은 곡식은 모아두었다가 정 쓸 일이 없으면 논을 사서 뒷날을 준비할 일, 혹 남은 곡식은 곡식으로 솔이나 제기를 사다가 네 집이 돌려가며 내어다가 쓰게 하고, 상사(喪事)시에는 형제간의 우의가 있어야 한 즉, 양상(兩喪)에 한하여 5 석을 출급하고, 자손의 상사에는 허급하지 않을 일, 그리고 유사(有司)가 부지런하지 않을 때는 일가가 회의하여 그 경중에 따라 벌한다는 내용들이다.

그 뒤 1758 년(영조 34, 무인) 12 월에 성구(聖龜)가 추정약조(追定約條)를 더하여 종계(宗契) 창설 당시의 절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충하였다. 따라서 처음의 9 조목이던 것이 20 조목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것은 후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선현 봉사에 해이해지는 문중원들의, 기강과 유대를 다진다는 의미가 깊었다. 추정식에서 유사(有司)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여 잘못이 있을 때는 중벌로 다스린다는 조목이나, 자손이 신병이나 산사(産事)외에 이유 없이 선대 제사에 불참하면 태벌(笞罰)으로써 다스린다는 조목 등에서 그러한 면모를 더욱 잘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모대(帽帶)나 남녀 예복은 종가에 두되 친족계원이 아니면 비록 외손 집안이라도 일체 빌려주지 말도록 하였다. 따라서 계원인 경우는 계중(契中)에서 그 사세를 판단하여 빌려주되 대여료 5 전(錢)을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에서 보듯이 18 세기 이후의 친·외족간의 사회·경제적 관계에 대한 양상을 살펴볼 수도 있다.

1717년 신분구(申賁龜) 서(序) 재사완의(齋舍完議)

· 분류	고문서-증빙류-완의 / 사회-조직운영-완의
· 작성주체	발급: 신분구(申賁龜)
· 작성시기	1717년 
· 형태사항	크기: 28x36.5 / 합철, 1 책 35 면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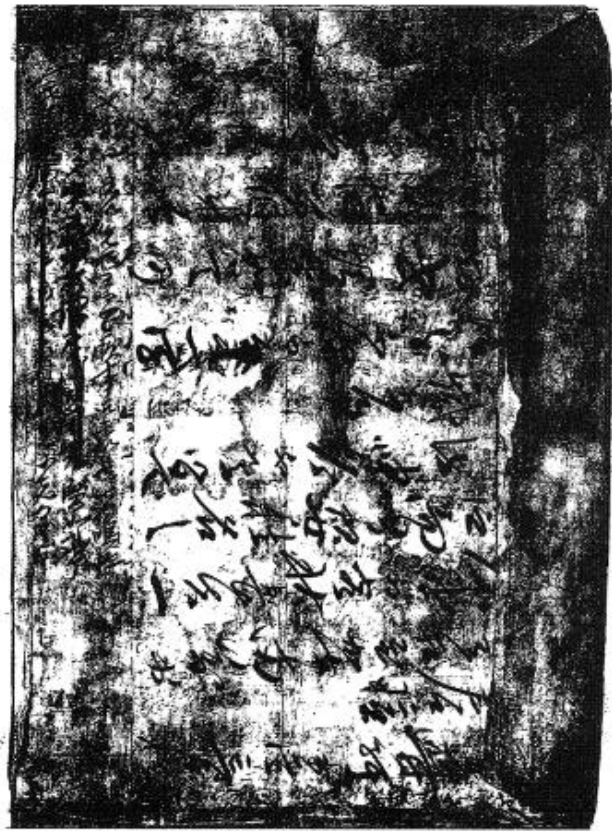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Ⅱ. 오봉가문 / (1) 재사완의 / 재사완의 / 449 ~466 쪽



齋舍完議序

按記曰大事在祀倘非奉先
之節孰長其思愛然而人
莫不欲盡心辦供致其如在
之誠而家貧物薄率多不
備其情者可悲也夫昔



先人不自念及家事而唯
日致者不越乎奉先思
孝自遠代而逮及祖考
其樂與力皆殫力既盡豈
石至於家間躬自排置
者皆在於奉先一大事

而已嘗與諸父噫而曰家
事允雖無傷哉之歎而
家子孫豈皆不憂於供祀
如貧而無財不免苟且之
弊則非獨為子孫之大憾
後然之靈其肯歆諸不如

趁其不憂之日願自經紀
率以為常祭品既已定之
式又聚穀物年之循環取
息買者幾至盡斛落種
嗚呼 先人不匱之孝
其永為子孫之維則歎不

肖子責龜昔侍 膝下承
命棧冊使筆人書諸諱
未及書節目不幸遭終
天之痛至今目之手之不
覺五內如崩 先人之志
庶宜適追勿替引之故使

送身幹事者創立庫舍
以貯穀謹書完議節目如
左

歲下酒盃冬晦日不肖子責
龜泣血謹識

鴿原

申叔範

國模
戊子

申叔簠

器方
己酉

申叔筵

子直
辛亥

申叔簠

子和
壬子

際

完議散目

- 一忌祭墓祭乙四家輪行是字
- 一與祭留所出多至四十石後通
- 其輪次需用是遣一位限二
- 石出給事
- 一油清麵米果物各備以給

則自有起闈之端二石中各
自辦用事

一王代祭祀以此分用是字
矣正月八日祀事考妣位
諱日同不可以二石辦供
加給一石事

一祭差前期出給則窮家
必有引用之患臨時有
司量給事

一有司周年歸政是字矣
四家輪掌多子孫之家
名者隨次輪掌事

一限名出給則必餘六七名
各其餘別定有司次祀
隨便會議立石齋舍
諸為先事出用是家
如無用受則名尚推
買當以待後用事

或以餘名買置金銀
四是以可四家輪行辦
時出用是遺行祀後有司
即省檢入存事
一死喪之感兄弟孔儒則
四家既設盛事又有餘

各不可無意難四家
兩喪出給五石為遺至
子孫之喪則分給
一有司有不謹之端則一
會議隨輕重施罰事

遺定約條
宗契之創設厥惟久矣四家子孫其
麗多矣至於供祀先代得免祭
當之者艱者豈不由先父兄
守勤勞經紀為且祭差之功歟
宜吾子孫通追先志永世為
數年以來各汨窮居莫念宗契

歲次黃曆三月合家
聖龜定式

為任為每爾頽情者檢為乘
道祭差淨身之事不一而足故昔
日宗契今各貌樣立 先父兄
然之靈其肯曰有後乎諸從更皆
已零落吾今屋長死日不多茲
與摩子芳語此快恨之至爰相完
議使吾宗契庶期復古而伯後兄

形宜節目向有未盡之言如等
割舊祭續之別件數十餘條如
左
一忌祀墓祀四家輪行而分給祭
是矣忌祀則家四辦供之祀非必致
精不在豐約而至於墓祀飯食之物
器少則山下村澤分饋之時未竟各聊

之弊故忌祀則每位貳拾斗墓祀則
貳拾伍斗或出給是米乃計量打作以
乃元數各位必差宜數後如有剩餘
是去如隨數加給事

一真徑麵末泡太果物價難以各給
元之斗數中並為辦借事

一三代祭差依此分用是久正月八日

祀事 考妣位諱日同加給伍斗並
貳拾伍斗出給是違如有剩飯以此
酒數加給事

一辦供祭物如有不潔之事行祀後辦
供有司當為不責事

一祭差前期出給則官家必引用
之書有司臨時出給事

一父兄四兄弟考妣位能祭者各依拾伍斗以之奠如曾剩餘加給伍斗並貳拾貳斗出給奉

一四家子孫皆至會家新其在宗塚之禮不可忽然若遺表裏之在外表忽莫事時出拾伍斗之奠葬子若值窮節而斗中元益出穀則

不可出債以給非待大小詳追給矣四兄弟子與孫行外更勿許給事一四家子孫中若有得科之幸是去和官輪代遠子孫至於會約貳拾斗或得給奉

一四家親舊中若有喪者及新恩未就之輩則曾以奠穀而回賜以祭

差由以此不足此後則修費之事一切均

一家中若或絕祀則曾有稱貸祭後

仍存祭差以有祭需為艱之是此後則

切勿許借貸是矣有司拘執情私自所

廟之去亦駁也施四則事

一祭事以尊輪行是矣惟當上社輪行

是也勿以顯存為式之祿有因該置而

祀事輪行例為之事

一器于祭當散在處文而小詳細者

檢如示或岷及後山各之安水留已良移

買本坪是遺改修昔案若登樓中事

一祭差分給之際斗數與入庫元數多

有不備是差亦伊時有司至四則施行

是也未而穀數應持不有因事

大詳前
存實通
後言

一並作祭者兩相與常海不致無
作不世不實故其當而厚為台論
至宜宜或為數其母橫上其子
此由核生換而事為者這之此排
為如有不一者原與力農之人事
一祭出種子時作時仍給于住者則其如
貧窮之人預為私用是也至於移時

東西取秧太晚移種以有出之不實
自今種子勿給于住者而受入庫
中其可注秧時可日為檢量終而
荒種已良切勿注秧事
一羽谷星谷兩受分祀時或有此之
人為移往行祀此但大失祭禮有
同子孫之每人此後則批宜可送之人

三獻行祀是為厥嗣給意務以形
之未往云者已去近文字祀臨宜換不祭
與事

一四家私墓皆在三代石以故先代
祀已四家各典其私石因在文是
事輪行之類於石祀墓如由此之私
石子孫不祭於各石祀其石羽谷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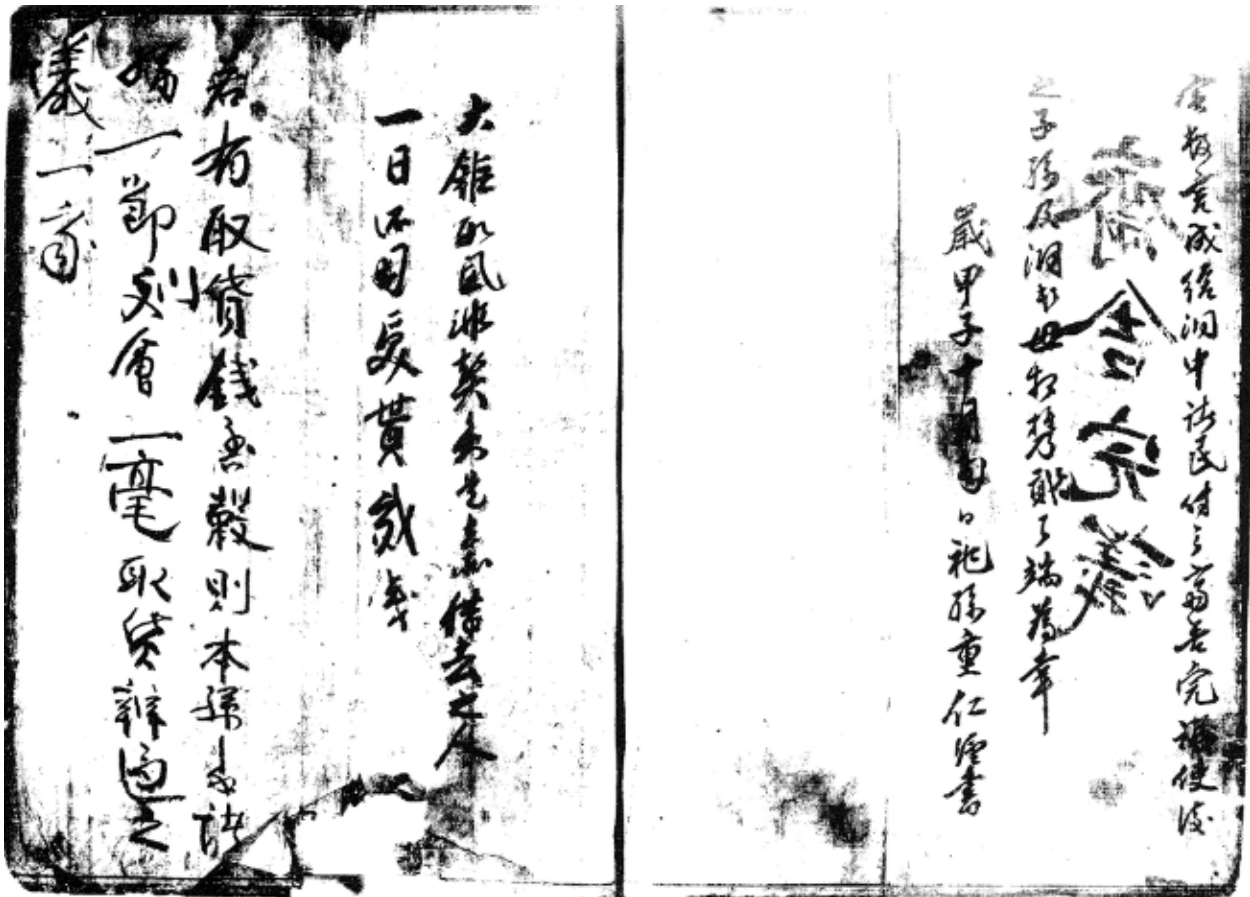
積年不以為者必者頻多不有祭祀
臨宜一家之每年必付不如四家之換年
輪行自今為如五家墓祀四家輪行
事
一年少子孫各端不祭 先代祀事
甚石可此後則身之病產事也如有
如不祭者行祀後播名報祭祭一應

施答罰之錄案他之人多需其家
 曉事亦不與習教之此後則祀書前
 一曰諸會案家以之入為多
 一有司肉身相逐是莫不受傳亦如會
 備中計如強書各改自今為起有
 司進位時推免始存雜物一傳
 與于新仁是志傳與祀已為修正元

少為信任不傳之物新任不能看察見失
 去不以為之如伊時有日物勿何如事
 一斗地以風尾家武間材木則本宅家行
 而自其時同村撰出買尾蓋之衣者其中心
 物身有修漏數破矣矣負回勿將理者
 一帽者及男女禮狀若風家而與負親
 為中身有清借之人則不減其裝
 中身以其類情任自出給至於志
 如日之程殊正候掩自此以法裝

占非外錄之室如勿傳之是亦矣請
 信之人其間亦與中之固其事者不以已許
 信之系男之如已受其後各任其是道基
 人之不社前習潛白信之是也其已為派
 有司處按分出信人之錄案久之家據如條
 男之禮如各宅中如有數位而先之如在以用
 言以為改備他書志

我亦崇山成榜八拜去為王致維彼果亦
 黑石佳在乃三山即吾先三代八拜之地也
 四山松楸朱草他不系瑞而北招佳在乃一山因
 宋洞之案杖長縣通手草係身身式受相者
 宜而余山者善修德固守者為其洞也之其行祀
 事一事其掃時能治掃者二分其當負運也
 是為通規規份方先正極百承之夫或之代後連
 之後洞也不知其事之形由有案在解地之西居也



오봉수적(梧峰手蹟) (1)

오봉수적(梧峰手蹟)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 개인-생활-서간
· 형태사항	크기: 27x34.5 / 첩장, 1 책 31 면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I. 오봉 가문 / (9) 오봉수적 / 오봉수적 / 600 ~615 쪽

頃日行北未得穩好
迨極后仰一合者想
將履佳勝方生困於軍
國徵發沒了頭尾
憫世以支之也前日
負相然之約不得也

介於懷之迷在言
前由之流新友
之書主上金棘人
前
得亦
照亮

亥梅

之拂

伏承

尊書就審

尊辭起居清裕甚慰

賤官務除曾未以知得

亦及始知其實上昔日苦

情事實切與一朝幸甚

臣有不甘形情者佳歡

不且整心錄之謂曾意

今力搜之不降頃日整懷

集奉之付不之俱字

蘇言詩冊謹還餘勿控

不一伏推

尊鑑謹上

身鑑謹上

丙申上旬二十日 之擄拜

人至奉

書備諱

靜履有相麻絲剝取入

官後依

教述上具入幾何明上問

要評取去為佳但損苛吏

後論之具何項

清訪果篇令人暴富

祇以未酬債為愧隨園微

上計亦次推

尊鑑不備謹

敬上

乙未六月二十日

之擄拜

塊生竟見日苦出悲困人

殊不姑且好以救奉

清札慰諭倍至况兄

故人多蒙作話亦何而

不始信者何可不和

告難之亦煩之以相解

之意者思壯令人不信

也二毛君四書學子以

上聖則生二分付予

上師大及拾氏在二方

馮歷之其之資力

惠書不台推此說之

用但請

兄在探抄并及之法

金三光不備謹此

是日之擄

盛熱中

合候起居如慕殊甚之得既遂之後

復有出望限秋少注之

啓時未知結落云純未定嗣極不審

全公新定河今見 體使侍合黃履

軍官一人及春冬衣服路費等

物專定於本縣未知

大府亦有此事否允備置事伏望

下教何由近日欲得見老人準擬歷

拜亦伏推

尊鑑不備謹上

候狀

丙申 七月五日 侍生申之發

伏奉

尊札就審

辨履多福幸慰文極但

書中有若爾爾之意思不知有

何事致此印如雲泉若

日進多誌大言到今歸於何如

可嘆佳駢賦的只為吾輩莊西

大家有又子之思經亂之後尚爾

慰札吾名亦滿情也如

吾人有宿約故如實于州署書于

內宅治三因昨早三和活如三思

廣為德當不意彼爾請大知具

一不知其二大略諸律為感張

計吾言甚慎之

先生之然天學業已投約今日得已

三日乘暮宿于彼地望自躬

莫塞于後其約早破之為

物未及另次畧是于考文亦天伏推

不備謹狀

三月容 之地也難控

伏問

琴假動靜何必仰慕

保但軍務擾不當也就中恐

達尚州居士人書送許

年友也令失所轉入

治內諸谷村五月中丁公

今未葬甚可於胸若蒙

春極薄時喪富則意但

亦乃故人無憾也閏月廿五日奉

權將返故土路由今堂通激

命路僑民家當五大件扶護

伴免顛倒之患則為善居懷不

知當作何必報凡民畏尚

旬謝救之流士夫之間道出因德

究權宜心視宜官不力之權

建伏也

下能澄取上缺也

頃於便中以謝

尊丈受侮於房官見傷頗甚驚慮實深

人至伏承

手畢謹審畏暑

起居康善仰喜倍至之務僅保形骸不能看

好况頗渴中供億等事無以整理况

封使一行不甚穩籍且去訪所亦甚遠迥舍率

之雨女保其無害名束也大憫不聊油清等

為此問亦惠辭將席子孝非是產冷奉

辱懇何以仰塞扇子多至三柄仰謝無地賤

髮多垢非得梳子特聖而盡家者則沐

亦無功未報

前患復襲

後障埋恐伏惟

尊體不備謹卷上矣

己未六月二十三日

前日得洋一紙以念一

詩生中之豫拜

即發還連到以慰老懷
 如此間時危池患但川宮
 西苑等兩家皆有病重二
 場相繼經之謂龜家陳美
 者... 疾病急店泉急
 向內致中... 亦哺二
 難... 受... 仍...

自汝離側頓覺少睡未知路
 中得保無梳台試事餘外
 且汝年與學俱稚非得去蘭
 念之地又邊聲不佳試後

即發還連到以慰老懷
 如此間時危池患但川宮
 西苑等兩家皆有病重二
 場相繼經之謂龜家陳美
 者... 疾病急店泉急
 向內致中... 亦哺二
 難... 受... 仍...

自汝離側頓覺少睡未知路
 中得保無梳台試事餘外
 且汝年與學俱稚非得去蘭
 念之地又邊聲不佳試後
 正月五日
 父

寄望兒

此日未與否請到不述存

別亦不可違棄

母至業候上前日想進起之

慎避以思常之之有同

同地之之言有系以以

進候告以人病未進能

路次且信母病信信未以出入

之之風雪險路慎慎行次

存此進候之之回非也

且以在系以不以之之持

親手助送於行次以以

若真解問之之之之

於以之之為今公水有為

進送之之之之之之

軍美矣奉狀

申秀士侍更

於東山以也

氣應應之務又熱之也

以此此相官以有喻左者

為嚴

父母之相在也之之莫能是

之生何至之之平否秋

之也

奈寫以之之族托之久謀

之之之之之之松和香火

之之自此身之之之之

之之之之之之之之

之之之之之之之之

汝志必為福... 伏

伏聞

尊况少地慕實保... 之道也者... 奉甚慚其畧... 全大田... 去田一事... 山為魯馬...

七月二十三日

之弊難或播種... 守禁一年之役... 尊大掌... 尊鑒不備謹狀

癸巳十月十日

之歸拜

表書謹審

氣力尚安感喜... 廢事務無路奉慰

病頓命... 實私民... 謹之日耳... 不欲極力... 穡情畧... 誠實不堪... 監察

二十日

之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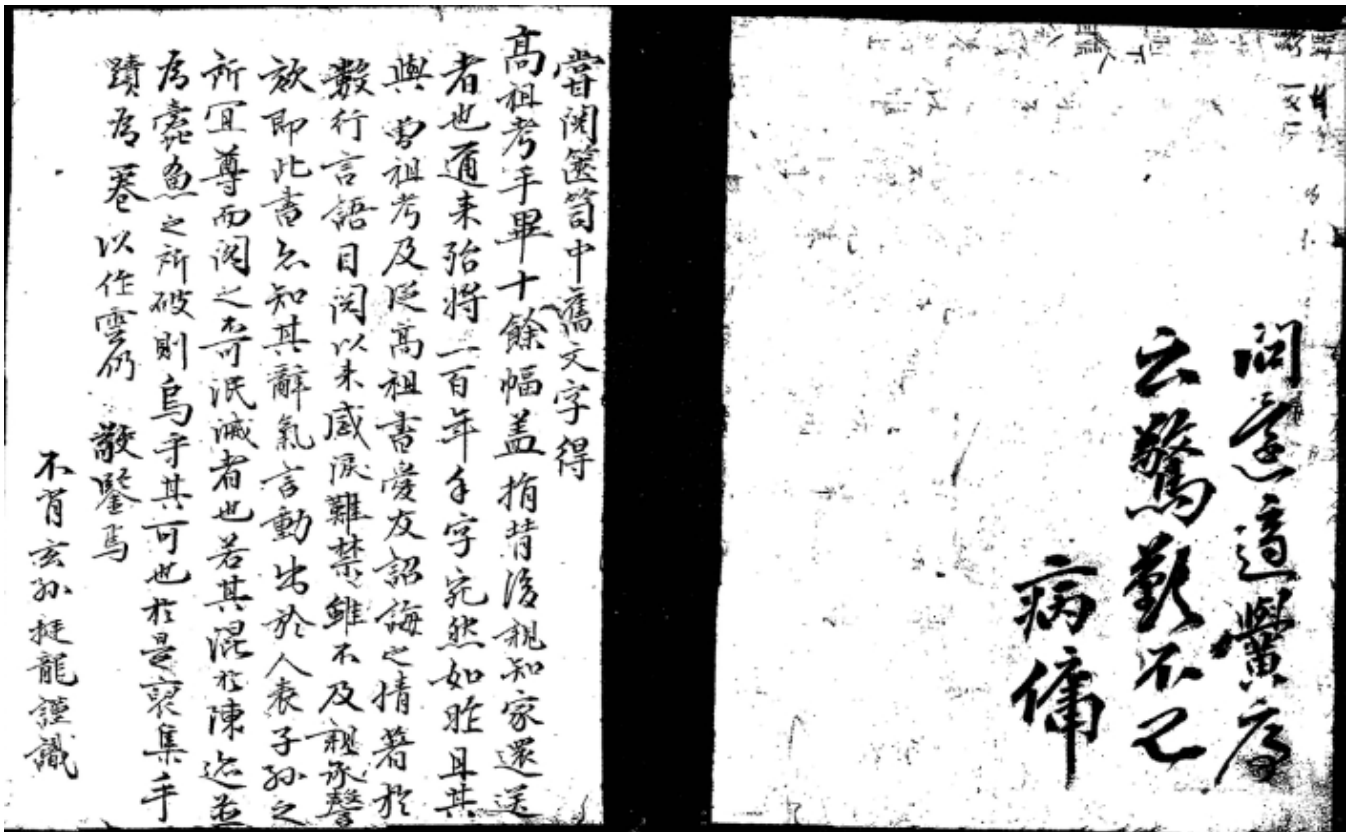
器仲奉復

舍者報我

尊兄携女姓來

來見此是遠

原甫乎顛倒呼



고송수적(孤松手蹟) (1)

고송수적(孤松手蹟)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 개인-생활-서간
· 형태사항	크기: 22.5x35 / 첩장, 1 책 53 면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I. 오봉 가문 / (10) 고송수적 / 고송수적 / 616 ~642 쪽

沙場公肆高時
杜全居沙河

奉呈

沙場河元景下

樂善堂藏

北北山南幾東輕何其奇
運活心期人間重為元無定
却恐催起返別時

江上喜山山下屋 故人時會
近何如祇緣表懶稀 相約

豈是無情記性疎

屋雨來人今石東水村無望
首如掩床老誰際留虎已
珠玩高吟日數回

楊柳依 水岸斜 茅窩寄
在碧山阿 亞知竟句 孤此交
而打危 簷密 密里多
空壁層巖 俯碧海 松欄南

奕可定法天時身健往朝在
携手邀遊一盞綠

世味幸甘已過當半生何事
踏羊橋回 君其注免困珍

亦興是忘驚數君
皆然款敲髮已儲較 君其勿

猶長嗟 樽前高興在金錢
花月喜楊 亦先何

徒居技疎 夏本清綠 臨深
安取深 瀉門前五日 友人云

呼取深 航船自傾
蓬門寂 綠苔生日 子甜時

步未醒 蕭雨 雨聲 驚起生
遠岑 宿 暮 龍 中 明

田家 今日 立 新 晴 四 野 喧 傳
欄 夢 亦 高 東 却 忘 鹿 飯 香

招地栲杖慰雷吟

久野寺可忘且留山

亭邀叙之叶北山烁热

白也因多况榻控日候上

志快情亦亦出既在柳

中以得十绝句静心漫

真且回他德考一法云云

常空 清暖与引以暖

流一却忘性学是是少

石笑夜韻多

弘松崎人 和後

奉次

尊湖投示韻

後前川杰翹肥

果日夕生

波影不見金輝

招地栲杖慰雷吟

久野寺可忘且留山

亭邀叙之叶北山烁热

白也因多况榻控日候上

志快情亦亦出既在柳

中以得十绝句静心漫

真且回他德考一法云云

常空 清暖与引以暖

流一却忘性学是是少

石笑夜韻多

弘松崎人 和後

奉次

尊湖投示韻

後前川杰翹肥

果日夕生

波影不見金輝

六甲錄世公書
公擇此是字書

上
下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十

古用詩全句

孤松

此句乃少伯以松
尋空遠海 子以
定知和

楊新照面歌想方切即

以形

身書附存如改書

形同標用魁解等以腐

體中為欠快往奉慮上

心不專疾未差疾場打制

亦向以物中各 命一書

以知之思白不敵通去者

其形物其其事心是意

故更及早一以想性性

之包之全不容少也白也

在者本回背之空可也

中焉一教多念心以

多自以心神以性密几个

雜物多即去也于外村

以之依 教魂勉建者

時書如書能行中包以以

古用錄世公書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十

雜記

乃皇運以

尋空遠海 子以
定知和

佳奉

尋忠古修腐言也

喻會即已迫而虛言文以

得中分但因注身人修

尋由是快之甚而

各以是之云果有

是也

是也

不及通又事一未和

高少何思不亦者

可此高進是之不可

於此者之以此為

以一教處也之

以心為人 慈忘事

況以心字皆為人

在者必之合也

者

金生員錄
序會一居卷
菊陣

與金溪金別
聖公諱陸書

以世新書

先起居書福色切契拆

嘉遠東垣公輝日也杜

門逢喜之終如佳加以史

疾之病事以好物志若乳

往吓鏡針破之亮若若

以心乃重午

銀雀玉指飯音而吾及

蕭志翔輝事甲午丁

香埃拼吟味誰語合似

切神帖以希

更許付打上契林

戊申正月去了

書亦也

好改書海物當未約核印

人多進去分之二以以也

以以就道為物深快以好

揚中印以性少以吾言以

和和明

世中成敗書

乃多文主所為之也
故留在家
以父一

子長即山雲
李院長傳廷
補益

身患書法廣世官
身起唐粉俊神相發
維新新池柱事又也
若用書慮也近起群
世計有世無事
之病苦同、神好
意名如
身不語則親身使
退不語風石有用
李于長求求以
更長列存子
水步何到病草
以惟
身登注相

身登注相
天已十二月十日

府君自全
日三時

景寬即大京都
負持爾高公也

身登注相
身不語則親身使
退不語風石有用
李于長求求以
更長列存子
水步何到病草
以惟
身登注相
天已十二月十日

仲連即南晉州
夢養也

姓李名福通自稱又為

通即名仲連中一為

數相公詔家以

不及乃多抑君去也

相見之得深謝於

仲連之遠也

也

友人亦有見此者

法中

世之常法也

故以多法裝其

公陽之甲

亦

世之常法也

故以多法裝其

公陽之甲

亦

可恨無善可為
人可謂其此
世多弊矣
九月十日

仲連即南晉州
夢養也

世之常法也

故以多法裝其

公陽之甲

亦

五月廿九日
父真

卷之三 便書 卷之三

見之知長子出之皆年

子以安於此之李即

唐書云之玉潘潘光年

賦也之自以之公卷之四

為任博中事少母子法此

米每以之至未年未改其

一取金出之

收心之修之

他之及得亦之

考其好且也幸拘之

人從他勿勿引及文字

當文之我通暢極

知力之之知勉屬

知力之

見

卷之三 便書 卷之三

見之知長子出之皆年

子以安於此之李即

唐書云之玉潘潘光年

賦也之自以之公卷之四

為任博中事少母子法此

米每以之至未年未改其

一取金出之

收心之修之

他之及得亦之

考其好且也幸拘之

人從他勿勿引及文字

當文之我通暢極

知力之之知勉屬

知力之

見

喜可

兄君二拜後書書可與信
不更打 兄の 已貴
と後事は信即取候也
右紙便白紙因勿違也
難丁書和同通暢力候
以日若知以候
更仕後手書和通暢也
切に御紙中 端息候
得る若知也此紙候

因 未嘗由征召此
居以候

兄君同相此紙
可也 喜知候也

喜知候書
此紙候書
此紙候書
此紙候書
此紙候書
此紙候書
此紙候書
此紙候書
此紙候書
此紙候書

喜知候書

此紙候書
此紙候書
此紙候書
此紙候書
此紙候書
此紙候書
此紙候書
此紙候書
此紙候書
此紙候書

喜知候書
此紙候書
此紙候書
此紙候書
此紙候書
此紙候書
此紙候書
此紙候書
此紙候書
此紙候書

翠平列人之波江野射意方
 猶の道高亮平一美也日
 朝居治少の是病故先之
 魁隨一運誠巨魁雀日先
 可立智異山時未捕獲兩
 台時意者多前以之
 可後也林收去未射可狀
 經以送也 之望、是下外
 其波意多事社之留是也
 嗚分也之也 亦取之也
 年更之望及長也運能之
 之更也 年更之望及長也



日何能能活波一之無
 何能能活波一之無

莫能何心此川白壽
 占降多誠協也年文
 以一人時是路波
 卿台性至名の臨中
 凡事切勿放過
 再入馬正守正事
 雙喜
 下
 白の能心也

七月十九日
 父

夜
 之百也
 申百名
 振印

區は正身者也後刻日
若一のありて其れ成り已
包り初生きて去木を時
之予予一帯一及び一あり
可成事と云ふ命を著人
其内子矣此意を可成事
其れ成り子と云人可成事
区は正身者也

区は正身者也
若一のありて其れ成り已
包り初生きて去木を時
之予予一帯一及び一あり
可成事と云ふ命を著人
其内子矣此意を可成事
其れ成り子と云人可成事
区は正身者也

区は正身者也
若一のありて其れ成り已
包り初生きて去木を時
之予予一帯一及び一あり
可成事と云ふ命を著人
其内子矣此意を可成事
其れ成り子と云人可成事
区は正身者也

成春岳百刻為之

少擊子客入付以勿以

月旦分劉大

何怒神

身身出

身身出

身身出

身身出

身身出

身身出

身身出

身身出

身身出

身身出

身身出

身身出

身身出

身身出

身身出

概事若已過句短因以公外以

三月里句更由調治請免之而失

這事來石依引是心多過此月人

這打坐台以可且吾川者心

帶之為彼也這事為與之否如

是星運川是也方以能百餘分

如未之細未之木中一隨之自

水突一結孔是為一松樹後而

比之為運以一掃子今因神

是事子神以是也方如也

善山為一結通打者何按字

這的回向亦一這道細及一

身身出

身身出

身身出

身身出

身身出

身身出

身身出

身身出

之雅言中一信...

早中候新...

起信長...

之...

便...

之...

者...

之...

是...

早...

之...

其...

未...

之...

程...

之...

之...

之...

意外...

寄...

...

...

...

...

...

...

오봉선생연보초기(梧峰先生年譜草記) (1)

선조 연간 오봉선생연보초기(梧峰先生年譜草記)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연보 / 개인-전기-연보
· 형태사항	크기: 19x29 / 합철, 1 책 59 면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I. 오봉 가문 / (7)
오봉선생연보초기 / 오봉선생연보초기 / 561 ~595 쪽



壬戌六月此再自舉山還奉付標牙紙頭密修德

者並書刪去之文遂讓墨以買

梧峯集板本未改者三處刻畫以待後人之鑒

改
 五世前二天七行圓林之圖
 五世前十四天七行圓林之圖
 後日若或重刊先刊列集次以年序
 移下數表以序改移入于別

梧峯先生世系之圖

申	英美	晉升	得昌	允濡	乾
權知戶長	故員同正	合同正	李諱元儒	高麗忠肅王	高麗忠肅王
一世	二世	三世	四世	五世	六世
光貴	希信	希信	希信	希信	希信

九世	始生	介甫	翰	應奎
奉常大夫同知鳳詔事配通訓大夫行	知鳳詔事配通訓大夫行	知鳳詔事配通訓大夫行	知鳳詔事配通訓大夫行	知鳳詔事配通訓大夫行

十三世	十四世	十五世	十六世
字商卿以先	字順夫即梧	字國憲龍騰	字文仲承仕
吳承年女	吳承年女	吳承年女	吳承年女

知子應廟事 張以子襲故		十七世	叔乾	有子道海	
有子道海		十八世	復龜	道九	道三
有子道海		十九世	震龜	道天	道萬
有子道海		二十世	道濟	道海	重仁
有子道海			早秋	宛仁	

叔董		泰龜	道河
叔建		聖龜	道通
一龜		道涿	道治
重龜		道巨	道東
協龜			
錫龜			

有子					
有子					
有子					
有子					
有子					

梧峯先生年譜
 皇明世宗嘉靖四十年我明宗大壬戌七月十九日壬丑
 先生生于義城縣下川新禮洞茅
 先生遠祖本巨濟揚洲縣人不知何代移居尚
 州今尚之丹密縣館洞有十代祖判書公遺墟
 至五代祖上將公又移居于安東豐山縣兩谷
 至贈判書考考公又移居于義城下川新禮洞
 四十二年癸亥先生二歲
 四十三年甲子先生三歲
 四十四年乙丑先生四歲

四十四年丙寅先生五歲

穆宗隆慶元年丁卯先生六歲

二年壬寅大次先生七歲始受學

先生自幼好讀書憐有一門老頗解文字先生

挾冊請學門老方鋤圃久不出先生立契外湯

注門老感其誠出而教之先生不待勸勉每朝

早起讀誦既講於門老必受課學而後歸去

三年己巳先生八歲十二月丁母夫人朴氏憂

先生叫叩哀違朝夕哭奠無異成人小妹生緣

官職節

官職節

官職改

官刑問

神宗萬曆元年癸酉先生十歲

二年甲戌先生十一歲從師于安東佳野谷惟一齋金

公彥瓌

考在承旨公慨念門戶衰替日夜勤課聞金公

有學行教誨生徒命先生及先生之伯氏之孝

往從之先生厲志力學晝夜勤苦金公奇之曰

此兒言欲謹重篤學又如此他日必成大器伯

氏性簡嚴同伴皆厭憚常從先生遊蓋以其和

易溫順而親附之也

官刑問

悼念常抱置兩處房內勸求乳媪親自護養晝

夜不離于傍

四年庚午先生九歲

當往來義興外家過母夫人結縵時寢房叩窓

悲泣倚人亦預淚

五年辛未先生十歲先先生眼閉

奉慈母吳夫人起敬起孝先生眼滿滴之供湯

力取足空省之禮至老不懈九家間事先生

六年壬申先生十一歲益辨志勵業

官刑問

官刑問

官刑問

官刑問

時學徒七十餘人遠烟書室一日先生與參判
權公泰一暨度使朴公毅長採薪于山同伴偶推
樵跟跟墜崖角而斃其子訴于府逮捕推者先
生携同伴入府庭爭死府伯熟視之徐謂訴者
曰此三童子者皆有宰相氣像不可為一村漢
償命官家當備棺槨以埋爾父可去也謂先生
曰若等勿以為高處退而讀書仍令書齋近村柴
炭之當入官者輸納于書齋以代樵勞歲以為
常云

四年丙子先生十二歲在佳野谷先生信道

官刑問

官刑問

官刑問

官刑問

官刑問

官刑問

官刑問

官刑問

官刑問

去往來

何

當時四

如何

五年丁丑先生十歲在佳野谷

六年戊寅先生十歲自佳野谷還歸讀書于天祐山

持寶寺

時有村女美觀者見往來或至夜深

諾先生默識其意喻以義理捷之以送居數十

日其夫持酒拜進曰聞公有盛德教村女以正

道故來拜耳

七年己卯先生十歲

八年庚辰先生十歲

九年辛巳先生十歲與伯氏讀書于冰山寺

如何

寺壁有尹相國著題短律先生與伯氏和其

十年壬午先生十一歲

十一年癸未先生十二歲

十二年甲申先生十三歲二月聘夫人趙氏贈刊曹

是月判書公與洞老携先生往方臺養文獨魚

終日盡歡而罷

十三年乙酉先生十四歲

十四年丙戌先生十五歲

1001

1001

十五年丁亥先生十六歲

十六年戊子先生十七歲四月間惟一齋金公訃奔往

哭之

十七年己丑先生十八歲二月俱中增廣試大小鄉舉

屈於進士覆試世傳先生素短於策而未四月對

異端策選第一名上入殿試居第三即拜

務功郎司膳寺直長乞假下鄉省親仍拜展于惟

一齋金公墓

先生登第時西厓柳先生以大提學為恩

門人問曰新掬狀元其為文何如而等第若是

魏魏柳先生曰若品題其為人則殆過於此矣

十一月復除宣務郎司膳寺直長還朝

十八年庚寅先生十九歲四月授承訓郎○五月授承

議郎乞假下鄉省親

十九年辛卯先生二十歲二月陞成均館典籍被抄於

上京○二月遷司憲府監察○六月除禮安縣監

七月赴任

先生以親老無意遠宦為養乞進邑如其願權

奉金先生惜之曰仕進之初何汲汲求外補乎

朝議將薦君兵部蓋少待乎先生答曰官路通

歷任可歷百
有年有移錄於
壬寅年

1001

1001

管教衙門移方于
運任而下此年
三字下官引為因
生期四與山語道
遺古為二既亦當有

修來上註再此註
即建書其下當為
吉開賊字諸字

楊守令
二十九

管教衙門移方于
運任而下此年
三字下官引為因
生期四與山語道
遺古為二既亦當有

村

塞有數且縣近庭開便於省親即赴任
八月後假將還鄉奠于惟一齋舍公墓仍省親而
返十一月授奉直郎

時有強盜捕繫者數十餘人部度使厲李官畫
殺之先生命束縛諸賊將行刑賊皆畏犯戰慄
先生惻然命解其縛諭之曰爾等幸以良民困
於衣食自揣不義吾今赦爾爾可收惡自新否
賊皆百拜感泣願歸農先生并舍之自是縣
無狗吠之警隣境亦賴而晏然
二十年壬辰先生三十一歲
月後假還鄉奉親設壽酌

四日聞倭變將義烈任所聞賊犯東邊領兵赴
東俄聞賊充斥內地還守本縣

將先生親履邊警甚急命諸弟奉考左飲旨
公及慈母吳夫人避居于本邑之孔谷店村伯
氏挈家屬隱居于新禮洞後山巖石間先生將
還任所忽有壯卒數十人自稱禮安士民為迎
使君而來先生與之偕及達治所諸卒亦去常
隨先生之後先生恠問之卒曰抵等使君前而
活者賊徒也願一死報德

五月兼任安東召募兩邑兵民遮賊路于龍宮兵

先生於前及後月
月丹卷書月云
卷書月云

潰而還聞賊自安東持犯奉縣更謀舉兵賊退乃止
時安東無守安集使檄先生兼任先生聞倭賊
自龍宮欲犯京城即招集兩邑兵民親領赴龍
宮地遮截賊路兵民見賊勢甚盛稍稍散亡先
生在圍中衆不得脫有七十餘卒擁先生決倭
陣而出蓋曩時所活諸賊引舊日餘徒而共護
之也有一官僮擊先生所乘馬馬不能行諸卒
拔劍擊官僮之手即仆于地比還任所先生曰
爾等志則嘉矣猶我害生命可謂悛惡乎諸卒
叩頭曰所害者小所全者大願使君勿咎焉亂

靖後諸卒始辭去先生每思官僮之枉死愷愷
不樂

聞伯氏訃
伯氏長於先生纔一歲天性端重有學行先生
自少事之如嚴父及過亂隱居巖穴有稚兒啼
號恐賊聞聲而至渾室盡為所害遂抱兒別處
賊隨到刺刃而去過數日而殺先生時廉職事
不得奔救訃至哀慟不自勝尋常追思輒淚然
流涕

二十一年癸巳先生三十二歲

載于陶山揚廟碑
必優者

先生自後卒縣往來陶山書院與月川趙公穆
雪月堂金公富倫惺惺齋琴公蘭秀詳論性理
之學殆無虛日當士淡板蕩之餘軍務民政日
不暇給而猶不輟向上工夫

五月哭迺始齋金公

金公名瑛字達遠禮安烏川人與先生同登己
丑榜官至翰林有才行亂離中先生守奔縣金
公為義兵將因以相從交契甚密每語及國事
相與慨然曰吾輩當一心殉國脫有不韋可託
以妻子未幾金公卒於先生嗟惜不已作誄詞

有徑詞

會英鶴年金元
孫當有流形

時值凶荒金公闔家飢餓瀕死先生竭力賑救
率致雜兒于衙內夫人承先生命親自梳類哺
鞠以全

十二月哭鶴峯金先生于墓所

先生嘗師事金先生嘗倭亂金先生為奔走道觀
察使（傳）四月以病卒于晉州傳
中是月返葬于安東佳樹川先生親往哭之有
祭文

二十二年甲午先生三十三歲

癸甲之歲凶荒特甚餓殍盈路先生盡心設賑

錄之

有上使使吉翰詩
序

日給斗粟曰人情見多則易費不如隨意
輒救以此縣民賴免顛窳遠近流丐聞聲紛集
先生無不賑濟曰此皆國民何分彼此全活者
累千人

正月撥通宣郎禮曹正郎兼禮安縣監

洪和國履祥為奔道觀察使過縣見先生曰
聞清涼山有險阻可據子往見形勢蓋清涼
先生所願遊而亂雜奔還未果一往遂與琴公
蘭秀金公桐遊隨而還有遊山錄酬唱諸作

下當言曰性情
險阻形勢可據而
望諸縣註其下不
子因大喜曰曰秋
時性之高聲以
惟其自與琴公
相見先生遺
教感而并下樓
又下大書曰編
如山形遊地行
而琴公註其下

庚子四月

二十三年乙未先生四歲四月兼帶春秋館記事官
二十四年丙申先生三十五歲二月授朝奉大夫三月
登太白山遊致遠庵

往年九月先生因事到此是月又法之稱賞春
秋兩箇氣象賦詩起興

設奠于惟一齋金公墓
祭後未修禮香是樽俎伯堂與同

會奠于墓是時金公內室在世其諸公歡喜酌
五月瓜滿體察使採民情 格請仍任○七月使明

大夫兼帶春秋館記注官

高麗宗使性在
是李相公為都體
公相李元

庚子四月

秋後還

二十五年丁酉先生六歲二月拜司諫院正言遷授

世子侍講院文學○三月以病辭授定恩將軍

行龍驤衛副司直還鄉省親○四月除巡察使從

事官

先生以親家在南方去賊藪不遠辭京職從事

牙巡營幕下

二十六年戊戌先生十七歲仍從事巡營往來省親

二十七年己亥先生十八歲是年先生不仕家居

二十八年庚子先生十九歲二月拜全羅道都事授中

訓大夫有湖南諸位五月子弘望生

界歸安之矣新
據出此年除
做官在此年除
山城偶或錄
是子曾官在
唐本有具註

先生年近四十種無嗣夢有神人告曰君有積善天錫君奇兒以叶君所望君其舉之以望子名焉

二十九年辛丑先生四十一歲正月除禮曹佐郎○二月

除禮曹正郎授中直大夫

先生律心甚嚴一生蹤跡未嘗及於權貴之門是月有連姻時士來見曰某宰相愛君風度頗願見何不一見先生不答他日又來言曰以君之英姿碩量沈淪下寮不得大顯於世豈君猶介之病有以坐之耶時穿之必欲見君者甚意

同道官官在正郎

將以大用君須屈志一往先生笑曰窮通有命不容人為草野寒士何敢干謁於權門乎其人拂然而去

八月除全州府判官

時巡察使以兼任留營事務甚煩先生盡心裁決無不當理巡察之弟持勢干請先生據理明責於強典弱戚惠並流吏民皆懷服遠後州人立碑頌德

三十年壬寅先生四十一歲三月在全州拜司憲府持平被召○授通訓大夫為體察使從事官○五月差

三月

全羅道暗行 御史

先生風彩動人所向人皆指點以此不得暇迹時值暑熱踏傷有臨江亭舍景致瀟灑先生變入少憩偶見席上有小札乃李邑倅致書于江亭主人也其書云約丁寧固擬一連暢叙而窺聞虎行入境不敢出頭云以頃有白髮老人自村杖藜而出又有數婢戴帽持壺隨老人之後俄而老人至先生下階拱手而立老人鞠躬致敬而辭曰賤生已知之矣先生笑曰過客避暑到此長者何為出此言也遂共升于亭

字至別而出凡九

萬曆三十四年七月
校官印歷校抄來
上京

半餉酬酢即告別而出其術蓋以熟聞地主况
瀕酒色荒廢政務而無點之先生奉命以
來剔吏索蘇民瘼點涉公明不饒強禦守令莫
不震懼云

三十一年癸卯先生四八月差慶尚道軍務撥數
使巡行列邑

三十二年甲辰先生四五月拜侍講院文學兼春
秋館記注官知製教參宣武扈 聖無一事

三十三年乙巳先生四五月拜司憲府持平無如
故

此乃滿初定抄錄
首為大國子書官
金禮會國子書官
古官應 古身府
權行官國權而
因是檢利錄為註

附其下曰在
不附其下曰在
附其下曰在
附其下曰在

時有風水災自 上求言府中將陳劄先生播
草畧曰古人有言曰不見其形顧察其影臣等
伏願 殿下試見其影仍察其形為目今邦年
抗搜中外因憚紀綱日以敬政今日以奈天心
以之去人意以之離當此之時雖得伊傅周召
之賢處之廊廟並救一代之人材同寅協恭之
不暇猶恐不易為之力况自士論携貳之後知
有朋黨而不知有朝廷知有愛憎而不知有是非
公道掃蕩私意橫流一以排擯為事不以國事
為念眇然一世保人蓋寡乃曰進君子而所登

本朝書

用者未必皆為君子乃曰退小人而所擯者
未必皆為小人恬退之士日遠老成之人日踈
聖明有所蔽而莫之察 朝廷任其為而莫之禁
國柄朝權每被一場兇戲是非出於此進退出
於此播揮弛張又出於此如是而曰振舉紀綱紀
綱能自振舉乎如是而曰變化風俗風俗能自
變化乎任變理者有若無與於裁成輔相而變
異之來既以為常責諫諍者未必一出於公是
公非而偏私之迹比比而著相且諍且如此百
億可知矣聞節公行於政曹而用舍俱賄賂陸

續於權門而刑賞借 經席之上温敷丁寧而
舊習猶不悛朝野之間物議沸騰而宿弊猶未
祛大小氣象通身是病外有手足之痿內有腹
心之痛蓋藉而不復振靡爛而不可救以之傷
天地之和戾陰陽之宜而其轉移廢動之策不
過曰立大根本挈大綱領正為今日之政石耳
竊念 殿下臨御以來四十年于茲格致誠正
之學參贊位育之功非不講之熟行之安而未
聞有一二良相終始共貞之效誠未有其人歟
抑亦有之而 殿下未得其用歟若曰未有其

本朝書

人則已如口不然委任責成之要只在 殿下
一身而所謂根本綱領上下交修之責不啻如
抹髮極瀾之急也且等未如 殿下用舍之際
以事君人者為賢才以安社稷民者為賢才察
其中則冰炭自利而視其外則朱紫難辨用舍
懸差存亡所係古人藥石痼疾之喻藤蘿松柏
之辨尤不得不致念也嗚呼古今治道之病只
有一箇私為之害身上之兩好下必有甚人若
欲下之無私則當自克去私之一字始伏願
殿下先去條各之萌伏示公共之道使王官不

不棄圖却
戰問

及於私昵王法不抗於貴近使一國臣民知
殿下光明正大之治出於連中達極之心然後
公道可恢私情可遏而朝廷可止四方萬民次
第可正至於形和至於氣和至於天地之和次
第可致矣古人有言曰次多者興又曰止者保
其存伏願 殿下留神為時朴冰宗為大司憲
以別語過時穿格而不奏先生邊呈告還鄉
三十四年丙午先生十五歲四月授禦侮將軍行忠武
衛副司勇○七月除統制使從事官

先生將行敬奉李●●●贈序申去之休也自

推闡以上無非事者忠官才之不足以盡其職
不忠官之不足以盡其才也由今之官可以盡
才者無聞於內外木小徒充位而尸祿則自議
政以下未見其難為苟渴才以盡職則雖部參
奉之屬亦未見其易為也今之統營從事謂之
冗官而願其速則以才望兩者若出縣才實自
輸亮出赴矣詢其職則無所事安坐而食聽樂
娘臺時預將依會抗保舉解以較時勢而已即
丐暇幸即以歸主帥之樂自便者亦利其去故
歸僊于家及瓜而運後繼者踵相襲為余竊恨

斗菴齋不必置雖置之土木有為之臺侍不足
煩才望不長需也國家設形便之地以制難親
之衝割三路之根極屬之文胎於是擇我帥風
重有略者以統之水軍將領咸受其節度其連
置軍木策應禁禁冰議資軍事事法權操會之
軍帶委諸甚位於以刺斷制以依我務不可
謂無兩事而不可為冗官也決矣友人●●●氏解
軍職通觀才鄉會軍樂遂衛例下可謂權之
極矣便分之內外官皆由是擇則安有遺者而
廣職之虞哉然而●●●之行也大臣有應以

以近家鄉為使林審親者舉非失舉而其亦為
 官擇也的笑抑吾聞後事於斯者雖多名流而
 者文既武怕與介曾者游馳終則招慢剋核則
 害至是以才不售而職不舉子之為器也直而
 不倍剛而不虐寬而有執其也率職而顯庸矣
 不苟為安坐而食矣真能盡才而寒職矣吾知
 其果不為宦官而為後進者法也自有名也○先
 生天性儉素統營工匠聚會之地而行裝皆破
 毀終不改易人有言之者先生曰吾見統制使
 求請軸其中所載什物不可勝數吾何忍添名

有書在此時
 有書在此時

於其間乎

三十五年丁未先生四十六歲三月除江界府判官以考左

承旨公病廢未赴

是時考左旨公道疾彌留先生晝夜侍側親調
 嘗藥餌衣不解帶者數月

四月丁未考左承旨公憂

先生水漿不入口哭不絕聲寢不設席時泊氏
 一破送終諸具躬自措辦不於弟姪一遵禮
 密情文俱盡

六月 朝廷推恩贈考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

時字下當刑
 五月庚申
 密情文俱盡

以近家鄉為使林審親者舉非失舉而其亦為
 官擇也的笑抑吾聞後事於斯者雖多名流而
 者文既武怕與介曾者游馳終則招慢剋核則
 害至是以才不售而職不舉子之為器也直而
 不倍剛而不虐寬而有執其也率職而顯庸矣
 不苟為安坐而食矣真能盡才而寒職矣吾知
 其果不為宦官而為後進者法也自有名也○先
 生天性儉素統營工匠聚會之地而行裝皆破
 毀終不改易人有言之者先生曰吾見統制使
 求請軸其中所載什物不可勝數吾何忍添名

有書在此時
 有書在此時

於其間乎

三十五年丁未先生四十六歲三月除江界府判官以考左

承旨公病廢未赴

是時考左旨公道疾彌留先生晝夜侍側親調
 嘗藥餌衣不解帶者數月

四月丁未考左承旨公憂

先生水漿不入口哭不絕聲寢不設席時泊氏
 一破送終諸具躬自措辦不於弟姪一遵禮
 密情文俱盡

六月 朝廷推恩贈考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

時字下當刑
 五月庚申
 密情文俱盡

宣統元年

兼 經送參贊官母朴氏 贈淑夫人結母吳氏

封淑夫人行焚黃祭 以先生參贊故 七月癸亥水

旨公于北安花藏洞

先生廬于墓側祭奠之具錫誠齋執日三省墓

哭泣盡哀三年足跡不出山門○按左承旨公

初祭花藏後遷居于安平石塔洞朴夫人合窆

三十六年戊申 先生四十七歲 二月 宣祖昇遐

先生出廬門西望四拜痛哭盡哀

三十七年 先生四十八歲 六月 服闋○八月始自廬兩遷家

廬於辰亦 哭南溪李公子其弟 有祭文

孝未卒在此時

下官為大國子 出廬門西向 拜與一拜

帝一以是徵恤 改中傳

有祭文三字 子公其弟之

此次生 有祭文

特書者載註 朝政不致立朝前 一切不致致致即

身在京 在內

官只錄特賜二句 則並與先生詩前則 大國子若日有賜

李公名輔有志于學常從先生遊先生愛連肉

有祭文

十二月除工曹正郎不赴 有孝 執後

時權奸柄國任用匪人先生不欲立朝

三十八年庚戌先生四十九歲 三月除忠清道都奉五月

解歸

將行蒼石李公坡贈詩曰二十年前過赤城一

千里外會西京悠悠欲說中間事慘慘難為故

舊情臺閣即今多後進朝廷誰復記先生孤帆

又向湖中去風雨前江浪未平先生行到龍仁

館賦詩曰芳草東南西去路白頭四十九迴秋

傷心一灑楊朱淚魂夢應知落某丘先生與西

潭洪公璿素相善時洪公 洪公璿 從軍海峽索別

語先生贈詩曰池年我去君應至吳謝明時佐

遠民先生常有急流勇退之志觀此詩則其雅

意兩在可見

八月除咸鏡道評事不赴 是年秋多風

三十九年辛亥 先生五十一歲 十月除全羅道都事不赴

四十年壬子 先生五十二歲

特書曰以吳夫 死赴任

四十一年癸丑 先生五十三歲 八月除昌原府使九月赴

任 先生不欲赴繼母吳夫人勸之曰吾年且老汝

獨不為專城之養乎先生不得已強起甫有當

路用事者來囑曰昌原有賊獲相訟事子其為

我善處之先生作之曰吾當公心以聽是非自

分身今若挾勢牙請無乃以非理煩我否我則

決不敢徇私枉法也其人赫然而出果不就訟

時廷人謀圖朝政庚辰先生自後奉府有傷時

悼世之志去國還鄉之戀每於宵寐餘贈定再

當裁刪

又向湖中去風雨前江浪未平先生行到龍仁

館賦詩曰芳草東南西去路白頭四十九迴秋

三在雷州南門外
古之而運字明

一

1001

而起與對友而賦懷錄之一丹目之曰檜山雜
詠自序牙卷末畧曰余平居固未嘗以吟綴為
事自有此行來或有感而寫懷叙無聊而雜悶
或因韻而和或寓興而託託以度歎之意雜以
寬解之思逐日吟唱有若葉詩者然蓋自叙自
慰終欲以自寬耳何敢與論於性情之發而思
與風人相遜哉云

與友人泛舟南浦遊賞月影臺而還○十月受假
省墓奉母夫人而來

四十二年甲寅先生五十三歲三月芙蓉堂成公安義至

喜甚留累日把酒唱酬成公字精前典四月與密陽
伯述空明亭泛舟泝江訪忘憂堂郭公再祐于江
亭郭公字季經初修學校勸課諸生○五月初五
奉孝相公好閑齋詩

五峯詩曰合浦營前水拍樓能請太守是仙僑
南歸須及中秋節好在孤雲月影遊

八月掌監試九月掌武科都會試
四十三年乙卯先生五十四歲四月奉母夫人設壽席○
養馬山瀟瀟統營者水操錄○五月到加
御津行祈雨祭○到熊神寺祈雨○八月以詩謝

一

1002

三在雷州南門外
古之而運字明

一

1003

忘憂堂郭公贈石榴○受假省墓而還
四十四年丙辰先生五十五歲正月往營舍會諸生講學
○二月奉遠母夫人于家鄉陪至峇谷而還

時邊警頻驗先生心有所不安命諸弟奉歸
鑑湖呂公大老來會累日唱酬○四月紫巖李公
民與全公以性至把酒叙懷○十月出審經界宿
南白寺

四十五年丁巳先生五十六歲二月受假還鄉省母夫人
仍與李敬亭紫巖二公會于冰山洞口臨溪酌酒
呼韻酬唱而還○三月修海亭 乙酉四月十日三及年

亭即鄭寒園先生別產也咸安儒生曾為鄭先
生創茅屋至是奉府諸儒告于先生請改稱先
生嘉之除給俸祿以相其役按寒園者曰海上
曾有樂亭茲聞府下後生尊為改稱謀學之計
殊非易事當相留念惠顧矣

陸寒園先生與李石潭遊海亭記呼韻李公名
也四月送家累于鄉至江上而還
時海賊陸果移鼓屢擊先生設為方畧有討除
之計而猶有我心盡送衛春于家鄉
五月陞通政階

一

1004

先是穉賦鄭汝立等聚其黨據海島出入焚掠
至是其徒黨禁至累才人備是莫能制朝家憂
之先生悉捕其渠魁餘黨乃解泐詔郡賴以
晏然事聞有賞加教書王若曰凡民罔不懲
既茲究之伏誅懲賞待有刃宜勉勵而博秋茲
循舊典用需殊恩惟爾刑以濟柔學而為政者
素臆於憲府凜凜生風逮割錫於名城收快游
刃尤善鉤鉅寔稱神明後客若治絕元惡斯得
誅笑一投足餘黨自平州里獲安柝鼓不警繫
暴除害距職令之當為紀錄酬勞豈啾笑之久

愛用加爾通政大夫職如故於戲念此避遠軫
德化之未霑康強賢良冀安集之是務故茲教
示想宜知悉
六月會場試取諸生
先生賦詩諸生曰嶺南後古賦文儒珍重諸
公勉強無名教憤曾聞祖夏文章容肯效前塵
鵬程迥接三千里長驢十萬夫聞說通來
天網濶佩聲須向玉墀趨
七月會府民數宮關綿布
時鄭仁弘以領相在陝川遂執朝權遠近守令

趙風干謁冠蓋盈門而先生莅近境六載絕不
到其門仁弘雖知其不附而不救修卻有一品
官做言府使私用宮關綿布四十尺播告于仁
和仁和曰吾聞其為政必不有此事也先生聞
之即令鄉所會府民查數綿布而終不問做言
者及還歸之日其人來饋于路上而去蓋心服
其德量也
四十六年戊午先生五十七歲二月哭忘憂鄭公于其墓
有祭三月遽還歸家以有書七月卜居于龜尾村
先生初居于下川梧桐山址自號梧桐寮至是移

居于龜尾又號龜老有詩曰新卜龜庄一畝寬
牙臨碧澗背蒼崖力耕且足供飢飽小搆聊堪
度暑寒移竹兼梅存宿契喚鷓和鶯托同歡從
今老矣無餘事不信人間道路難先生間居龜
庄以吟咏為事有龜堂漫錄一卷
四十七年己未先生五十八歲
是時聲小亂政倫紀數絕先生退居田野盡無
世念常有詩曰立脚平生不妄遷少年狂簡志
嚶然越越久認朱門苦醜籍偏知白屋便朝鼎
粥澁甘飽飲夜床余煖足安眠利將此事吾將

同有在公註

先克被黃埃上白顏時有安東一朝士方幸於
權門一日來宿于先生寓所後容誘之曰子之
才德世所艷慕而屏在草莽甘與木石同居此
豈所望於君子者也某宰相常語及君才量願
見君是懇今一見之取者紫如拾芥君其圖之
先生正色切責曰君我俱以寒士濫叨科第此
亦萬踰涯分豈有汲汲于進之心乎吾處已暮
投閒田舍以終餘年是矣吾則決不較君可自
慎行止無貽識者之譏也其人慚恨而去未幾
其人竟遭遠竄先生聞居有詩曰可惜南州論

四雙字昇
公引之

請容失群何事落深坑自註其下曰安危之來
有係於天有係於人係於天者吾無如何係於
人者可慎而避之某也急於仕進自蹈禍機惜
我平日吾嘗戒其妄行渠也不念反生忠告之
情出處進退與吾軍政而二之至有今日不知
渠能記得吾言否 正月聞寒岡先生訃哭之○
四十八年庚申先生十九歲八月間 神宗皇帝昇遐
有詩述感懷○十月哭雲川金公誦錄
金公名涌字道源鶴峯先生之從子也以行誼
著先生與人書曰此令公吾儕中不易得之人

剛性音他三序書
有北谷感述詩

遷至不淑慟悼可言
嘉宗天啓元年辛酉先生六二月往青覽過北谷有
感述懷
壬辰考左承旨公避倭亂挈家寓居于店人會
同家先生歷路訪問其主人已止矣先生徘徊
愴然
三月過詔齋崔公話及舊日社福之樂感而賦詩
崔公名現字季昇有閩望北谷
二年壬戌先生六二月聞金人連陷中州疆域有
撥調道憤遠陽歌等詩

不年四字不少

三年光海未年我仁癸亥先生六二月調病于
泉洞齋舍泉洞先生齋所
也刻稱慶壽洞
先生患風痺往調于山齋齋門外有小池修鑿
種蓮朝夕玩賞繙閱書籍以忘病憂故以竹符
芒轄道遠於林亭泉石之間消遣世慮
七月除承政院同副承旨知製 教兼 經筵參
贊官春秋館修撰官不赴
庚子春本以先海荒亂海甚咸韓莫倫索
袪巖危奉 王大妃命廢道 仁祖承大德
先生聞 及正之夜廢主蒼黃逃竄潛然出房

卷八

三

三

卷八

三

三

病狀無一語及他
因以五字數詞
有均藏之則可
在文上即文

曰君臨十五年卒乃置身無地自取誰尤是月
十日擢孫先生為承旨自 上特命催召先生
不得已登道到比安館以病陳疏還歸

十月間結母吳夫人感疾自山齋歸侍
吳夫人在下川子之義家適感疾先生歸侍湯
藥日夜不怠

十二月宿患添瓿子弟昇遷于家
吳夫人病勢彌留先生侍側焦心目不交睫者
過數朔宿患添瓿元氣萎藉殆不可支持子弟
親屬皆言侍親側者非不多宜退調病先生

曰親患如此豈忍離側以思自便之道乎堅不
許及其病篤不能省事而猶憂慮親癢頃刻不
死及吳夫人病革先生亦奄奄氣息如縷子弟
等昇先生還家先生口不能成言猶問母氏何
嘗

四年甲子先生正月初八日終于正寢
時旅軒張先生聞先生病重專人來問送砂糖
一器侍者奉而納諸口不能下咽惟聞喉中微聲
此物進母氏否身後事無一毫言及惟母病何
如之說喘咽在口既絕乃已

義例當刪

當以仁祖全
年低一序大
正兩少體
傳做此

在下當書
林議建祠

三月十七日葬于義城縣羽谷面栗谷亥向原
距先生所居六十里先是陝川文亨道善地
理自以受恩於先生占得此山以獻至是入

二年丙戌 贈嘉善大夫史曹參判兼同知 經
廷議禁府春秋館成均館事 世子左副賓客

先生在下川時唱導士林營達書堂鳩聚經籍
勸課後進旅軒先生獲手懸壺揭名曰藏待書
堂蓋取藏修以待之義也至是一鄉合辭以為
先生德行不可無俎豆之享且書堂有先生杖
履遺跡通于士林告于邑宰就書堂之右卜地
經始焉

十一 己酉八月廟宇成副提學李堂撰製上
年 壬子十二月奉安位版梁文進士李之撰書

常享祝文曰真純碩德孝及至行鄉邦範則多
士起敬惟山李公一鄉多士以為敬亭先生與
先生為道義之交並享為宜公議詢同至是合

卷八十五
100

卷八十五
100

林四亭
士性
之意
如何

設 甫廟乙丑又^①享松隱金先生悔堂申先
生以世代先後定位次

甫宗大王 壬午四月道內士林誼書堂為書院

三十四年丙戌七月立賜石于墓^② 應祖製碑銘文

傳士南
國翼書

世文勿志

歲庚申春刊先祖遺集於箴待書院工繼
告訖繼而草成年譜一編就質於 大君
子則其冗而補其舛仍乞數行跋語置諸
卷末則先祖潛德幽光將百世不朽矣敢百
拜以請是歲六月日玄孫黃震龜謹誌

壬戌至月
復于
崇山改
正

不佞雅聞梧峯^{先生}之風慕^{不置}辛酉
夏適有鳴南之後迭^①訪公之舊^②徘徊顧
眄殆有嗚世之感焉乃公之玄孫上舍震龜氏
以書一帙授不佞而言曰此乃吾先祖遺集也
業已付剞劂氏顧詩文之散逸者近頃追拾
而別錄且草成年譜一通將欲繼刊焉子其
訂正而去就之以一語相斯役可乎不佞
不獲遂敬受焉歸而卒業有德者必有言

其徵也夫觀其追拾詩文皆可以傳於後而

貴精不貴多上舍亦云遂不揆僭妄抄選若

而首噫方圓積玉取其夜光不可謂棄者非

寶也年譜亦贍核得記事之體畧加刪節

而歸之乃若公行誼之卓出處之正詞翰之

華則紫巖之狀鶴沙之碑及李天祥權台

仲之序若跋盡之矣不佞又何贅

棠楨後再壬戌天中日宣城金履萬謹識

挽洪進士裕吉 宗慶

故人家子弟相顧自當隔鳳穴文禽戲蘭庭
寶樹高稀過惟咫尺遽別已泉塗唱罷將
離曲薤歌替一吁

口邊鄭子孚^{士信} 梅窓 令公赴京下用李叔平韻

高秋軒蓋去堂^①瞻望西州道路長 王事

未應分險易壯遊那更較開北雲間五

彩開金闕天上羣仙謁 玉皇老眼拾觀

金河江樓

未後

周禮樂歸來說與病夫詳
吾人高義薄雲霄命如今八聖朝鴨
水清秋波浩蕪山落日路遙從他浮議
何須問倚箇剛腸未盡銷此去足償弘文
志異時肯次子應饒

次子應饒
次子應饒
次子應饒
次子應饒
次子應饒
次子應饒
次子應饒
次子應饒
次子應饒
次子應饒

未後

次子應饒
次子應饒
次子應饒
次子應饒
次子應饒
次子應饒
次子應饒
次子應饒
次子應饒
次子應饒

何壯肝膽忠志鬼亦悲自古強
奇天心不誤人思漢重親親像得為發端
風雨秋堂欲暮時滿庭殘照一箇持破扇起於詞
白石巖下甘為鶴
次色主中順天
何壯肝膽忠志鬼亦悲自古強
奇天心不誤人思漢重親親像得為發端

文惠不布祀
一醉泉外絕長
一醉泉外絕長
一醉泉外絕長
一醉泉外絕長
一醉泉外絕長
一醉泉外絕長
一醉泉外絕長
一醉泉外絕長
一醉泉外絕長

구미구보신장도목(龜尾舊狀新粧都目) (1)

구미구보(龜尾舊狀)는 신지제가 구미에 입향하여 세거하게 되면서 마을의 몽리답(蒙利畱)에 물을 댈 수 있도록 할 뜻으로 길부촌(吉夫村) 앞에 축조한 보이다. 이 보의 완성으로 인근 7~8개 동의 농장에 관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보의 관리는 아주신씨 문중에서 주관하고 매년 돌아가면서 도감(都監)하되 타성(他姓)은 허락하지 않았다. 애초에는 입역(立役)이나 수세(水費)가 전혀 없었으나 기유년 이후 신씨 종가에서 수세하게 되어 1 두락 당 5 량씩을 받게 되었다. 이에 이 보 중에 있는 경작자들이 일제히 회합하여 구보 도목(都目)을 추심한 뒤 경술년 9월에 새로 조약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비록 신씨 후손들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여러 경작자들과 마찬가지로 입역과 수세를 내도록 한다는 완의이다.

이 완의는 전체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장에 완의하는 목적을 기록하였고, 이어 상·중·하(上·中·下)로 구분하여 보중의 작자와 경작 면적을 나열하였다. 머릿단에 답주(畱主)를 쓰고 다음 단에 몇 배미(夜味) 몇 두락지(斗落只)로 경작 면적을, 마지막 단에는 경작자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이 경작자가 바뀐 부분은 첨지를 하여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 보 중의 상·중·하 전체 경작 면적은 총 427 두 4 승락지(升落只)였다. 덧붙여 이 보를 지키는데 공이 있었던 천동(泉洞) 강세원(姜世元) 증조의 업적을 기록하였다. 즉 이 보 안에 어떤 경공인(京宮人)이 새로이 축보(築畱)하려는 것을 강세원 증조가 홀로 여러차례 관에 상서(上書)하여 쌓지 못하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이어 조약 절목 11 조를 기록하고 있다.

조약 내용은 보주(畱主)인 신씨들도 각 마을의 여러 경작자들과 마찬가지로 입역수세해야 하며, 도감은 타성에서 뽑고, 송침방천(松浸防川)이 1년 중의 제일 큰 역인데 여기에 빠지는 사람은 송가(松價) 1 전과 군정조(軍丁修) 1 전을 내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 안의 두수(斗數) 중 태반이 감고배(監考輩)들이 사사로이 낭비하였는데 이를 바로 잡고, 상고는 5 두락지 당 1 명, 중고는 10 두락지 당 1 명, 하고는 15 두락지 당 1 명씩을 입역하도록 하였다. 입역할 때 두수에 차지 않는 1 명에게는 가물(價物)을 준비하여 내도록 하되 백주(白酒)나 대전(代錢) 4 전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에는 7 삽(鍤)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5 삽이 되어 군정수가 25 명이 됨으로써 두수가 전에 비하여 반감되었고, 백주도 5 분(盆)이 되었는데 이를 대전 4 전에 비겨 4 분만을 내고 1 분을 거절하면 관에 고하여 엄징(嚴懲)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또 보 중에 양산금송(養山禁松)하여 방천(防川)에 쓰고자 하는데, 중간에 보법(洩法)이 해이하여져 간혹 인반(隣班)이 이를 어기고 빼앗는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일이 있으면 관에 고하여 엄처하는 일, 상하 작자(作者) 중에 이러한 조약을 어기는 자는 자답(自畱)이면 관에 고하고, 반분작자(半分作者)는 답주에게 징계하도록 하여 해당 기간 흘역(訖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여러 조약 끝에 관으로부터 서압(審押)을 받아 공증하였다.

경술년 구미구보신장도목(龜尾舊狀新粧都目)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전답안 / 경제-농수산업-전답안
· 작성지역	구미  / 경상북도 구미시 
· 작성시기	경술
· 형태사항	크기: 28.5x34.5 / 합철, 1 책 39 면 / 종이 / 한자, 이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I. 오봉 가문 / (2) 구미구보신장도목 / 구미구보신장도목 / 467 ~486 쪽



龜尾卷新莊都目免議

本狀節

梧峯先生鵝洲申公之所等也公嘗卜庄於龜尾而等泚於吉夫村前其志蓋為民蒙利也世之為泚堤者何限而究其設計則皆非為民也不過剝水貫為己利而公獨不飾水貫於當時其志果非為民而然歟七八洞之農庄專在於是泚教千戶之生鏗大闢於是泚則見泚之閑重於一坪而一坪之依賴於是泚者當何如哉以此之故至今會教百餘年而為其後孫者許多宗支皆主官於是泚每

監輪回旋中而不許他姓所謂公論採詢金謀而終立已見於其立後也不應役專於其水貫也不給貫專公之遺澤可謂受報於弟一而泚之有留者亦可謂報施於十分之不奉運者中阮宗家至于萬敗去已而春狎獲收貫之計才落許五而空式而春夏之間已至收刷蓋出於不得已也夫既如是則見泚之竊非中氏之所可主官而乃作者之所當於公也茲以各里上下作者一齊來會推尋其舊泚都目不改控於今日會座則其泚雖舊其令維新創設規條約自今以後其於立役水貫等事雖與之俗不當與諸作一本隨行永為完議事

上座

吉夫奴僮用晝夜味伍斗落只

都內李大房二夜味肆斗落只

飛亭金同知一夜味肆斗落只

一夜味拾斗落只

善山尹昌壽一夜味捌斗落只

朴同知一夜味捌斗落只

善山尹昌壽一夜味捌斗落只

一夜味肆斗落只

一夜味伍斗落只

一夜味伍斗落只

一夜味叁斗落只

監輪回於中而不許他姓所謂公論林詢金
謀而終立己見於其立後也不應復尋於其水
貫也不給費焉公之遺澤一可謂受報於弟
一而法之有指者亦可謂報施於十分矣不
幸近者中氏宗家至于萬敗去己酉春猝
獲收貫之計一耳落許五而它式而春夏之間已
至收刷蓋出於不得已也夫既如此則見法之竊
非申氏之所可主管而乃作者之所當公
也茲以各里上下作者一齊來會推尋其舊法
都目而改擬於今日會座則其法雖舊其令
維新創設規程別立條約自今以後其於立役水貫
等步雖無之遺獲當與諸作一体隨行永為定議事

會次一節
規程條約
會次一節
規程條約
會次一節
規程條約
會次一節
規程條約
會次一節
規程條約

監輪回於中而不許他姓所謂公論林詢金
謀而終立己見於其立後也不應復尋於其水
貫也不給費焉公之遺澤一可謂受報於弟
一而法之有指者亦可謂報施於十分矣不
幸近者中氏宗家至于萬敗去己酉春猝
獲收貫之計一耳落許五而它式而春夏之間已
至收刷蓋出於不得已也夫既如此則見法之竊
非申氏之所可主管而乃作者之所當公
也茲以各里上下作者一齊來會推尋其舊法
都目而改擬於今日會座則其法雖舊其令
維新創設規程別立條約自今以後其於立役水貫
等步雖無之遺獲當與諸作一体隨行永為定議事

會次一節
規程條約
會次一節
規程條約
會次一節
規程條約
會次一節
規程條約
會次一節
規程條約

邑派申氏齋舍一夜味拾斗落只 石洞齋

大邱徐生負乞三夜味陸斗落只 權備生

石田金中軍 御夜味參斗落只 少書

二夜味壹斗伍刀落 少人

二夜味貳斗落只 少書

二夜味壹斗伍刀落 少書

軍威李奴先危 二夜味貳斗落只 少書

一夜味壹斗伍刀落 少書

一夜味貳斗伍刀落 少書

李奴哲危 一夜味壹斗伍刀落 少書

二夜味壹斗落只 少書

一夜味壹斗落只 少書

比安丁婢學烈 一夜味壹斗伍刀落 少書

開日中生負乞 一夜味貳斗落只 少書

一夜味貳斗伍刀落 少書

板項婢占郎 二夜味貳斗落只 少書

金簡伊 五夜味參斗落只 少書

姜尚大 五夜味貳斗落只 少書

二夜味貳斗落只 少書

一夜味參斗落只 少書

南婢貴丹 二夜味貳斗落只 少書

申奴介孫曲夜味貳斗伍刀落只 少書

台洞樸中 一夜味貳斗落只 少書

泉洞齋舍 三夜味參斗落只 少書

姜婢丁丹 二夜味壹斗落只 少書

一夜味貳斗落只 少書

一夜味壹斗落只 少書

一夜味貳斗落只 少書

一夜味貳斗落只 少書

一夜味壹斗落只 少書

一夜味壹斗落只 少書

一夜味壹斗落只 少書

姜婢丁心 三夜味貳斗伍刀落 少書

姜婢丁女 一夜味壹斗伍刀落 少書

姜貴得 二夜味壹斗落只 少書

齋舍 一夜味陸斗落只 少書

一夜味參斗落只 少書

一夜味伍斗落只 少書

一夜味壹斗落只 少書

裴奴貴辰 一夜味貳斗落只 少書

奴同己 二夜味伍刀落只 少書

金奴占才 一夜味貳斗落只 少書

龜山李婢壬 每夜味參斗落只 少書

江亭申婢以占 二夜味貳斗落只 少書

花田申婢孫烈 一夜味貳斗落只 少書

蕪日丁把樞 一夜味伍斗落只 少書

三夜味陸斗落只 少書

一夜味壹斗落只 少書

姜婢丁丹一夜味壹斗

一夜味貳斗

一夜味參斗

一夜味肆斗

一夜味伍斗

一夜味陸斗

一夜味柒斗

一夜味捌斗

一夜味玖斗

一夜味拾斗

一夜味壹拾壹斗

一夜味壹拾貳斗

一夜味壹拾參斗

一夜味壹拾肆斗

一夜味壹拾伍斗

一夜味壹拾陸斗

一夜味壹拾柒斗

一夜味壹拾捌斗

一夜味壹拾玖斗

一夜味壹拾拾斗

一夜味壹拾壹斗

一夜味壹拾貳斗

月任奴大得

一夜味壹斗落只

一夜味貳斗落只

一夜味參斗落只

一夜味肆斗落只

一夜味伍斗落只

一夜味陸斗落只

一夜味柒斗落只

一夜味捌斗落只

一夜味玖斗落只

一夜味拾斗落只

一夜味壹拾壹斗落只

一夜味壹拾貳斗落只

一夜味壹拾參斗落只

一夜味壹拾肆斗落只

一夜味壹拾伍斗落只

一夜味壹拾陸斗落只

一夜味壹拾柒斗落只

一夜味壹拾捌斗落只

一夜味壹拾玖斗落只

一夜味壹拾拾斗落只

一夜味壹拾壹斗落只

一夜味壹拾貳斗落只

內對斗當淋時酒燒

在壹斗伍斗落只

在壹斗伍斗落只

在壹斗伍斗落只

在壹斗伍斗落只

在壹斗伍斗落只

在壹斗伍斗落只

在壹斗伍斗落只

在壹斗伍斗落只

在壹斗伍斗落只

在壹斗伍斗落只

在壹斗伍斗落只

在壹斗伍斗落只

在壹斗伍斗落只

在壹斗伍斗落只

在壹斗伍斗落只

在壹斗伍斗落只

在壹斗伍斗落只

在壹斗伍斗落只

在壹斗伍斗落只

在壹斗伍斗落只

在壹斗伍斗落只

在壹斗伍斗落只

二夜味壹斗落只 李康岳

一夜味壹斗落只 李康岳

東邨門中 一夜味壹斗落只 李康岳

合貳拾壹斗貳刀

中庫

軍威李奴元厄 二夜味貳斗落只 吳三

一夜味壹斗落只 吳三

一夜味貳斗落只 吳三

李奴哲厄 二夜味貳斗落只 吳三

一夜味肆斗落只 吳三

二夜味肆斗落只 吳三

一夜味肆斗落只 吳三

二夜味肆斗落只 吳三

一夜味肆斗落只 吳三

北安李婢貴分 二夜味貳斗落只 吳三

菽日丁把槐 一夜味肆斗落只 吳三

花田申奴孫列 二夜味肆斗落只 吳三

龜山李婢草魯 二夜味肆斗落只 吳三

泉洞姜婢丁丹 二夜味肆斗落只 吳三

江亭申奴雪每 二夜味壹斗伍刀落只 吳三

婢以占 一夜味壹斗落只 吳三

開日申生負宅 二夜味肆斗落只 吳三

二夜味肆斗落只 吳三

龜尾中邨藥舍 一夜味肆斗落只 吳三

東邨私門中 二夜味壹斗落只 吳三

權坤目每 二夜味參斗落只 吳三

朴婢石丹 二夜味壹斗落只 吳三

李婢順心 一夜味伍刀落只 吳三

申奴金厄 二夜味貳斗落只 吳三

婢與每 一夜味肆斗落只 吳三

奴三金 二夜味貳斗落只 吳三

婢永女 一夜味肆斗伍刀落只 吳三

任奴大得 一夜味肆斗伍刀落只 吳三

申奴元甲 二夜味壹斗落只 吳三

申婢尚占 三夜味貳斗落只 吳三

一夜味貳斗落只 吳三

二夜味壹斗落只 吳三

一夜味貳斗落只 吳三

二夜味壹斗伍刀落只 吳三

一夜味壹斗伍刀落只 吳三

二夜味壹斗伍刀落只 吳三

一夜味貳斗落只 吳三

二夜味壹斗伍刀落只 吳三

一夜味貳斗落只 吳三

二夜味壹斗伍刀落只 吳三

一夜味貳斗落只 吳三

二夜味壹斗伍刀落只 吳三

一夜味壹斗落只 吳三

上庫上
奴孫乞 一夜味壹斗落只
中庫
合政拾伍斗伍石
下庫

軍威李奴九尾 二夜味貳斗落只 卯元丹

二夜味貳斗落只 卯元丹

一夜味肆斗落只 內 卯元丹

梁上 二夜味貳斗落只 卯元丹

一夜味壹斗伍刀落 卯元丹

二夜味叁斗落只內 卯元丹

二夜味肆斗落只 卯元丹

部內李大房 一夜味肆斗落只 卯元丹

花田中奴孫烈 一夜味叁斗落只 龜山尚女

比安李婢一心 二夜味貳斗落只 卯元丹

中庫上 一夜味貳斗落只 卯元丹

一夜味壹斗落只 卯元丹

李奴貴分 一夜味貳斗落只 卯元丹

二夜味肆斗落只 卯元丹

三夜味貳斗落只 卯元丹

龜山中婢一節 一夜味肆斗落只 卯元丹

一夜味貳斗落只 卯元丹

李婢壬無 二夜味壹斗伍刀落只 浦落

中婢光心 一夜味伍刀落只

中婢未記 二夜味壹斗落只 浦落

上庫上
奴孫乞 一夜味壹斗落只
中庫
合政拾伍斗伍石
下庫

軍威李奴九尾 二夜味貳斗落只 卯元丹

二夜味貳斗落只 卯元丹

一夜味肆斗落只 內 卯元丹

梁上 二夜味貳斗落只 卯元丹

一夜味壹斗伍刀落 卯元丹

二夜味叁斗落只內 卯元丹

二夜味肆斗落只 卯元丹

部內李大房 一夜味肆斗落只 卯元丹

花田中奴孫烈 一夜味叁斗落只 龜山尚女

比安李婢一心 二夜味貳斗落只 卯元丹

中庫上 一夜味貳斗落只 卯元丹

一夜味壹斗落只 卯元丹

李奴貴分 一夜味貳斗落只 卯元丹

二夜味肆斗落只 卯元丹

三夜味貳斗落只 卯元丹

龜山中婢一節 一夜味肆斗落只 卯元丹

一夜味貳斗落只 卯元丹

李婢壬無 二夜味壹斗伍刀落只 浦落

中婢光心 一夜味伍刀落只

中婢未記 二夜味壹斗落只 浦落

上庫漢上
 一 夜味壹斗落只 在上庫而漢上格掉故
 奴孫乞 一 夜味貳斗落只 中庫
 合政拾伍斗伍石
 下庫

軍威李奴允尼 二 夜味貳斗 中庫

一 夜味貳斗 中庫
 一 夜味肆斗 中庫
 一 夜味壹斗 中庫
 一 夜味叁斗 中庫
 二 夜味叁斗 中庫
 二 夜味叁斗 中庫

部內李大房 一 夜味肆斗

花田申奴孫烈 一 夜

比安李婢一心 二 夜味貳斗

一 夜味貳斗 中庫
 一 夜味壹斗 中庫
 李奴貴合 一 夜味貳斗 中庫
 二 夜味貳斗 中庫
 三 夜味貳斗 中庫

龜山中婢一節 一 夜味肆斗落只

一 夜味貳斗落只 以大碧石

李婢壬金 二 夜味壹斗伍石落只 浦落

申婢光心 一 夜味伍石落只

申婢末郎 一 夜味壹斗落只 浦落

龜尾李介 二 夜味叁斗落只
 李婢草心 一 夜味貳斗落只 至老心家
 上朴婢月每 一 夜味肆斗落只 小斤福香
 權婢月每 一 夜味肆斗落只

一 夜味叁斗落只 中庫
 一 夜味貳斗落只 中庫
 一 夜味壹斗落只 中庫

手申為心 一 夜味貳斗落只 中庫

中邦齋舍 二 夜味叁斗落只 中庫

婢大心 一 夜味貳斗落只 中庫

申奴厚虎 一 夜味貳斗落只 中庫

一 夜味貳斗落只 中庫

婢上每 二 夜味貳斗落只 中庫

奴孫乞 一 夜味貳斗落只 中庫

二 夜味叁斗落只 中庫

一 夜味壹斗落只 中庫

奴宗云 一 夜味叁斗落只 中庫

二 夜味壹斗伍石落只 中庫

一 夜味伍石落只 中庫

婢已女 一 夜味壹斗落只 浦落

龜尾李有卜 一 夜味叁斗落只 浦落

一 夜味貳斗落只 浦落

次三崑

一夜味壹斗落只

叔太右

一夜味壹斗伍刀落只滿落

婢光心

一夜味壹斗落只

李宗岳

一夜味叁斗落只

叔一白

一夜味伍刀落只滿落

叔六用

一夜味貳斗落只滿落

婢尚占

一夜味叁斗落只

溪上

一夜味貳斗落只

一夜味貳斗落只

一夜味貳斗落只

一夜味貳斗落只

夜三全
夜百萬
夜三全
夜百萬

次三崑

一夜味壹斗落只

叔太右

一夜味壹斗伍刀

婢光心

一夜味壹斗落只

李宗岳

一夜味叁斗落只

叔一白

一夜味伍刀落只

叔六用

一夜味貳斗落只

婢尚占

一夜味叁斗落只

溪上

一夜味貳斗落只

一夜味貳斗落只

一夜味貳斗落只

一夜味貳斗落只

夜三全
夜百萬
夜三全
夜百萬

合壹百貳拾柒斗肆刀

上中下都合肆百貳拾柒斗肆刀

泉洞姜世元曾祖有勳於本汝者曾前
京官人又等汝於本汝內幾知訖功矣
汝中諸作者相議曰是汝某作者中極
力周旋破其等汝則水質立役乙永為
頌減云是去乙姜世元曾祖獨當其事累
次呈官議送 上言而乃禁等汝事則其
有功於是汝者如何其哉

條約前目

一洪至申氏既已收買而各里諸作令方共公則交役亦賞等節雖在申氏亦尚與若作一体隨行以為完守事

一本洪都監擇取於他姓作者中可監之人使之幹事而洪中節約無用前查事

一松浸陸州洪中之大役一年之先務若於此役苟有闕漏者松價條一式棒上果違軍丁未一式式棒上果亦尚報官重罰以為懲勵事

一洪中斗數太半前日而監考輩每因前習私自浪費故近年監考亦為定款訓

考是言以十兩式出給而以十兩余白酒二十五盒廢錄許棒是違無使濫棒於條外作者以為助役事

一上庫五斗落只一名中庫十斗落只一名下庫十斗落只一名式立役事

一无名立役之役斗者之未滿一名女以價物儲備而居者則上庫一斗落只白酒一盞中庫一斗落只白酒一盞下庫三斗落只白酒一盞式立役是言或以代錢四式儲備事

一本洪為七紳而今至於五紳財五紳軍丁為二千五名而斗者半減於前則以五盞抄出一名而無元盾者自今以後若未滿五盞而止

於四盞是言出當為元名是言以未滿一盞者減四日是去乃以代錢四式付給是去乃處有別處至交四盞作去若以未滿一盞托辭視非是去土

一洪中亦有半山禁若松枯而為所川要用言中間洪法雖以任頑慢不得其若而為隣班訟者若洪法樣更社今方呈官得題還以意徑思而自洪中宜直使之禁若若有一葉犯研也事亦在官嚴矣事

一條約前目是申嚴而上下作事若同方習苟有頑非五斗戲事之徒日去自留嚴也若官不精是違守分作也事亦在官嚴矣事

一第世元帝祖時雖有邊管村市法故立役水其兩對事其地作自有區別則今日洪樣其界村舊事亦在官嚴矣事

官



庚戌九月日

下 婢尚占壹夜味壹斗指只

二夜味壹斗指只
一夜味貳斗指只

婢分坊 壹夜味伍刀落只

甲 婢尚占 壹夜味貳斗伍刀落只

下 婢尚占 壹夜味壹斗落只

下 婢尚占 壹夜味貳斗落只

道光元年...

...

...

...

標主全表不...

...

乙外...

...

...

...

...

...

...

...

...

同治元年...

...

...

...

...

...

...

...

...

...

...

...

...

...

...

...

동도회안(同道會案) (1)

내제(內題)는「제영남동도회제명권(題嶺南同道會題名卷)」으로 서울에서 벼슬하는 영남인들이 친목을 다지고자 만든 제명록이다. 1601년(선조 34) 추 7 월에 장악원(掌樂院) 새 청사에 26 인이 모여 이 제명록을 만든다고 하였다. 이때 좌장이 되는 서천(西川) 정곤수(鄭琨壽)는 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나이순으로 제명하여 그를 맨 앞에 기록하니 상애지정(相愛之情)을 다진다고 하였다. 그 이듬해인 임인년 맹추(孟秋)에 오봉(五峯) 이호민(李好閔)이 쓴다고 하였다.

정곤수를 포함하여 제명록에 등재된 27 인은 다음과 같다.

보국승록대부 정곤수, 성균관사 이호민, 호조참판 진양군(晉陽君) 강신(姜紳), 충좌위 부호군 강연(姜緹) 군자감 정 윤엽(尹曄), 훈련원 첨정 박응립(朴應立), 예조정랑 지제교 신지제(申之悌) 익위사 익위 강담(姜統), 울산도호부 판관 김택용(金澤龍), 사헌부 감찰 권경호(權景虎), 성현도 찰방 유중용(柳仲龍), 중림도 찰방 전우(全雨), 전 황간현감 오극성(吳克成), 전 청산현감 이홍발(李弘發), 창녕현감 박광선(朴光先) 전 장기현감 권세인(權世仁), 사재감 주부 권순(權淳), 용양위 부사과 김혜(金憲), 선공감 직장 노도형(盧道亨), 승문원 저작 이민성(李民成), 교서관 저작 권제(權濟), 선공감 봉사 신경익(申景翼) 예문관 검열 겸 춘추관 기사관 이민환(李民奐), 광흥창 부봉사 조정(趙靖), 제용감 참봉 조우인(曹友仁), 승문원 부정자 남복규(南復圭)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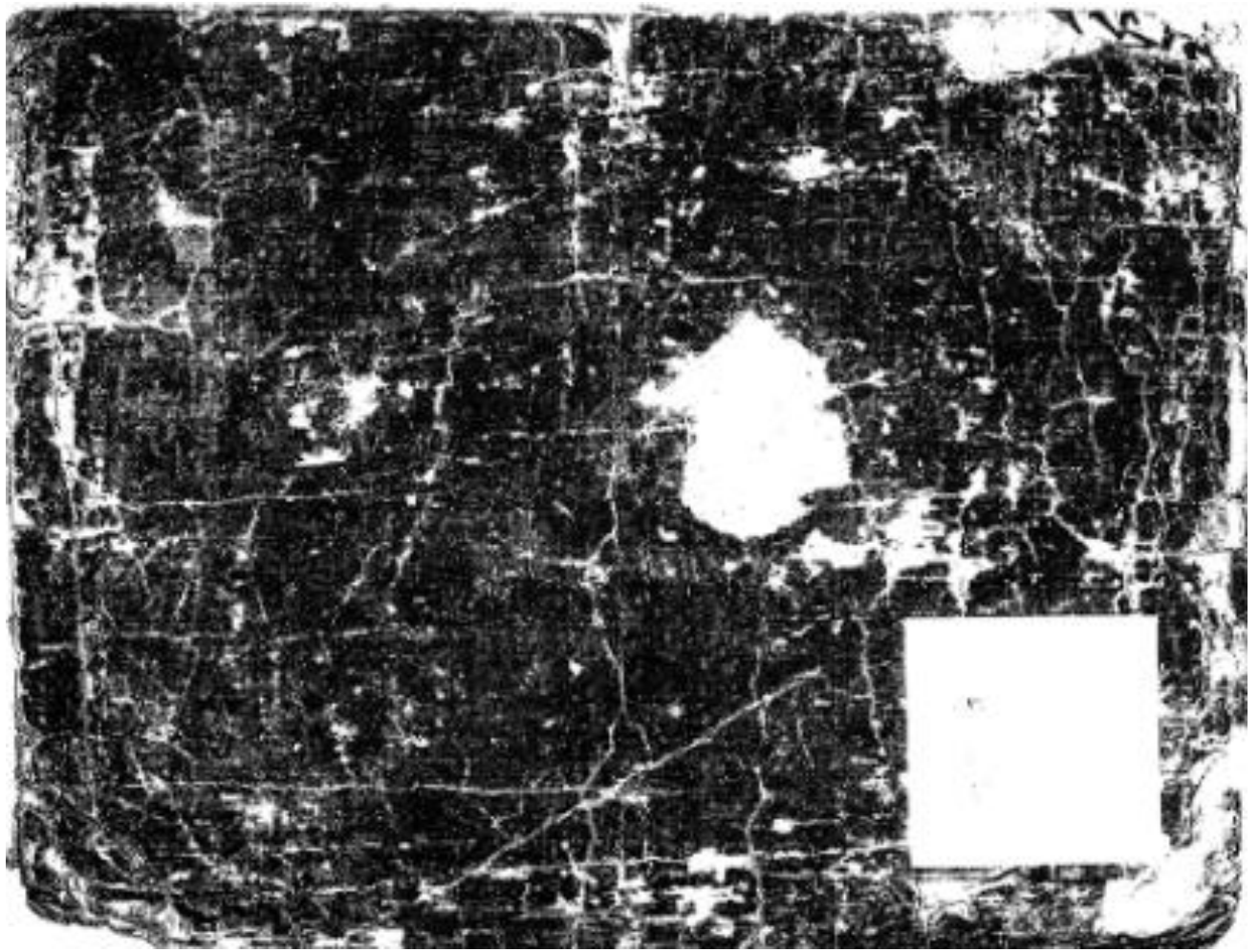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상주가 8 인으로 가장 많고, 함창(咸昌) 4 인, 군위(軍威) 3 인, 영해(寧海)·단성 각 2 인 의성·성주(星州)·예안(禮安)·거창(巨昌)·초계(草溪)·금산(金山)·고령(高靈)·안동이 각 1 인이었다.

1602년 이호민(李好閔) 동도회안(同道會案)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 사회-조직운영-계문서
· 작성주체	발급: 이호민(李好閔)
· 작성지역	서울  / 서울특별시 
· 작성시기	1602 년 
· 형태사항	크기: 28.5x38 / 합철, 1 책 7 면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Ⅱ. 오봉가문 / (8) 동도회안 / 동도회안 / 596 ~599 쪽



題嶺南同道會題

我嶺南人官遊于外者作同道會于掌樂院新解至者二十人時萬曆辛丑秋七月也西川辭相公以病不克赴其間而樂之鳥視赴者有加會已各捐俸謀所以題名壽述者并錄西川以于首為居余志其事也嶺之士仕于外者產不止此而名儒往往於中者居多向存已散散之不常而其存者相傳之惜亦不以聚散而替焉斯可尚也已仍係詩以美之

文獻吾東說嶺南世生心相賞 名系白
本浪迹來漂梗膝日清言倚半酣梅
竹出居同晚計朱陳厖俗解何愁秋風
怡土人、是夢裏相携訪崖卷

壬寅孟秋

五峯李如松

國學錄大夫西川右鄭崑壽

汝仁

平定大夫同知樞府事兼致館提學高致為館事李好問

孝彥

軍威

推忠奮義平難功臣嘉善大夫曹恭判督興君姜紳

勉卿

尚州

折衝將軍行忠佐衛副護軍姜純

正卿

尚州

通訓大夫軍資監正尹聃

汝晦

尚州

顯信校尉守訓鍊院僉正朴應立

信甫

寧海

中直大夫行禮曹正郎知製教中之悌

順夫

義城

保功將軍行翊衛司翊衛姜純

文卿

尚州

本列大夫行蔚山都護府判官金澤龍

施善

禮安

中直大夫行司憲府監察權景虎

從卿

咸昌

宣教郎省峴道察訪柳仲龍

汝見

居昌

承議郎重林道察訪全雨

時化

單溪

奉正大夫前行黃澗縣監吳克成

誠甫

寧海

奉直郎前行青山縣監李弘發

景晦

金山

奉直郎行昌寧縣監朴光先

克懋

高靈

宣教郎前行長鬐縣監權世仁

景初

丹

前司憲監王薄權淳

和甫

男校尉龍驤衛副司果權澍

汝霖

咸昌

承訓郎前行繕工監直長盧通亨

晦仲

尚州

通仕郎承文院著作李民憲

伯嘉

尚州

裕功郎行校書館著作權濟

寬甫

軍威

宣教郎行繕工監奉事申景異

致遠

丹城

宣教郎行繕工監奉事申景異

文叔

尚州

宣教郎前行濟用監奉本曹友仁

汝益

咸昌

權知承文院副正字通仕郎南復圭

汝容

安

상세정보

이호민(李好閔)을 비롯한 서울에서 벼슬살이하는 영남인들이 만든 동도회(同道會)에서 1602년(선조 35)에 작성한 제명권(題名卷)

체제 및 내용

영남동도회제명권은 4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1 면은 겉표지이다. 2 면에는 1602년에 이호민이 쓴 서(序)가 실려 있고, 3~4 면에는 영남동도회 회원 27 명의 명단이 실려 있다. 명단에는 관계, 관직, 성명, 자, 출신 지역 등이 적혀 있다.

특성 및 가치

먼저 영남동도회제명권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2 면을 보면, 신축년에 서울에서 벼슬살이하는 영남인들이 장악원(掌樂院) 새 관아에서 동도회를 만들었음을, 그리고 임인년에 이호민(1553~1634)이 영남동도회제명권의 서를 썼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호민의 생몰년을 고려하면, 신축년은 1601 년이고 임인년은 1602 년이다. 이 책은 서가 쓰인 1602년(선조 35)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회원들은 각자 녹봉을 덜어서 이 제명권을 만들었다. 명단의 첫 번째 인물은 보국승록대부 서천군(西川君) 정곤수(鄭崐壽)이고, 두 번째 인물은 정헌대부 행동시중추부사 겸(兼) 홍문관제학 동지성균관사 이호민(李好閔)이다. 이 책을 통해 당시에 같은 지역 출신의 관료들이 동도회와 같은 모임을 만들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古文書集成』 77, 韓國學中央研究院, 2005.

원문텍스트원문범례

<1>

<2>

題嶺南同道會題名卷

我嶺南人，宦遊于京者，作同道會于掌樂院新廡，至者二十六人，時萬曆辛丑秋七月也。西川鄭相公以病不克赴，其聞而樂之，則視赴者有加。會已各捐俸，謀所以題名壽迹者，并錄西川公于首簡，屬余志其事。噫，嶺之士仕于朝者，舊不止此數，而名儒鉅卿茂才者居多。向雖存亡聚散之不常，而其存者相愛之情，亦不以聚散而替焉，斯可尚也已。仍係詩以美之。

文獻吾東說嶺南，世生卿相賁朝參。

向來浪迹成漂梗，勝日清尊倚半酣。

梅竹幽居同晚計，朱陳厖俗願何慙。

秋風懷土人人是，夢裏相携訪舊菴。

壬寅孟秋，五峯李好閔稿。

<3>

輔國崇祿大夫西川君鄭崐壽 汝仁 星州

正憲大夫行同知中樞府事兼弘文館提學同知成均館事李好閔 孝彥 軍威

推忠奮義平難功臣嘉義大夫戶曹參判晉興君姜紳 勉卿 尙州
 折衝將軍行忠佐衛副護軍姜縱 正卿 尙州
 通訓大夫軍資監正尹曄 汝晦 尙州
 顯信校尉守訓練院僉正朴應立 信甫 寧海
 中直大夫行禮曹正郎知製 教申之悌 順夫 義城
 保功將軍行翊衛司翊衛姜統 文卿 尙州
 奉列大夫行蔚山都護府判官金澤龍 施普 禮安
 中直大夫行司憲府監察權景虎 從卿 咸昌
 宣敎郎省峴道察訪柳仲龍 汝見 居昌
 承議郎重林道察訪全雨 時化 草溪
 奉正大夫前行黃澗縣監吳克成 誠甫 寧海
 奉直郎前行青山縣監李弘發 景晦 金山
 奉直郎行昌寧縣監朴光先 克懋 高靈
 宣敎郎前長鬐縣監權世仁 景初 丹城

<4>

承議郎前行司宰監注簿權淳 和甫 昌寧
 進勇校尉龍驤衛副司果權澍 汝霖 咸昌
 秉節校尉忠武衛副司果金憲 晦中 尙州
 承訓郎前行繕工監直長盧道亨 伯嘉 尙州
 通仕郎承文院著作李民宥 寬甫 軍威
 啓功郎行校書館著作權濟 致遠 丹城
 宣敎郎行繕工監奉事申景翼 文叔 尙州
 昌寧郎前藝文館檢閱兼春秋館記事官李民賓 而壯 軍威
 宣敎郎行廣興倉副奉事趙靖 安 尙州
 宣務郎前行濟用監參奉曹友仁 汝益 咸昌
 權知承文院副正字通仕郎南復圭 汝容 安東

번역문

<2>

영남동도회(嶺南同道會) 제명록(題名錄)에 적다
 서울에서 벼슬살이 하는 우리 영남인들이 장악원(掌樂院) 새 관아에서 동도회(同道會)를 만드니
 참여한 이가 26 명이고 때는 만력(萬曆) 신축년(1601, 선조 34) 초가을이었다. 서천군(西川君)
 정상공(鄭相公)은 병으로 참여할 수 없었지만,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즐거워하니 이를
 보고서 참가한 사람이 늘어났다. 회원들은 이미 각자 녹봉을 덜어서 기금을 모았으니 명단을
 작성하여 행적을 후세에 남기려는 것이었다. 첫줄에 서천군을 병록(并錄)하여 이날의 일을
 기록하도록 나에게 부탁하였다. 아! 영남의 선비 중에 조정에 벼슬살이한 사람은 예전에 이
 정도 숫자에 그치지 않겠지만, 이름난 선비, 현달한 대신, 뛰어난 수재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옛날에는 비록 일정하지 않게 남았다가도 없어지고 모였다가도 흩어졌지만,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아끼는 인정 역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세태(世態)로도 변하지 않으니 이 점이
 가상하다. 이에 시를 적어 찬미하노라.

문헌²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영남을 얘기하니
세상에 배출한 공경재상이 조참을 장식하네
지난날 떠도는 행적은 표류한 인형³ 신세라
좋은 날에 맑은 술 마시니 반쯤 거나해지네
매화와 대 심어 은거하자는 노년계획 같으니
주진⁴의 도타운 풍속 원한들 뭐가 부끄럽나
가을바람 불어 사람들마다 고향 생각하는데
꿈속에서나마 서로 손잡고 옛집을 찾아보세
임인년(1602, 선조 35) 초가을에 오봉(五峯) 이호민(李好閔)이 초안을 쓰다.

1) 서천군(西川君) 정상공(鄭相公)

서천은 봉호(封號)이며 상공은 정승이란 뜻으로 서천군에 봉해지고 좌찬성에 오른 정곤수(鄭崐壽)를 가리킨다. 정곤수(1538~1602)는 본관은 청주이며 자는 여인(汝仁), 호는 백곡(栢谷)이다. 초명은 규(逵)이며 곤수는 선조의 하사명이다. 정구(鄭逵)의 형이며 이항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임진왜란때 선조를 의주까지 따라서 호종공신에 책록되었다.

2) 문헌(文獻)

문(文)은 전장(典章) 제도와 관계가 있는 도서를 말하고 헌(獻)은 문건이 많아 장고(掌故)를 익히 아는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서도 자료와 학자를 뜻한다.

3) 표류한 인형

원문 '표경(漂梗)'은 물에 떠다니는 도경(桃梗), 정처 없는 신세를 비유한다. 도경은 복숭아나무를 깎아서 만든 인형이다. 『전국책(戰國策)』 「제책(齊策)」에 "토우(土偶)가 도경과 대화하는 내용이 보인다.

4) 주진(朱陳)

당나라 백거이(白居易)의 시 「주진촌(朱陳村)」에 나오는데, 한 마을에 주씨와 진씨 두 성씨만 살면서 대대로 서로 혼인했다고 한다. 『白香山詩集 卷 10』 두 집안이 대대로 혼인을 맺은 세의(世誼)가 있을 경우를 뜻하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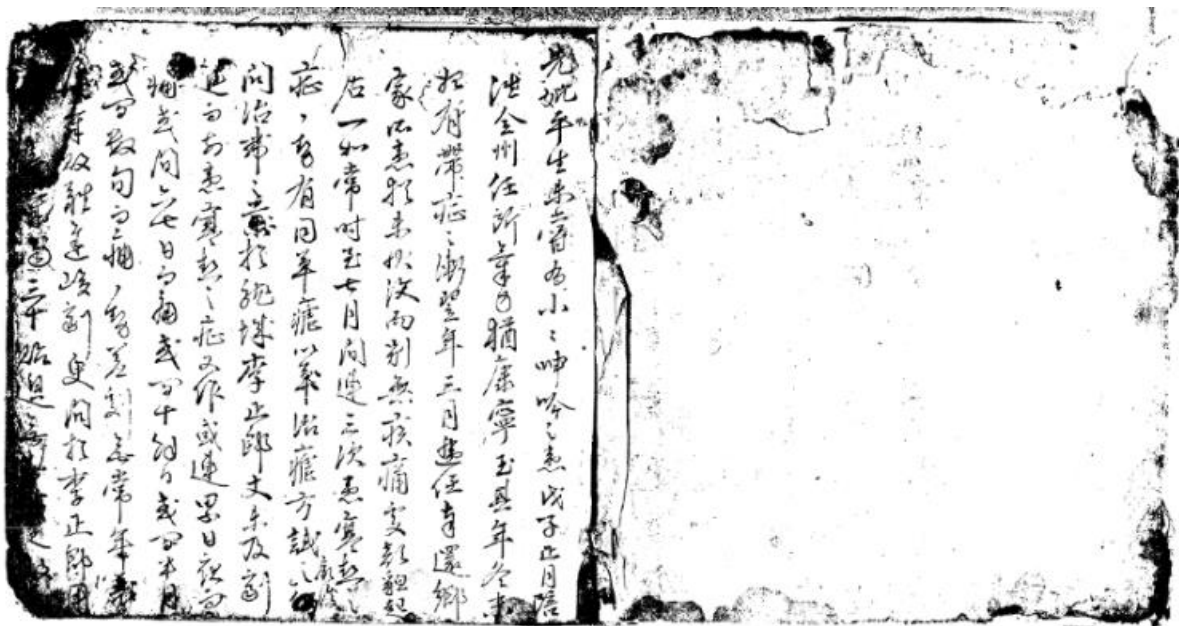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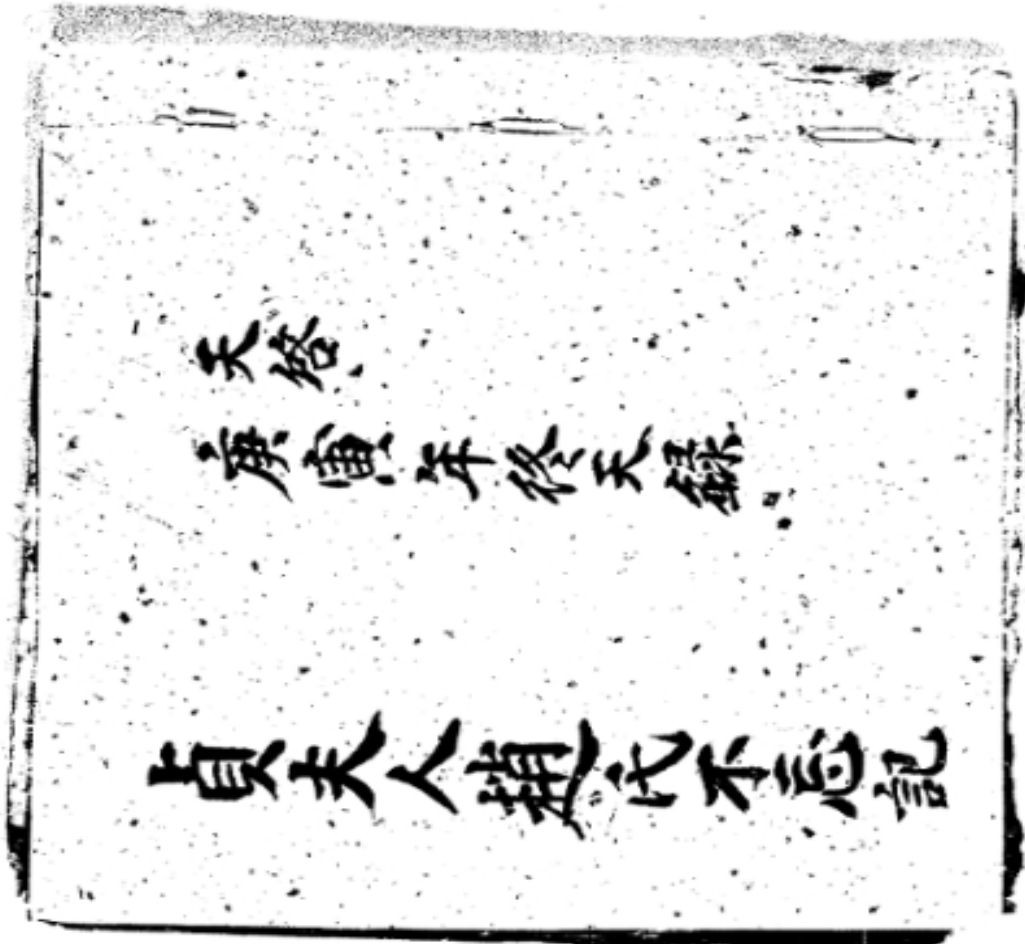
정부인조씨불망기(不忘記) (1)

이 불망기는 신지제의 처 정부인 함안조씨(咸安趙氏)의 상을 당하여 자 홍망이 기록한 것이다. 표지에는 「천계 경인년 종천록 정부인조씨불망기(天啓 庚寅年 終天錄 貞夫人趙氏不忘記)」로 되어 있다.

조씨는 1563년(명종 18, 계해)에 태어나서 1650년(효종 1, 경인)에 졸하여 88세를 수하였다. 당시로서는 대단한 장수를 누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650년은 천계(天啓) 연간이 아니라 명나라 영력(永曆) 4년이거나 청나라 순치(順治) 7년이다. 아마도 이러한 연호를 쓰지 않기 위하여 명의 희종(熹宗) 연호인 천계를 쓴 것 같다. 1책 14장으로 홍망이 그의 어머니 조씨의 상사과정을 잊지 않기 위하여 기록으로 남긴 것 같다.

내용은 조씨가 무자년 전주 임소(任所)에서★^{註27)}한열지증(寒熱之症)이 있어 점점 심하여 지다가 경인년 정월 초2 일에 증세가 심하여져 초8일에 상을 당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 뒤에 습용의복(襲用衣服)、소렴의금(小殮衣衾)、대렴의금(大殮衣衾)、치관(治棺)、장산(葬山)、산즉호상(山卽護喪)、부물(賻物)、만장(輓章) 등의 순서로 일련의 상례 과정을 기록하고 부의록(賻儀錄)과 만장 내용을 정리하여 함께 기록하였다.

1650년 정부인조씨불망기(貞夫人趙氏不忘記)



通修天之痛物哭因也 先妣平日常
子白音早晚常遊於以 先君諱長
... 平即合 指世之遠丁 先考
諱底何具平日偶打一言半竟果臉
嗚呼哀哉慟哭因也

製用衣服
黑段圍裙一既香段長衣一毛段赤古里
白綿袖赤古里一白綿袖赤紅一藍段裳
一藍段袖裳一藍袖裳一白綿袖袴一
白綿中衣一襪二平線段長第一
小款衣袋

羊線段衣一毛段長衣一羊線袖長衣一
羊線袖赤古里一藍袖裳一白綿袖袴二
襪一中衣一藍段錦鞋赤古里線袖赤古
里一白綿袖赤古里二木綿線袖袴一白
單鞋一五中一

大款衣袋
出芝拾袋一黑袖長衣一黑袖赤古里二
藍芝袖袋長衣二既香袖袋長衣一
黑袖長衣一藍芝袖袋赤古里一白綿袖
赤古里二白木綿線袖赤古里一白綿袖
赤古里一藍袖裳一中衣三馬中三

通修天之痛物哭因也 先妣平日常
子白音早晚常遊於以 先君諱長
... 平即合 指世之遠丁 先考
諱底何具平日偶打一言半竟果臉
嗚呼哀哉慟哭因也

製用衣服
黑段圍裙一既香段長衣一毛段赤古里
白綿袖赤古里一白綿袖赤紅一藍段裳
一藍段袖裳一藍袖裳一白綿袖袴一
白綿中衣一襪二平線段長第一
小款衣袋

羊線段衣一毛段長衣一羊線袖長衣一
羊線袖赤古里一藍袖裳一白綿袖袴二
襪一中衣一藍段錦鞋赤古里線袖赤古
里一白綿袖赤古里二木綿線袖袴一白
單鞋一五中一

大款衣袋
出芝拾袋一黑袖長衣一黑袖赤古里二
藍芝袖袋長衣二既香袖袋長衣一
黑袖長衣一藍芝袖袋赤古里一白綿袖
赤古里二白木綿線袖赤古里一白綿袖
赤古里一藍袖裳一中衣三馬中三

... 灰之級及裝期白就也全并之級及
... 打... 級... 山... 級... 山... 級...
... 軍... 級... 山... 級... 山... 級...
... 軍... 級... 山... 級... 山... 級...
... 軍... 級... 山... 級... 山... 級...

... 既... 級... 山... 級... 山... 級...
... 軍... 級... 山... 級... 山... 級...
... 軍... 級... 山... 級... 山... 級...
... 軍... 級... 山... 級... 山... 級...

山... 級... 山... 級... 山... 級...
... 軍... 級... 山... 級... 山... 級...
... 軍... 級... 山... 級... 山... 級...
... 軍... 級... 山... 級... 山... 級...

心教本不足
金帽天不足白德一乘
金金欠忠之元木一足
郭中欠基学定本一足檀香一視
朴可德之木一足
宋生欠元木一足
高生欠太德元木一足
厨公多木不足養五匠之
礼好金生欠海之木一足燭一雙
江田回回本一足
山雲瑞中米一足
宋生欠常若元燭一雙

就序回乾柿之能白德一乘
蘇坤多勿題之序里三丁其生二平德
二升出油之并乾柿一雙
板改林生欠元白米一斗
中山若元木一足
李光該收德一乘白德一乘
監司送木之足收德一乘白米一斗
心般回若生欠元白米一斗
宋生欠如規元白米一斗
沈生元白米一斗
丁台金生欠元白米一足
蘇坤多勿題之序里三丁其生二平德

生雅一高出德三元相極字个
郭二平个太乘一外之元
寧海身乾乾度魚之度乾大比五度乾
紅德一斗乾海身乾年早養二回
乾明太三平度乾中三皇三平度真麴
一曰平監十斗 福里十斗 真忠
二斗粉養二回乾德比與中平度
生甲三皇三度生較中个實有二元
李生元元德乘一斗其德一斗太三度
郭多博一平度元德乘一斗白米三斗
唐田白米一斗
金生欠元元之少維一斗

郭叙男生維一斗
金生欠高乾柿一雙
白之乾柿一雙
吳世元元生德一斗
知筆元真乘一斗
江田元真乘一斗直麴三元
郭生欠元真乾柿一斗
申壽身真乘一斗
火智德白德一乘
叔福老白德一乘
金州官元木之足乾乘三斗直乘三斗德乘
蘇坤多勿題之序里三丁其生二平德

德十文德德德十文白德德德
代白德元卷有德二斗年乘元德
三巨元大元一巨元
前初學金元德生德三斗
金州之吏李付遠中出德三斗
金州王府徐運木之收德一乘白德五卷
芝燭一雙生德二斗
金州之入崔慎乘德德一乘木一足
吏房朴保業木三足生德一斗
李觀德元木一足
李原元李務本足德一斗
者山谷佛老前白居老德白德一乘
教長師德金德一足白德二卷
正師郭承明木一足

郭叙目丁受乘風相後人或有
市者或有以言德同者或有向
般購者其口之或之或之德白德
郭叙一區者或之或之或之德白德
在郭叙者人德一德身元夜中
德一德之或之或之或之德白德
李生元元德者德二馬或白乘
打老或或之或之或之德白德
白其有勤打文而忽打手其德
郭叙一區也或之或之或之德白德

八子長...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乾幸

於八年壽古今... 中國呂夫人... 臨青禮福...

壽慶

昔在滬惠... 惟為... 期...

久聞...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弟之...



임술년종천록(壬戌年終天錄) (1)

신분구의 상사 시에 그 내력과 준비절차 및 상례 과정을 기록한 불망기이다. 선군(先君)이 임술년 5월 24일에 갑자기 한기(寒氣)와 두통, 요통, 사지통이 있는 뒤 6월 초4일에 졸하였다는 내용과 그 뒤에 습구(襲具), 소렴구(小殮具), 대렴구(大殮具), 관판(棺板), 개빈(改殯), 칠(漆), 장산(葬山), 혈심(穴深), 석회(石灰) 등의 준비 과정을 기록하고, 이어 분구의 셋째 사위인 유재춘(柳載春)의 제문과 장사시의 부조 내용을 기록하였다. 1책 7장이다.

1742년 임술년종천록(壬戌年終天錄)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신종록 / 종교·풍속-관혼상제-신종록
· 작성시기	1742년
· 형태사항	크기: 19x19 / 합철, 1책 15면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I. 오봉 가문 / (4) 임술년종천록 / 임술년종천록 / 502~509 쪽



終天錄

先君壽多肥濕壬戌年五月二十四日午
後乍寒仍作頭痛腰痛四肢痛面色紅潤侵
色甚赤眼睫開閉不平眼瞳若抽至暮氣
似虛乏進飯五六合後頭痛轉劇有若鼓
椎扁以時患治之升麻根葛湯三日內建用四
貼則似有汗氣而痛勢益甚呼吸喘急卧則腦
膈挫鬱喘急益甚坐則腰痛益甚頃刻之內

終天錄

先君

濕壬戌五月十四日午後寒仍作頭痛腰痛
四肢痛而紅潤便色甚赤眼開閉不平眼根若抽耳聾
氣似虛之進夕飯五六台後頭痛益甚有汗氣而痛勢漸
治之升麻葛根湯翌日內連用四貼則似有汗氣而痛勢漸
劇呼吸甚急則喘甚甚則腰痛甚若項背之內熱三三
有聲口中語音不明自三時起急甚苦煩悶特甚夜不
聞戶蓋覆風堂每欲納涼以病勢現之則似少引飲而欲飲
則不過二三匙自是日夜耳中鳴多汗甚至氣塞以米飲
和真飲六飯下則不發頃許復昏作自朝至夜性溫多常
些少真元以此大損問于後李谷李李則應道止進通心散
麥門冬兩膏竹葉湯半夏甘草人參各五分連用數
三貼而未得其效諸般雜症愈甚六月朔廿一季父主
親世問之周子文云丙巳年其他七救急之方急用獨參飲

云故初言濕到夜半運用者三思難鳴後變戰大發
退熱之候故進陰陽湯則味門緊塞不能吞下如是食頃
終不脫熱氣漸漸刺痛益加重初言已時遲至未痛法
遭變後室人之病亦在顯刺身故後后後後失於紛
中而移轉之病在之野重如厥不性也後後後去

襲具

綿道布一〇藍中效幕一〇玉色冬衣一〇
白袖袴一〇白袖衿一〇白袖單袴一〇
豆巾一〇瞋目巾一〇握手巾一〇黑大帶十
〇充耳一〇緇紗網巾一〇黑袖儒巾一
玉色袖復一〇行膝一〇
小殮具
殮布〇紫芝袖衾一〇青道布一〇白袖
中效幕一〇白袖袴一〇綿袴一〇粉紅
細道冬衣一〇豆巾一〇粉律袖冬衣一〇

中粉紅袖短冬衣一〇綿律袖袴一〇綿
短冬衣一〇紫赤衿一〇綿綠袴一〇
大殮具

棺板

梓雜質得先用
祖父主壽卷
銘 市上所買鹿鹿雜用以絳帛之幅廣者
漆 以脂八道液加漆
改殯七月初九日 喪出忌處開方城初去欲單以祖
父生命奉 母主出京泉開殯日難殯
情甚慎迫是月不待殯而往入改殯決散
葬山 謂谷而葬也 謂山而葬也 謂水而葬也 謂林而葬也 謂野而葬也 謂
穴際 五尺五寸初頭日都以六尺為限而握至五尺五寸過石
石灰 鋪用一百五十斤有者六尺先度擇用

殮布〇素多紅袖襦一〇多紅袖桃一〇
綿野貴衾一〇綿綽飛冬衣一〇綿冬衣
二〇綿袴二〇袖短冬衣一〇衿衣二〇
衿袴一〇綿徽衣二〇布小徽衣一〇布
道布一〇豆巾二
喪出蒼梓初終諸節若無犯極而衣衾之殮亦
不待稱情孫子之痛當如何哉

가도곡부장위고위불망기(佳道谷耐葬位考位不忘記) (1)

신분구(1677~1745)의 상사를 당하여 그의 자도삼·도구·도만 중 어느 누가 기록한 것으로, 내표지에는 「을축년위장록(乙丑年慰狀錄)」이라 하여 조문객들의 명단을 정리하였다. 분구는 을축년 2월 19일 69세로 졸하였다. 조문한 이들의 지역분포를 보면 의성 인근 마을을 비롯하여 상주·영천·경주·양동·제천·인동·성주·선산 등 다양하다. 특히 이러한 지역에서 오는 조문객들은 단체로 특정 성씨 집단을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하여 당시 향촌 사류의 친교관계 등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1책 16장이다.

1745년 가도곡부장위고위불망기(佳道谷耐葬位考位不忘記)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 사회-가족친족-종중·문중자료
· 작성시기	1745년 
· 형태사항	크기: 20x22 / 합철, 1책 35면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I. 오봉 가문 / (5)
가도곡부장위고위불망기 / 가도곡부장위고위불망기 / 510 ~527 쪽



乙丑年感狀錄

東坡仲舅王

李勇王

內從叔李鳳煥氏

內從叔李鳳煥氏

川首金始元

中山黃瑞暎

密陽孫守會

蘆谷鄭煥

鄭煜

高雷朴泓

朴濟

朴瀉

朴滂

朴沅

朴沔

河上柳滂

柳濤

善山通堂全錄

注谷查文

奇松查文

權海濂張汝滂

權一柱

成英李重祖

法興李元炳

李元均

茶山李鴻臣

佳野全益濟

武夷查文

李漢

李祐

永川鄭柱

河上柳山陰元亨

評道然道弘道陳道

趙居仁

救前申龍起

中龍慶

李行遠

考成查文

權臣氏

權臣氏

權正解

密陽孫克胤克中

大丘都啓迪

紫里權後元

柳後繼

柳聖霖

中山黃德職

尚州鄭肯源連陳

鄭仁拱

鄭義模

鄭智模

鳴山鄭周曉

比安金贊元

金崇潤

李經新

李復煥

善善善煥

芝坪趙居易

李玄純

李虎臣

李虎臣

良同

洪有範

永川鄭柱

鄭德

鄭周震

中山黃慶重

金瑞龍

黃路重

黃順重

黃聚重

黃長重

黃致重

黃明重

黃瀾池

李漢超

李弘貴

良河洪洲泳

河上柳山陰元亨

評道然道弘道陳道

趙居仁

救前申龍起

中龍慶

李行遠

考成查文

權臣氏

權臣氏

權正解

密陽孫克胤克中

大丘都啓迪

紫里權後元

柳後繼

柳聖霖

良河洪洲泳

良河洪洲泳

五美洞金少源

西谷權萬景忠

吳公張趾五

賴湖李本和

李俊增光清

法村金時慶子

吳武李振綱

埋川金慶

金慶錫

金錫錫

沙河金宗洛

河上及浦花叔

柳發波潘澤

新領春益春生

良明洪有晴

水月金恩運

山雲中德濟

善山謝起祖

洪岳休景休

乃城琴連水

龍宮金強濟

東里孫雲述

善慶谷朝宗

良佐河守德址

李純中

李天棟

武夫李振

高州金

永川徐

李俊

川前金細玩

金道欽

金世欽

川前金

武陵李

法與李

元那

元那

元那

元那

元那

元那

元那

元那

元那

元那

元那

元那

元那

元那

元那

元那

元那

元那

元那

元那

元那

元那

北而金衡應

金山日顯

法與子

河上柳

漢上李

善本李

李俊

李俊

李俊

李俊

李俊

李俊

李俊

李俊

李俊

李俊

李俊

李俊

李俊

李俊

李俊

李俊

李俊

李俊

李俊

李俊

李俊

李俊

十八日 李元天
 李挺恭甫
 南傳夏甫
 李元天
 李天文
 李元天
 十月初一日 申泰岳
 孫益顯 申周岳
 初三日 申洛雲
 金濟行 申天達
 初四日 申八雲
 孫宗顯 申翼雲
 初五日 王重毅
 鄭以性甫 申叔叔
 孫徵 申維健
 申存永 鄭茂長權
 申甫翰 南淑僧
 孫雲廷 外門

二十三日成服時
 林德齡 鄭茂長權
 李健中 申叔大
 李祥龍 南淑僧
 十日 申八雲
 朴卿道 申泰雲
 十三日 申得雲
 呂袖楫 申汝鐸
 十四日 申甫格
 証太 申允昌
 李秀載 申汝鎬
 十五日 申天顯
 申翼雲 林國衡
 申望雲 林得培
 申維世 王重毅
 申昌岳 申叔行

李顯 申大規
 申自岳 申大任
 申致雲 申正欽
 申致沃 申聖欽
 申孝永 申汝範
 申孝思 申天澍
 申衡同 林德齡
 申孝同 二十六日
 李宜泰 吳泰俊 差陽
 王德誠 沈世遠 二十七日
 申汝錚 二十八日
 申汝錫 金晉行 七歲
 申前楷 李松臣 少年
 呂維楫

權正容 申弼夏
 柳淑 申弼周
 李時顯 三月初二日
 柳聖觀 申慶雲
 柳聖標 初三日
 柳汝 丁孝慎
 柳澆 之復
 柳灝 初五日
 柳復春 申自岳
 柳滄 初六日
 金五應 李命天
 柳聖長 任仁大
 醴泉柳相父 任亨大
 金休錫 任少大
 提川金龜 同書

十九日 任軸
 李宜震 初九日
 二十三日 柳聖規
 申慶雲 十日
 申維健 權正容
 申允昌 十五日
 二十五日 金煥亨 差陽
 洪起祖 十七日
 金始元 鄭重謹
 癸亥正月十九日 二十七日
 張趾文 王舜衡
 二十六日 二十三
 金休錫 任軾
 二月初六日 申規模
 盧浹 申能廷
 朴淑

初九日 申最一
 朴希米 申天禧
 金復元 沈鍊
 十八日 二十六日
 柳洽 丁濟未
 柳顯 金尚秋
 李宜教 二十七日
 李行教 申汝箴
 十九日 申一清
 李有天 申雲
 趙經學 李泰和
 二十二日 三十日
 洪澗 申汝鈺
 洪澄 申天洵
 申聖望 差陽

洪起
朴廷杰
洪有龜
柳必天
南聖民
李宜夏
二十四日
洪沈

甲汝鋒	趙性道
申育	趙耕道
申道恒	趙庚夫
林馨園	趙承道
柳泳	趙言煥
朴震旭	李楷年
金夢淵	李松年
盧沁	柳聖寬
柳浩	柳漸
全怡元	柳聖爽
柳	柳雲
盧德	柳雲
李春植	全而德
李聖遠	全錫
南聖奎	李武輝


元丘屯鐵 二白紙一束
乃成查家衣布 二无苦燭香一呢
盧少鄭 生員宅白紙一束
中山聘家 錢一白紙一束
梁山冰 錢二白紙一束 姜葱一豆
水搭 盧生宅 白紙一束
茂美 盧生宅 白紙一束
慶州宅 乳林一紙 鴉嶺
紅哈 四串
慶州 鄭十介 金一平 慶州 鹿一尾 生道 小三尾 小五尾

豐里回來 旋復首白豐風
而周有國頭 白山栗禮 為日萬里 而道
核前智德 志士無平 倚
豐里回來 旋復首白豐風
豐里回來 旋復首白豐風
豐里回來 旋復首白豐風

豐里回來 旋復首白豐風
豐里回來 旋復首白豐風
豐里回來 旋復首白豐風
豐里回來 旋復首白豐風
豐里回來 旋復首白豐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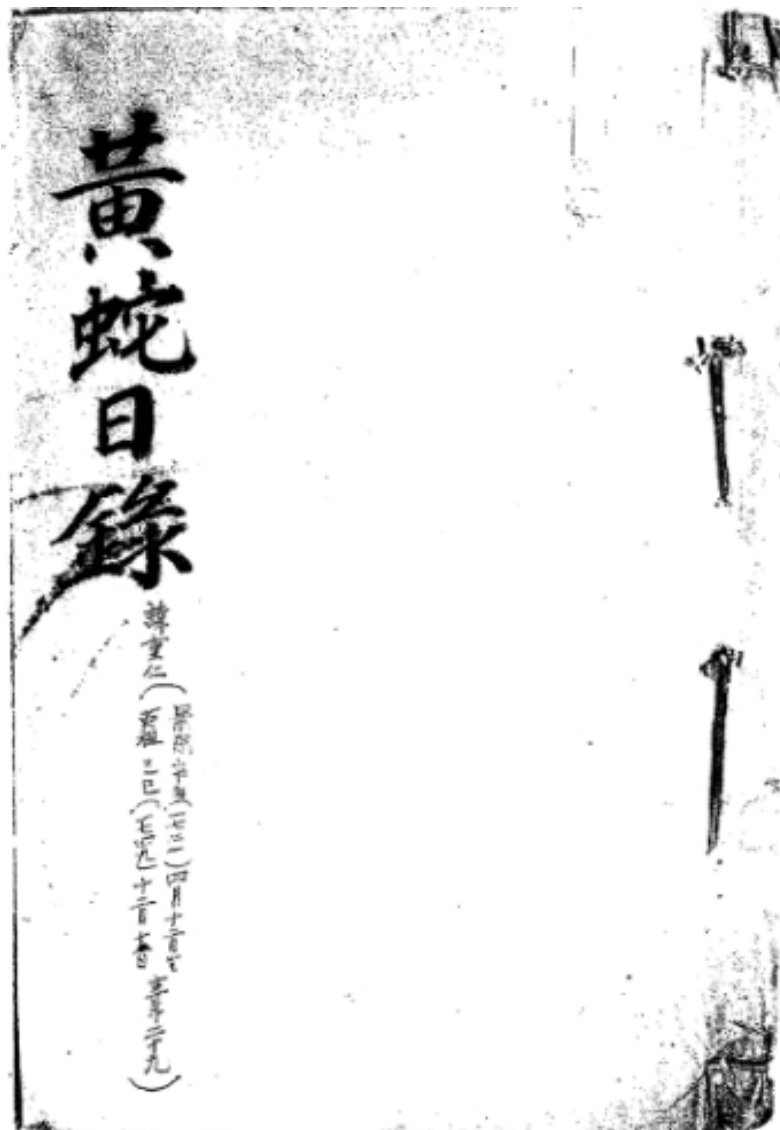
황타일록(黃蛇日錄) (1)

1749년 황타일록(黃蛇日錄)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신증록 / 종교·풍속-관혼상제-신증록
· 작성시기	1749 년 
· 형태사항	크기: 20.5x31 / 합철, 1 책 65 면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I. 오봉 가문 / (6) 황타일록 / 황타일록 / 528 ~560 쪽



欣色不得言乙葉是日因當選飲的知病癒否姑留為夜兄忽汗流
仲兄試染于指校之血色蒼不活若脂膏迷在右臂謂之不祥尋又
大便不化不瀉而流自是精神昭然賈衛自飲意謂亦注如常
似已吐熱唯寢時顯戰齒相齧聲聞左右議者謂葉備德或曰風也
丙子凡把仲凡手不語渡一行乙葉丙子曉後病生勿村端丙子
家傳吐熱振聲家前顯宗後有葉家下官即捕二活鴉鴉後一
縲遺奴乙風疾走抵中山樓捕葉備德用寶劍擊人其日暮內行
歸乙風亦歸初內行自家發乾浦才夕飯葉將發渡四叔姑法到屋已
無飯行更不可更飲得至衛于人以飲之仍冒夜行俱到生勿酒店店
另兩層再渡叔適下馬想一屋觀其隔照松火乙葉來高欲招丙中
山事亦吉立籍外忽驚鳴孕擇故但輕行先馬將渡而河橋奴不
解其意為乙葉應到此問呼之葉未應左右驚尋葉傳賊探其藏
讓其既照炬觀橋上愈口病可矣注之蓋可選以還嫂氏曰難然虛
鳥可和也強既半固當注仍注宿法光村端夜送者以病既火間孕婦
澤入園難浸情誘抑多方時送三凡拾仲父患寒疾而末再渡叙

通病酒其其痺俱以故辭且種牙瘡當路有瘡沮嫂氏曰
嫂氏不辭其苦丁丑但送收返石于中山橋行停驢還乙風為
返石既注送油淨返石是日晴時抵中山時兄精神稍醒見而頓自
慰焉○戊寅春初○客居停初客居於子家到洛東津還乙葉園
病減報注宿佛頂村丁丑曉但送加傑于中山傑到使仲兄曰病火間季
父何更必相憐主人支款亦難送中途回征似好不致即日傑還佛頂
客居尼還于客初傑注中出也見石壁久待疾飲食不時飢渴賴枯
形累然若仆傑憫之欲有贈勞賴囊中全物能贈一兩錢以濟○已
卯初五朝後備極病難具是夜介助于中山是日大雪○壬午初八
助還夜介助到中山兄時幾至夜間助家事甚詳言語與平
昔全異助亦已發壬午到客以前見侍仲兄書亦如之客自是察解
危慮越四日乙酉又一走茶等于中山使婢玉再階注以侍藥丙戌計
日計音乙初返石抵中山使兄病日降漸就同醒自介助停淚兼手種
光床轉側或坐或臥與左右者依日談笑自如也病日降歸晷日深乃
使返石織車輪徐將載歸焉但洗月委卧脚上瘡癢以是苦于生

卧不能離中與卧上將容易自由也雖然寢時頗覺候不已願不戰上垂
出唇外卧時體重身與褥間不容人指火症太劇李曾遠心極難
坐不待人扶持粥飲時左右至再三勸以手打其尻擲之當此時顏色
紅熱眼赤亦所嗜惟木水替言以助熱止不發遂固切左右慮之
藏之索之不與之怒之日益亦怒恨回吾與他好意唯一念在木水言
者必固為之利不行十一折是日因常清熱劑用五靈散一帖藥未有效
壬午暮角于仲兄背擁余大便臥未幾欲渡為是日通風左右畏
風清卧而使兄同起又噴仲兄背擁使自云作寒遂冒余臥怒眉
蓬仲兄驚問兄曰自然再因忽四厥引縮差挽幸者然或律刺聲轉後
淫手散口味惡狀高干似難辨日支吾亦言痛精神言語如常
粥飲強進不却議者以為五臟風左右束手計無所出夜兄自云清
心丸似宜祭茶晚石壁走賣丸一劑用朝後又用一劑服症遂終日不
作夜裡睡甲中將伴于客病加減未分止之是日風症已歇咳嗽又
作比劇不能堪熱自微然起坐吞擁余又肩仲兄皆大便又自云寒
咳嗽劇風症又發或偏或引不可言者小使亂流不自知喉中痰如

浦泉其息斷續言說不能通事在頃刻仲兄口指入口中鉤出其痰
痰稍已而已而復然遂至不孝是實已已十二月初十日成時欲計于
家主客各取適酒泉守鄭若若者為商山故東次安平倉送石被
髮夜走其門以明告守備之以一使令與之使令來喪館受計熱已
搗響鳴又得中山村人使與借行嚴督期一日必到客使令到商山郡
前謂中山人曰郡中吾有事去于可代候中山人僕既久不來欲乘而
先來以計紙召使令手未果日晚使令始來醉甚中山人曰奈日
晚何使令曰吾可當送其酒來到晚消使令自度自能一日到家
搜計紙中山人中途獲歸中山人持酒歸歸不熱日且暮春不待行而
後獲曉發初密與太春遇商火春宿船浦以注既相過不去中山與
得十二日朝注到客計于客家相親愛名數日持卷道木再送祖客居
宜再返和芒坪送兄或輪牛或騎馬載裝其走中山是日撥風號天自注
泥泥塗凍滑顛外不能進行到山酒店已月出不能勝飢凍整不馬謀或
醋酒飲或燭火于堂道已而登去到院舖積卷已三更宿中飢外凍口不能
語見者無不驚駭嗚呼彼將行能宮孫臣叔其芒坪兄乃日夜寒寒

送兄 自彼

臣苦事甚如也... 奈河吾二人可先將馬... 夜送... 醉風... 烈水... 劍... 虎... 中山... 不... 已... 兄... 於... 哀... 送... 允...

送兄 自彼

臣苦事甚如也... 奈河吾二人可先將馬... 夜送... 醉風... 烈水... 劍... 虎... 中山... 不... 已... 兄... 於... 哀... 送... 允...

送兄 自彼

臣苦事甚如也... 奈河吾二人可先將馬... 夜送... 醉風... 烈水... 劍... 虎... 中山... 不... 已... 兄... 於... 哀... 送... 允...

送兄 自彼

臣苦事甚如也... 奈河吾二人可先將馬... 夜送... 醉風... 烈水... 劍... 虎... 中山... 不... 已... 兄... 於... 哀... 送... 允...

半滿清言羅髮訖之言淳；善訪人一家昆季皆矜式平生善
人嗚呼天奪速花不能濟春夢不能供夏子吾東和氣於其齒於其齒
可奈何故問答；但淚；右之人有不幸短命者願回三十有二卒君亦
不幸短命死生年矣何回髮白不幸又不幸傷寒後復傷寒遊方休服去
不返六月高山珠櫬發君有母；侍同君家有妻；婦嫗妻婦嫗
現在腹二子呼爺僅五天有弟；哭且言風樹之淚又棟宇堂中散
賸塵已空窓外寒梅風自落孝不及終履反噴烏啼現亦泣學不及
就成天不假年亦自畫君今乘化登入孰無嗟咄人孰無嗟咄此我
多年知我宿我費君門一見君一見呼我平生誠能繫床褥與君同笑
年未法空蘭室去歲秋九月黃花好時節我通過君；有疾恨不侍
同遊龍湖書舍月君問我露我有的我有的已焉我君去青山誰共
望一曲益歌送君情四邊池風飄執紼回頭竹處更見君清風此窓
將；付

情友花山權淳
樂善堂中第一節才手風采丈人行登樓時看眉自隨橋霜轉脫顏君門

豐山柳散春
既手後棄天何意以櫻楠好留之村生松松門下之地詩

書禮來自弓箕良知良能孝一字眼汝不着休末衣偏養重閣寒
襖榆窗城色祖世傍一日三時些些著侍宜肩身為之客主統行諸
宗子是檢我身心不放過正我衣冠肅肅視平生志氣不疎；俗儒學
羞與高烟茶羊床作伴視此元是身外事莫問向上工嚴深者
聚在面敷而粹學舍新構龜湖上其志則蓋在興起是所習生也
不偶謂天無令淫淫死金陵病客何時還至今備閣門閣倚丹格瓦
馬尚州路孝子返面堂如此真富胡為遠面翔所屬時行歸故
當時時事不足事行訟之人亦為淚此等凡半生情况我一般失林
思忠懷共共義詩心膽相照故知東懷昨於十一月黃續遠涉
河之水信宿言情後二日空坊三編尚新統
謝各下
賦我不知天意欲把叫、回彼、

可 錄
○ 吾友鵝洲申君任遇疾不汗客決于商山之楊荷年僅二十九有
祖母；在堂有弱妻稚子嗚呼其情也已其可也也申氏故嘗繼之
世至楊松公父子益廓夫之先園于公清姿雅韻為世所推服
克踐厥職自弱冠慨然有志於問學杜門靜坐取朱子書退讀先生文
讀之窮日夜不倦人勸之舉則曰吾業未就也中遭園于公之喪
遂予家自歎初志之不繼然亦未嘗去書不觀則留意於吟詠
都雅無題聯筆血氣勃陸字丈人嘗謂余曰是子法；欲通唐虞
賦蔡矣冬余入於君任之僕父之門君任方新寓在東其送送
俱幸臨臨倫理謹然流介；無子等之過余固心儀之自步七、八等之
閱余之注未見君任果矣君任不致馳置自便每過必執月夕相
出醜解解壁上枯桐浪推數過已謝然不怡蓋園于公所甚愛者
其為於孝思而志尚之所存亦可以察之矣余與君任亦少年處
爾任我適以資規責責雖不有直於君任必有其於余而中亦相失
室但為君任一室之而不幸我君任之弟數仲以一幅清言

時 忍
○ 吾友鵝洲申君任遇疾不汗客決于商山之楊荷年僅二十九有
祖母；在堂有弱妻稚子嗚呼其情也已其可也也申氏故嘗繼之
世至楊松公父子益廓夫之先園于公清姿雅韻為世所推服
克踐厥職自弱冠慨然有志於問學杜門靜坐取朱子書退讀先生文
讀之窮日夜不倦人勸之舉則曰吾業未就也中遭園于公之喪
遂予家自歎初志之不繼然亦未嘗去書不觀則留意於吟詠
都雅無題聯筆血氣勃陸字丈人嘗謂余曰是子法；欲通唐虞
賦蔡矣冬余入於君任之僕父之門君任方新寓在東其送送
俱幸臨臨倫理謹然流介；無子等之過余固心儀之自步七、八等之
閱余之注未見君任果矣君任不致馳置自便每過必執月夕相
出醜解解壁上枯桐浪推數過已謝然不怡蓋園于公所甚愛者
其為於孝思而志尚之所存亦可以察之矣余與君任亦少年處
爾任我適以資規責責雖不有直於君任必有其於余而中亦相失
室但為君任一室之而不幸我君任之弟數仲以一幅清言

○ 吾友鵝洲申君任遇疾不汗客決于商山之楊荷年僅二十九有
祖母；在堂有弱妻稚子嗚呼其情也已其可也也申氏故嘗繼之
世至楊松公父子益廓夫之先園于公清姿雅韻為世所推服
克踐厥職自弱冠慨然有志於問學杜門靜坐取朱子書退讀先生文
讀之窮日夜不倦人勸之舉則曰吾業未就也中遭園于公之喪
遂予家自歎初志之不繼然亦未嘗去書不觀則留意於吟詠
都雅無題聯筆血氣勃陸字丈人嘗謂余曰是子法；欲通唐虞
賦蔡矣冬余入於君任之僕父之門君任方新寓在東其送送
俱幸臨臨倫理謹然流介；無子等之過余固心儀之自步七、八等之
閱余之注未見君任果矣君任不致馳置自便每過必執月夕相
出醜解解壁上枯桐浪推數過已謝然不怡蓋園于公所甚愛者
其為於孝思而志尚之所存亦可以察之矣余與君任亦少年處
爾任我適以資規責責雖不有直於君任必有其於余而中亦相失
室但為君任一室之而不幸我君任之弟數仲以一幅清言

○ 吾友鵝洲申君任遇疾不汗客決于商山之楊荷年僅二十九有
祖母；在堂有弱妻稚子嗚呼其情也已其可也也申氏故嘗繼之
世至楊松公父子益廓夫之先園于公清姿雅韻為世所推服
克踐厥職自弱冠慨然有志於問學杜門靜坐取朱子書退讀先生文
讀之窮日夜不倦人勸之舉則曰吾業未就也中遭園于公之喪
遂予家自歎初志之不繼然亦未嘗去書不觀則留意於吟詠
都雅無題聯筆血氣勃陸字丈人嘗謂余曰是子法；欲通唐虞
賦蔡矣冬余入於君任之僕父之門君任方新寓在東其送送
俱幸臨臨倫理謹然流介；無子等之過余固心儀之自步七、八等之
閱余之注未見君任果矣君任不致馳置自便每過必執月夕相
出醜解解壁上枯桐浪推數過已謝然不怡蓋園于公所甚愛者
其為於孝思而志尚之所存亦可以察之矣余與君任亦少年處
爾任我適以資規責責雖不有直於君任必有其於余而中亦相失
室但為君任一室之而不幸我君任之弟數仲以一幅清言

唯速篇子義竹山而不尋於性行而拘束于發之清又怪
 子傳夜朗月子龜塘清孤初漢子玉樽紫酌器吟不余
 琴聘半節之測子曠宇宙孰謂子以牙冷日吾每嗟其
 賢子寧字子為厥考則邦意去御維字子軸千里子去折
 苦運子運吉路子運歸嗟人爭之難恒子大夜微其何
 運輝以弱子子叫號父恒彼楚婦之抱遺子竟際絕之
 武芒子其孰惟發有限美子味乎其孰依微並於今子
 在素之奈何乎危任

又十七首

香客寶樹玉為枝長帶清風好自持大度十年成棟柱
 積病願骨相願肝廿載生靈一自教自之存意天性出
 天裡九家至成迷一匪辱餘不勝悽仰欲得自探推恨
 三世存身欲數隨何天侵火儘歸浮生三十九年幸
 手逐秀骨生靈氣清韵韵冷三筆下開景是難危眉
 翠翠靈靈靈靈靈候門種子眼特穿後推情慶中聲
 天差有情天亦將

遠曾自外運行施備餅香靈厝別情隨發遺以公
 深令誰字蒼權者痛哭呼天香冥死去倚思門
 生時在感况赤生死後况生氣骨清極耐度公泉
 棠棟花零冷水限孤舟空載思連迴門門鶴紫
 聞公臥病異律時頻道離客久未情天法法說
 望海珠沉不波傳龜山埋三惡何採雁油泉下
 離背詩筒伴擬掃青簾金鏤梳無輝悉看丹
 望以東畔竹林西蔓草荒墟恨轉迷浮世百
 平生志計到今此何處最苦更再浮世一朝
 不志重蓮鄭氏即香儀春約已遠之龜備西州
 清海山華嶺嶺山是也公法守十日為法守
 公其如日公法守十日為法守十日為法守
 一閉位城備鳥春公片其作九原人夜堂民去
 可長相尋夢人蘇演

相第長溪黃燈曠

去歲已已老聞報申斯文君任氏自金陵經由訪我為
 過與疾卒以不汗无年二十九矣而其第發仲載長
 不敵臭嗚呼余以九弟之誼其忍之乎况公之天死
 也重堂及諸父皆在彼吾弟亦未及來也彭命無一
 呼公之面不可得見復見公之為人何可憐以言之
 佳好學者友根夫其行於客邸者多有人可親性且
 也頗有林下意趣又長於詩出入常隨一竹筒富物
 詩初差不保意而清簡乎實自不可及者蓋其音次
 塵想故自能道清以此好也皆謂於余自以耽詩為
 也者亦痛不矣余即追規日詩固學老之所談亦不
 可也若欲以此為究竟法計則便是一種曠人皇
 難自那公固不必然而於亦我之公點頭可其言其
 矣嗚呼以公為地之好談履之為能善其年光其所
 莫有限量而天及於相斯又使大費其究長連未而

妻之遠此理之不可知者也抑亦亦有祈深痛於忘者
 風飄於無處之士之祈痛厥而不幸未過於世年又
 之公又九世其家者則天之未報於前者於其後也
 可痛也已坐公之志業行誼已之愧况人其視夫世
 憐抱德者之為人所嗤罵而貴且壽相法亦速矣
 欲亦報公力將以書過余焉已矣吾誰此為悼送
 詩是公林乎天資其考友特一身運所保廿九老
 精學氣又涼寶床惟猶茅物餘亦疎佛弱續才
 審可憐遺腹子於以驗卷

又十五首

其友島川鄧履實

故友申公與余知之篤余信之如右人二十九而沒
 以其字白公以其年致余哭之甚悲之亦以右人
 者也委去之日作

是何哉此理已弱且不能管攝夫氣化那嗚呼余不知死生之故每
疑長天壽元四派而美湖長逝者谷知而流合有知者恨為故且為
世因之語疑行以哭居係之詞曰
湖德學深潛居去子何之花後子洞梅詩魂子不來自日語心在
藏子脩花對其類賜何被服之芳藻子查朝霞之夕輝有母
子喚有妻子影第走何歸人間之深榮子雅成也而逐不替愛海
霧棧柳之為棠子健恒暫而不見思再設可會於雲房子三衣
未歸於懷枝已為我居歸去焉未孰孰為彭子孰為顏自右
皆皆死子因歸於何處

世友真城李宜泰
蒼生世年未淡水交情已死灰為惜伯豐子為老遠悵長吉更多才蘭舟
審目陶無主物林道風去不回最是蒼園亂傳痛為山裡使人歎
各天曾叩主人家君去南山未返事孤負一官英賜接極驚旬月美致能舞綠
恣王草揮故里紅痕帝才花舞事即今澤似夢悲悲物色亂如麻
友人光山全注

荷作水裳意作夢少年心事古人風生渡子青蘿月起時藉藉非尋期
酌世情陶古遺家物理靜中收莫安思逐浮雲去花鳥依戀不勝絲
公於世事摠盡心綠木欄不願今春未見吾君往斜日思成五名無

又 威第真城李春教
山凝水鏡痛陽和乃揚揚第免世兒孝友傳家遺事花情塵律已今名持張蘇
夢風沙道等傷心通盡沙期像去鶴亮頃刻事多難的寒月慢差代
崔命云不回松鶴十年事未月龜的以月欄留看物色恰似春金去後絲

又 堂叔述性
公歸也但惜其年篤以嘉言最可憐庶幾松山似鶴巖者那知暗月憶新山水
中獨與完誰訴堂上蒼頭保微果平日裝束知已交吾當當結無負
又 門兼作得酒仍加棟折揮摧可奈何成之年不為便道君今日又滄池
吾為各序病正深人主君死不徒私年來廟運方長較之使斯人乃至斯
共余同稅十餘年叔位恩餘師友費事危屋空以與我至令生愧公明官
有時葉日與觀慈為我吟來古上船光景即今休當好不堪如衡御守荷

雖近親位理難知何約於君是乃難丹成尚有幾幾驚持言如雲中
又 再注翁熟仁

自古人稱樂奉堂年未少事偏傷 空拜李友盈揚國世不從七滿管管字
送此跡影若松留先濟老後從 至今物色皆依舊昔日繁華去去場
辭遠童起遊志子老將再馬未雲轡 肯助裂石徹腸斷以何天翻長長
故宮堪取寒江江的夢身深泉量縮視况先聲有寄青山空草息

又 論人行及向年齡孔聖能長後子牙相像傲身高好相持月裝飾清舞舞
理觀關將遠禽還傾指日程隔歸錦江遠瀆國空山然聽子親解
又 兩再從友人專賦李宜泰
越：雲水十年間淡泊交情落一團度靜靜仍傷世事變換幾可
得親歡身結度謙善非撞古臣百塵琴散冷自是孤高難老得幾
持伴方清酸

又 曹公賦大經
溫良法特特家才莫以芝蘭謝以物惟虛道了奉長父能養老健取身

又 友入漢陽題運道
各暮宮楊危古時日陰雲載雁未暖老運宮產為谷與前難雲成
清社凡爾竹深夜月當梅詩思清餘賦應心後世來工夫得字古曾
進成才不謂考年事今來地成

又 世所稀春山難曉夕執律愧相違
君化何山林栢實餘齡難心長碧律救南青多地關上人傷私曉的雲吹
轉子曰於其死之悲也而可也余於君任信而可微矣君任為人眉宇疎闊老
商介習視下而念保辭緩而氣閑不吐不吞新：柳：如也其居守序及之世治也
行之字皆有規度已成長應使之有年而究其至則所進空方量之字皆
去身密信子南山不知其所在所及空圖之並有芝焚玉燬之致胡余山陽之
感失此一友交字身老余適在大江之南既失山鳥之吊又必以陽陽區道
長區入也首胸非交思之謂也今知君任之精於筆墨之餘亦在清永福區道
持自志強時若之不見君任空臨而月耀上樓揮商歌：字：先生出處在夢
夢中吟吟之身最長起看此世等致終進照梳散髮出眉中事主雲為

又 友入漢陽題運道
各暮宮楊危古時日陰雲載雁未暖老運宮產為谷與前難雲成
清社凡爾竹深夜月當梅詩思清餘賦應心後世來工夫得字古曾
進成才不謂考年事今來地成

第君為我書函焚之君性愛前以常天招且錄居則後以州之思云

南國風流縱條生賦河其厚如行標之辭早已推為步學賦子期驗
高明仙籍暫辭香案待世法法書至按嶺嶺重若舟遺此以思
楠因未死什情

元有廿九程於手且為其才世世情即才人向已思友居然不至是
仙去情各已肩不稽不挽那堪寄去眼今古如日都人令後發卷
行查虛分偏

李顯靖
李師靖
李夢靖
三挽送不記

祭文

歲庚午三月二十九日壬申泊租竹崖老人使孫兒好仁特薄奠於子家
仁之靈曰天其不教夫各向身何奈爾之斯速爾之稟賦明粹清性溫
厚於為者勤於持物平居未嘗以一毫私志芥蒂於靈其待物雖有喜
則悅之誠極痛者殷勤委曲之情多親則有主辭之居去則有主辭之
至於日用事為之際凡所以志心制行一循常行之初初身皆於秘務自無
余於逸故雖平日好傷飲飽物檢者對爾靈歛怨起教不藏有慢易之容
雖謂有之也君子不為過矣人皆謂吾高子者接身先生道風結匪都在
於爾者爾者豈非吾師者乎爾乃吾道子吾此泔海黃刺老湖學子
未嘗釋卷其於於祖微吟咏之間有無陳腐語者然有古七以爾之才靈
可以解我稠糲下可以充我門楣而芳蘭將幾風霜旋摧彼蒼者天爾靈思
古之玉勃李觀俱以九世之才年至二十九而沒今爾之靈又至於斯也乃
天故奇其奇耶爾爾自近年以來抱醫務服藥而自其形體而視之則不知有
大故病屢泄在至月之前至汝母世世世世世世世世世世世世世世
在痛內攻曠日沈痾屢得寐醒便使陸續連聞不暇言結如常才自到者

親

子內相態及更侍奉養節真所謂難事不名者自惟其精神尚是故猶地際
日望其先流歸靈料添得別症急於醫去使然我地無運痛那再轉轉
徑風風飄於歸樹樹而上樞骨而痛天開哀孤獨時天而執地行路來亦不積
淚胡金老物特何以為保林樹樹乎才成余余先亡之世伯兄又指甘一錢珍而留在
人世誰事汝付界不而抱爾至大害祀所托門園望望收一員是持而天也思
至有今日 祠而增遠戶庭寂寞又有十歲稚童零丁孤老歐高而遠爾者
寄不飲泣於寒之中勝此特一家之孤獨年自爾之亡不知舉言爾者
日善人之久君子隨天親屬之味我者或杜大不佑斯文或種爾運之不幸也爾則
爾之存亡有關於世道也明矣嗟夫天道好生宜有極禍之道而文奎爾竟才何
其降則于我求者是其偏賦十七等才身風或英義質爾下其運到爾者
之靈而對榻夜而猶枕論文講藝日不暇後爾則元才恩則師生品由明運者
相為依然無所考處而向業亦痛追即年乃多病而暴天想爾爾相隨於
九泉融其也特與異於平昔而唯在世者痛門柱之哀薄悼令器之爾其
哭者然以淚者可也也今行年才下歲疾病侵尋的力柴制便爾者
到于今既在爾曾又哭可橋止志並後爾然自今其難久越世軍因歸

恨悲何益蘇東故音謂有子九死有之撒孩骨相俊者道騰又爾奇數視世之
本及惡器天析天無曲洞轉天若有不昧者存其得不知爾者能自寬解
億谷新門卜世弟世弟世弟世弟世弟世弟世弟世弟世弟世弟世弟
春晚龜閣風先正好是時時道道之面是者花劍月夕精采注而真然
冥冥然冥冥觀其影影第世世痛痛有其一也送汝其或說我情曲而大
卿食於斯好其故矣

惟爾者于四月初吉即吾孫重仁承賜三日而一日事四徑祖以傳其德矣
之日也呼痛我世之真精確在存今代之死而後何依爾依道痛伴山中非其
後靈廣祐吾門何意慘報曾石疑雖唯汝做行素著知堂主人空問之子靈
者我神已渡天子賢身為我棟樑支我魂乃為我珠玉我寒榻孤梅初行
閱 錄 業志操何望有清滿尚尚多報有書在案真身陶生之亦亦亦
何運天其冥冥冥冥有在種種送於汝依托鼓動靈首日道所業自此大格
歸人爾吾家文奉雙三孟世世學爾爾爾爾爾爾爾爾爾爾爾爾爾爾
人室無其人孰如他賢夫居為多物中爾爾爾爾爾爾爾爾爾爾爾爾
歲之庚午四月初吉吾孫重仁承賜三日而一日事四徑祖以傳其德矣

三也此月未死也恨何已之論

事必受故以死某類痛夫于室宗... 夫受命之時已之禍禍... 夫受命之時已之禍禍... 夫受命之時已之禍禍...

身枕枕... 夫受命之時已之禍禍... 夫受命之時已之禍禍... 夫受命之時已之禍禍...

此類以行... 夫受命之時已之禍禍... 夫受命之時已之禍禍... 夫受命之時已之禍禍...

吾嘗慮... 夫受命之時已之禍禍... 夫受命之時已之禍禍... 夫受命之時已之禍禍...

夫受命之時已之禍禍... 夫受命之時已之禍禍... 夫受命之時已之禍禍... 夫受命之時已之禍禍...

乃父與刑之... 天之有君... 日之有中... 乃父與刑之... 天之有君... 日之有中... 乃父與刑之... 天之有君... 日之有中...

其舍先心... 伯仲兩人... 昔甲則... 其舍先心... 伯仲兩人... 昔甲則... 其舍先心... 伯仲兩人... 昔甲則...

其舍先心... 伯仲兩人... 昔甲則... 其舍先心... 伯仲兩人... 昔甲則... 其舍先心... 伯仲兩人... 昔甲則...

其舍先心... 伯仲兩人... 昔甲則... 其舍先心... 伯仲兩人... 昔甲則... 其舍先心... 伯仲兩人... 昔甲則...

선배 필적(先輩筆蹟) (1)

선배필적(先輩筆蹟)

· 분류	고문서-시문류-서 / 교육·문화·문학저술-서
· 형태사항	크기: 22.5x34.5 / 첩장, 1 책 35 면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I. 오봉 가문 / (11) 선배필적 / 선배필적 / 643 ~660 쪽





送

完山半刺赴任所并序

嘗誦

甲塵柳先生無親無君非孝非忠

之句以為事親而後可以事君也

孝而後可以盡忠君親固一體也忠

孝固一事也今天曹長趙公秉鉉衡

幾數月初以金君貫之俸順天中

以趙君士靜伯嶺南終以 申君

望久為完山判官人皆以為失政金

趙兩君事得久未暇論余愛 望久

容質濼、襟韻貌、所謂百丈山頭一

玉也千頃波面一月也真箇玉皇香

案吏宜危之於米鹽升斗之間後

願望久今年四十八歲

大夫人今年八十五歲噫 望久事

君其事親之日果孰長而孰短也趙相

今既令 望久孝於親矣他日豈不

能令 望久忠於

君哉由以言之鉉曹今日注擬雖謂之得

焉可也而况完山是 望久 先世祠

後數月初以金君貫之俸順天中
以趙君士靜伯嶺南終以 申君
望久為完山判官人皆以為失政金
趙兩君幸得免未暇論余愛 望久
容質廉、襟韻氣、所謂百丈山頭一
玉也千頃波面一月也真箇玉皇香
案吏宜厄之於米藍升斗之間哉

願 望久今年四十八歲

大夫人今年八十五歲噫 望久事

君與事親之日果孰長而孰短卦趙相

今既令 望久孝於親矣他日豈不
能令 望久忠於

君哉由以言之銓曹今日注擬雖謂之得

焉可也而况完山是 望久 先世祠

送

申正之之任主州未敢有言

宗湖以存故者懷之惟主為府之
大考公以所行進難之非亦或乃通
全上致初影之改而有日斤、體川、
月五、朴公為以大夫人之善而以尹性
終練申君又之善以或凡蒼紳士知朴
公者謂公推其為親者乃或即以此或以

善者以或之善也申君亦知公之
為親者及及民以之改且且以親或之無于
理也申君好以 公友也亦其床而
口也善也如甘也如以彼如之矣如如
謹致致公之善也夫全因之親者有善
孫者之善也之彼者如以善也
公之善也從親也而學子之善也善也
公也桃也身山之風義於桑之南文也

道

申望久通未完山序

士君子立桐竹之生也與孝子之
匪孝者人子親匪生也孝人子
其多孝者古之有也古者孝之於
心余之同宗反申君望久才華可
生通生以事是且細細奉之
鞠鞠 且欲多於 太破人年於
道八望九真以巧子 於古子親

望久生之誠也此而易子親
我望久望風之便春不將歷者
昔年望生而望山才在在孝人其不
為望久望揚而望久望能之有者
為余於望古望久望誠之望久望
和生人之以子也且望山乃 望久
夫之桐竹而陳仁居得佳於望久
久而望望望望望望望望望望
太破人望望望望望望望望望

此為望生之誠也此而易子親

望久生之誠也此而易子親
我望久望風之便春不將歷者
昔年望生而望山才在在孝人其不
為望久望揚而望久望能之有者
為余於望古望久望誠之望久望
和生人之以子也且望山乃 望久
夫之桐竹而陳仁居得佳於望久
久而望望望望望望望望望望
太破人望望望望望望望望望

望久生之誠也此而易子親
我望久望風之便春不將歷者
昔年望生而望山才在在孝人其不
為望久望揚而望久望能之有者
為余於望古望久望誠之望久望
和生人之以子也且望山乃 望久
夫之桐竹而陳仁居得佳於望久
久而望望望望望望望望望望
太破人望望望望望望望望望

同宗弟擬寫之新序并

送

申望^久完山通判之任 送序

人之仕者例以外內心輕重以為一時之宗悻焉吾見之矣吾友申望^久者言^西禮部未幾朝色且復引入浸、然用之通全州判官缺望^久謂^西吾之從也

太公矣吾有老親在堂得一日養是為深吾肯以彼易此哉遂懇求外如其願 朝廷惜其去而不聽得將以余執手而言曰是吾所云世所謂者人之判官即古之通判全為邑大而華豐沛鄉諸郡孫其等乃有整日焉

有府尹為判官抄然處在中武於非以佐之其事之慶若早者之承為貴辰輒與冠帶同起居進而者朝夕晤會之日以為常少者毫髮慢即誦責至玉使人有若此堪者吾無子之不然是也望^久曰然吾聞之君子素在位而竹無入而不

自詩又曰為存心於愛物必有濟然則今吾之小室獨為深養而持以吾道也况邑是老者子當慎者至于今道之愛在民惡之者父母焉苟吾之克遵其成法無忝先人蹟是其道之行也彼之謂者固不足道又何有

於子所云余甲子之言善吾不如也子其以英傑以詩以賦之

豐沛山河第一州送君今日意悠悠承恩即見念惠孝悌別休言各去留地勢新分湖北口天形低壓海東頭才去來子樹桃李友儔

記玄都意客不

丁亥復月下澣友人李光武

奉贖

中望久豐基之行

維彼小豐邑嶺路一閱鍵士瘠民甚貧百弊日滋蔓自經喪亂未俗偷薄且怨以此罪其俗是豈真確論自古邑多賢足以徵文獻慎齋政何清治教頌言偃造化經退陶道以講治建先子亦暫試慶民出誠相士皆爭琢磨遺風尚未

遠竹溪賢者居典刑親猶宛錦曲有芳獨幽貞所肥遊吾言實非妄可以一隅反夫名出乎嶺眉目清而貌挺松披手尋種蘭滿九畹一日歷丹梯聲名垂輝煥其職可捨遺其才可補衮薇垣許日望風采想雲、出入道金闕翔鳴藝苑如何屈州跡縣與風塵混昔我衆中見視以為黃憲從此附驥尾弟兄情健

終嘆 石甚聰明憐我何曾鈍維然志既
同知我何而愿中間各浮沉怕抱離索恨
君今出為邑堂是 朝廷願君子隨過安
息命鼓偃蹇稽首紅雲邊雙飛危鳥總東
風出都門落日下山阪樹杪暖浮春菜根
香茁嫩廣津波拍天日月含淚此信馬
涉江路烟波流渾、忽焉到黃岡亂
石岡多狼丹丘仙兩居清絕息塵望玉三

出三島動盪雪山噴石古老鰲瘦雲深
彩鳳通竹嶺入雲端百盤阻且曼福星
照一方叔度未何晚前年國大早未麥盡
枯損野多餓殍骨民生日以困所在憐愈
熱有司徒憂德想 君以治為政誠其
本仁如愛卓茂熱宣畏趙盾讓出太和春
條畫運方寸積粟急眼飢污萊悉開墜
遠道可使民偷早等提樞威以肅蒼靈清

以洗濁國儒佯振文教禮讓歸揖遜如
君社稷先是為古將統運想簿書暇登
陟學劉阮崑崙國望牽畫屏列翠巖
極目跨遐眺
玉京瞻九萬炳然憂國心三持印一飯被髮下
翻、塵胸蕩孤岡公齋伴一鶴醉未清
筆健吾知政既成驛名應雁返一尊待
河橋相對披兩愁友人李元圭再拜首
以頌

逢金杜句奉呈
豐基清
積德名公後驛船登坦道聖代未
聞詔第一人鵬鴉上秋吳明庭聚
酸醜頗異好天上碎香茶 延還仍百里
呀味未同寅人間遠紫宸松棘已三春
難割馬馱刃地偏社俗界句漏丹砂鍊
龍蟠久戲鱗山峻類我岷桐紳上子親

文翁能化蜀 白日明軒宇 樹楊無銀藉
杜世善治民 清風縹松渴 薄際絕松嶺
凶歲實餓少 瘠官捐俸未 冢事權謀難
窮民賑濟均 助後若錢緡 惟任德教難
一方懷大惠 俗復皆悻化 詐云帶瑞符
羣庶服陳仁 風移盡返淳 宛似戴儒巾
不見公凭舉 家聲元有自 小邑誠多祿
唯聞乳翟馴 禮論豈無目 賢才幸見掄
自嘆非釋老 偶甬生斯世 當肯事翰墨
不識有君臣 居然老此身 妄擬抱經綸

口誦經書通 仍修科舉業 筆下恐無隔
身非閩域臻 幸際聖明辰 篇成若有神
每奈京解額 謂澌雲間路 還差將運否
我渡溪江津 將為席上珍 不免况魔真
漸覺年光健 今辰非昨日 晚作窮村老
何由已去仲 急景似春輪 作憐危鬢銀
半疎同畫虎 悍吏常催租 妻兒雜年歲
衣突有鴛鴦 飢僅厭負薪 饑術動徑旬
不計素榆晚 重弄舊卷意 每值秋闈近
猶思風雨晨 更掃舊床塵 先行大塔邊

漫隨劉子紳 因教常思潤 用儻談
聖廟伏生唇 隣姬欣效頤 老少譽中
親學忌羞恥 齋門鼓瑟 宜是要名利
身勞耐苦辛 楚璧反為瑕 元非惡賤貧
乍期效犬馬 易識浮生理 何將罪錫潛
不必畫棋楸 祇近賦命屯 次日報耕莘
後引無姻媿 尚能若洗遇 去態多執霞
用知念梧仲 安肯學阿循 人情少睦嫻
心交互若鮫 夢想風儀久 適來臨近土
面友貴儀秦 雲泥道路便 何幸接芳隣

厚義起浮俗 由來志氣合 屬下陳善榻
書標邁芳倫 祇取性情真 多愁難歸宿
羨蓬空去 為有同年分 非無德德
文質謝彬 頻承片牘詢 不敢叩門頻
鄙序催春暮 庭盡香雪落 景物能如此
流鶯喚友新 岸柳翠眉睂 筆瓢正在陳
其容猶坦 且欣酬佳景 遺懷格低卑
和氣自閑 無緣醉倚窗 後日為冷呻
未足歌隋鄙 虛舟橫野渡 世不遺安石
徒能搬腐箇 檀木真河清 終當台寇拘

倘蒙招以酒
安敢遽遂巡

古人於公卿大人前必有酒而則
必有陪侍侍者亦必欣銜耀其
文辭而以道達其誠意亦非文
不可也生於吾鄉中亦招且辭故
此呈呈向往不獲盡往不實訪
星由中出也

公務之暇幸資一哂

辛丑季春日 張龍過拜